

행정간행물등록번호

05400-02540-27-9802

3/10-123
통147
C.3

주요통계지표해설

115

B25265



통 계 청

B0023839

머 리 말

최근 급속한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통계의 개발과 작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통계도 그 조사대상이나 조사방법 등이 환경변화에 따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통계청에서는 많은 분야의 통계를 새롭게 개선하여 발전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통계를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 통계의 조사방법, 조사규모, 조사대상 등에 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가능하고, 그 통계를 올바로 이해하여야 적절한 활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통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작성되는지 등 통계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자료가 부족하여 이용자들이 통계를 이해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이번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통계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작성·발표하는 국내 주요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주요통계지표해설」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인구, 국민소득, 노동, 물가 등 17개 분야의 주요통계에 대한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주기 등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주요통계지표의 해설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문별로 핵심적인 통계표를 통계도표와 함께 수록하여 전반적인 흐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통계이용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원고를 검토하고 새로운 자료로 수정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신 정부 각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3월

통계청장 윤 영 대

차 례

1. 인구통계.....	5
2. 국민소득통계.....	29
3. 물가통계.....	51
4. 가계통계.....	69
5. 노동·임금통계.....	85
6. 농림어업통계.....	107
7. 광공업통계.....	127
8. 에너지통계.....	149
9. 건설업 및 주택통계.....	165
10. 도소매 및 서비스업통계.....	181
11. 운수·정보통계.....	195
12. 금융·보험통계.....	213
13. 재정통계.....	239
14. 무역·국제수지통계.....	255
15. 교육·과학통계.....	277
16. 사회·보건·복지통계.....	295
17. 환경통계.....	315

[부록] : 색인

1. 인구통계



통계조사 및 통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인구가동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 추계인구, 생명표

주요 통계지표

인구증가, 인구성장률, 인구밀도, 성비, 평균연령,
중위연령, 부양비(유년, 노년), 노령화지수, 기대여명,
평균수명, 조출생률, 출산율(일반·연령별·합계),
재생산율, 모아비, 조사망률, 연령별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율, 인구가동

통계표 및 도표

연앙추계인구 및 인구밀도, 연령별 인구구조,
국민 평균수명 및 평균연령, 출생 및 사망,
혼인 및 이혼, 인구가동

인구통계

I 인구통계의 의의

인구란 일정한 시점·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및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측될 수 있는 인간집단의 질적인 구조·속성에 관한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구의 개념은 반드시 그 집단이 거주하는 일정지역과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인구연구의 대상은 인구의 규모와 성장, 인구의 일정지역 집중현상 등의 지역적 분포, 성·연령별 인구구조, 인구변동의 원인과 결과 및 이와 관련된 사회, 경제적 영향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인구통계는 '수'로서 표현되는 인구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구의 구조와 분포, 인구의 성장, 인구변동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인구는 생산의 주체인 동시에 소비의 주체로서 인구변동의 요인은 경제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제변동은 장기적으로 인구변동을 초래하게 되므로 인구현황의 파악과 인구구조의 변동이 향후 경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인구통계는 국가·지방정부의 각종 계획수립, 우리나라 인구, 사회, 가족 등을 연구하는 기본자료로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자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 인구통계의 종류

인구는 일정 불변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출생, 사망 및 이동의 세 가지 요인에 따라 부단히 그 규모가 변화하고 있는 동시에 구조 또는 속성도 변화한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변동하는 인구현상을 어떤 일정시점이라는 정지상태에서 관찰할 때 이것을 인구정태통계라고 한다. 반면 인구동태통계는 일정기간동안에 인구의 크기나 구조를 달라지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한 통계를 말한다.

인구통계란 바로 이러한 인구정태통계와 인구동태통계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시점에서 파악된 인구규모와 성별, 연령별, 직업·산업별, 출생지별 인구구조 등은 인구정태통계의 종류라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자료로는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들 수 있다.

반면 총 인구규모를 달라지게 하는 요인인 출생·사망통계, 지역별 인구분포를 달라지게 하는 인구이동통계, 혼인상태 구조를 달라지게 하는 혼인·이혼통계 등이 바로 인구동태통계의 기본적 종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태통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신고제도에 의해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표적인 자료로는 호적신고에 의한 출생·사망·혼인·이혼통계나 주민등록에 의한 전출입통계를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구정태 및 인구동태통계는 각종 정책수행에 대한 평가자료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사회개발의 계획수립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초자료이다.

II 인구관련 주요통계 및 통계조사

1. 인구주택총조사

총조사(Census)란 국가가 주관이 되어 일정시점을 정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의 총수와 그 개별적 특성을 일일이 조사하는 전국적 규모의 통계조사를 말한다. 우리가 한 가정을 제대로 꾸려가기 위해서는 식구수와 그 구성원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합리적인 생활 설계를 할 수 있듯이 나라 살림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인구의 총수와 그 특성까지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각종 표본조사나 실태조사, 행정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들 대부분의 자료는 사회, 경제의 일부분만 나타낼 뿐 복잡한 사회현상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한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는 막대한 예산과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방법에 의해 지역별 인구와 가구수는 물론 개별 특성까지도 세밀히 조사함으로써 사회, 경제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용정책, 교육정책, 교통정책, 보건정책, 주택정책 등 실로 다양한 국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UN의 권고에 의해 현재 거의 모든 나라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인구총조사의 역사가 길어 그 동안 인구주택총조사가 국가발전과 복지실현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조사대상은 조사대상년도(최근 '95년)의 조사기준시점(11월 1일 0시) 현재 조사지역(대한민국 영토 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

영역)내에서 상주하고 있는 내·외국인 및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이다.

이때 조사대상인구에는 국외에 출장, 여행, 해상 등으로 잠시 출타중인 사람이거나 선박, 항공기의 탑승승무원 등은 포함되는 반면 해외취업·취학중인 한국인, 외국인중 외교관 및 그 가족과 UN 소속기관 외국직원 및 그 가족, 외국군인, 군속 및 그 가족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의 조사대상은 조사지역내의 모든 거처이며 여기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이 포함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매 5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대규모조사로서 읍·면·동 단위별로 많은 임시조사원을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여 책임 있는 응답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인구·가구 및 주택에 관한 조사표를 작성한다.

조사항목 중 인구에 관한 사항은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나이, 종교,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은 전수조사하며, 출생지, 5년전 거주지, 통근·통학여부 및 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소요시간, 경제활동상태,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등은 표본조사한다.

가구에 관해서는 거처의 종류, 가구구분, 점유형태, 사용방수, 주거시설형태 등은 전수조사하며, 임차료, 거주기간은 표본조사한다.

주택에 관하여는 연건평, 대지면적, 총방수, 건축년도, 편의시설수를 전수로 조사한다.

조사구는 담당 조사구역을 명백히 하고 조사대상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조사구와 특별조사구를 설정하여 일반조사구는 일반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조사원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지역에 설정된 조사구를 말하는데 이에는 읍·면·동 단위로 조사구당 평균 60가구를 기준으로 지역을 분할하여 설정된 보통조사구와 섬조사구, 기숙사나 특수병원, 고아원, 양로원 등의 시설에 대하여 개별시설단위로 설정된 기숙시설조사구와 특수사회시설조사구, 관광호텔과 외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설정된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 조사구가 있다.

특별조사구는 일반조사구와는 달리 조사원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조사원에 의한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재외주재공관, 경찰서, 교도소, 군부대 등에 대하여 별도로 설정한 조사구를 말한다.

조사방법은 조사구에 따라 보통조사구와 섬조사구의 90%에 해당하는 조사구에 대하여 전수조사표를, 보통조사구, 섬조사구의 10%에 해당하는 조사구와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조사구에 대하여 표본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단,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외국인용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빈집 조사표를 이용하여 빈집(주택)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원은 조사가 완료되면 작성된 조사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이를 취합한 후 집계표를 작성하여 시·군·구, 시·도를 경유하여 통계청에 제출한다.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전국에서 수집된 조사표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잠정보고서, 속보(2%표본), 최종보고서 형태로 발표한다. 전수보고서는 총조사의 전수조사 항목을 집계한 결과로서 전국편과 16개 시·도편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책으로 발간되며 표본조사보고서는 표본조사 항목을 집계한 결과로서 통근·통학편, 인구이동편, 경제활동편, 고령자편 등으로 구분하여 발간된다.

2. 인구동태통계

인구동태통계는 인간의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과 같이 인구를 변동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인이 되는 사항에 관한 통계로 국가의 인구정책을 비롯한 경제·사회·교육·보건 등 각종 국가정책의 기초자료로 필요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국내외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신고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신고된 자료는 접수기관에서 신고서 내용을 입력하여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통계청에 제출하면 통계청에서는 사망원인에 대한 부호기입 및 전산처리과정을 거쳐 인구동태통계연보와 사망원인통계연보를 작성하게 된다. 인구동태통계연보는 지난 10년간의 결과를 누적 집계하여 작성한 것이고 사망원인통계연보는 당년발생, 당년신고분만 집계한 것이다.

인구동태연보의 자료는 1, 2부로 나누어 작성되어 있는데, 1부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신고자료에는 영아 미신고, 지연신고가 남아 있어 이를 감안한 추정치를 산출하였고, 2부에서는 영아 미신고분이나, 동태사건별 지연신고분을 감안하지 않고 신고치를 기준 집계한 것이므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각 자료는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이 수록되고 각 동태사건별 연령, 성 등으로 세부지표가 구분, 작성되어 있다. 출생, 사망의 경우 사건 발생 당년에 신고되지 않는 지연신고가 2~3% 정도, 혼인, 이혼은 20~3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영아사망 신고누락이 있어 이용상 주의를 요하고 있다.

사망원인통계는 국제질병 사인분류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지만 진단서 첨부율이 낮고, 사인 미기재나 노환 등의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

3. 인구이동통계

인구이동통계 작성의 목적은 지역간 인구이동 현상의 흐름을 파악하여 지역간의 균형적 국토개발, 노동시장, 도시교통, 교육 및 주택, 보건위생 등의 각종 정책수립 자료와 지역별 인구추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에 있다.

이 통계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되는 보고통계로서, 읍·면·동에서는 지난 1개월 전산처리된 전입신고결과 등을 매월 각 시도에 송부하며, 각 시·도에서는 이를 다시 취합하여 익월 15일까지 통계청에 제출하며, 통계청에서는 이를 연간으로 집계, 세부통계표를 작성하여 익년 6월경에 인구이동통계연보로 발간하고 있다.

4. 주민등록인구통계

주민등록인구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각 동·읍·면의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인구를 말한다. 주민등록표상의 인구는 호적법에 의한 출생·사망신고에 의하여 수정되고 있으며, 전출입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에 의해 수정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인구는 통상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집계하여 지역 인구통계로 활용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말에 출생했거나 사망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작성기준일인 12월 31일부터 30일간에 이를 보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인구는 선거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점에서라도 집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로부터 보다 신뢰성 있는 인구통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취업·취학 등으로 해외거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상태 구분, 위장 전출입자의 주민등록정비, 주민등록말소자의 사유별 파악 등이 요구된다.

5. 추계인구

추계인구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태 통계자료를 기초로 남녀별·연령별로 인구를 새로이 구성한 것이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인구는 조사의 방대성 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누락과 중복 등의 오차가 생겨나기 때문에, 또한 주민등록인구는 개념상의 문제, 신고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적인 인구를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추계인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러가지 기초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실제적인 인구를 추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에 1960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까지의 장래인구를 추계 공표한 후, 매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후 결과가 집계되면 이를 토대로 매년 7월 1일 현재의 연앙추계인구를 새로이 작성하고 있다. 최근의 자료로는 '96년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가 있다.

'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령별 인구자료를 기초로 '90년 이후의 출생, 사망 및 국제이동 등에 관한 실적자료와 이의 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2030년까지의 장래인구를 추계 발표하였다.

인구추계방법으로는 수학적 방법과 조성법이 있는데 수학적 방법은 총인구를 추계하는데 이용되지만 장래 예상되는 변화, 즉 연령별 인구구조 등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출생·사망·이동인구를 감안하여 추계하는 조성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조성법이란 어떤 연도의 성별·연령별 기준인구에 인구변동요인인 출생·사망·국제이동에 대한 장래 변동을 추정하여 이를 조합하는 방법이다.

6. 생명표

생명표란 인간의 수명에 관한 통계표로서 인구가 각 연령에서 사망에 의하여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로 생명표는 연령별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를 평균적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인구추계 등의 인구분석 이외에도 보험료율의 산정, 인명보상비 계산 등의 참고자료, 각종 직장에서의 정년의 연장 결정 기초자료, 기대수명, 영아사망률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국가간 경제, 사회, 보건수준의 비교자료로 활용되는 등 다방면에 이용된다.

작성방법으로는 기초자료로 연령별, 성별 주민등록에 의한 연앙인구와 인구동태신고자료에 의한 연령별, 성별 사망자수로 계산된 사망률을 기초로 사망확률을 추정한 후, ① 해외이민 등 인구의 국제이동이 없다고 보고 ② 동시에 100,000명이 출생하였다고 본다 ③ 또한 동시에 출생한 인구는 특정연도의 연령별 사망확률에 따라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 연령별 사망자수, 생존자수를 산출하고 연령별 정지인구를 산출한다.

그리고 생존율과 총생잔연수를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평균수명(기대여명)을 산출한다.

최근 통계자료는 1995년 기준의 생명표가 작성, 발표되었다.

Ⅲ 인구통계의 이용

1. 추계인구, 총조사인구, 주민등록인구는 각각 어느때 이용되는가?

○ 연앙추계인구

통상적으로 인구를 말할 때 연앙추계인구를 이용한다.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1인당지표의 산출 등 각종 지표의 작성과 인구성장 추이 자료작성에 사용되며, 또한 추계인구만이 장래의 인구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장단기 국가발전 계획수립 등에 이용되어 진다.

○ 총조사인구

총조사인구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규모뿐 아니라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구 및 거주형태까지 밝혀 주는 중요한 통계로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또한 읍·면·동 등 지역별 통계까지 작성되어 지역별 정책의 평가나 입안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총조사인구는 다소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여 완벽한 실제인구가 되지는 못한다.

○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인구는 통·반·리 등 말단 지역별로 인구와 가구수가 생산되어 지역 행정 및 지역자료분석에 주로 사용되나 상주개념이 아닌 주민등록이라는 법적 개념으로 전체 인구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의 차이

인구주택총조사는 일정 조사기준시점의 우리나라 모든 인구, 가구, 주택의 총수는 물론 개별 특성까지 파악하여 서로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비해 주민등록표상에는 단지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출지, 전입지 그리고 가족관계 등 기본적인 인구관련 사항의 집계만 가능하여 지역별 총인구규모만 개략적으로 파악되는 수준이고, 총인구규모는 해외취업자 및 유학생의 파악이 어렵고, 해외 이민자 및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제때에 정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또한 자녀교육, 주택청약, 취업 등의 사유로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의 연령과 실제 연령간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연령 구조를 파악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세대는 실제 생활단위인 가구와 달라 사회생활의 최소단위인 가구에 관한 제반 통계작성이 불가능하며 가구, 가족의 변동, 핵가족화현상 등의 심층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 나라 국민의 총 수 및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속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단위인 가구별 생활실상을 주민등록인구 기재사항만으로는 알 수 없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이를 파악하고 있다.

IV 지 표

1. 인구규모 및 구조

인구규모는 인구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인구의 변동을 인구성장으로 나타내고, 인구의 지리적 변화를 인구분포나 인구밀도에 의해 분석한다. 인구구조는 인간의 여러 특성을 성별, 연령별 등의 양적이나, 사회학적, 경제학적 등 질적으로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분류양식에 따라 인구가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게 된다.

○ 인구증가

출생자수와 사망자수의 차이인 자연적 인구증가분과 전입자수와 전출자수의 차이인 사회적 인구증가분을 합하여 계산된 지표이다.

○ 인구성장률

인구증가의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통상 연평균 인구성장률로 나타낸다.

○ 인구밀도

연앙추계인구를 총 국토면적으로 나눈 수치로서 일정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의 과밀한 정도를 나타낸다. (통상 km²당 인구로 나타냄)

○ 성 비

인구의 성별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로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나타낸다.

○ 평균연령

각세별로 해당인구에다 (연령 + 0.5)을 곱하여 이를 누적한 후 총인구로 나누어 구한 연령

○ 중위연령

전체 인구를 연령의 크기순으로 일렬로 세워 단순히 균등하게 2등분하는 연령

○ 부양비

총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층(0~14세, 65세 이상 인구의 합) 인구의 백분비로서 생산가능연령층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 유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연령인구에 대한 유년층인구(0~14세)와 노령층인구(65세 이상)에 대한 백분비로 총부양비의 세분지표이다.

○ 노령화지수

유년층인구에 대한 노령층인구의 비율로 이 지수가 증가할 때 이러한 현상을 노령화라고 하며 인구의 연소화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다.

○ 기대여명

어떤 연령에서 생존하고 있는 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년수이다.

○ 평균수명

각 연령에서의 잔여수명 중 특히 0세(출생시)에서의 기대여명을 말한다.

2. 출산력

출산력이란 현실적인 출산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산력이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변하나 가임능력은 일반적으로 변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구의 생물학적 가임능력, 즉 잠재적 출산수준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출생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여자의 한정된 연령층(15~49세)에서만 발생하나, 사망은 인구의 감소요인으로서 전 연령층에서 발생한다.

출산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조출생률, 일반출산율, 연령별출산율, 합계출산율, 재생산율, 모아비,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 등이 있다.

○ 조출생률

특정인구집단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출생아수를 당해년도의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cdot \text{조출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수}}{\text{당해년도의 연앙인구}} \times 1,000$$

○ 일반출산율

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수를 당해년도의 가임 여자인구(15~49세 여자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인데 보통출산율이라고도 한다.

$$\cdot \text{일반출산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수}}{\text{당해년도의 15~49세 여자인구}} \times 1,000$$

○ 연령별출산율

특정년도의 15~49세까지 모의 연령별 당해년도의 출생아수를 당해연령의 여자인구로 나눈 비율을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출산력 수준을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서 인구추계 작업에 이용된다.

$$\cdot \text{연령별출산율} = \frac{\text{여자의 연령별로 발생한 출생아수}}{\text{당해연령별 여자인구}} \times 1,000$$

○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평생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며, 특히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연령별출산율의 합으로 계산하며, 5세계급으로 계산된 연령별출산율인 경우는 5를 곱하게 된다.

$$\cdot \text{합계출산율} = \text{연령별출산율의 합}$$

○ 재생산율

인구의 재생산율이란 한 여인이 일생동안 여아를 몇 명 낳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을 총 재생산율이라 하며, 여기서 여아의 생산율을 감안한 재생산율을 순 재생산율이라 하는데, 이는 일생 동안 낳은 여아의 수 가운데 출산가능연령에 도달한 생존여아의 수만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순 재생산율이 1이면 대체출산력 수준이라고 말하며, 이 수준이 계속하여 일정기간이 지날 경우 인구의 증가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돌입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begin{aligned} \cdot \text{총 재생산율} &= \text{합계출산율} \times \text{여아출생구성비} \\ \cdot \text{순 재생산율} &= \text{총 재생산율} \times \text{출생여아의 생산율} \end{aligned}$$

○ 모아비

모아비란 가임연령(15~49세)의 여자인구에 대한 0~4세의 유아인구비를 나타낸 것이다.

$$\cdot \text{모아비} = \frac{\text{0~4세 인구}}{\text{가임기(15~49세)여자인구}} \times 1,000$$

○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

기혼부인 1인당 평균출생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혼부인 특성별(교육정도, 직업, 산업별 등)로 차이출산력을 분석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지표이다.

$$\cdot \text{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 = \frac{\text{총 출생자녀수(사망자녀수 포함)}}{\text{총 기혼부인수}}$$

3. 사망력

사망은 출생과 더불어 인구성장의 본질적인 요인의 하나이다. 출생은 인구의 순적 증가를 가져오게 하는 반면, 사망은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출생은 혼인한 여자의 특정한 연령집단에서 발생하여 인구의 연령구조상 영아를 구성하는 반면에, 사망은 전 연령층에 발생하므로써 인구구조의 전체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사망력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망 수준과 연령별 사망분포에 관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망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조사망률, 연령별사망률, 영아사망률 등이 있다.

○ 조사망률

한 인구집단의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특정년도의 연간 총사망자수를 당해년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cdot \text{조사망률} = \frac{\text{연간 총사망자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 연령별사망률

조사망률은 전체인구에 대한 사망수준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인구의 연령구조별 변화측면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의 파악을 위하여 연령별로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남·녀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cdot \text{연령별사망률} = \frac{\text{특정연령계층에서의 연간사망자수}}{\text{당해연령계층의 총인구}} \times 1,000$$

○ 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은 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 중 이들이 1세미만에 사망한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한 지표이다.

$$\cdot \text{영아사망률} = \frac{\text{특정년도의 1세미만의 사망아수}}{\text{당해년도의 연간 총 출생아수}} \times 1,000$$

4. 혼인력

혼인력이라 함은 “남녀간에 맺어지는 결혼이나 결합의 빈도뿐만 아니라 일단 결혼 또는 결합한 당사자들의 제반 특성, 그리고 이미 맺어진 결혼의 해소, 즉 이혼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총칭한다” 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혼인력 중 혼인의 발생빈도나 특성변동은 가구수, 주택수요 및 여성 노동력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혼의 발생빈도나 특성변동은 청소년의 비행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혼인력에 관련된 통계자료는 주택건설이나 지역사회 발전계획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혼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조혼인율, 일반혼인율, 연령별혼인율, 조이혼율, 일반이혼율, 유배우이혼율 등이 있다.

○ 조혼인율

혼인력의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서 1년간 발생한 총 결혼수를 당해년도의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cdot \text{조혼인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결혼수}}{\text{당해년도의 연앙인구}} \times 1,000$$

○ 일반혼인율

특정 1년간에 발생한 총 결혼수를 당해년도의 15세이상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므로 조혼인율보다는 다소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cdot \text{일반혼인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결혼수}}{\text{당해년도의 15세이상 인구}} \times 1,000$$

○ 연령별혼인율

어떤 특정 연령층에서 발생한 결혼수를 그 해당 연령층의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cdot \text{연령별혼인율} = \frac{\text{연령별로 발생한 결혼수}}{\text{해당연령층의 인구}} \times 1,000$$

○ 조이혼율

특정 1년간에 발생한 총 이혼수를 당해년도의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cdot \text{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이혼수}}{\text{당해년도의 연앙인구}} \times 1,000$$

○ 일반이혼율

1년간에 발생한 총 이혼수를 당해년도의 이혼 가능한 연령층 인구인 15세이상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cdot \text{일반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수}}{\text{당해년도의 15세이상 인구}} \times 1,000$$

○ 유배우이혼율

이는 연령에 상관없이 혼인상태에 있는 남자인구 또는 여자인구 1,000명당 이혼수를 의미한다.

$$\cdot \text{유배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이혼수}}{\text{당해년도의 유배우인구}} \times 1,000$$

5. 인구이동

국내이동 중 동·읍·면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남으로써 주민등록상의 변경을 가져온 경우

○ 전 입

특정한 행정구역(동·읍·면) 경계를 기준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부터 거주지를 옮겨옴으로써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

○ 전 출

특정한 행정구역(동·읍·면)을 벗어나 다른 행정구역으로 거주지를 옮겨감으로써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

○ 순이동

특정한 지역내의 전입자수와 전출자수의 차이를 말하며, 전입이 많을 경우는 전입초과, 전출이 전입보다 많을 경우는 전출초과라고 한다.

○ 이동률

특정 기간 내에 일어난 이동자수와 관련된 지역의 총인구와의 비율

<참고자료>

「'95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1997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997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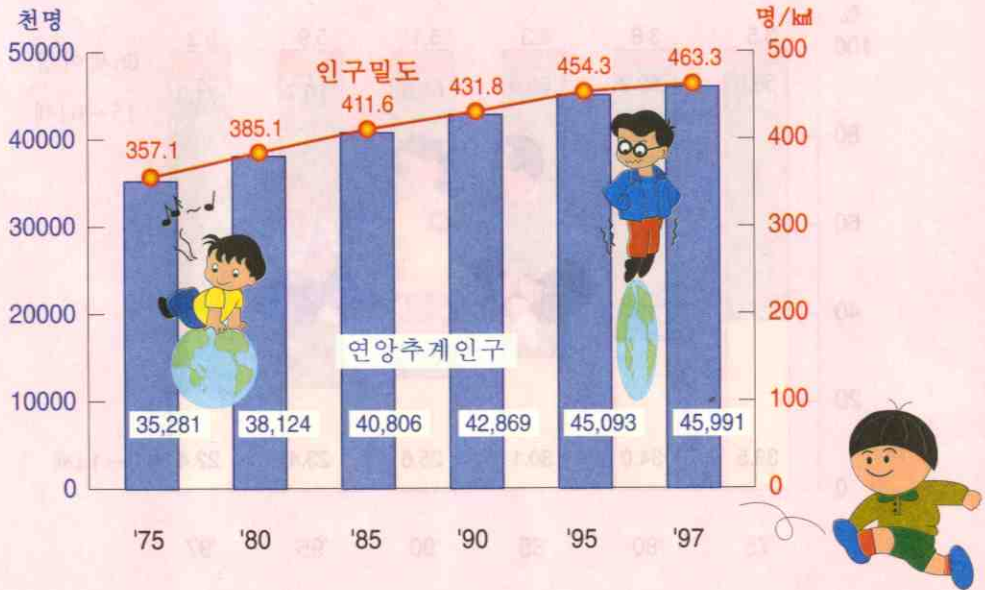
「인구이동통계연보」 1997 통계청

「인구지리학」 1990 이 회연(법문사)

「한국의 인구규모와 구조」 1993 통계청

「한국의 경제지표」 1995 김경중(매일경제신문사)

1. 연앙추계인구 및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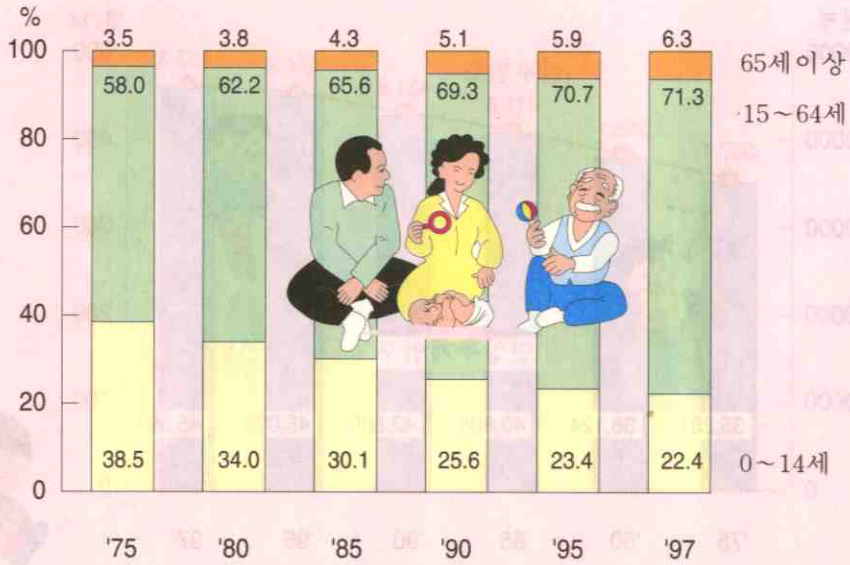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총조사 인구	연앙추계인구			인구밀도 (명/㎢)	인구 성장률	
		남	여	성비(명)			
1975	34,707	35,281	17,766	17,515	101.4	357.1	1.70
1980	37,436	38,124	19,236	18,888	101.8	385.1	1.57
1985	40,448	40,806	20,576	20,230	101.7	411.6	0.99
1990	43,411	42,869	21,568	21,301	101.3	431.8	0.99
1995	44,609	45,093	22,705	22,388	101.4	454.3	1.01
1996	-	45,545	22,939	22,606	101.5	458.6	0.95
1997	-	45,991	23,170	22,821	101.5	463.3	0.98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2. 연령별 인구구조

연령별 구성비



단위 : 천명, %

연도	0~14세		15~64세		65세이상		총부양비	노령화 지수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1975	13,614	38.5	20,449	58.0	1,217	3.5	72.5	8.9
1980	12,951	34.0	23,717	62.2	1,456	3.8	60.7	11.2
1985	12,305	30.1	26,759	65.6	1,742	4.3	52.5	14.2
1990	10,973	25.6	29,701	69.3	2,195	5.1	44.3	20.0
1995	10,537	23.4	31,899	70.7	2,657	5.9	41.3	25.2
1996	10,410	22.9	32,360	71.0	2,776	6.1	40.7	26.7
1997	10,292	22.4	32,791	71.3	2,908	6.3	40.3	28.3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 국민 평균수명 및 평균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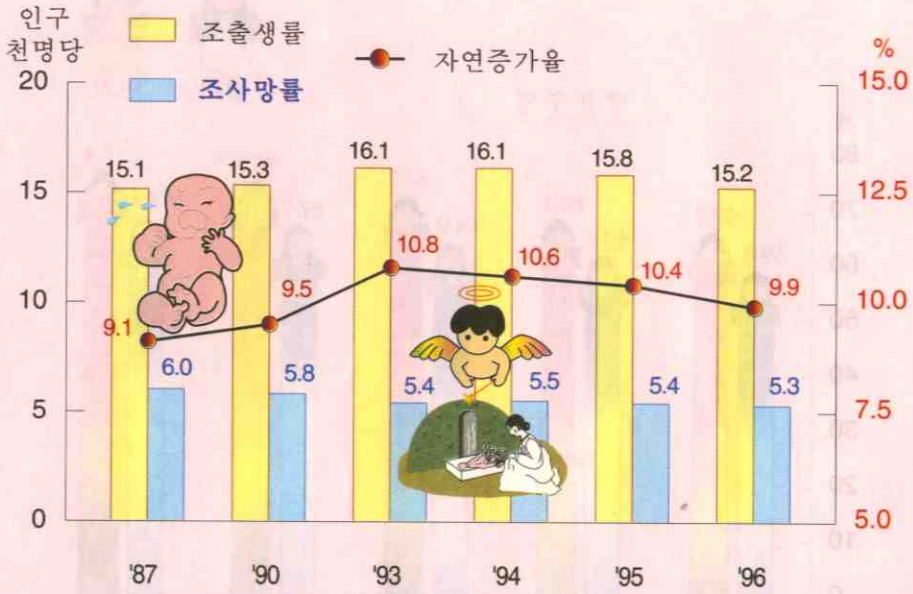


단위 : 세

	평균수명			평균연령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970	63.2	59.8	66.7	23.6	22.9	24.3
1980	65.8	62.7	69.1	26.0	25.1	26.9
1985	69.0	64.9	73.3	27.5	26.7	28.4
1990	71.6	67.7	75.7	29.5	28.5	30.6
1995	73.5	69.5	77.4	31.2	30.1	32.4
1997	-	-	-	31.9	30.7	33.1

자료 : 통계청 「생명표」 「장래인구추계」

4. 출생 및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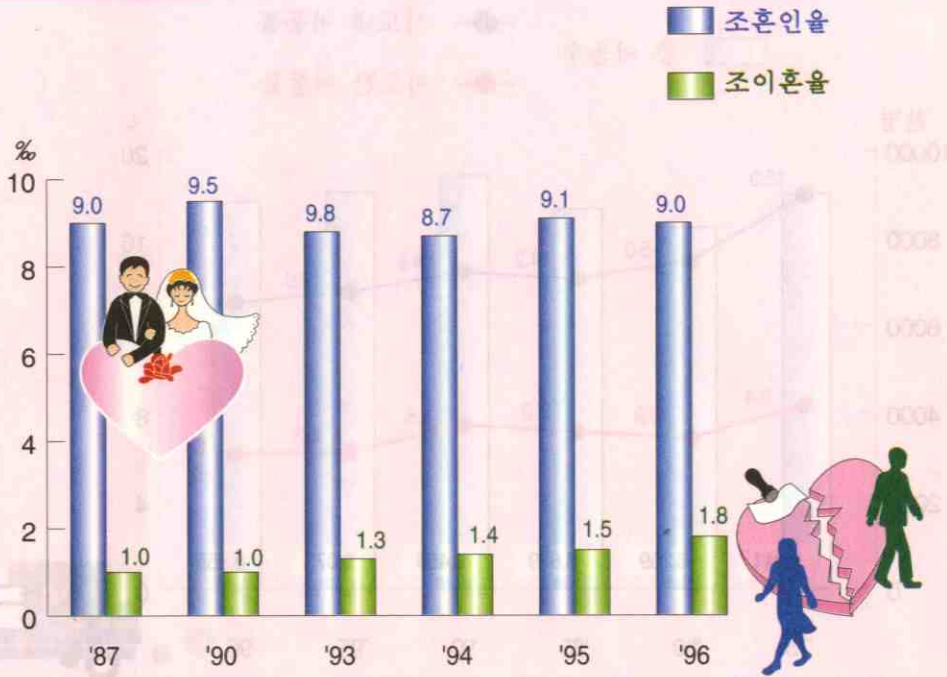
단위 : 명, 인구천명당, %

연도	인구	출생		사망		자연증가		
		조출생률	합계출산률	조사망률	영아사망률	자연증가율	자연증가율	
1987	629,432	15.1	1.6	248,997	6.0	12.5 ¹⁾	380,435	9.1
1990	654,713	15.3	1.6	246,541	5.8	11.7 ²⁾	408,172	9.5
1993	721,460	16.1	1.7	239,252	5.4	9.56 ³⁾	482,208	10.8
1994	727,504	16.1	1.7	247,746	5.5	8.97 ⁴⁾	479,758	10.6
1995	721,535	15.8	1.7	247,816	5.4	8.56	473,719	10.4
1996	699,243	15.2	1.6	244,354	5.3	8.50	454,889	9.9

주 : 1) 86~88년 2) 89년 3) 91년 4) 92~94년 자료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5. 혼인 및 이혼



단위 : %

	혼 인				이 혼			
	추정건수	조혼인율 (천명당)	일반혼인율 (천명당)		추정건수	조이혼율 (천명당)	일반이혼율 (천명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987	373,874	9.0	25.1	25.0	41,215	1.0	2.8	2.8
1990	405,644	9.5	25.6	25.4	44,780	1.0	2.8	2.8
1993	393,624	8.8	23.4	23.0	58,449	1.3	3.5	3.5
1994	392,199	8.7	22.9	22.5	64,093	1.4	3.7	3.7
1995	413,040	9.1	23.8	22.8	68,005	1.5	3.9	3.9
1996	415,791	9.0	23.5	22.6	81,429	1.8	4.6	4.6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6. 인구이동



단위 : 천명, %

	총 이동		시도내		시도간	
	이동자수 ¹⁾	이동률 ²⁾	이동자수 ¹⁾	이동률 ²⁾	이동자수 ¹⁾	이동률 ²⁾
1975	9,011	26.4	6,143	18.0	2,868	8.4
1980	8,259	21.9	5,653	15.0	2,606	6.9
1985	8,679	21.4	5,754	14.2	2,925	7.2
1990	9,459	22.0	6,228	14.5	3,231	7.5
1994	8,792	19.5	6,052	13.4	2,740	6.1
1995	9,073	19.9	6,208	13.6	2,865	6.3
1996	8,855	19.2	6,019	13.1	2,836	6.2

주 : 1) 주민등록에 의한 집계(전입기준). 2)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보」

2. 국민소득통계

통계조사 및 통계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지역소득통계, 국부통계조사

주요 통계지표

경제성장률, 1인당 GNP, GDP디플레이터, 저축과 투자,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생산구조, 수출입의 대 GNP비율,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지역내총생산

통계표 및 도표

GNP 및 1인당 GNP,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경제성장률, 생산구조, 총저축률 및 국내 총투자율, 지역내총생산

국민소득통계

I 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종합적인 소득수준을 의미

국민소득이란 국민경제의 소득,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총소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국민경제활동 전체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국민소득은 보통 국민총생산(GNP)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는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이다.

여기서 **재화와 서비스**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등의 생존적 욕망과 정신적·문화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재화는 쌀, 의복, 자동차, 건물처럼 물질적 형태를 가진 것을 말하며, 서비스는 통상 용역이라고도 하는데 의료·교육·문화활동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노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로이 생산한 가치**는 공장에서 만든 물건의 판매수입과는 차이가 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재료는 이미 다른 곳에서 생산해 낸 것으로서 이 공장에서 만들어 낸 새로운 가치는 아니므로 물건의 값에서 원재료 투입비를 뺀 나머지만이 이 공장에서 새로이 생산한 가치라 할 수 있다.

이 때 물건의 판매수입을 **산출액**이라 하고 원재료비를 **중간투입액**이라 하며 새로이 생산한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한다.

한편 국민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국민소득만으로 포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 오류를 범할 염려도 있지만 국민경제 활동을 어떤 형태로든 집계하고 요약하여 그 수준을 총괄적으로 가늠해 보는 것은 국민경제의 진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며 국민소득은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개념이다.

1. 국민소득통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국민소득통계는 경제활동의 성과를 생산, 분배, 지출의 세가지 측면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한 나라 안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농가, 제분소, 제과점만이 존재하고 이 세 주체의 경제활동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 농가** : ○ 소맥 50을 생산하여 제분소에 매각하고 50의 소득을 얻는다.
○ 이 50의 소득으로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하여 소비한다.
- 제분소** : ○ 농가로부터 소맥 50을 구입하여 밀가루 100을 생산한다.
○ 이 밀가루를 제과점에 팔아서 벌어들인 수입 100에서 소맥대금 50을 농가에 지불한다.
○ 나머지 소득 50으로 제과점에서 빵 50을 구입하여 소비한다.
- 제과점** : ○ 제분소에서 밀가루 100을 구입하여 빵 150을 생산한다.
○ 농가 및 제분소에 빵 100을 매각하고 제분소에 갚는다.
○ 남은 빵 50은 제과점 자체가 소비한다. 이 빵 50은 제과점이 제과점 자신에 판 것으로 간주한다.

국민소득통계는 위와 같은 경제활동의 성과를 생산, 소득, 지출의 세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생산면**에서 살펴보면 농가는 소맥 50을 생산한다. 실제 소맥을 생산하는 데는 종자비, 비료비 등 중간재를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소맥이 자연적으로 결실된 것으로 가정하면 농가가 생산한 부가가치는 50이 되며 산출액 역시 50이 된다. 제분소는 100의 밀가루를 생산하고 있는데 소맥 50을 원재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총산출 100 중에서 중간재 50을 제외하면 부가가치는 50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과점의 부가가치도 산출액에서 중간재 비용을 공제(150-100) 하면 50이 된다. 이와 같이 경제주체(농가, 제분소, 제과점)가 생산한 재화의 거래총액인 산출액(300)에서 그 생산과정에 투입된 중간재비용인 원재료비(150)를 공제하여 만들어진 부가가치의 총합(150)이 **국내총생산**이 된다.

소득면에서 계산을 하면 농가는 소맥의 매각에 의하여 50의 소득을 얻고 제분소는 밀가루의 매각 100에서 소맥의 구입대금 50을 공제하면 이것 역시 50의 소득을 얻은 것이 된다. 제과점은 빵 판매 150과 밀가루 구입 100의 차이에 따라 역시 50의 소득을 얻고 있다. 따라서 소득의 합계는 150이 되는데 이 소득의 합계를 **국민소득**이라고 한다.

지출면에서는 최종재로의 지출을 측정하는 것으로 농가는 빵 50을 구입하여 소비하고 제분소나 제과점의 경우도 동일하다. 최종재로서의 지출(최종수요)의 합계를 **국내총지출**이라고 하며 이것 또한 150이 된다. 한편 총산출은 소맥 50, 밀가루 100, 빵 150으로 형성되는데 이 중 소맥과 밀가루는 중간재로 사용되며 빵은 최종재로 소비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의 합계인 국내총생산과 최종재로의 지출(최종수요)의 합계인 국내총지출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국민소득은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배분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의 합계와 동일하다.

2. 국민소득통계의 종류

국민소득은 생산·분배·지출국민소득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파악되는데 생산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따라 국민총생산, 국내총생산, 국민순생산, 국민가처분소득, 국민소득, 개인가처분소득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소득지표가 국민의 복리후생수준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요인을 감안한 Green GNP 등 새로운 소득지표들이 제시되고 있다.

-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 GNP) : 한 나라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해외로부터 국민이 받은 소득은 포함하고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제외한다.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GDP) :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생산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으로 대외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 $GDP = GNP - \text{대외순수취요소소득}$
 - 대외순수취요소소득 : 우리나라의 생산요소가 해외의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벌어들인 소득에서 외국의 생산요소가 국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지급한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국민순생산(National Net Product : NNP) : 국민총생산에서 공장이나 기계 등 설비의 감모분, 즉 고정자본소모를 차감한 것으로 순부가가치를 나타낸다.
 - $NNP = GNP - \text{고정자본소모}$
 - 고정자본소모 :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의 경우 생산과정에서의 사용, 시간의 경과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노후화되므로 이것을 새로운 고정자산으로 대체하여 현 수준의 생산활동을 지속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비축해 두는 금액을 고정자본소모라 한다
- 국민가처분소득(National Disposable Income : NDI) :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계정의

중요한 총량지표 중 하나로 경상시장가격으로 평가된 국민순생산에 교포송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소득(대외수취경상이전)은 더하고 해외이주비 등 외국에 지급한 소득(대외지급경상이전)은 뺀 것이다.

$$\cdot \text{NDI} = \text{NNP} + \text{대외수취경상이전} - \text{대외지급경상이전}$$

- 국민소득(National Income : NI) : NI는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으로 한 나라의 거주자에 의하여 제공된 생산요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액으로서 노동에 대한 임금, 자본에 대한 이자, 토지 등에 대한 임료, 기업소득인 이윤 등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

$$\cdot \text{NI} = \text{NNP} - \text{간접세} + \text{보조금} = \text{임금} + \text{지대} + \text{이자} + \text{이윤} = \text{피용자보수} + \text{영업잉여}$$

- 개인소득(PI) : 개인(가계 + 개인기업)에게 귀속되는 소득

$$\cdot \text{PI} = \text{NI} - \text{법인세} - \text{사내유보이윤} + \text{정부 및 기업의 이전지출}$$

- 개인가처분소득(PDI) : 개인이 임의로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cdot \text{PDI} = \text{PI} - \text{개인소득세}$$

- 환경계정(Green GNP) : 광물채굴 또는 산림벌채 등에 따른 자연자산의 감모나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자산의 질적 악화 등 사회적 환경손실분을 화폐로 평가하여 이를 국내순생산에서 차감하여 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발단계에 있다.

3. 국민소득의 창출과 처분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그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 분배되고 처분되는 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즉 기업은 원재료에 노동과 자본을 결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이러한 생산물의 판매를 통하여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소득이 발생하며 이 소득은 생산요소를 제공한 노동자와 기업가에게 분배되어 일부는 소비재의 구입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남아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민경제활동이 마치 인체의 혈액순환과 같다고 해서 이를 경제순환이라고 부르고 있다.

국민소득통계란 국민경제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최종생산물을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집계한 국민소득을 추계·분석하는 것으로 국민경제순환과정 중에서 소득순환을 대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활동수준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국민소득은 생산, 분배, 지출의 세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어느 측면에서 파악하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국민소득통계에서는 삼면등가(三面等價)의 원칙이라고 한다.

II 국민소득관련 주요통계 및 통계조사

1. 국민계정

국민경제의 흐름은 국민소득통계만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내역은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경제부문간 자금의 흐름은 자금순환표를 통하여, 해외와의 거래는 국제수지표를 통하여, 그리고 일정시점에서의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상황은 국민대차대조표를 통하여 각각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계정은 국민경제순환 변동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 5개 통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서로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및 자금의 흐름을 일정한 계정형식에 따라 기록한 것으로서 일정기간 중의 국민경제의 활동결과와 일정시점에서의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상황을 나타낸 국민경제의 종합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은 국내총생산과 지출, 국민가처분소득과 처분, 자본조달과 축적, 대외거래 등 4개의 종합국민계정과 상품·생산활동계정 등 3개의 부문별 표준계정을 작성하고 아울러 이들 계정을 거래주체별로 더욱 세분화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등 21개의 부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1968년에 UN이 마련하여 각국에 편제를 권고한 신국민계정체계(SNA)에 따라 한국은행이 1986년부터 종합적 국민계정인 신SNA의 편제에 착수하여 매분기 또는 연간으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2.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가 재화와 용역의 생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최종수요를 파악하려는 것임에 비해 산업연관표는 생산과정에서 원재료 등으로 중간소비된 것까지도 포함되도록 일정기간(보통1년) 동안 국민경제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통계표로서 한 나라의 경제구조를 자세히 나타내는 일종의 해부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생산활동을 나타내는 내생부문과 최종수요 및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외생부문의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 표의 세로방향은 각 산업부문에서 구입한 원재료와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을 나타내는 비용구성을, 가로방향은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중간재나 최종재로 판매된 내역을 나타내는 판로구성을 각각 의미하며 이 표를 통해 그물과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산업부문간의 모든 상호 연관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각 부문간 생산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나타냄으로써 산업구조, 고용구조, 분배구조, 가격구조의 분석이나 예측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최초로 1960년 「산업연관표」를 작성한 이래 매 5년(실측표 기준)마다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통계의 관계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통계는 개념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양자는 서로 다른 이용목적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추계에 이용되는 통계자료나 추계방법의 차이 등으로 세부적인 개념이나 추계된 계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양 통계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연관표는 국내생산활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는 국민소득통계의 국내총생산(GDP) 개념과 일치한다. 따라서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에 해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면 국민총생산과 같아진다.

둘째, 산업연관표는 시장가격에 의한 기록이므로 국민소득통계의 요소비용에 의한 국내총생산과 개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에서 순간접세(간접세-보조금)를 차감하면 된다.

셋째, 산업연관표에서는 수입품과 국산품을 동일한 가격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수입을 CIF가격 + 관세 + 수입상품세로 평가하는데 대하여, 국민소득통계에서는 수입을 CIF가격으로 평가하고 관세와 수입상품세를 별도의 부가가치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 총액은 관세와 수입상품세 만큼 국민소득통계의 국내총생산과 차이가 난다.

3. 자금순환표

국민경제의 순환은 경제부문간 상품의 이동을 나타내는 실물거래와 채권과 채무의 변동을 나타내는 금융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양자는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경제활동을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물거래와 금융거래를 연결시켜 동시에 파악하여야 한다.

국민소득통계나 산업연관표는 실물거래만을, 금융통계는 금융기관이라는 자금의 중개인만을 대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어느 한 면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금의 산업적유통과 금융적 유통을 연결시켜 기업, 개인,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개발된 자금순환표는 국민경제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이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금융활동이 생산·지출 등 실물활동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표이다.

따라서 자금순환표를 보면 실물부문의 경제활동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금융시장의 변화가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와 저축·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금순환표는 행렬(matrix)형식을 도입하여 열에는 경제부문을, 행에는 금융거래 형태를 표시하고 있다.

모든 부문은 원천과 운용의 두 란을 가지며 원천란에는 자금조달의 형태, 즉 저축을 통하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과 금융기관차입, 유가증권발행 등을 통해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운용란에는 조달한 자금을 어떠한 형태로 운용하였는가, 즉 투자에 얼마를 쓰고 예금,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으로 얼마를 운용하였는지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자금순환표의 거래항목을 행, 즉 옆으로 보면 어떤 종류의 자금이 어느 부문으로부터 어느 부문으로 흘러났는가를 알 수 있고 부문별 거래내역을 열, 즉 위에서 아래로 보면 각 부문이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여 어떤 형태로 운용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자금순환표는 경제부문별 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므로 부문별 자금과부족 분석, 금융정책의 파급효과분석, 법인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분석, 개인부문의 자금 운용형태에 관한 분석 등 금융행태분석은 물론이고 일국의 금융구조분석에도 유용한 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금순환표는 1965년부터 한국은행에서 분기 및 연간으로 작성, 「자금순환」, 반기·연간동향을 수록한 「조사통계월보」 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4. 지역소득통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성하고 있는 지역소득통계로는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개념으로 생산측면에서 추계되는 시도단위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있다.

이는 일국의 GDP추계와 공통되는 기본적인 개념과 편제방식(1968, SNA)에 따라 구성되어 있고 특별시·광역시·도라는 일정한 행정구역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에 그 지역에서 새로이 생산된 순생산물(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화폐로 평가한 것이다. 지역내총생산은 지역경제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경제지표로서 각종 지역관련 정책이나 계획수립 및 지역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내총생산통계는 생산측면에서만 추계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분배소득은 나타내지 못하므로 앞으로는 생산측면 뿐만 아니라 분배 및 지출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역계정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내총생산통계는 통계청에서 매년 추계하여 각 지역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발표하고 간행물로는 「지역내총생산」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5. 국부통계조사

국부의 개념을 광의로 표현하면 일정시점에 있어서 한 나라의 경제주체(정부, 기업, 가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총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재생산 가능한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 대외순자산 및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 산림자산, 어업자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산 중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지하자원, 역사적기념품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비금융 무형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부의 범위

- 실질적 형태를 가진 실물자산 (현금, 유가증권의 금융자산과 특허권, 광업권 등의 비금융 무형자산을 제외)
- 재생산이 가능한 자산(토지, 자연림, 지하자원 등의 자연자원은 제외)
-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자산(서적, 골동품, 예술품 등은 제외)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하는 생산적 자산(무기류, 군수물자 등은 제외)
- 대외순자산(단, 금융자산 포함)

국부통계는 국민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의 존재량을 조사하여 경제적 국력을 파악하는 한편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자본계수를 산출하여 부의 분포 및 구성을 파악함으로써 경제개발계획, 국토건설계획 등의 제반 경제정책입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등이 각 부문별로 조사를 실시해 제공한다.

국부통계조사는 1968년 최초로 실시된 이래 매 10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87년 12월 31일 기준의 제3회 조사결과는 「국부통계조사보고서」(제1권 종합편, 제2권 정부자산부문, 제3권 법인자산부문, 제4권 개인자산부문, 제5권 가계자산부문)를 통해 발표되었다.

Ⅲ 국민소득통계의 특성

1. 국민소득통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표들은?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그 국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국민계정통계를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구할 수 있는 각종 경제지표로는 제조업 등 각 경제활동 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경제성장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1인당 GNP**, 전체 국내총생산 중에서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 서비스업, 정부 및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 등의 각 경제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구성을 알기 위한 **경제구조** 등이 있다. 또한 장래의 경제성장과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축률과 투자율**, 생산자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를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 조세수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으로써 국민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세부담률**,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 즉 피용자보수가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 등이 있다. 이러한 분석지표들을 통해 경제현실을 파악하여 경제정책을 수립·평가하고 국제적으로도 각국의 생활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2. 국민총생산(GNP)개념의 한계

○ 경제활동지표로서의 문제점

국민소득은 생산측면, 소득측면을 막론하고 모두 추계치인데, 매일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수한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생각해 보면 GNP와 그 구성요소를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한 해에 생산된 재화 중에는 회계연도말에 아직도 미완성품이거나 또는 완성되었더라도 판매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들 재화는 아직 시장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나 국민소득계정에서는 그 추계치를 계상함으로써 재고와 그 변화에 관련된 추계치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시장을 통하지 않은 재화와 용역 중에서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여 소비하는 농산물 생산액 및 주택소유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임대료 등은 추계치에 포함되지만 가정주부가 가족을 위하여 제공하는 식사, 빨래 등의 가치는 추계치에서 빠지므로 그 구분에 한계가 있다.

○ 국민후생지표로서의 문제점

- GNP는 증가하지만 국민후생은 증가하지 않는 경우, 즉 주부의 가사노동이 세탁업자, 보모, 식당업자 등에게로 이전되어 GNP에 계상되지 않던 항목이 새로 계상되는 경우에 GNP가 증가하더라도 후생의 변화는 없다.

- GNP에는 인간의 효용을 직접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효용을 낳는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지출이 많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현대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교통순경을 고용하는 등의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것들이 GNP에 포함되나 이는 인간의 효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기 보다는 효용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보조하는 수단적 지출의 성격이 강하다.

- 외부불경제 및 여가의 불계상 : 교통혼잡, 공해 등 외부불경제에 의한 효용의 감소를 GNP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후생을 증가시키는 여가도 계상되지 않고 있다.

IV 지 표

○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은 일정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한 나라의 경제가 이룩한 경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경제성장률은 불변가격에 의한 국내총생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하므로 경제의 규모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확대되었는가를 알 수 있어 경제정책의 수립이나 평가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cdot \text{경제성장률}(\%) = \frac{\text{금년도 불변GDP} - \text{전년도 불변GDP}}{\text{전년도 불변GDP}} \times 100$$

○ 1인당 GNP

국민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반면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도입한 개념이 1인당 GNP로서 경상GNP를 한 나라의 인구수로 나누어 구한다. 1인당 GNP는 국제비교를 위하여 보통 미달러화로 표시하고 있다.

$$\begin{aligned} \cdot \text{원화표시 1인당GNP} &= \text{경상GNP} / \text{연앙인구 (거주자개념)} \\ \cdot \text{미달러표시 1인당GNP} &= \text{원화표시 1인당GNP} / \text{연평균 환율} \end{aligned}$$

○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국민소득의 실질화를 위하여 국민소득을 추계한 다음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로서 경상가격 GDP를 불변가격 GDP로 나누어 산출된다.

국내총생산은 모든 경제활동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를 포괄하여 추계되므로 GDP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임금 및 환율의 변동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가격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GDP디플레이터는 생산측면의 국내총생산을 이용하여 산출되므로 기술구조의 변화나 생산성의 변화가 GDP디플레이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

$$\cdot \text{GDP 디플레이터} = \frac{\text{경상시장가격 GDP}}{\text{불변시장가격 GDP}} \times 100$$

○ 저축과 투자

국민순생산에 대외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한 국민총가처분소득은 그 해에 모두 소비되지는 않는데, 국민총가처분소득 중 소비되지 않고 남는 부분을 저축이라 한다. 따라서 소비와 저축을 합하면 국민총가처분소득이 된다.

투자란 장래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것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시 되는데, 국내총투자(총자본형성)는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와 재고투자(재고증가)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투자는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닳아 없어진 기계 등의 자본시설을 보충하는 대체투자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자본시설의 규모를 확장하는 순고정자본형성으로 나누어진다.

재고투자란 한 해 동안에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이 소비나 총고정자본형성 또는 수출로 처분되지 않고 창고에 쌓이는 부분을 말한다.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경제활동별로 산출되는 국내총생산은 지출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한 나라의 소비수준, 자본축적 정도, 재정의 역할 등을 알 수 있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각 경제주체들이 지출하는 모든 형태의 총계로서 최종소비지출(가계, 정부, 민간비영리단체), 총자본형성 및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총생산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항목으로 통계상 불일치가 있다.

○ 생산구조

생산구조는 경상가격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각 경제활동의 구성비로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각 경제활동별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 대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경제의 공업화정도라든가 산업구조의 고도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와 같은 산업별 구성비 추이를 보고 하는 말이다.

$$\cdot \text{경제활동별 비중(\%)} = \frac{\text{경제활동별 부가가치}}{\text{경상가격 국내총생산(GDP)}} \times 100$$

○ 수출입의 대 GNP 비율

수출입의 대 GNP비율은 수출입액(수출 + 수입)을 명목국민총생산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서 한 나라 경제에 있어서 무역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용되는 지표이다.

○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국민소득은 각 생산물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구한 화폐금액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때 적용되는 가격에 따라 경상가격에 의한 국민소득(명목소득)과 불변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실질소득)으로 나뉘어진다.

명목소득은 그 해의 국민소득을 그 해의 가격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생산물 수량이 늘어날 때 뿐만 아니라 물가가 오를 경우에도 커지게 된다. 명목소득은 그 해의 국민총생산의 크기, 1인당 GNP, 산업구조 등을 파악해 보는데 주로 이용된다.

실질소득은 가격이 일정하다고 전제하고 생산물 수량의 변동만을 보기 위한 것으로 매년의 국민소득을 어떤 한해(기준년)의 가격(불변가격)으로 매년 똑같이 파악하므로 물가가 올라도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커지지 않는다.

실질소득은 경제성장률을 계산하거나 국민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등을 알아보는데 이용된다.

○ 지역내총생산(경상가격)

지역내총생산은 시도 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시도단위의 종합경제지표로서 각종 지역관련 경제정책이나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참고자료>

「국민계정」 1994 한국은행
1996년 국민계정(잠정) 1997 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한국은행
「국민계정해설」 한국은행
「지역내총생산」 1997 통계청
「국부통계조사」 통계청
「한국통계조사현황」 통계청
「한국의 경제지표」 1995 김경중(매일경제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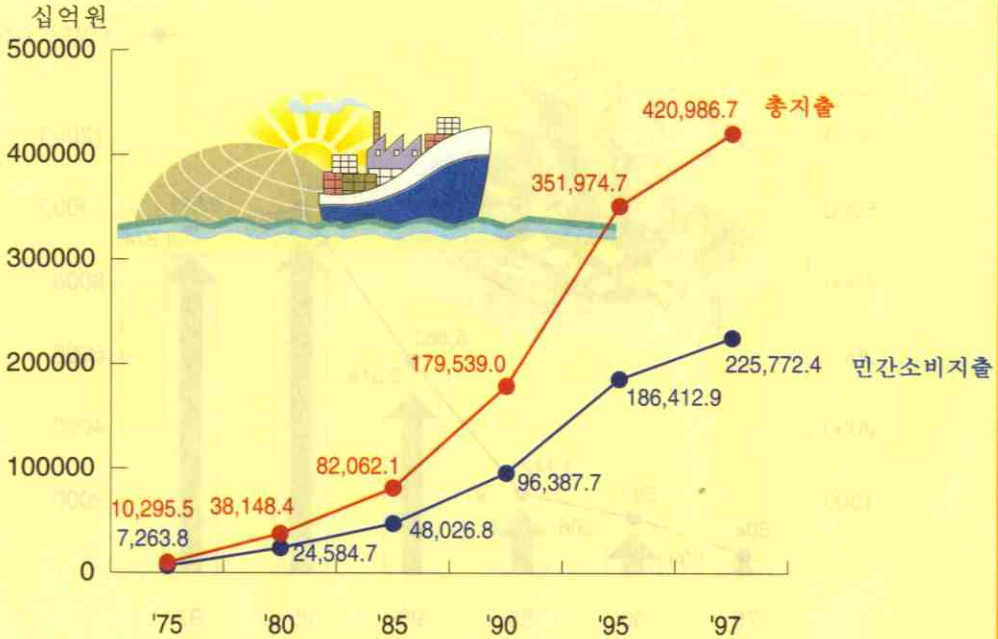
1. GNP 및 1인당 GNP



연도	GNP		GDP		국민가처분 소득(억원)	1인당 GNP	
	억원	억\$	억원	억\$		천원	\$
1975	101,292	209	102,955	213	94,846	287	594
1980	368,570	606	381,484	628	346,486	971	1,597
1985	793,011	911	820,621	943	720,528	1,952	2,242
1990	1,782,621	2,518	1,795,390	2,536	1,602,910	4,165	5,883
1995	3,489,793	4,526	3,519,747	4,565	3,132,796	7,739	10,037
1996	3,864,382	4,802	3,898,134	4,844	3,453,780	8,485	10,543
1997 ^{b)}	4,160,179	4,374	4,209,867	4,426	3,725,536	9,046	9,511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경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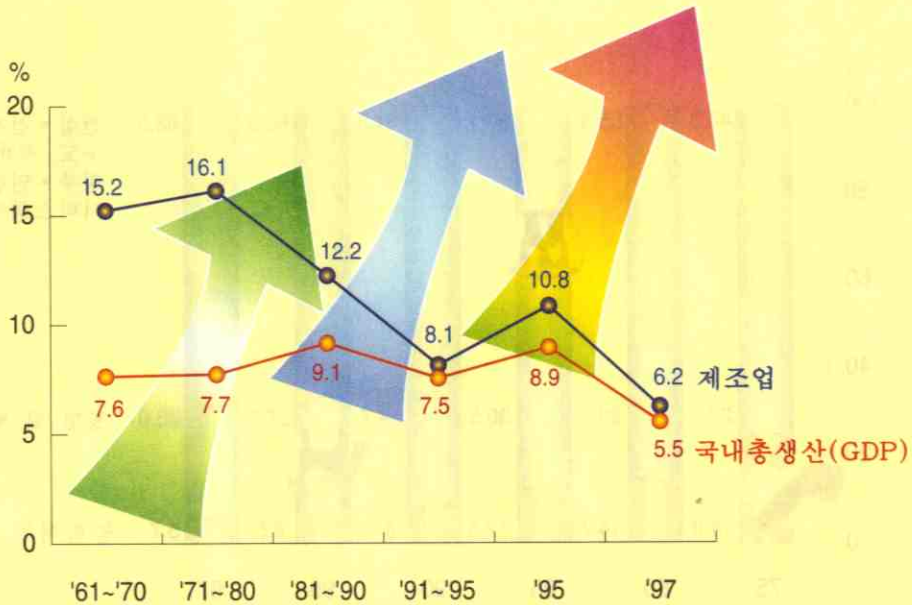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

	총지출	최종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재고 증가
			민간소비지출			구성비	
			구성비				
1975	10,295.5	8,398.1	7,263.8	70.6	2,744.8	26.7	189.8
1980	38,148.4	29,000.9	24,584.7	64.4	12,229.9	32.1	-170.5
1985	82,062.1	56,331.3	48,026.8	58.5	23,434.9	28.6	849.0
1990	179,539.0	114,574.7	96,387.7	53.7	66,568.7	37.1	-270.0
1995	351,974.7	222,499.4	186,412.9	53.0	128,663.5	36.6	1,737.1
1996	389,813.4	251,540.6	209,818.0	53.8	143,688.7	36.9	6,089.9
1997 ^{p)}	420,986.7	272,659.9	225,772.4	53.6	147,340.2	35.0	-126.6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3. 경제성장률(불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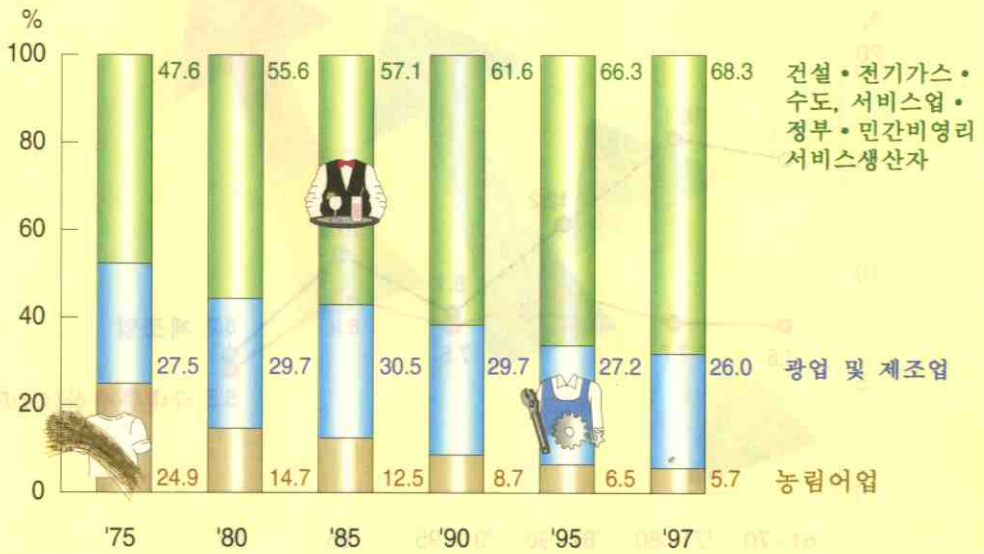
단위 : %

	국민총생산(GNP)	국내총생산(GDP)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및 전기가스 수도사업	서비스업 ¹⁾	정부 및 민간 비영리 서비스 생산자	
			제조업					
61-70	7.6	7.6	4.6	14.6	15.2	17.1	8.5	-
71-80	7.4	7.7	1.5	15.0	16.1	11.8	9.7	3.6
81-90	9.3	9.1	3.3	11.7	12.2	11.7	10.1	4.2
91-95	7.4	7.5	1.8	7.9	8.1	7.6	9.3	3.2
1995	8.7	8.9	3.7	10.6	10.8	8.6	10.1	2.1
1996	6.9	7.1	4.0	7.3	7.4	7.6	7.9	3.5
1997 ^{p)}	4.9	5.5	2.5	6.2	6.2	4.2	6.5	2.5

주 : 1) 정부 및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 포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4. 생산구조(GDP기준, 경상)



단위 : %

연도	농림어업	공업	제조업	건설 및 전기가스 수도사업	서비스업	정부 및 민간 비영리 서비스 생산자	공업구조	
							경공업	중화학업
1975	24.9	1.6	25.9	5.9	33.3	8.4	52.1	47.9
1980	14.7	1.5	28.2	10.1	36.0	9.5	46.4	53.6
1985	12.5	1.2	29.3	10.6	37.0	9.5	41.5	58.5
1990	8.7	0.5	29.2	13.7	38.2	9.7	34.1	65.9
1995	6.5	0.4	26.8	16.2	39.6	10.5	23.7	76.3
1996	6.3	0.3	25.9	16.8	39.9	10.9	23.8	76.2
1997 ^{b)}	5.7	0.3	25.7	17.0	40.1	11.2	22.8	77.2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5. 총저축률 및 국내총투자율(경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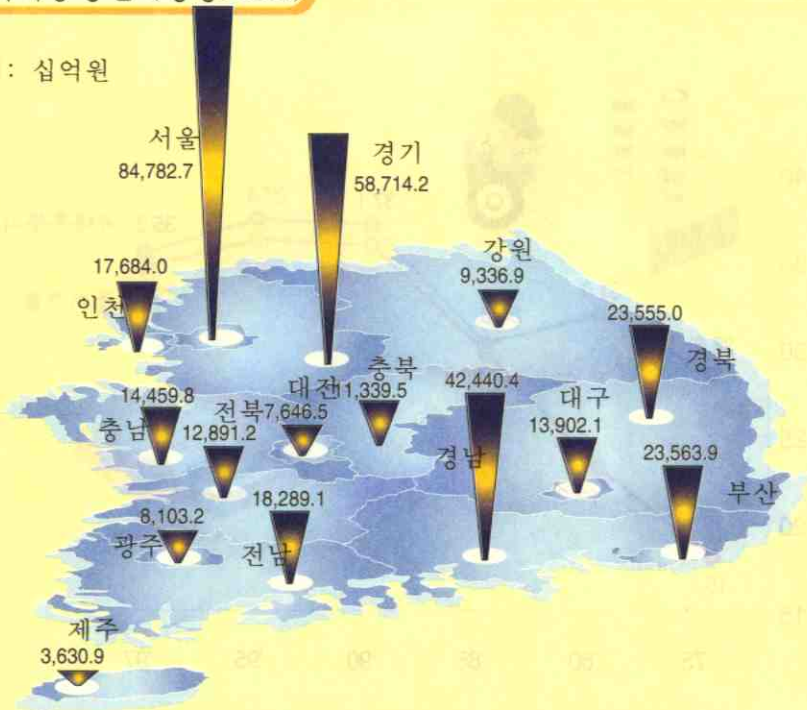
단위 : %

연도	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		대외투 자율	수출입의 대 GNP 비율		
		민간		고정 투자율			수출	수입
1975	18.1	15.6	28.6	26.8	-8.9	66.2	28.0	38.2
1980	23.2	18.1	31.9	32.4	-8.5	80.3	34.6	45.8
1985	29.8	23.7	30.3	29.2	-0.9	72.8	35.3	37.5
1990	35.9	27.4	37.1	37.2	-0.9	61.9	30.3	31.6
1995	36.2	25.7	37.4	36.9	-2.0	69.1	33.6	35.5
1996	34.8	23.6	38.8	37.2	-5.0	70.5	32.8	37.7
1997 ^{p)}	34.6	24.3	35.3	35.4	-1.8	79.8	38.9	40.9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6. 지역내총생산 (경상, 1995)

단위: 십억원



단위: 십억원

	1985		1990		1994		1995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서울 특별시	20,157.3	25.8	46,633.7	26.3	76,806.1	25.1	84,782.7	24.2
부산 광역시	6,393.0	8.2	13,831.5	7.8	20,895.0	6.8	23,563.9	6.7
대구 광역시	3,070.4	3.9	7,334.8	4.1	11,783.7	3.9	13,902.1	4.0
인천 광역시	3,386.6	4.3	8,676.2	4.9	14,738.1	4.8	17,684.0	5.0
광주 광역시	-	-	3,982.2	2.2	6,944.4	2.3	8,103.2	2.3
대전 광역시	-	-	4,204.8	2.4	6,923.2	2.3	7,646.5	2.2
경기도	10,105.1	12.9	27,551.5	15.5	49,901.9	16.3	58,714.2	16.8
강원도	2,922.4	3.7	5,249.0	3.0	8,165.6	2.7	9,336.9	2.7
충청북도	2,670.5	3.4	5,169.2	2.9	9,913.6	3.2	11,339.5	3.2
충청남도	4,742.2	6.1	6,171.0	3.5	12,528.4	4.1	14,459.8	4.1
전라북도	3,231.0	4.1	6,175.3	3.5	11,140.3	3.6	12,891.2	3.7
전라남도	5,950.4	7.6	9,148.1	5.2	15,848.0	5.2	18,289.1	5.2
경상북도	5,819.8	7.4	12,119.9	6.8	20,873.9	6.8	23,555.0	6.7
경상남도	9,078.8	11.6	19,383.1	10.9	36,384.8	11.9	42,440.4	12.1
제주도	738.4	0.9	1,731.6	1.0	3,126.4	1.0	3,630.9	1.0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3. 물가통계



통계조사 및 통계

생산자물가조사, 소비자물가조사,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수출입물가조사,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주요 통계지표

물가수준, GNP디플레이터, 인플레이션,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통계표 및 도표

전도시소비자물가상승률변화, 생산자물가상승률변화,
농가판매 가격지수, 화폐가치의 변화

물가통계

I 물가는 한 나라의 경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지표

시장경제의 핵심은 가격에 의한 시장자동조절원리에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물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돈을 타서 쓰는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이미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물가’는 이미 학문적인 차원을 떠나 인간의 기본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다. 즉, 물가의 안정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물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물가정책을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가에 대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물가관련 주요통계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가격, 물가, 그리고 물가지수

우리가 평소 생활함에 있어 여러가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상품의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값을 가격이라 부른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개개 상품가격이나 서비스요금을 종합하여 평균한 가격수준을 물가라고 한다. 즉, 개개 상품의 가격을 평균치로 나타낸 것을 흔히 가격과 구별하여 물가라고 한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성격을 지닌 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시장의 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물가의 종합적인 변동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수치로 나타내고자 고안한 것이 물가지수이다.

물가지수는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고정시켜 놓고, 기준시점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물가를 하나의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물가의 종합적인 변동사항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물가지수는 물가의 움직임을 주관적이 아닌 좀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알기 쉬운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마치 더위나 추위를 온도계로 재는 것과 같이 물가지수는 물가의 움직임을 재는 척도의 역할을 한다.

가격의 시장조절기능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수요자나 공급자는 상품의 시장가격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 그리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여 개인은 현행가격보다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싸게 살 수도 없다.

요컨대, 개인에게 있어서 가격은 여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가격은 부동이 아니고 집합적인 시장수요량과 시장공급량의 관계에 따라 변동한다. 예를 들면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면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뿐만 아니라 가격의 등락은 수요량 및 공급량의 조절을 유인하여 수급의 균형을 촉진한다. 다시 말해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수요량은 감소하며,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한다. 가격의 이러한 기능, 즉 개인에게는 주어진 것이지만 가격에 따라 수급량이 변동하여 균형을 이루어가는 작용을 가격의 시장조절기능이라고 한다.

☞ 물가통계의 종류

물가통계는 보통 지수형태로 작성되는데 물가지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물가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한 나라의 경제동향분석이나 경제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물가지수는 그 작성목적에 따라 일반목적지수와 특수목적지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목적지수는 전반적인 상품의 수급동향과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로서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의미하며 특수목적지수는 특정범위의 재화와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고자 하는 지수로서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가지수들은 각 부문별로 정확하고 세밀한 물가조사를 통하여 작성된다.

II 물가관련 주요통계 및 통계조사

1. 생산자물가조사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상호간에 거래되는 모든 재화 및 재화와 성격이 유사한 일부 서비스의 가격수준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한국은행에서 생산자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고 있다.

생산자물가조사는 서울을 포함한 16개 시 지역에서 가격자료가 수집되고 있으며, 조사대상품목별로 대량생산지 또는 집산지를 중심으로 가격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격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급적 조사대상품목별로 거래비중이 크고 가격변동의 대표성이 있는 3개 내외의 조사대상처를 선정하고 농수산물의 경우 각 지역의 조사대상처에서 품목별로 조사된 가격을 평균하여 당해지역의 평균가격으로 하며 지역별가격을 단순 산술평균함으로써 전국평균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가격조사는 농축수산물과 공산품 모두 매월 5일, 15일, 25일을 기준으로 월 3회 실시하고 3개 시점의 평균가격을 월평균가격으로 한다. 가격자료는 고정조사대상처에 대하여 직접방문, 전화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일 현재 지정된 품질규격상품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업체 및 조합과 구입자 등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다.

조사대상품목으로는 모든 상품의 가격동향을 조사하여 지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가격조사의 어려움이나 지수작성 기술상의 제약으로 상품군별로 가격변동의 대표성이 있는 품목 즉 당해품목의 거래액이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 거래액의 1/10,000 이상이 되는 품목으로서 소속상품군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고 가격시계열의 유지가 가능한 일반미 등 농림수산물 64개 품목, 무연탄 등 광산품 14개 품목, 음식료품 등 공산품 814개 품목, 전기·가스·수도부문의 4개 품목 등 전체 896개의 품목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선정된 각 품목 중에는 여러가지 품질과 규격이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다시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품질과 규격을 선정한다.

각 품목별로 조사대상 품질규격이 선정되면 매월 이에 대해 생산자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기준년도의 연평균가격을 100으로하여 조사시점의 가격을 지수화하여 품목별지수가 산출된다. 이렇게 품목별지수가 산출되면 속성이 같은 품목지수를 모아 가중평균함으로써 167개 세분류지수, 64개 소분류지수, 25개 중분류지수, 4개 대분류지수 등의 산업별지수가 작성되고 다시 전 대상품목 가격지수를 가중평균한 총지수가 차례로 작성된다.

산업별지수나 총지수와 같은 종합가중평균지수의 작성에 있어서는 가중산술 평균방식의 하나인 라스파이레스식을 사용한다. 이 때 가중치로는 기준년도 중 모든 상품의 국내 제1차 거래단계의 총거래액을 1,000으로 놓았을 때 각 개별품목의 거래액 비중이 사용된다.

그리고 대상품목과 가중치를 한 번 결정한 후 몇 년이 지나면 새로운 상품의 출현과 기존상품의 소멸 및 국민생활 양식의 변화 등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와 비중이 달라지므로 기존 상품구조에 바탕을 둔 물가지수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사대상품목과 가중치의 고정으로 인한 지수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현실에 가까운 물가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기준년도를 변경하여 조사대상품목을 새로이 선정하고 가중치도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산업생산지수 등과 마찬가지로 매 5년마다 물가지수의 기준년도를 변경하고 있다.

이렇게 작성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매 익월초에 신문 및 TV, 「월간물가동향」 등을 통하여 공표되고 있는데 화폐구매력 측정의 기준지표로 이용됨은 물론 각종 경제지표의 디스플레이터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즉, 통화금융정책의 수립을 비롯하여 정부기관, 경제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의 시장분석, 장기구매 및 판매계약,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설확장 혹은 시설대체계획에서의 비용산정, 자산재평가 등에 이용된다.

2. 소비자물가조사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품목수 509개)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는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조사는 전국 36개 도시중 도시별로 2~11개의 대표적인 시장에서 7,800여개 소매점포 및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일반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조사와 약 3,500여개 임대가구를 대상으로 집세 등을 조사하는데 그 달의 가격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5일, 14일, 23일이 포함된 주의 수, 목, 금요일 중 1일을 조사일로 정하여 월 3회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균한 값을 월평균가격으로 사용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시점에서 조사대상인 특정품목의 가격이 그 후 매월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재화와 서비스를 조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수만 종류가 넘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도시가계지출에서 비중이 큰 상품을 대표적인 품목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는데 이를 조사대상 품목이라고 한다.

조사대상 품목은 소비자가 가계부를 실제로 작성한 도시가계조사를 근거로 가

계소비지출 총액의 1/10,000 이상이 되는 품목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1995년 기준으로는 일반미 등 식료품 171개 품목, 집세 등 주거비 18개 품목, 전기료 등 광열·수도비 8개 품목, 일반가구 등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63개 품목, 외의 등 피복 및 신발 54개 품목, 의약품 등 보건의료 32개 품목, 납입금 등 교육·교양·오락 88개 품목, 시내버스요금 등 교통·통신 40개 품목, 이·미용품, 공공수수료 등 기타잡비 35개 품목 등 전체 509개의 품목을 선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금, 사회보장비 등과 같은 비소비 지출이나 저축, 유가증권구입, 토지·주택구입비 등의 재산증식을 위한 지출은 제외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조사대상 품목에 대하여 매월 동일한 조사규격으로 조사되어야 하므로 품목마다 그 품목의 크기, 용적, 중량, 주요원료 등 특성을 나타내는 조사규격이 정해져 있다. 만약 조사규격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품가격의 등락으로 가격이 변동되었는지 상품의 품종이나 규격변동으로 가격이 변동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 품목별로 조사대상 조사규격이 선정되면 이에 대해 매월 소비자가격을 조사하고 기준년도의 동일 조사규격품의 연평균 가격을 100으로 하여 조사시점의 가격을 지수화함으로써 품목별 지수를 산출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509개 전 조사대상 품목의 가격지수가 만들어지면 같은 분류체계에 속하는 품목지수를 모아 소·중·대분류지수가 작성되고 다시 대상품목 가격지수를 평균한 총지수가 차례로 작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는 여러 가지 상품가격의 월별 움직임을 각 상품의 지출금액이 가계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가중치)에 따라 즉, 가중평균방법에 의하여 작성된다.

현재 작성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품목별로 도시별 가중치와 도시간 가중치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도시별 가중치는 각 도시별로 가중치 모집단에 대한 품목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고, 품목별·도시간 가중치는 전도시의 품목별 지출총액에 대하여 해당 도시의 품목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작성된 소비자물가지수는 매 익월초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하고, 월보나 매년 물가연보로 발간되어 이용자들에게 보급되고 있다.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는 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과 농가가 영농 및 소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의 구입가격을 매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작성한다. 이 조사는 농산물 판매가격의 계절적인 변동과

장기추세를 파악하고 농산물의 균형가격을 산출하는 지표가 되는 농가패리티지수(parity index)를 작성하며, 아울러 농촌경제의 움직임을 가격면에서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경제동향분석 및 농업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본 조사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월 1회 실시하며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은 매월 5일, 15일, 25일을 기준으로 월 3회 조사하며 전국 135개 군에서 5일시장의 전장과 후장일에 농협 군지부 조사원이 직접 조사지역에 나가 가격을 조사한다. 농산물의 생산은 대부분 자연조건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기간이 수 개월로 한정되거나 연중 계속된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계절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월별 가격변동의 등락이 심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에서는 이와 같은 농산물거래의 계절성을 지수에 반영하기 위하여 농가판매가격의 연평균지수 작성시 월별 거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즉, 농산물의 월별 거래 가중치로 개별품목의 월별가격을 가중평균하여 연평균 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연평균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농가판매가격은 곡물, 청과물 및 축산물 등 농가가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하는 1차거래 단계에서, 농가구입가격은 가정용품, 농업용품 및 농촌임료금 등 농가가 영업 및 가계를 위해서 구입하는 가격과 임료금을 소매단계에서 조사한다.

지수편제시 품목선정은 농가경제조사의 지역별 농가수입 및 지출의 1/10,000 이상의 품목(농가판매가격 지수품목 69개, 농가구입가격 지수품목 306개)을 택하고 가중치 모집단은 농가의 평균 현금수입 및 지출총액을 사용한다. 농가판매가격의 경우 농가가 생산한 모든 농산물의 현금 판매수입, 농가구입가격은 농가가 영농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역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현금 총액이다.

4. 수출입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상품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지수로서 계약가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에서의 품목별 국제시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 지수는 수입상품의 국제가격 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거나 수출입 관련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 및 수입원가부담 등을 파악하거나 수출입물가지수의 상호비교를 통한 가격측면에서의 교역조건을 측정하는 데에 이용된다. 그리고 무역구조변화 및 상대가격 체계 변동 등에 따른 품목 및 가중치의 구조변화를 지수에 적절히 반영시키기 위해 매 5년마다 기준년도를 변경해 오고 있다.

그리고 수출입가격은 거래빈도가 국내물가에 비해 적으므로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월 1회 조사한다. 다만 가격조사일이 휴무일이면 그 전일을 조사일로 하되 전일도 휴무일이면 정기가격조사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짜를 가격조사일로 한다.

가격조사방법으로는 조사일 현재 지정된 품질규격상품의 계약가격을 고정된 조사대상처에 대한 직접방문, 전화, 서면조회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다. 이때 조사일 현재 수출입계약이 없으면 지난 1개월 중 조사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에 계약된 상품의 가격을 조사한다.

본 조사에서 생산되는 지수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집단을 구성하는 전 품목을 조사대상품목으로 하여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무적으로 편제상의 제약과 가격시계열 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수출입액이 크고 국내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조사대상품목으로 선정한다.

조사대상품목의 선정기준은 개별품목의 수출입액이 모집단거래액의 1/2,000 이상의 거래비중을 가지고 있는 품목으로서 동종산업내 상품간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으며 가급적 품질규격 등이 균일하게 유지되고 가격시계열 유지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되 예외적으로 수출입액의 거래비중이 선정기준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향후 수출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도 일부 선정하였다.

수출입물가지수는 라스파이레스산식을 사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지수산출을 위한 가격자료는 가격변동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대상품목의 품질규격, 거래조건, 조사기준일, 가격조사방법 등을 정해 놓고 있다.

먼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품목들은 대부분 다양한 품질규격이 거래되어 이들 모두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러가지 품질규격 중 첫째 동종품목 중에서 수출입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둘째 소속품목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으며 셋째 가능한 한 거래빈도가 높은 단일품질규격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단일품질규격으로 소속품목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 개의 품질규격을 선정함으로써 가격변동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한다. 거래단위는 일반 무역거래 관행상 가장 널리 적용되는 대량거래단위를 적용하며 거래조건은 원칙적으로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거래관행을 적용한다.

5.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전국 주요도시 주택의 매매 및 전세가격의 변동상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거나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주택은행에서 매월 실시하는 조사이다.

조사기준일은 매월 15일이며, 41개 도시에서 해당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조사원이 방문하여 표본주택과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을 매매(임대)사례 비교법에 의하여 면접조사하고 있다. 지수편제는 라스파이레스산식을 적용하며 지수산출시 도시별 유형별 주택재고비 구성비를 가중치로 부여한다.

Ⅲ 물가통계의 특징

1. 물가지수의 용도

물가지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서의 물가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한 나라의 경제동향분석이나 경제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물가지수의 용도는 화폐의 구매력 측정수단, 경기동향 판단지표, 명목가치를 실질가치로 환산하는데 필요한 디플레이터로서의 기능, 그리고 전반적인 상품수급동향 판단자료 등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물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수단이 된다. 만일 시장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가 수중에 있는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 감소하게 되므로 돈의 가치, 즉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물가의 하락이 계속되면 화폐의 구매력은 증대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물가의 변동에 따른 화폐의 실질적인 구매력 변화를 측정해 보게 된다.

둘째, 물가지수는 경기판단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물가는 경기가 좋아지는 경우에는 수요증가에 의하여 상승하고, 나빠지는 경우에는 수요감소로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물가지수는 이러한 경기동향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때로는 경기판단지표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물가지수는 디플레이터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우리는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정하거나 분석할 때 이를 과거 어느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 볼 필요성을 종종 느끼게 되는데 이 경우 물가지수를 이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금액의 변동은 수량변동과 가격변동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의 계열을 물가지수로 나누어 가격변동을 포함하지 않는 계열로 고칠 수 있다. 따라서 처음의 금액계열을 명목금액, 물가지수로 나눈 후의 계열을 실질금액, 이 때 사용한 물가지수를 디플레이터라고 한다.

넷째, 물가지수는 상품의 전반적인 수급동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즉 물가지수에는 모든 상품의 가격변동을 종합한 총지수 뿐만 아니라 상품의 종류별로 작성한 유별 및 각종 분류지수도 있어 부문별로 상품수급동향을 분석할 수 있다.

2. 정부발표물가와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객관적·체계적으로 작성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표와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물가간에는 다소 시각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이론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작성되는 반면, 국민들이 인식하는 물가는 사람에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느끼는 물가이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민이 구입하는 대표품목들의 전국 각지역에서의 가격변동을 평균한 개념인 반면 개개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는 개별 경험에 의해 느끼는 감각적인 것으로 최근에 많이 오르거나 평소 개개인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의 가격변동을 전체물가의 변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가정주부 등은 자주 구입하는 채소, 생선류등 신선식품이 작황부진 등으로 가격이 오를 때 더욱 거리감을 느낀다. 또한 소비의 고급화, 구입빈도의 증가, 자녀의 성장 및 가구원수가 늘어남에 따른 생활비 증가도 물가상승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에 가까운 보조지표

소비자물가지수와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간의 차이는 어느정도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통계청에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에 가까운 지표로서 기본생활필품지수, 신선식품지수, 구입빈도별지수 등 다양한 지수를 작성하여 보조지표로 발표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필요한 품목으로 일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미·쇠고기·전기료 등 50개 품목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기본생활필품지수와 계절적요인이나 자연환경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는 품목으로 상품의 신선한 정도에 따라 상품가치가 좌우되는 신선어개·채소·과실 등 47개 품목들의 가격을 측정하는 신선식품지수와 구입빈도별지수, 상품품질별지수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 기본생활필품지수

기본생활필품지수란 509개의 조사대상품목 중 일반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0개 품목들의 가격변동을 종합하여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50개 품목은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품목의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필요한 품목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생활품은 일반미, 쇠고기, 라면 등 24개의 주요 식료품과 상수도료, 전기료, 시내버스료 등 26개의 식료품외의 품목으로 구성되며 이들 50개 품목의 가중치는 376.3로서(총가중치 1000.0) 전체품목중 매우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 신선식품지수

신선식품지수란 상품의 신선한 정도에 따라 상품가치가 좌우되는 47개 품목(신선어개, 채소, 과일, 기타 신선)들에 대한 지수로서 신선식품의 가격변동률이 계절적요인이나 자연환경에 따라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편제한 것이다.

이 지수를 편제하는 목적은 소비자물가 구성품목 중에서 이러한 품목들에 의해 발생하는 불규칙 요소를 제거한 신선식품제외지수가 소비자물가의 일반적인 흐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구입빈도별지수

구입빈도별지수는 각 상품에 대한 기준년도의 평균구입횟수를 기초로 5단계로 구분하여 지수를 편제한 것으로서 상품구입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한 가격변동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선식품과 관련하여 물가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소비자들이 주부임을 감안할 때 평소 가정에서의 식생활과 관련하여 자주 구입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보조지표를 작성한 것이다.

- 상품성질별지수

상품성질별지수는 509개 조사대상 품목을 상품(374개 품목)과 서비스(135개 품목)로 대별하고 각각의 품목을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로 묶어 지수를 편제한 것이다.

이는 산업분류 체계의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어 사업체에서 자기사업과 관련된 상품류나 서비스의 물가변동을 파악하는데 편리하다.

IV 지 표

○ 물가수준

물가수준은 모든 재화의 가격을 평균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하는 비율에 의하여 평균하는 의미를 가진다.

소비자가격의 평균을 소비자물가수준이라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생산자가격의 평균으로서 생산자물가수준, 재화일반의 평균으로서 일반물가수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물가수준은 화폐와의 대응관계를 가지고 변화하므로 화폐경제의 내면적 구조를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GNP디플레이터

GNP디플레이터는 GNP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경상가격에 의한 GNP를 불변가격에 의한 GNP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GNP 추계에 관련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국내거래가격 뿐만 아니라 수출입가격 변동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다.

○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일반물가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물가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표시된다. 물가지수가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폭의 크기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강한가 약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는 몇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통화와 물가의 관계에 대하여 유효수요를 통한 기능적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화폐수량설적인 비례관계로 파악한 고전적인 이론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통화의 팽창이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통화와 물가의 관계가 유효수요를 통하여 설명되는 이론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재화의 총공급을 초과하는 총수요, 또는 재화의 초과수요라고 정의되고 있다. 경제학자 케인즈에 의하면 총공급이 수요, 즉 유효수요보다 클 때 그 차이를 디플레이션 갭이라 하고 그 반대로 유효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는 부분을 인플레이션 갭이라 한다.

○ 생산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반적인 상품의 수급동향과 일반물가수준의 변동을 나타내

는 지표로서 화폐구매력 측정의 기준지표로 이용됨은 물론 각종 경제지표의 디플레이터로서 널리 활용된다.

○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는 생계비의 변동, 즉 소비자의 구매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시가구가 구입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지표이다.

○ 수출입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수로서 수출입관련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 및 수입원가부담 등을 파악하는 한편 수출입물가지수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가격측면에서의 교역조건을 측정하는 데에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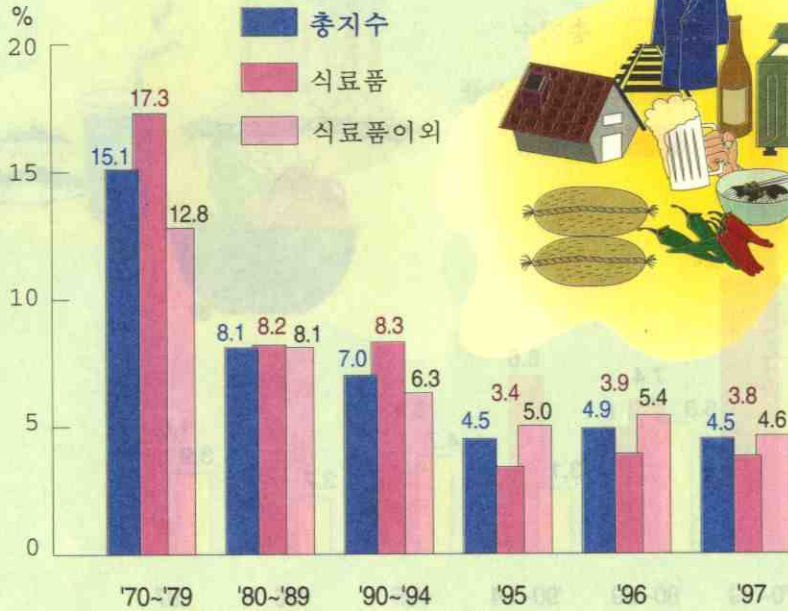
○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농가의 영농 및 소비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입가격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농가교역조건 산출 등을 통한 농촌경제동향분석 및 농업정책수립에 활용된다.

<참고자료>

- 「농촌물가총람」 199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물가연보」 1997 통계청
-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1997 한국주택은행
- 「물가의 올바른 이해」 1995 통계청
- 「물가총람」 1993 한국은행
- 「한국의 경제지표」 1995 김경중(매일경제신문사)

1. 전도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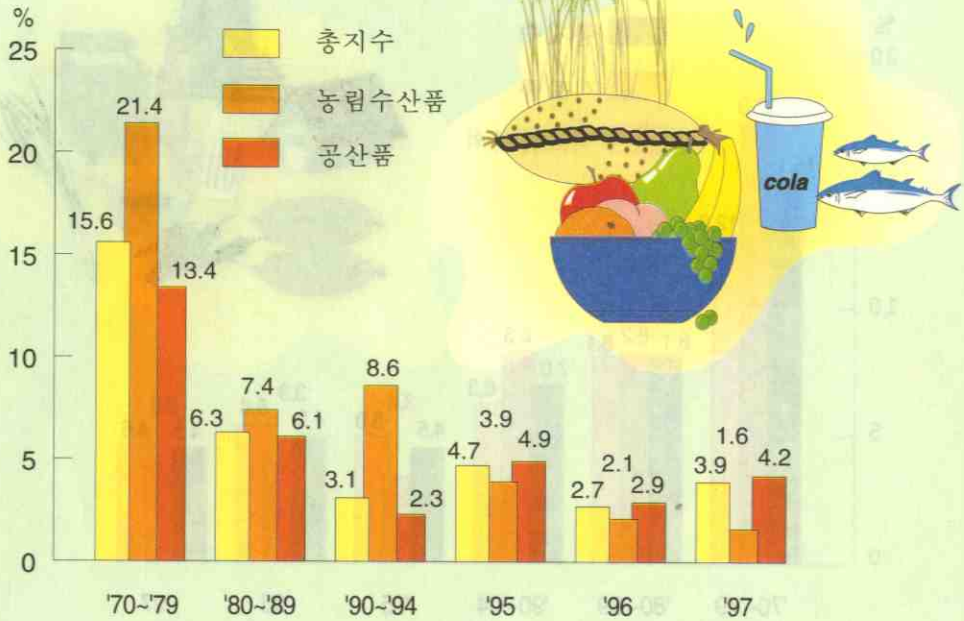
단위 : %

연도	총지수	식료품	식료품이외					
			주거비	피복 및 신발	교육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 잡비	
70-79 ¹⁾	15.1	17.3	12.8	17.8	15.3	16.3	13.5	8.7
80-89	8.1	8.2	8.1	9.0	7.8	8.4	8.9	7.4
90-94	7.0	8.3	6.3	8.0	5.3	7.9	6.3	4.8
1995	4.5	3.4	5.0	4.4	1.7	9.3	5.0	2.2
1996	4.9	3.9	5.4	3.7	1.2	8.5	5.9	6.5
1997	4.5	3.8	4.6	3.3	1.7	4.9	7.2	5.0

주 : 1) 식료품이외의 개별 분류 자료는 '75~'79년 평균임.

자료 : 통계청 「물가연보」

2. 생산자물가 상승률 변화



단위: %

단위: %

연도	총지수	농림수산물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수산 식품	농림수산물	연료광물	광산품		
70~79	15.6	21.4	21.9	18.3	19.2	13.4	17.4
80~89	6.3	7.4	7.4	10.9	10.6	6.1	5.6
90~94	3.1	8.6	8.5	1.9	0.1	2.3	0.8
1995	4.7	3.9	3.9	-0.1	0.3	4.9	3.5
1996	2.7	2.1	2.3	0.7	0.1	2.9	2.2
1997	3.9	1.6	1.4	2.7	1.6	4.2	4.5

자료: 한국은행 「물가총람」

3. 농가판매가격지수

1995=100



1995=100

연도	총지수	곡물		청과물		축산물		기타	
		미곡	기타	과실	기타	가축	기타	특용작물	
1975	15.1	15.9	16.5	17.5	18.0	12.6	-	15.4	12.6
1980	39.3	41.7	43.4	41.2	42.6	34.9	33.2	40.4	41.3
1985	54.6	57.5	59.0	55.5	42.9	50.9	48.9	51.4	50.0
1990	73.7	77.4	79.2	64.0	55.3	79.1	78.5	73.9	72.3
19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6	105.2	113.9	114.9	101.0	92.5	100.4	100.2	106.1	108.6
1997	102.2	115.3	116.7	100.4	93.9	89.7	88.3	108.4	110.8

자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촌물가총람」

4. 화폐가치의 변화



단위 : 1990=100, 원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¹⁾		농가 판매 가격 지수 ¹⁾	농가구입 가격지수 ¹⁾	수출 물가 지수	수입 물가 지수
		화폐가치		화폐가치				
1975	32.2	10,000	18.2	10,000	15.1	14.7	30.5	33.9
1980	72.5	4,441	40.4	4,505	39.3	39.8	64.1	74.0
1985	93.0	3,462	56.8	3,204	54.6	58.3	88.5	96.6
1990	100.0	3,220	74.0	2,459	73.7	75.4	100.0	100.0
1995	116.8	2,757	100.0	1,820	100.0	100.0	113.7	115.2
1996	119.9	2,686	104.9	1,735	105.2	104.3	114.3	115.2
1997	124.6	2,584	109.6	1,661	100.2	106.7	126.9	126.0

주 : 1) 1995=100

자료 : 통계청 「물가연보」, 한국은행 「물가총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조사월보」

4. 가계통계

통계조사 및 통계

도시가계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주요 통계지표

가계수지, 엔겔계수, 생계비, 가처분소득, 소비성향,
소득분배

통계표 및 도표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도시전가구 소비지출 구성

가계통계

I 가계란 상품의 최종적 소비활동을 영위하는 경제주체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경제주체 혹은 경제단위라 한다. 경제주체를 크게 가계·기업·정부·해외부문 등으로 나누는데 가계는 생산요소를 공급하고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의 경제주체로서 개인이나 가정으로 구성된다.

즉 가계는 경제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시장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다른 가계나 기업 또는 정부로부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 생활의 안정과 보다 풍요한 미래를 위하여 저축에 힘쓰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가계의 경제활동은 생산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동력과 자본을 형성하여 공급하는 공급자로서의 활동과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의식주를 비롯하여 교육, 문화, 여가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재화와 용역을 소비함으로써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 소비자로서의 활동을 한다.

▣ 가계통계의 종류

가계의 생활수준을 국민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고찰할 때에는 국민소득통계를 보편적으로 이용하지만 국민소득은 국민후생복지수준을 정확히 반영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거시적인 전국자료이기 때문에 가구특성에 따른 생활수준의 차이를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직업 등 가구특성에 따른 변동은 가구의 소득을 직접 조사하는 가계통계를 이용해야 한다.

가계통계에는 우리나라 전도시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도시가계의 생활실태 및 생활수준의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도시가계조사**, 경지 10a 이상인 가구 또는 대가축 1마리 이상인 가구 등 농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가가구를 대상으로 농가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농가의 경제상태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는 **농가경제조사**, 연근해어업을 경영하는 개인어가를 대상으로 어업경영자가구의 가계를 영위하기 위한 가계비를 조사하여 어가의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는 **어가경제조사** 등이 있다.

한편 도시가계조사는 생계를 영위하는 가계의 성격을 띤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의 생활수준과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순수한 가계조사인 반면, 농가·어가경제조사는 농·어업 사업체의 성격을 중심으로 경제상태와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농가가계비가 산출되는 조사로 일종의 경제조사의 성격을 갖는 조사이다.

II 가계관련 주요통계 및 통계조사

1. 도시가계조사

도시가계조사는 도시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가구의 생활수준 및 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국민 소비수준 변화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 입안 기초자료, 국민소득추계자료 등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조사는 농가, 어가, 단독가구,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외국인가구 등을 제외한 전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표본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모든 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약 5,500가구를 추출하고, 이들 가구에 대하여 매월 조사 개시전에 조사표(가계부)를 배부하여 가구에서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금액과 품목명을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그리고 표본조사가구의 가구주 직업에 따라 피용자가구인 근로자가구와 그 이외의 상인·개인·경영자·자유직업·무직가구 등 근로자이외가구로 구분하고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조사하고 있으나 근로자이외가구는 지출사항만을 가계부에 의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사된 가계부는 가구의 특성에 따라 소비지출계층별, 소득계층별, 소득 10분위별, 가구원수별, 입주형태 및 가구주의 연령별, 산업별, 직업별, 교육정도별로 집계하여 매년 통계청에서 「도시가계연보」로 공표하고 있다.

즉, 이 조사결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 근로소득·재산소득 등 소득원천별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 식료품비·주거비 등 지출비목별 소비지출, 소득과 지출의 연도별 증감상태 등을 파악하여 국민들의 소득, 소비수준의 변화과정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 이용시 유의점

도시가계조사는 가구에서 직접 매일매일 가계부를 기입해야 하는 어려운 조사이므로 다량의 표본가구를 조사할 수 없다. 즉, 표본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가구의 특성별로 세부적인 자료(세세비목)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1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단독가구나 군부지역에 거주하는 비농가, 근로자이외가구, 지역별 가계수지에 관한 자료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가 구입한 재화의 수량이나 보유량에 의한 수량은 측정되지 않고 있다.

2. 가구소비실태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전국 비농가를 대상으로 소득과 소비실태, 내구재 보유현황, 저축·부채, 연간소득 등 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관한 심층조사를 통해 소득 및 소비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가구에 대해서는 도시가계조사가, 농·어가에 대해서는 농·어가경제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이들 조사에서는 비도시지역의 비농가가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고 또한 1인가구가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국 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조사를 함으로써 시·도별(지역별) 가구소득 및 소비수준의 파악, 1인가구,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유형별 소득 및 소비자료의 생산과 소득 및 소비구조를 심층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본 조사는 통계청에서 5년주기로 실시하며 전국의 비농가 약 30,000 표본조사 가구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가계수지는 가계부를 조사대상가구에 배포하여 조사대상가구가 매일매일의 수입 및 지출 내용과 금액을 직접 자세히 기입토록하는 방식, 즉 가계부기장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가구내구재, 저축·부채, 연간소득 등은 조사원이 조사대상가구에 살고 있는 가구원을 면접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사사항으로는 가구 및 주거에 관한 사항, 가계수지에 관한 사항, 가구내구재에 관한 사항, 저축·부채에 관한 사항, 연간소득에 관한 사항이 있다.

- 이용시 유의점

가구소비실태조사결과 작성되는 통계는 전국 비농가가 2인 이상 일반가구와 단독가구로 분리되어 집계되었고, 전국 2인 이상 전가구에 대한 소득통계 작성시 농가의 2인 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통계는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3. 농가경제조사

농가경제조사는 농업의 재생산구조 및 농가경제의 동향과 경제사회의 제 변천에 따르는 농업의 구조변화를 파악함으로써 농업경영의 개선, 농촌 소비수준의 측정, 농가경제지표, 농가노동실태 등에 관한 제 자료를 산출하여 농업정책수립과 농업문제 연구의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농림부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계부에 작성한 것을 집계하는 것으로서, 일계부는 농가의 수입과 지출을 용도별로 농가가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성 능력이 없는 농가는 조사원이 대리 작성한다.

농가경제조사의 대상은 경지(논, 밭, 수원지) 10a 이상을 경작하는 가구와 경지가 없더라도 대가축 1마리 이상이거나 중가축 3마리 이상 또는 소가축 40마리 이상, 가금 40마리 이상이거나 꿀벌 5통 이상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시험장, 학교, 종교단체 등의 준농가 및 상시고용인 5인 이상의 대규모기업농, 단독가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이 조사는 농업사업체 측면에서 농가의 경제상태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계되고 있는 결과표도 모두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경지구도별, 영농형태별로 집계하고 있을 뿐 농가의 생활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소득계층별, 가구원수별 또는 가구주의 연령별 등의 결과표는 집계하고 있지 않다.

- 이용시 유의점

농가경제조사는 가계를 영위하기 위한 비용인 가계비에 관한 사항도 조사되고 있으므로 일반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도농간의 소득비교나 생활수준을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농가경제조사가 농가에 대한 생활수준이나 변동을 파악하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

먼저 소득면에서, 도시가계조사는 실제적인 소득만 계산되는 반면 농가소득에는 그 일부가 다음 연도에 농업을 경영하기 위한 재투자분까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대동식물의 증식분까지 농가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도농간의 소득을 비교할 때에는 도시보다 농가의 소득이 과대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지출측면에서는, 농가경제조사는 용도별 분류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도시가계조사에서는 품목별 분류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두 조사에서 나타난 비목별지출을 직접 비교하는 데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독가구는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통계의 평균가구원수와 농업기본통계의 평균가구원수와는 차이가 있으며, 농가경제소득의 농가소득과 국민소득 통계 중 농업소득의 직접 비교도 곤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사항목

- ◇ **농가수지** : 농업조수입, 농업경영비, 농업소득, 겸업수지, 겸업소득, 사업이외수지, 사업이외 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농가소득, 조세공과금 및 제 부담금, 가처분농가소득, 가계비, 분가지출, 농가경제잉여
- ◇ **농가재산** : 자산, 유동자산, 유통자산, 부채, 농업자본액
- ◇ **생산성 및 기타관련 지표** : 농업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토지생산성, 자본구성도, 자본집약도, 노동집약도

4. 어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도 농가경제조사와 마찬가지로 어가의 생활수준과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민의 어업경영형태, 어가경제동향 및 어촌사회의 변화과정을 파악하여 수산시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얻는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으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매월 조사하고 있다.

어가경제조사의 조사방법과 조사항목 등은 모두 농가경제조사와 유사하나 사례금, 송금보조, 퇴직금 등의 이전수입 항목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사업의 수입항목에 계상된다는 점이 다르다.

조사대상은 연근해어업을 경영하는 개인 어가를 어업형태에 따라 어선비사용 가구, 무동력선 사용가구, 동력선 사용가구, 양식업가구로 나누어 어업·겸업수입과 이에 따른 경영비 및 어업경영자가구의 가계를 영위하기 위한 가계비에 대한 품목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지출수준에 의해 어가의 생활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가구원 구성요건 중 가족이라도 3개월 이상 출타하였을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제외되며, 어가자산부문은 표본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나 사업부문 자산만을 조사하므로 가구 및 의복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노동시간부문도 노동시간 및 일수를 작업별로 조사하는 것으로 수입적 노동에 대해서만 조사되며 가계소비 노동에 대하여는 조사되지 않는다.

- 이용시 유의점

어가경제조사의 결과치로 농어가간의 경제상태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나 어업경영자가계와 도시근로자가계와의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고, 가계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된 품목을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농가경제조사와

마찬가지로 용도별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도시가계조사와 농가경제조사를 비교할 때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단독가구는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어 본 통계의 평균가구원수와 어업기본 통계의 평균가구원수와는 차이가 있으며 대동식물, 재고수산물의 연초·연말 차액이 수입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월별수입에는 이들의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치에 차이가 있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조사항목

- ◇ 수입부문 : 사업수입, 사업외 수입, 이전수입, 재산적 수입
- ◇ 지출부문 : 사업지출, 사업외 지출, 조세공과금, 가계비 지출, 분가지출, 재산적 지출

Ⅲ 도시가계조사와 농가경제조사의 성격 비교

농가경제조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농가의 생활수준과 그 변동사항의 파악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경제상태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농업행정 및 농업문제 연구의 기초자료를 얻는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조사는 도시가계조사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농가가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사업체의 성격**과 그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주 가족의 생계를 영위하는 **가계의 성격**이 혼합된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러한 성격 중 어떠한 것을 파악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조사결과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농가경제는 농업사업체의 성격을 중심으로 경제상태와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도시가계조사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주 가족을 포함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가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가구의 생활수준과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조사의 조사방법과 조사항목은 서로 비슷하다. 즉 대상가구인 농가, 도시가구의 수입과 지출사항을 품목별로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가계부기장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농가경제조사에서도 농업이나 검업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비 이외에 농가에서 가계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가계비도 조사하고 있으므로 지출수준에 의해 농가의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서도 이용될 수 있다.

도시가계조사와 농가경제조사와의 차이점

구분	도시가계	농가경제
조사 목적	도시가계의 실태 및 생활수준의 변동사항을 파악	농가의 경제상태 및 경영실태 파악
조사 범위	전국 72개시 전가구 대상(농가, 어가, 단독가구, 외국인가구, 영업수지와 가계수지 분리가 곤란한 가구 제외)	1개 이상 해당가구 -논, 밭, 수원지 10a 이상 -대가축 1마리 이상 -중가축 3마리 이상 -소가축, 가금 40마리 이상 또는 꿀벌 5통 이상(시험장, 학교, 종교단체, 법인, 상시 고용인 5인이상 기업농, 단독가구 제외) -연간 농업수입이 40만원 이상
조사 대상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추출한 시부 표본가구(5,500가구)	농업총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추출한 9개도의 표본농가(3,100가구)
조사 기간	매월 1일~말일	매월 1일~말일
조사 사항	-가구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가구주에 관한 사항 -가구의 인적구성에 관한 사항 -주거에 관한 사항	-농가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상주가구원에 대한 경영주와의 관계 -가구구성에 관한 사항 -농가소유자산 및 부채
가족 정의	15일 이상 동거	3개월 이상 항시 동거
분류 체계	ILO 권고안(수입과 지출) (품목별 분류방식) ※ 서비스부문은 용도별 분류	FAO 권고안(가계비) (용도별 분류방식)
소득 내용	가계의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자가평가액은 계상하지 않으며 연보에 별도로 연 1회 공표)	농가소득에 대동식물 증식분, 현물수입, 이전수입은 포함(재투자분도 포함하고 있음).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 가계비 중 주거비에 계상함
조사 성격	가계 중심	농업사업체 중심
공표 주기	분기별(월평균치)	연별(연간총계)

IV 지 표

○ 가계수지

총수입과 총지출을 합하여 가계수지라고 하는데 언제나 「총수입 = 총지출」의 관계가 성립된다.

- 총수입 = 소득 + 기타수입 + 전월이월금
- 총지출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 기타지출 + 월말현금잔고
- 흑자 = 소득 - 가계지출 = 소득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 가처분소득 - 소비지출
- 흑자율(%) = (흑자 ÷ 가처분소득) × 100

○ 앵겔계수

식료품비가 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앵겔계수(%) = (식료품비 ÷ 소비지출) × 100

○ 생계비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서 가계비 중 소비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생계비에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나타내는 **실질생계비**와 일정한 생활조건, 즉 거주지역·연령·가족구성 등에 대응하는 표준적인 소비유형을 가정하여 계산하는 **표준생계비**가 있다. 전자는 「있는 그대로」의 생계비이나 후자는 「있어야 할」 생계비로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임금수준(특히 최저임금제)이나 최저생활비수준을 결정하는 데 이용된다. 그런데 이 경우의 표준은 실태를 전제로 하여 가정되는 것이므로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DI)이란 소득 가운데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 다시 말해서 개인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일컫는다.

소비할 것인가 저축할 것인가의 결정에 관련된 소득개념으로서는 가처분소득이 가장 적절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분석상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소비성향

소비생활은 소득을 떠나서는 고려할 수가 없는 것이며 국민소득과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소비와의 관계가 소비성향이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소비지출은 소득수준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을 Y , 소비지출액을 C 로써 나타내면 소득에 대한 소비지출액의 비율 C/Y 를 평균소비성향이라 한다.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면 장래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준비, 재산의 축적, 영리목적 등과 같은 주관적 조건과 이자율이나 재정정책의 변화, 장래의 소득의 변화와 같은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소득의 일부가 저축 또는 투자됨으로써 소비에 지출되는 부분은 소득의 증가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다.

$$\cdot \text{평균소비성향} = (\text{소비지출} \div \text{가처분소득}) \times 100$$

$$\cdot \text{한계소비성향} = (\text{소비지출증가분} \div \text{가처분소득증가분}) \times 100$$

○ 소득분배

소득분배의 접근방법은 크게 기능별 소득분배와 계층별 소득분배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기능별 소득분배는 요소소득의 수취자가 수행한 생산기능에 따른 소득분배를 고찰하는 것이다.

계층별 소득분배는 모든 가계를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례로 배열하여 상이한 소득계층의 소득이 경제전체의 총소득 중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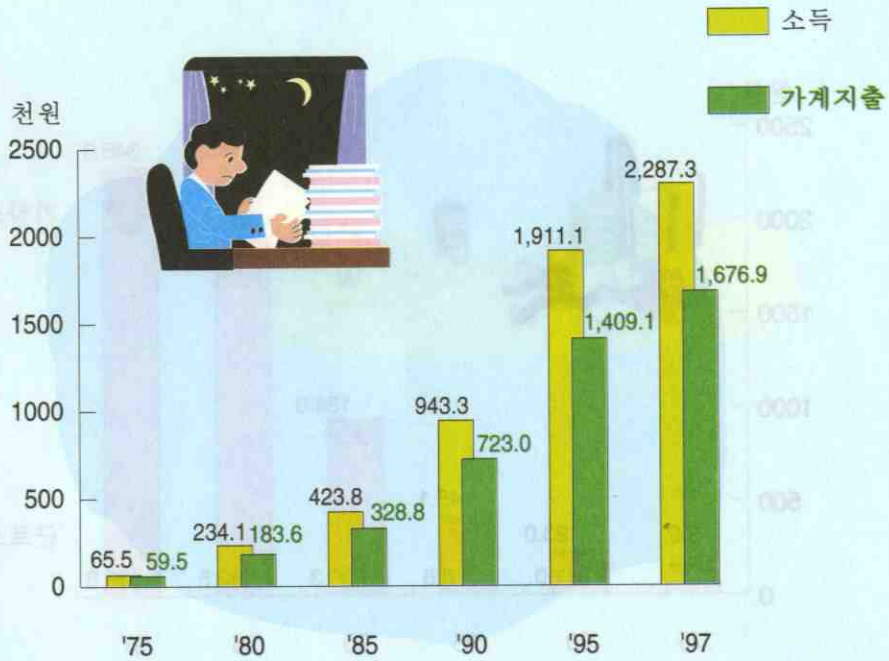
계층별 소득분배 접근방법에 의하여 소득분배의 불균등도를 측정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지수로는 지니계수와 10분위분배율이 있다.

인구의 누적점유율을 횡축, 소득의 누적점유율을 종축으로 하는 정사각형에서 계층별 소득분배를 표시한 곡선을 로렌츠곡선이라고 한다. 이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득분포는 균등한 것이고, 멀면 멀수록 불균등한 것을 나타낸다.

<참고자료>

「도시가계연보」	1997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1991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1997	농림부
「어가경제통계」	1997	해양수산부
「한국의 경제지표」	1995	김경중(매일경제신문사)

1. 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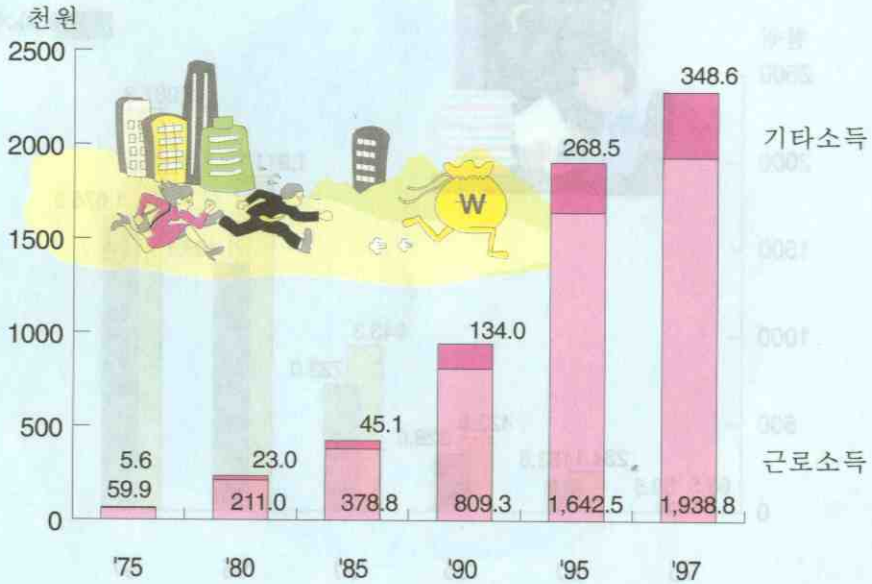


단위 : 원

연도	소득	가계지출				
		가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	비식료품	
1975	65,540	59,480	56,890	27,830	29,060	2,590
1980	234,086	183,578	173,983	74,739	99,244	9,595
1985	423,788	328,761	302,211	113,927	188,284	26,550
1990	943,272	723,035	649,969	211,412	437,557	73,066
1995	1,911,064	1,409,111	1,230,563	356,525	874,038	178,547
1996	2,152,687	1,602,853	1,395,358	397,182	998,176	207,496
1997	2,287,335	1,676,880	1,453,713	417,541	1,036,172	223,167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2. 도시근로자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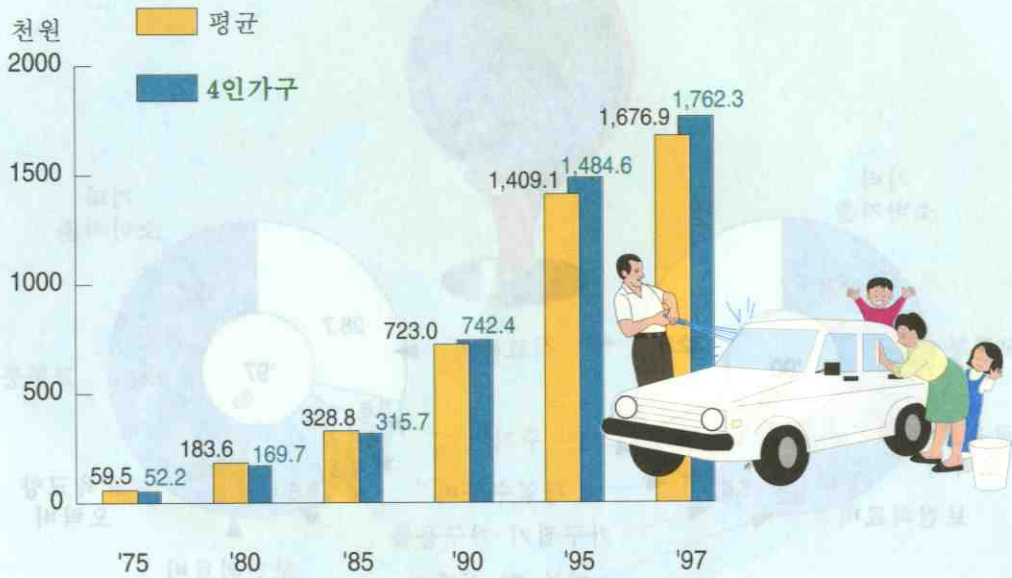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연도	총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가구주	가구원	재산 및 이전	사업 및 부업소득
1975	65.5	59.9	54.8	5.1	0.5
1980	234.1	211.0	189.7	21.3	2.0
1985	423.8	378.8	340.1	38.7	10.1
1990	943.3	809.3	691.1	118.3	24.6
1995	1,911.1	1,642.5	1,321.2	321.4	62.8
1996	2,152.7	1,837.7	1,477.7	360.0	73.0
1997	2,287.3	1,938.8	1,543.0	395.8	78.9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3.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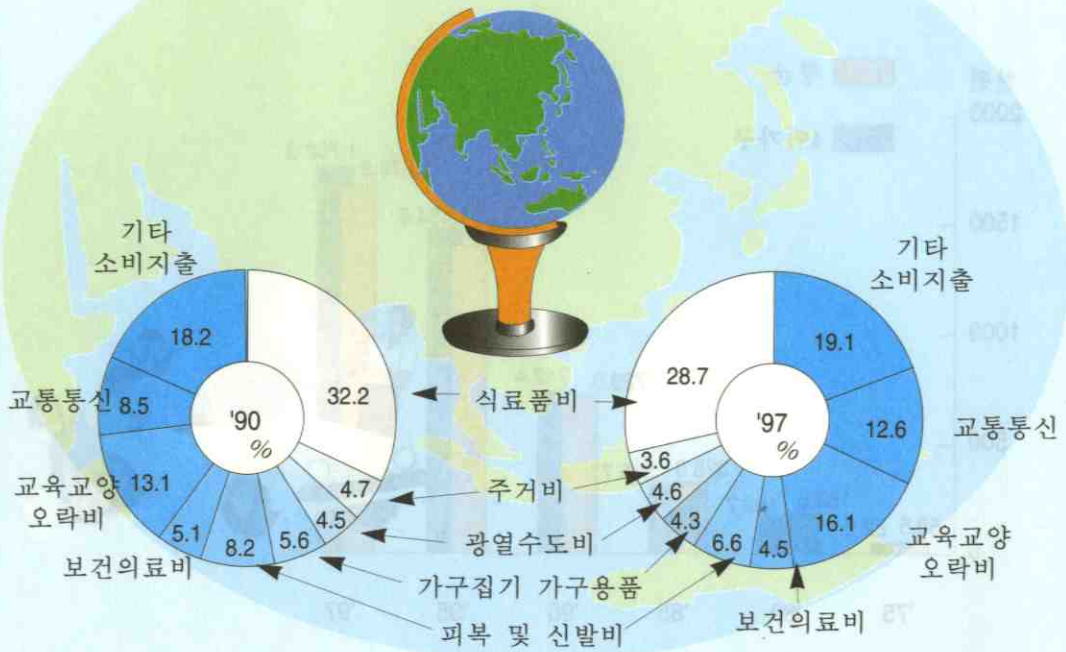


단위 : 원

연도	평균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1975	59,480	38,430	43,050	52,150	59,250	73,206
1980	183,578	139,753	144,445	169,735	192,879	231,909
1985	328,761	236,199	272,732	315,701	375,016	434,971
1990	723,035	479,752	605,813	742,382	843,062	973,222
1995	1,409,111	1,097,687	1,300,577	1,484,621	1,583,851	1,787,537
1996	1,602,853	1,272,426	1,456,196	1,693,780	1,857,261	2,088,756
1997	1,676,880	1,293,118	1,574,404	1,762,320	2,012,993	2,045,631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4. 도시 전가구 소비지출 구성



단위 : %

연도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가구용품	피복 및신발	보건 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 통신	기타 소비지출
1975	48.8	2.7	6.5	4.4	9.0	4.4	9.1	4.6	10.4
1980	43.2	4.5	7.8	4.3	9.8	6.3	8.1	5.8	10.1
1985	37.5	5.0	7.5	4.7	7.6	5.5	11.3	6.5	14.4
1990	32.2	4.7	4.5	5.6	8.2	5.1	13.1	8.5	18.2
1995	29.0	3.8	4.1	4.7	7.7	4.7	15.3	11.3	19.4
1996	28.7	3.8	4.2	4.4	7.4	4.6	15.8	11.7	19.4
1997	28.7	3.6	4.6	4.3	6.6	4.5	16.1	12.6	19.1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5. 노동·임금통계



통계조사 및 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
사업체노동실태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산업재해통계

주요 통계지표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비경제활동인구, 입직률, 이직률, 근로시간, 임금,
실질임금, 노임단가지수, 사업체, 종사원, 재해발생률,
재해강도율, 재해도수율, 노동소득분배율,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
기업경영분석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한국생산성 본부의 노동생산성지수

통계표 및 도표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산업별취업자,
구인 및 구직자수, 주당평균근로시간, 월평균임금,
산업재해

노동·임금통계

I 노동과 임금이란?

생산활동은 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그런데 노동력은 생산요소의 하나로써 생산활동의 구성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수준과 실업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노동이란 생산을 목적으로 하여 보수를 기대하면서 행하여지는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활동으로 가계가 기업 및 정부기관 등의 생산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각 가계가 노동을 하고자 하는 양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을 함으로써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으로 구입 가능한 각종의 재화와 서비스를 하나의 선택대상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즐길 수 있는 여가를 하나의 선택대상으로 하여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선택을 통해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노동의 제공에 대해서 지불되는 대가를 임금이라고 하는데, 임금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에서 결정되며 노동은 상품처럼 매매된다. 그러나 노동이 상품과 다른 점은 노동력과 그 소유자를 분리할 수 없고 저장될 수 없다는데 있다. 또한 임금은 노동이라는 생산요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임금노동자들이어서 임금소득은 요소소득 가운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임금문제로 노사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임금을 둘러싸고 노동자와 기업가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및 국제경쟁력의 약화, 저임금에 따른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유효수요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규제조치가 있는가 하면 최저 임금제 등의 규제조치 등이 있게 된다.

▣ 노동·임금통계의 종류

노동에 관련된 통계는 크게 노동력과 임금에 관련된 통계로 구분되나 그 이외에도 노동생산성통계, 노사관계에 대한 통계 그리고 산업재해통계 등이 있다.

노동력에 관련된 통계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는 취업자 및 실업자, 연령별·성별·산업별 취업자의 구성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할 수 있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 사업체노동실태조사로부터는 근로자의 취업상태가 파악되고, 이 조사자료를 모집단으로 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로부터는 근로자가 사업체로 들어오고 나가는 입직자와 이직자의 수 및 근로시간 등이 작성되고 있다.

임금에 관련된 통계는 매월노동통계조사로부터 근로자임금을 조사하여 산업별 월평균임금,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의 통계를 작성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등을 통해 사업체근로자의 노동특성별 임금 및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그 조사결과로써 직종별, 산업별, 사업체규모별, 학력별, 경력년수별, 연령계층별 임금 및 임금계층별 근로자수 통계가 작성된다.

노동생산성통계는 GDP, 산업생산지수, 노동투입량(근로자수, 근로시간) 등을 가공하여 작성하는 2차통계로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작성하는 노동생산성지수 등이 있고, 산업재해통계는 산업재해조사 등을 통하여 작성되며, 노사관련통계는 노동부 자체내의 행정통계로 통상 작성되고 있다.

II 노동·임금관련 주요통계 및 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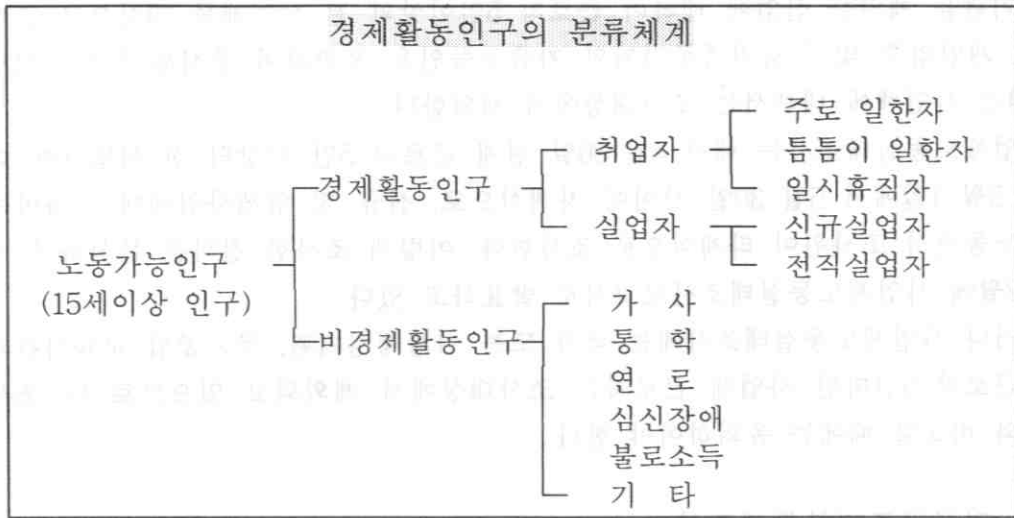
1. 경제활동인구조사

우리나라에서는 만15세 이상의 인구를 노동가능인구 또는 생산연령인구라 한다. 실제 만15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때로는 노동이 가능하나 하한연령은 정하고 상한연령은 정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 국가들의 통례이다. 생산연령인구는 다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하여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 실업, 노동력 등과 같은 인구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인력자원의 개발정책수립에 필요한 노동의 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를 측정하여 고용창출, 직업훈련, 소득증진 등을 위한 정부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의 전 가구중 30,000가구를 표본가구로 선정하여 매월 15일이 속한 1주간을 조사대상 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만15세이상 가구원의 개인별 경제활동 상태를 면접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는 매월 분석하여 다음달 말에 산업활동동향 발표시 고용동향으로 발표하고, 매년 5월 경제활동인구연보를 발간하여 전년의 통계를 모아 분석, 발표하고 있다.



2. 매월노동통계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는 노동부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자의 입직·이직 실태와 월별임금 및 근로시간의 변동상황을 조사함으로써 고용실태와 노동이동상황, 그리고 임금수준의 변동상태를 파악하여 고용 및 임금정책의 기초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노동통계조사는 비농림어업부문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약 3,9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 대하여 노동이동(상용근로자의 입·이직사항),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상용근로자의 실근로일수, 상용근로자의 실근로시간수), 임금(상용근로자의 월급여액)을 매월 조사하여 작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지표는 경기판단을 위한 중요한 통계지표이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는 매월 분석하여 익월초에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매월노동통계조사」에는 농림어업,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국·공립교육기관과 상용근로자 10인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타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에는 유의하여야 한다.

3. 사업체노동실태조사

사업체노동실태조사는 노동부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지역별, 산업별, 규모별 분포상태와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연령계층별, 성별 등 취업상태를 파악하여 제반 노동정책 및 경제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노동통계조사의 연도별 모집단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하고 있다.

사업체노동실태조사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산업에 대하여 근로자 5인이상의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개인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유소득인을 포함하여 종사원이 5인 미만 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체노동실태조사는 매년 4월 30일 현재 근로자 5인 이상의 전 사업체에 대하여 5월 1일에서 5월 30일 사이에 자체식으로, 신규 및 영세사업체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 조사원이 타계식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매년 12월에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체노동실태조사에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국·공립 교육기관과 상용근로자 5인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타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에는 유의하여야 한다.

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하여 임금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본 조사에서는 매년 7월에 6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 1개월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림어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이상 사업체 중 층화계통추출방법에 의해 추출된 3,400개 표본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성, 연령, 혼인상태, 직종, 근속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직급, 경력연수에 관하여 조사한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는 집계, 분석된 후 다음해 9월말경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수록되어 발표된다.

이 조사는 기존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를 '92년 조사부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로 명칭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양자료의 시계열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어느 특정근로자나 직업인의 임금 등의 지표로 직접 활용시에는 조사개요를 참고하여 한계점을 이해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이 조사는 임금근로자를 표본추출하여 조사 집계한 것이므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그 직종의 대표치로 사용할 수는 없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까지 집계하고 있는 관계로 일부직종(표본이 적거나 희귀 직종)의 경우에는 통계치의 편의(偏倚: Bias)가 있을 수 있다.

5.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기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의 종류 및 금액 등을 조사 파악하여 제반 노동정책입안자료 및 기업의 근로자복지후생 증진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기업의 속성과 노동비용(급여지급연인원, 현금급여, 현금이외의 노동비용)에 대하여 전국의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 조사는 전년 1년간(회계기간)에 대하여 1차로 3월말 이전 결산법인에 대하여 4월말 1주간, 2차로 4월에서 6월말 결산법인에 대하여 7월초 1주간에 전국의 30인이상 전체기업 중 1,615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의 담당자가 자계식으로 조사표를 작성한다. 수집된 자료는 매년 12월에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보고서로 발표하고 있다.

1986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부터는 내역별 노동비용이 매월노동통계조사의 평균임금수준을 추정모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발간된 '83~'85년의 보고서상 노동비용내역별 절대금액과는 시계열이 불연속되므로 시계열분석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내역별 노동비용상의 퇴직금 비용은 1984년도까지는 퇴직금 비용에 사외적립금이 포함되었으나 1986년도 이후부터는 퇴직금비용에 사외적립금이 제외되었다.

노동비용

노동비용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비용으로 현금급여와 현금급여이외의 노동비용으로 구성된다.

- 현금급여 : 정액급여, 초과급여, 상여 및 기말수당 등의 합계액
- 현금급여이외의 노동비용 :
 - 퇴직금 :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포함한 퇴직일시금 지급총액
 - 법정복리비 :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중 사업주부담분, 장애인고용촉진기금부담금 및 기타 법정복리비
 - 법정의 복리비 : 사업주 단독에 의한 주거, 식사, 의료, 보건문화, 체육, 오락, 경조 등의 비용, 구판장 등에 관한 비용의 합계액으로 물적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이 포함
 - 교육훈련비 : 일반적으로 교양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학교는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의 교육훈련 시설에 관한 비용, 지도원에 대한 수당, 사례, 위탁훈련에 소요된 비용 등의 합계액
 - 현물지급의 비용 : 통근·정기승차권·회수권 및 자사제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

- 모집비 : 기업이 종업원을 모집하기 위해 행한 모집관리비, 채용시험에 소요된 비용, 채용자 부임수당, 모집관계 업무수당 등으로 모집관계 업무를 전담하여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등의 합계액
- 기타노동비용 : 작업복의 비용, 전근비용, 사보에 관한 비용, 표창 등 위에 분류되지 않은 비용의 합계액

6. 산업재해통계

고용재해는 고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재해로 산업재해와 출퇴근시의 교통사고, 직업병 등을 말한다. 산업재해는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사망이나 부상을 야기시키는 사고를 말한다.

산업사회가 발전되어 감에 따라 소규모의 공장이 대규모로, 단순한 작업이 복잡한 작업으로 변하고, 인체에 해로운 위험한 사업장과 그 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늘어나고 있어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의한 사망자와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근로자의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재해근로자나 직업병을 앓는 근로자는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생계의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들의 복지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 직업병에 관하여 구체적인 통계를 작성하여 재해 및 질병의 예방과 재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로는 산업자원부에서 월별로 탄광 및 광산의 갱내·외에서의 재해상황을 보고받아 행정보고통계로서 작성하는 광산재해통계와 노동부에서 수시로 재해유발시에 인적사항, 재해자수, 재해원인 및 결과, 상해종류를 재해 발생 사업체로부터 보고받아 작성하는 산업재해통계가 있다.

「광산재해통계」는 전년의 자료를 분석하여 매년 3월에 산업자원부에서 분석, 발표하고, 「산업재해분석」은 노동부에서 전년의 통계를 분석하여 매년 하반기에 발표하고 있다.

직업병에 관한 통계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체를 대상으로 연령별로 질병별·남녀별·연령별 질병자현황 및 산업별·일반질병별·직업성질병별 현황을 작성하여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상황보고가 있는데 이 통계는 노동재해·직업병 보상제도의 기록이나 사업체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신고제도 또는 어떤 다른 적절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Ⅲ 노동통계의 특성

1.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이유

우리나라 실업률은 2.0%(96년)로 구미선진국의 실업률 8~18%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농업취업률이 높고 임금근로자 비율은 낮아 실업발생의 가능성이 작을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어 취업 흡수력이 큰 반면 구미선진국은 농업취업률이 낮고 높은 임금근로자 비율로 실업발생 가능성이 크고 실업보험제도나 실업구호제도의 발달로 기업주는 경기변동에 따라 해고가 용이하고, 실업자는 실업수당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여 취업에 다소 소홀히 하는 등의 원인이 있다.

주요국의 실업률

단위 : %

국 가 명		1980	1985	1990	1995	1996
구미지역	미 국	7.0	7.2	5.6	5.6	5.4
	영 국	6.8	11.2	6.8	8.6	8.2
	독 일 ¹⁾	3.1	9.2	7.0	12.9	8.8
	프 랑 스	6.3	10.2	8.9	11.6	12.4
아시아 지 역	일 본	2.0	2.6	2.1	3.2	3.4
	대 만	1.2	2.9	1.7	1.8	2.6
	한 국	5.2	4.0	2.4	2.0	2.0

주 : 1) 90년까지는 구 서독자료임.

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국제간 비교

	I L O	한 국	일 본	미 국	대 만
조사대상기간	1일 또는 1주간	15일이 속한 1주간	월말의 주간	12일이 속한 1주간	15일이 속한 1주간
조사대상	일정연령 이상의 인구	15세 이상의 인구	15세 이상의 인구	16세 이상의 인구	15세 이상의 인구
조사방법	-	면접조사	자계식조사	전화조사	면접조사
개념 · 무급가족 종사자 · 구직활동 대상기간	취업자와 동일 1주간	18시간 이상근로자 1주간	1시간 이상근로자 1주간	15시간 이상 4주간	15시간 이상 1주간
표본규모	-	30,000가구	40,000가구	60,000가구	18,000가구

우리나라의 노동력에 대한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는 ILO의 기준을 따라 시행하고 있는데, 나라별로 그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주요국간의 노동력조사 방법과 개념을 비교해 보면 앞의 표와 같다.

IV 지 표

○ 경제활동인구

만 15세이상 인구중 조사대상주간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한다.

○ 취업자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한다.

○ 실업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구직활동을 하여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 실업률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cdot \text{실업률} = (\text{실업자} \div \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경제활동참가율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 인구) × 100

○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역할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된다.

○ 입직률

입직은 근로자가 사업체로 처음 들어오는 신규채용과 동일기업내의 다른 사업체로부터 배치전환에 의한 전입으로 이루어 지는데 입직률은 입직자수를 전월말 근로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이직률

이직은 근로자들을 기업이 정당한 사유로 면직시키는 해고, 근로자 자신의 희망에 의한 사직, 퇴직 그리고 동일 기업내의 다른 사업체로 배치전환에 의한 전출로 이루어지는데 이직률은 이직자수를 전월말 근로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정상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으로 구성된다.
 정상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 42조의 일반근로자 1일 8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유해위험작업근로자 6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소근로자 7시간) 이내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정상근로일(주휴일, 취업규칙상의 휴일은 제외)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말한다.
 초과근로시간은 정상근로시간이외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정규근로

시간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한다.

이 조사결과의 월평균근로시간수를 주당평균근로시간수로 환산하려면

$\cdot \text{주당근로시간} = \text{월근로시간} \div 30.4 \times 7$	이다
---	----

○ 임금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성됨

- 정액급여 :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사업체의 급여규칙 등으로 정상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여져 있는 지급액, 지급조건, 산정방법에 따라 다음의 3가지로 구성된다.

- ① 기본급 : 본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 등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 ② 통상적수당 :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근로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함. 이는 사업체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수당으로 직무, 직책, 자격, 책임자, 금융, 물가, 조정, 특수작업, 위험작업, 벽지, 한랭지, 생산장려, 기술, 승무수당 등이 포함됨.
- ③ 기타수당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적 수당으로서 가족, 정근, 근속, 통근, 연월차, 주택, 결혼, 월동, 김장, 급식수당 및 현물급여 등이 포함됨.

- 초과급여 : 정상근로시간외의 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로서 상여금, 기말수당,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산정, 지급되는 수당 등이며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는 임금인상 소급분이 특별급여에 포함됨.

○ 실질임금

$$\text{실질임금} = (\text{명목임금} \div \text{소비자물가지수}) \times 100$$

○ 노임단가지수

단위생산물당 임금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일반적으로 노임단가지수는 단위노동비용보다 작거나 같다. 왜냐하면 임금은 노동비용을 구성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 사업체

사업체라 함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행하는 개개의 물리적인 장소로서 회사, 공장, 상점, 여관, 병원, 학교, 사무소, 영업소, 출장소, 공사현장 등 일정한 지역을 점유하여 경제적인 활동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 종사원

종사원이라 함은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3개월 이상 결근자는 제외하고, 상용, 임시, 일용, 유급임원, 개인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생산종사원, 관리, 사무, 기술종사원으로 분류한다.

○ 재해발생률

통계의 대상이 된 기간 중에 발생한 총 재해건수를 동일기간 중 위험에 노출된 평균 근로자수로 나누어 1,000을 곱하여 계산한다.

$$\cdot \text{재해발생률} = \frac{\text{총재해건수}}{\text{평균근로자수}} \times 1,000$$

○ 재해강도율

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말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근로손실일수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누어 1,000분비로 산출한 것이다.

$$\cdot \text{재해강도율} = \frac{\text{총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

○ 재해도수율

연간근로시간수(월평균 근로시간×12×근로자수)에서 재해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만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발생건수를 말하며 재해가 일어나는 빈도를 나타낸다.

$$\cdot \text{재해도수율} = \frac{\text{총재해건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타 요소소득에 비해 노동소득분배분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에 있어서는 노동소득 및 국민소득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며 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국민소득의 범위를 국내총생산으로 산정하는 경우와 요소소득(국내총생산 - 간접세 - 고정자본소모)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간접세와 고정자본소모를 자본소득으로 보는 것이 되며, 후자의 경우는 간접세와 고정자본소모를 비용으로 파악하게 되는 차이가 있다.

또, 자영업주의 소득은 재산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소득전부를 영업잉여로 보고 피용자보수만을 노동소득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체 취업자 중 피용자의 비율이 낮은 경우 문제가 된다.

○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국민경제 전체로서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므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로 산출되며 통상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을 사용하며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적정임금을 산정시 주로 사용되는 노동생산성 지표이다.

·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 = (국내총생산 ÷ 취업자수)의 증가율

○ 기업경영분석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기업경영분석」의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은 종업원 한 사람이 산출한 부가가치의 전년대비 증가율로 측정되는 대표적인 노동생산성 지표이다.

·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 = (당기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 전기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 100 - 100

○ 한국생산성본부(KPC)의 노동생산성지수

- 물적 노동생산성지수

물적 노동생산성지수는 산업생산지수를 노동투입량지수로 나누어 지수화한 것으로, 노동투입량의 종류에 따라 전체종사원기준, 상용근로자기준, 생산직근로자기준 등 3가지 지수가 작성되고 있다.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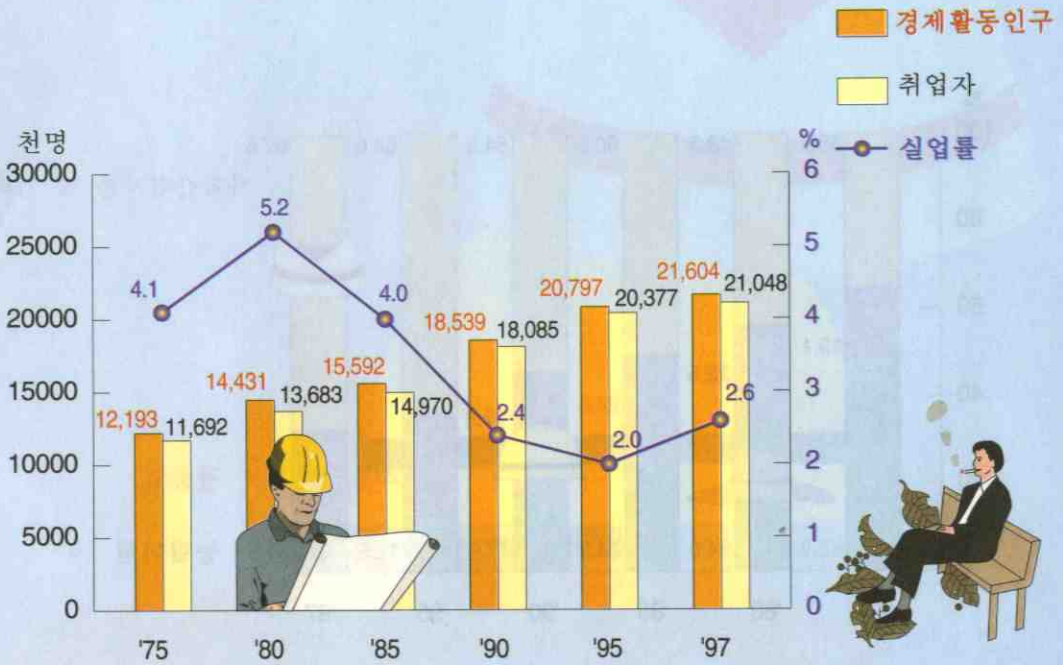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는 불변GDP 지수를 노동투입량지수로 나누어 지수화한 것으로 불변가격기준으로 산출되며 전체종사원 기준으로만 작성되고 있다.

- 노동생산성지수는 분기별로 작성되며 『생산성리뷰』를 통하여 발표된다.

<참고자료>

「경제활동인구연보」	1997	통계청
「매월노동통계」	1997	노동부
「KLI 노동통계」	1997	한국노동연구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1997	노동부
「생산성리뷰」	1997	한국생산성본부
「산업재해분석」	1997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1997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97	노동부

1.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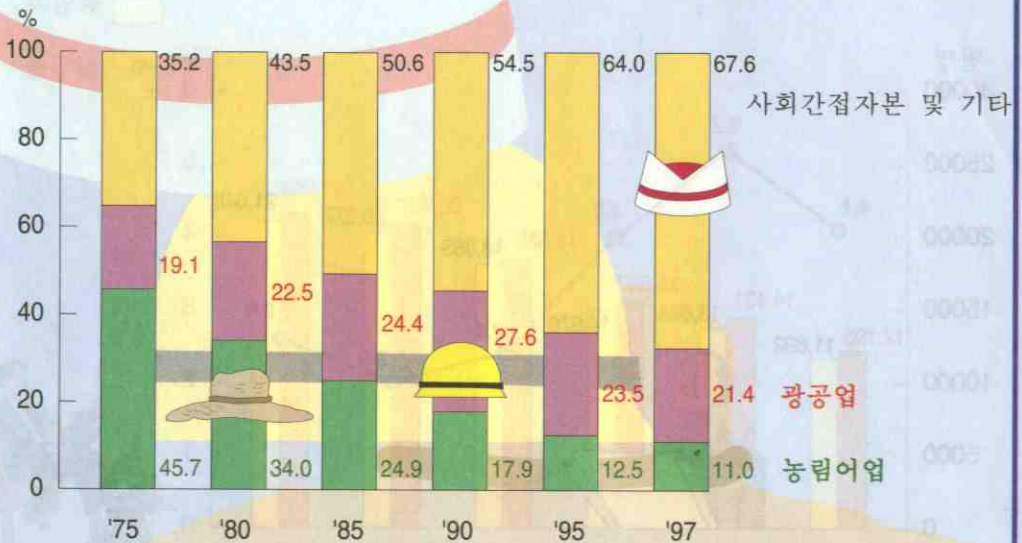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비경제 활동인구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1975	20,918	12,193	11,692	501	58.3	8,726	4.1
1980	24,463	14,431	13,683	748	59.0	10,032	5.2
1985	27,553	15,592	14,970	622	56.6	11,961	4.0
1990	30,887	18,539	18,085	454	60.0	12,348	2.4
1995	33,558	20,797	20,377	419	62.0	12,761	2.0
1996	34,182	21,188	20,764	425	62.0	12,994	2.0
1997	34,736	21,604	21,048	556	62.2	13,132	2.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 산업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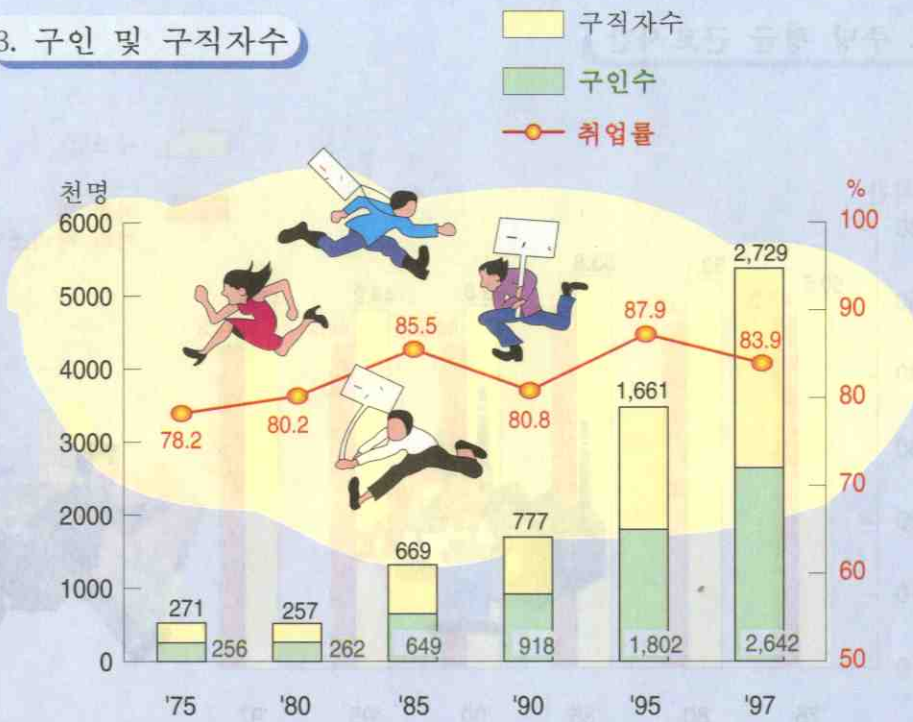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및기타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1975	5,339	45.7	2,235	19.1	4,118	35.2
1980	4,654	34.0	3,079	22.5	5,951	43.5
1985	3,733	24.9	3,659	24.4	7,578	50.6
1990	3,237	17.9	4,990	27.6	9,858	54.5
1995	2,541	12.5	4,799	23.5	13,037	64.0
1996	2,405	11.6	4,701	22.6	13,657	65.8
1997	2,324	11.0	4,501	21.4	14,223	67.6

주 : 1992년부터는 신산업분류에 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3. 구인 및 구직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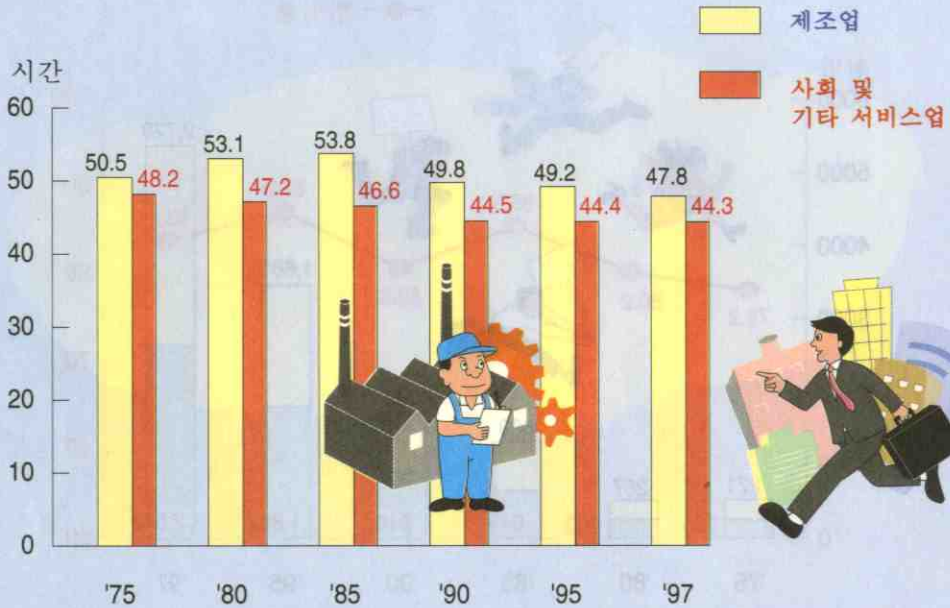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구인수	구직자수	취업자수	구직배율	구인배율	취업률
1975	256	271	212	1.06	0.95	78.2
1980	262	257	206	0.98	1.02	80.2
1985	649	669	572	1.03	0.97	85.5
1990	918	777	628	0.85	1.18	80.8
1995	1,802	1,661	1,460	0.92	1.09	87.9
1996	2,178	2,221	1,936	1.02	0.98	87.2
1997	2,642	2,729	2,290	1.03	0.97	83.9

자료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4. 주당 평균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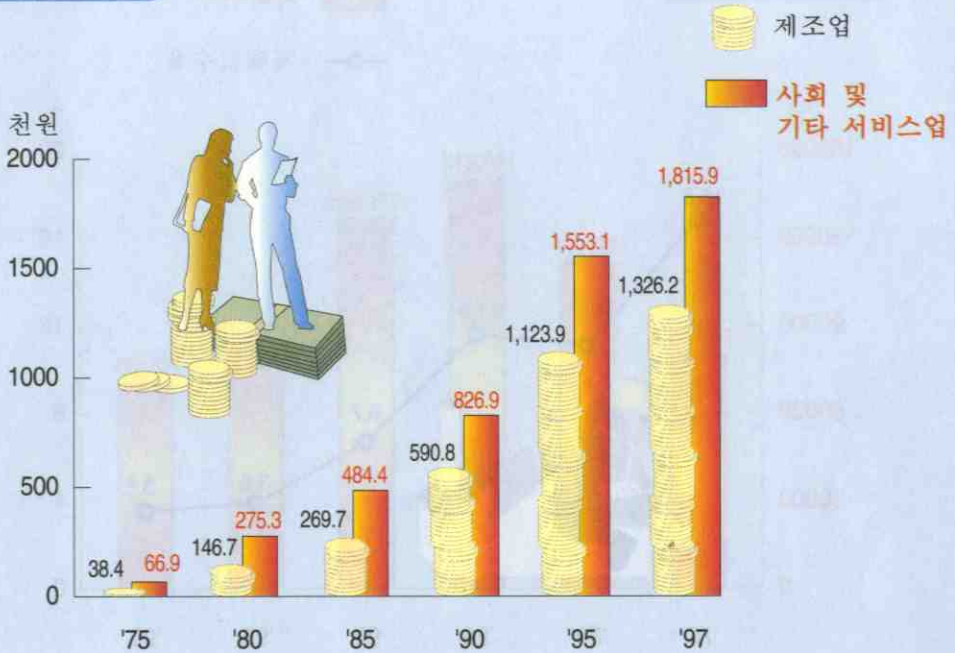
단위 : 시간

	평균	광업	제조업	전기가 스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S	사회및 기타S
1975	50.0	43.1	50.5	47.4	48.9	49.3	51.0	48.6	48.2
1980	51.6	42.0	53.1	48.6	50.4	50.5	50.4	45.4	47.2
1985	51.9	41.4	53.8	50.0	49.0	50.0	53.2	45.8	46.6
1990	48.2	36.2	49.8	47.8	45.8	47.5	48.9	43.6	44.5
1995	47.7	43.9	49.2	48.9	45.8	46.3	47.7	45.6	44.4
1996	47.3	43.8	48.4	49.7	45.0	45.5	49.3	46.2	44.5
1997	46.7	43.9	47.8	49.2	44.5	44.9	48.4	45.9	44.3

주 : 1994년부터는 신산업분류에 의한 자료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5. 월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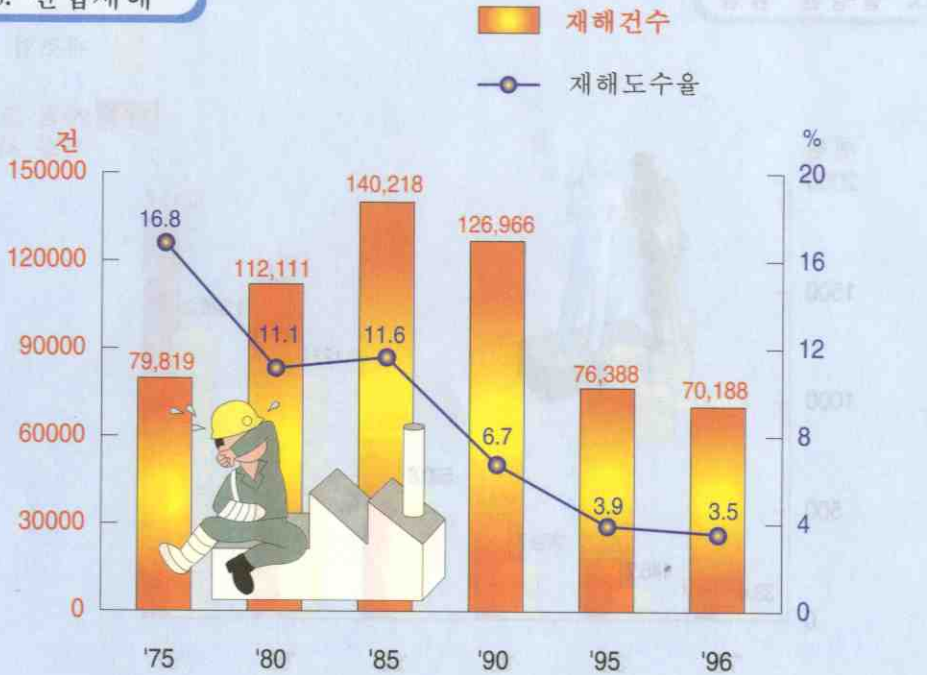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및 통신업	사회및기타 서비스업
1975	46.0	38.4	61.6	52.7	45.5	66.9
1980	176.1	146.7	257.7	211.0	203.5	275.3
1985	324.3	269.7	400.4	372.0	342.3	484.4
1990	642.3	590.8	745.4	655.2	584.1	826.9
1995	1,222.1	1,123.9	1,384.2	1,144.4	1,069.9	1,553.1
1996	1,367.5	1,261.2	1,501.3	1,284.0	1,260.1	1,694.8
1997	1,463.3	1,326.2	1,623.6	1,394.2	1,398.5	1,815.9

주 : 1994년부터 신산업분류에 의한 자료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6. 산업재해



단위 : 건, 명, %

연도	재해건수	재해자수		재해도수율	재해강도율
		사망자	부상및질병		
1975	79,819	80,570	1,006	79,564	-
1980	112,111	113,375	1,273	112,102	-
1985	140,218	141,809	1,718	140,091	-
1990	126,966	132,893	2,236	130,657	2.2
1994	84,480	85,948	2,678	83,270	2.5
1995	76,388	78,034	2,662	75,372	2.1
1996	70,188	71,548	2,670	68,878	2.2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6. 농림어업통계



통계조사 및 통계

농업총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작물통계조사,
가축통계조사, 산림기본통계조사, 임산물생산통계,
어업총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 어업생산고조사

주요 통계지표

농가인구, 농경지, 작물, 곡물자급률, 가축사육두수,
농가수지, 농가재산

통계표 및 도표

경지면적, 농가 및 농가인구, 곡물생산량,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어가인구 및 어가경제,
농림수산물 수출입

농림어업통계

I 전산업 가운데 농림어업 비중 10% 미만으로 축소

농림어업은 자연으로부터 기르거나 채취, 포획 등을 통하여 식물이나 동물 등 우리가 음식으로 취하는 것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일반적으로는 낮은 기술력에 의해서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후진국의 주 산업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60년대에는 산업상 비중이 가장 큰 부문이었으나 '70년대 이후 산업화의 지향으로 그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어 이제는 산업상 비중이 10% 미만으로 축소되었고, WTO의 출범에 의한 쌀값의 외국 농산물의 유입으로 계속적인 위축이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인구의 10% 이상이 농가인구이고, 산업의 균형성장, 식량안보 등의 측면에서 농업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 농림어업통계의 종류

농림어업부문에 관한 통계에 대하여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통계조직을 통하여 10년 간격의 농업총조사, 어업총조사와 매년의 농업기본통계조사 및 농작물, 임산물, 수산물 등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개별 통계조사보고서 및 농림통계연보, 해양수산통계연보 등의 간행물을 통하여 그 조사결과가 자세히 수록, 발간되고 있다.

농림어업에 관련된 조사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수립 등을 위한 10년 간격의 총조사와 주요 관심지표의 변화추이를 보기 위한 농림어업생산물 및 그 수급에 관련된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조사 주기별로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주기 : 농업총조사, 어업총조사 · 5년 주기 : 과수실태조사 · 1년 주기 : 농업기본통계조사, 농가경제통계조사, 작물통계조사, 농산물 생산비통계조사, 농기계보유현황, 과실 및 채소류가공통계조사, 경지면적통계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 어가경제통계조사 |
|---|

각종 통계조사의 결과가 보고서로 발간되며, 이러한 통계를 종합하여 농림통계연보로 발간하고 있으므로 이용에 편리하고, 농림업주요통계 역시 종합통계지이면서 자료를 시계열에 의해 정리하고 있어 이용에 편리하다.

II 농림어업관련 주요통계 및 통계조사

1. 농업총조사

농업총조사는 농가, 농가인구, 농경지, 작물 수확면적, 가축사육, 농기계, 문화시설 등 농업의 기본구조 현황과 농업구조의 변동추세를 파악하여 농업정책수립 및 국가경제종합개발 등 제반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농업관련 학술연구분석자료 및 각종 농업통계 개선을 위한 모집단자료 정비, FAO회원국간에 비교 가능한 농업통계 자료를 작성·교환하므로써 세계적인 식량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부에서 10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다.

농업총조사는 조사시점 현재 농가정의에 해당하는 전국의 개인농가 및 준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농가, 농가인구, 농경지, 작물, 가축 및 가금, 농기계, 농작업, 문화용품 및 문화시설, 영농형태, 농·축산물 판매, 향후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농업총조사는 1960년 UN/FAO의 권고에 따라 '62년 2월 1일 제1차 농업국세조사가 실시된 이래 매 0자년 12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같은해 12. 11~12. 22일까지 12일간 조사한 사항을 동·읍·면 단위까지 집계하여 「농업총조사」(1권 : 전국편, 2~11권 : 시·도편) 보고서로 발표되고 있다.

2. 농업기본통계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는 농가, 농가인구, 경지규모, 영농형태 등 농업경영의 기본요소에 대한 자료를 농업정책수립과 연구 및 농업경영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부에서 매년 전국의 4,101개('96년) 표본조사구내의 농가정의에 부합하는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 청취하는 조사이다.

이 조사는 전년 12. 1~당년 11. 30(1년)까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매년 12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2. 1~12. 20까지 20일간 이루어 지는데, 그 조사사항으로는 전·겸업별·경지규모별·영농형태별·농가변동요인별 농가수와 경지면적, 보유형태별·수원지 시설별 농경지, 연령별·성별·농사종사기간별·주 종사분야별 농가인구, 가구원의 증감내역 등이다.

조사결과는 매년 시·군 단위로 집계되어 「농업기본통계」란 간행물을 통해 발표된다.

3. 작물통계조사

작물통계조사는 작물별 과종면적과 생산량을 파악·분석하여 토지이용의 개선, 농산물의 수급 및 증산계획과 가격안정, 농가경영개선 등 농업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농림부에서 조사하는 통계이다.

작물통계조사는 재배면적조사와 생산량조사(10a당 수량조사)로 나누어 지는데 이 중 재배면적조사는 표본조사방식으로 재배면적, 규반면적, 가경면적을 과종직 후에, 생산량조사는 전 농경지에 재배되고 있는 작물(총 50개품목)을 대상으로 논벼 등 19개 주요작물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방식으로 그 외의 작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방식으로 수확기에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매년 도단위로 집계되어 「농림통계연보」, 「작물통계」 보고서로 발표 된다.

4. 가축통계조사

가축통계조사는 가축의 사육규모별 가구수와 연령별·성별 마리수를 지역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축산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농림부 산하 시·군 통계출장소에서 현지 조사한 것을 농림부에서 집계하는 조사통계이다.

조사방법은 일정사육규모 미만의 가축은 표본조사하고 규모 이상의 사육가축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하는데 표본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4,767개 조사구를 표본으로 조사구내의 전가구를, 전수조사는 표본조사구내외를 막론하고 전수대상 전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청취방법에 의한다.

이 조사는 주요가축에 대해서는 3, 6, 9, 12월 1일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기타 가축은 6, 12월 1일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이루어 지는데 조사사항은 돼지, 닭, 한·육우, 젓소 등에 관한 종별, 연령별 마리수 및 사육동향 등 기타 가축에 관한 성별·종류별 마리수 등의 내용이다.

조사결과는 매 분기(기타 가축통계는 반기)별로 시·도 단위로 집계되어 「가축통계」 및 「기타가축통계조사결과」에 수록되어 발표된다.

5. 산림기본통계조사

산림기본통계조사는 매 연도말에 현재의 임야면적과 임목축적을 조사하여 산림정책수립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산림청에서 조사하는 조사통계이다.

조사방법은 구·시·군 및 영림서의 관리소를 최소 조사단위로 한 행정통계 조사방법에 의하는데 조사년도 중 임야면적과 임목축적의 증감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전년도말 통계치에 가감하여 연도말 현재의 통계를 확정한다.

이 조사는 매 년말을 기준으로 다음해 1~2월에 걸쳐 이루어 지는데 그 조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유 및 소관, 지종 : 국유림(산림청소관, 타부처소관), 민유림(공유림, 사유림), 시업지(임목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임지), 시업제한지(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및 개발제한구역)
- 임지 및 임상
 - 임목지 : 교목(喬木)의 울폐도(鬱廢度) 30% 이상인 임분 또는 1ha당 1,200본 이상의 침엽수 치수(稚樹)나 1,600본 이상의 활엽수가 고르게 생육하고 있는 임분(林分)으로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죽림으로 구분된다.
 - 무임목지 : 무임목지는 지피와 수관의 총 피복도가 50% 이상인 미임목지, 총 피복도가 50% 이하인 황폐지, 경사도 20° 미만의 산림이 불법 개간된 경작지, 도로·암석지·묘지 등과 같이 임목 육성에 쓰이지 않는 임지로 나누어 진다.
- 령급(齡級) : I령급(1~10년생)부터 VI령급(51~60년생, 61년생 이상 포함)으로 구분된다.

조사결과는 매년 시·도, 영림서별로 집계되어 「임업통계연보」에 발표된다.

6. 임산물생산통계

임산물생산통계는 매 연도 중의 임산물생산량과 금액을 조사하여 산림정책수립과 국민총생산(GNP) 산출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작성하는 조사통계이다.

이 조사는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가(林家)를 대상으로 생산수량조사와 생산금액조사로 나누어 진다. 생산수량조사는 생산시기별로 년 3회 즉 봄철생산분은 6월말 현재, 여름·가을생산분은 10월말 현재, 연중생산분은 1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미터법에 의한 계량단위로 조사한다.

생산금액조사는 시·도 및 영림서 단위로 1개 품목 1개 단가를 적용해 생산자가 1차 매도하는 가격을 조사하되 농용자재, 지엽 등 자가소비품목은 생산비기준으로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생산가격을 산출한다. 단 떡갈잎, 명개잎, 송이 등과 같이 임업협동조합에서 독점 수집하는 품목은 수집기관의 인수가격을 적용한다.

품목별 생산시기로부터 출하시기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하는 조사대상품목은 용재, 죽재, 연료(목탄, 장작, 지엽, 기타), 농용자재(녹비, 퇴비, 사료), 종실(밤, 대추,

호도, 잣, 도토리, 낙엽송 종자, 은행, 유동, 동백, 비자, 산딸기, 소나무종자, 기타), 버섯(송이, 목이, 느타리(자연생), 표고, 기타), 수지(생송이, 칠액, 기타), 탄닌 원료(오배자, 오리나무구과, 기타), 섬유원료(갈저, 닥나무, 산닥나무, 싸리나무껍질, 기타), 약용(산수유, 황벽나무껍질, 약초, 기타), 기타(굴참나무껍질, 죽순, 산나물, 떡갈잎, 명개잎, 다람쥐, 토석, 기타) 등이다.

조사결과는 년 단위로 시·도 및 영림서별로 「임산물생산통계」에 수록하여 발표된다.

7. 어업총조사

어업총조사는 전국 어가 및 어업경영체를 조사대상으로 어업의 기본적인 생산구조, 취업상황 및 어민의 생활상태 등을 계수적으로 조사, 파악하는 것으로 이는 수산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아울러 국제상호간의 비교분석자료로 이용되며, 어가경제조사 및 어업생산고조사 등 각종 수산통계조사의 표본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70년부터 10년주기로 조사하고 있다.

어업총조사는 조사실시전 1년간에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체(개인, 회사, 공동, 단체·연구기관)와 수산관련시설(어항, 수산물 유통·제조, 보급시설)을 대상으로 경영체, 어선, 양식장시설, 어업활동 및 경영상황, 어가, 어가인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해면어업은 동·읍·면 단위까지, 내수면, 수산관련시설은 구·시·군 단위까지 결과를 집계하여 「어업총조사보고」 간행물에 수록, 발표한다.

8. 어업기본통계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는 10년마다 실시되는 어업총조사 사이의 어업가구, 어업가구원, 어업종사자수에 관한 연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전국의 424개 표본조사구내의 가구주나 가구원 중에서 조사기준일 현재 지난 1년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어업에 종사한 어업경영자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청취하는 조사이다. 이 조사는 전년 10. 31~당해년도 10. 31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1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매년 11. 1~11. 15일 까지 15일간 이루어지는데, 그 조사사항은 가구의 어업형태, 어업가구의 성격, (전·겸업별, 주된 어업별, 주된 겸업별), 가구원 및 종사자(연령별, 성별), 원양어업 승선원, 양식장 시설규모(양식종류별 면적) 등의 내용이다. 조사결과는 매년 시·도 단위로 집계되어 「어업기본통계」란 간행물로 발표된다.

9. 어업생산고조사

어업생산고통계는 매월 어업생산동태를 계수적으로 조사 파악하여 수산정책 수립 및 수산자원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하는 보고통계이다. 이 조사는 해면 및 내수면에서 판매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활동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동·식물의 양과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조사사항은 수산물 매매기록, 수산물 비계통 생산고, 원양어업 생산실적, 해구별(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어종별 어획량, 원양어업 해역별·어업별 어획량, 내수면(어로양식)어업 어종별(어류, 패류, 조류, 갑각류, 기타수산동물)생산량 및 금액 등의 내용이다. 조사결과는 매월 도단위로 집계되어 「어업생산량통계」에 수록하여 발표한다.

Ⅲ 농림어업통계의 특성

농림어업통계의 기본적인 조사단위는 통상 주거와 살림을 같이 하는 단위인 가구이다. 가구의 정의는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농림어업통계에서 사용하는 가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농업가구

농가라 함은 생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농가정의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말하는데 이는 전업농가와 겸업농가로 나누어 진다.

농가정의

1. 조사시점 현재 경지(논, 밭) 10a(약 300평)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
2.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4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3. 위의 각호 규모이외의 가구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구
 - ① 대가축(한우, 젃소, 고기소) 1마리 ② 중가축(돼지, 면양, 산양 등) 3마리
 - ③ 소가축(토끼) 및 가금(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 40마리 이상을 사육하거나 ④ 꿀벌 5군 이상을 치는 가구

○ 전업농가

전업농가는 농사에만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와 농사 이외에 돈벌이 또는 영업에 종사하였다더라도 연간 누계일수가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농사에 종사하였다 함은 논밭에 나가 직접 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농사내용을 알고 현장 감독하는 것과 남의 집 농사에 종사한 경우도 해당된다.

○ 겸업농가

겸업농가는 돈벌이를 위하여 농사이외의 일 또는 영업에 연누계 일수가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제1종 겸업농가 : 농가전체로 보아 농업수입이 겸업수입보다 많은 겸업농가
- 제2종 겸업농가 : 농가전체로 보아 겸업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겸업농가
- 경영주 겸업농가 : 경영주가 겸업에 연누계 30일 이상 종사한 일이 있는 농가
- 가구원 겸업농가 : 경영주는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한 일이 없고, 가구원 중에서 농사 이외의 일에 연누계 30일 이상 종사한 일이 있는 농가
- 경영주와 가구원 겸업농가 : 경영주의 가구원이 함께 겸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

☞ 어업가구

어업가구는 가구주나 가구원 중에서 1년간에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내수면(하천, 강, 댐, 호수, 늪, 저수지 및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 또는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로서 전업가구, 겸업가구(1종, 2종 겸업가구)로 나누어 진다.

IV 지 표

○ 농가인구

조사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한 농가에서 3개월 이상 같이 살았거나 3개월은 되지 않았어도 조사 기준일을 전후하여 3개월 이상 같이 살게될 사람이 모두 포함되며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부, 유모, 상시농업고용인까지도 포함된다. 다만, 하숙생과 농사이외의 일로 고용된 사람은 제외된다.

○ 농경지

농경지는 조사기준일 현재 경작하고 있는 경지(논, 밭)를 말하며 소유여부를 불문하는데 논과 밭으로 구분된다.

- **논** : 관개설비를 갖추고 담수를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경지로서 토지대장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주로 논벼, 미나리, 왕골, 연뿌리 등을 재배하는 농경지를 말한다.
- **밭** : 관개설비를 갖추지 않고 일반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경지와 과수원, 뽕밭, 관상수, 묘포 등 나무를 심은 밭이 포함되며, 나무를 심은 밭은 30평 이상 집단 재배한 것만 조사대상이 되고 산재된 것은 제외한다.

○ 작물

작물은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아 사람의 재배대상이 되는 식물을 의미하는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작물의 분류**

- 식량작물 : 밀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 채소 :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 기타채소, 시설채소
- 과수
- 특용작물 : 특용, 약용
- 수원지 : 뽕밭, 묘포, 관상수원, 기타수원지
- 기타작물 : 전매작물, 묘상(논벼묘상, 기타곡류, 채소, 기타), 기타(사료작물, 녹비작물, 화훼 등)

- **작물생산량** : 작물생산량은 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한 일정기준(품질규격) 이상의 양을 말한다.

- **생산량의 표시**

- 식량작물의 생산량 표시는 작물별로 적용되는 양곡환산표에 의해 정곡으로 표시한다.

- 서류의 생산량은 생서로 표시하며 정곡환산율(감자 20%, 고구마 31%)을 적용하여 정곡으로도 표시한다.
- 시설고추는 풋고추 중량으로, 노지고추는 건고추 중량으로 표시한다.

○ 곡물자급률

곡물의 자급률은 전년도 전체 곡물생산량을 금년도 곡물 총수요량으로 나누어 백분비로 산출한다. 곡물의 총공급은 전년이월 + 금년도생산 +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수요는 식량용 + 가공용(식용, 양조용, 기타) + 사료용 + 종자용 + 감모·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곡물자급률과 구분되는 식량자급률은 전년도 곡물생산량을 사료용을 제외한 금년도 총수요량으로 나누어 백분비로 산출한다.

○ 가축사육두수

- **한육우** : 젖소 암컷을 제외한 모든 소를 말하며 한우, 고기소, 젖소 수컷 등을 말한다.
- **젖소** : 젖을 얻기 위하여 사육하는 소로서 홀스타인, 저지, 건지, 기타 유용종의 암컷만을 말한다.
 - 경산우(經産牛) : 한번이라도 분만을 경험한 건유우와 착유우
 - 착유우(搾乳牛)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젖을 짜고 있는 젖소
- **변동상황**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개월간 조사가구에서 생산, 구입, 폐사, 출하한 총마리수를 조사한다.
 - **생산** : 분만된 마리수를 말하며 사산한 것은 제외하고, 분만후 죽은 경우는 생산과 폐사에 모두 조사한다.
 - **구입** : 사육가구가 매입, 증여 받은 것 등 외부에서 들여온 총마리수
 - **폐사** : 사육가구에서 사육도중(분만 또는 구입직후 포함) 병사 또는 기타 사유로 죽은 마리수
 - **출하** : 사육가구에서 사육 또는 생산한 가축을 판매, 증여, 자가도축 등으로 감소된 마리수

○ 농가수지

- **농업조수입** : 농가가 당해년도의 농업경영결과로 얻은 총수입으로서 농산물 판매수입, 현물지출평가액(지대, 노임 등), 자가생산 농산물의 자가 소비평가액, 대동식물 증식액 및 미처분 농산물 재고증감액을 합제한 총액이다.
- **농업경영비** : 농업조수입을 획득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구입하여 투입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업지출 현금, 농업지출 현물평가액(지대, 노임 등), 농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 농업용 차입금이자, 농업생산자재 재고증감액을 합산한 총액을 말하며, 자가생산한 농산물 중 농업경영에 재투입한 사료, 퇴비 등의 중간생산물은 제외한다.
- **농업소득** : 농업조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당년도 농업 생산활동의 성과임. 농업소득은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보수로서 토지, 노동 및 자본에 귀속될 보수와 경영보수로 이루어져 있다.
- **겸업수지** : 겸업수입은 농가가 농업외에 경영한 사업으로서 임업, 수산업, 농산가공, 상공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획득되는 수입과 산나물, 들나물, 버섯류 등의 원시취득물 판매수입을 말하며, 겸업지출은 이를 얻기 위하여 지출되는 일체의 소모적 비용을 말한다.
- **겸업소득** : 겸업수입에서 겸업지출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농가의 농외사업 활동의 성과이다.
- **사업이외 수지** : 사업이외 수입은 농업이나 타산업에 고용되어 얻은 노임 및 급료수입, 임대료, 배당금, 이자와 가계폐품 등을 매각하여 얻은 가사 잡수입을 말하며, 사업이외 지출은 이를 얻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농외차입금이자 및 농외취업용 비용을 말한다.
- **이전수입** : 농가의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으로서 이에는 사례금, 출타 가족이 본가에 송금한 송금보조 및 축·조의금, 타인으로부터의 보조금, 퇴직일시금 등을 포함한다.
- **농가소득** : 농업소득, 농외소득(겸업소득, 사업이외소득), 이전수입을 가산한 합계액

- **조세공과금 및 제부담금** : 연간 농가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 제 조합비·적십자회비·이장 수고비·각종 부락공동부담금 등
- **가처분 농가소득** : 농가소득에서 조세공과금 및 제부담금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농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데 가처분농가소득은 가계비 등의 소비지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및 다음연도의 농업 및 농외 사업을 위한 저축 등으로 사용된다.
- **가계비** : 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拂되는 소모적 비용으로서 음식물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비, 교육·교양오락비, 가계잡비 등의 합계액으로서 현금지출외에 자가생산물 자가소비액 및 지대·노임 등 현물수입의 가계 지출평가액, 주거용건물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 **분가지출** : 농가에서 분가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농가경제잉여** :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비 및 분가지출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연간 농가의 농업생산활동 및 농외소득활동 결과로부터 얻은 잉여를 말함 (플러스는 농가경제 흑자, 마이너스는 적자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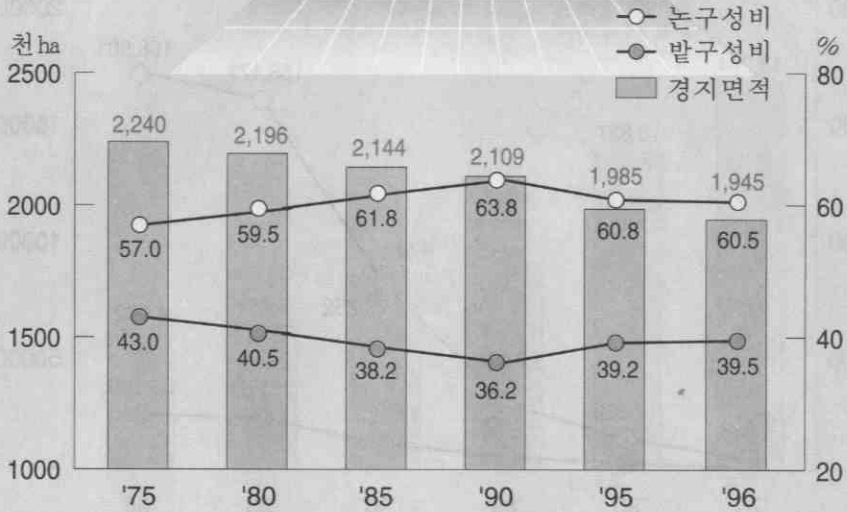
○ 농가재산

- **농가재산** : 농가의 자산과 부채를 말하는데 농가는 이들 재산으로 경영 활동과 소비활동을 한다.
- **자산** : 농업경영의 용역편익을 제공하고 화폐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농가가 소유한 일체의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농가는 경영과 가계가 미분리상태에 있기 때문에 건물이나 현금 같은 자산은 가계용, 농업용으로 겸용되는 경우가 있다. 농가자산은 용역제공횟수에 따라서 고정자산, 유동자산, 유통자산으로 분류된다.
- **고정자산** : 1회의 사용으로 그 가치 전부가 소모되지 않고 용역편익을 수 년도에 걸쳐 제공하는 자산을 말하며, 이 기간을 내용년수라 한다.

<참고자료>

「농업총조사보고서」, 「농업기본통계」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작물통계」 1997 농림부
 「가축통계」, 「기타가축통계 조사결과」 1997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1997 농림부
 「어업총조사보고」, 「어업기본통계」 해양수산부
 「어업생산량통계」 1997 해양수산부
 「임업통계연보」, 「임산물생산통계」 1997 산림청
 「통계용어정의집」 통계청
 「한국통계조사현황」 통계청

1. 경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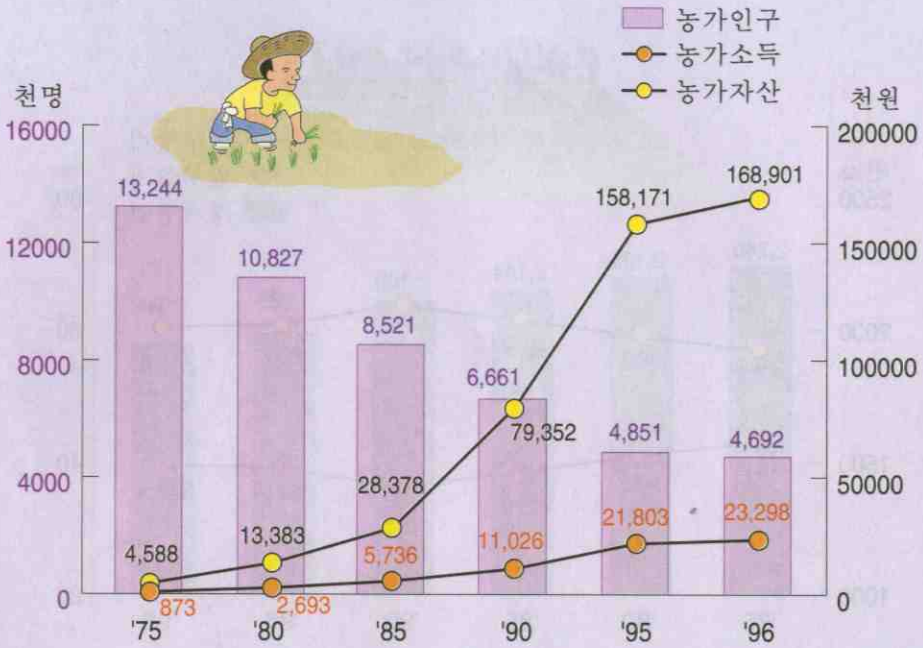


단위 : 천ha, %

	경지면적					가구당 경지면적(a)		
		논		밭			논	밭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1975	2,240	1,277	57.0	963	43.0	94.1	53.6	40.5
1980	2,196	1,307	59.5	889	40.5	101.8	60.6	41.2
1985	2,144	1,325	61.8	819	38.2	111.3	68.8	42.5
1990	2,109	1,345	63.8	764	36.2	119.4	76.1	43.3
1995	1,985	1,206	60.8	779	39.2	132.3	80.4	51.9
1996	1,945	1,176	60.5	769	39.5	131.5	79.5	52.0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 천호, 천명, % , 천원

	농가수	농가인구		농가당 인구(명)	호당 농가소득		호당 농가자산	
		인구대비	인구(명)		농업소득	고정자산		
1975	2,379	13,244	37.5	5.6	873	715	4,588	3,963
1980	2,155	10,827	28.4	5.0	2,693	1,755	13,383	11,795
1985	1,926	8,521	20.9	4.4	5,736	3,699	28,378	24,810
1990	1,767	6,661	15.5	3.8	11,026	6,264	79,352	69,667
1995	1,501	4,851	10.8	3.2	21,803	10,469	158,171	134,334
1996	1,480	4,692	10.3	3.2	23,298	10,837	168,901	142,665

주 : 인구대비는 연앙추계인구 대비임.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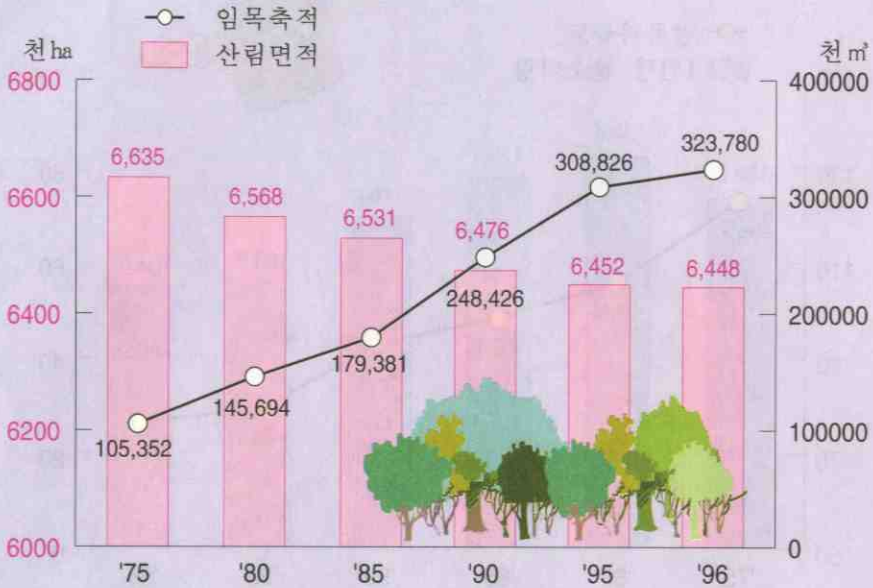
3. 곡물생산량



	생산량(천M/T)					1인당 쌀 소비량 (kg)	양곡 자급도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1975	4,669.1	1,806.2	92.1	349.3	737.6	123.6	73.1
1980	3,550.3	905.9	170.1	266.2	431.2	132.4	56.0
1985	5,625.9	583.7	146.6	274.8	359.0	128.1	48.4
1990	5,606.0	417.3	132.9	271.3	207.9	119.6	43.1
1995	4,695.0	292.0	86.5	189.3	212.9	106.5	29.1
1996	5,323.0	298.9	83.5	189.1	250.7	104.9	26.7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4.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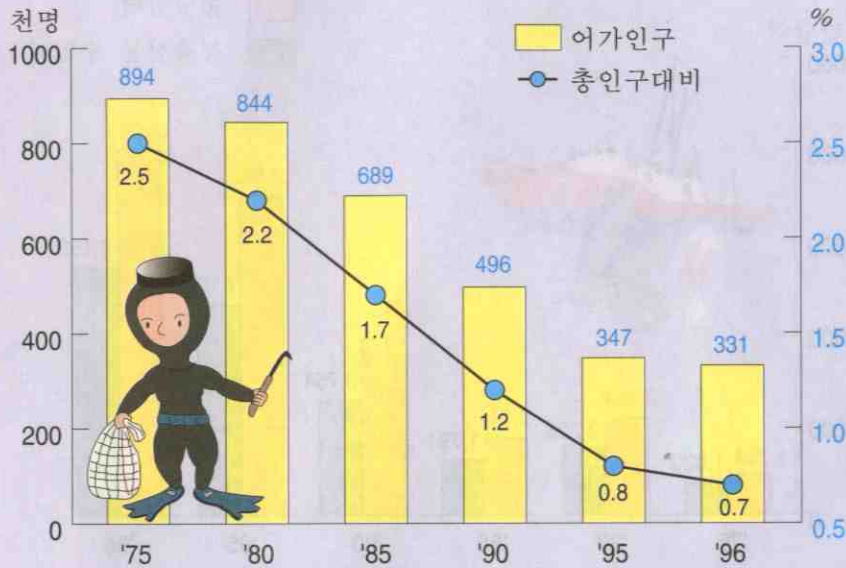
단위 : 천ha, 천m³, %

연도	총 계		임 목 지				무 임 목 지	
	산림 면적 ¹⁾	임목 축적	면적	구성비	침엽수림		면적	구성비
					면적	임목 축적		
1975	6,635	105,352	5,981	90.1	3,201	40,245	647	9.8
1980	6,568	145,694	6,301	95.9	242	3.7
1985	6,531	179,381	6,268	96.0	3,280	81,849	244	3.7
1990	6,476	248,426	6,286	97.1	3,079	113,869	174	2.7
1995	6,452	308,826	6,263	97.1	2,877	140,641	188	2.9
1996	6,448	323,780	6,255	97.0	2,846	144,843	193	3.0

주 : 1) 미조사지 면적 포함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요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5. 어가인구 및 어가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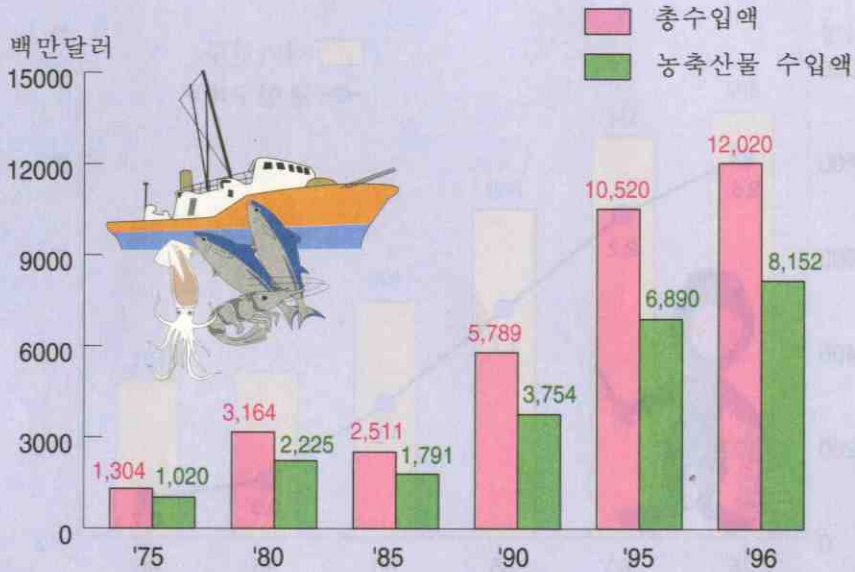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천원

	어가 (천호)	어가인구		어가당 인구	어업 종사자	어가소득		어가지출	
		총인구 대비				(호당)	어업 소득	(호당)	가계비
1975	154	894	2.5	5.8	323	847	508	434	429
1980	157	844	2.2	5.4	339	2,596	1,752	2,140	1,998
1985	145	689	1.7	4.8	260	4,869	2,815	3,890	3,607
1990	122	496	1.2	4.1	212	10,023	5,217	7,269	7,072
1995	105	347	0.8	3.3	176	18,780	9,437	13,355	13,139
1996	102	331	0.7	3.3	172	19,039	10,526	14,260	13,946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6. 농림수산물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수출액	수입액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1975	948	1,304	255	1,020	294	274	399	10
1980	1,930	3,164	541	2,225	629	912	760	37
1985	1,543	2,511	388	1,791	264	629	891	91
1990	2,920	5,789	795	3,754	610	1,665	1,513	370
1995	3,469	10,520	1,242	6,890	505	2,778	1,722	843
1996	3,464	12,020	1,424	8,152	405	2,788	1,635	1,080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농림통계연보」

7. 광공업통계



통계조사 및 통계

광공업통계조사(산업총조사), 광공업동태조사,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 기계수주통계조사

주요 통계지표

생산액, 부가가치, 출하액, 사업체, 종사자수,
유형고정자산, 연간급여액,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지수,
평균가동률, 전월비와 전년동월비, 계절변동조정지수

통계표 및 도표

광업사업체 및 종사자, 제조업사업체 및 종사자,
광업생산규모, 제조업생산규모, 산업생산지수,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 지수

광공업통계

I 광공업은 '60년대 이후 성장의 주역

우리나라의 산업은 '60년대 이후 광공업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수출산업과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과거 선진국에서 기술과 자본재를 도입하여 단순가공 조립하던 체제에서 출발하여 자체기술로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할 만큼 발전하였다.

광공업은 경제개발 초기에 비하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나,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수출의 대종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 광공업통계의 종류

광공업의 규모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나 산업총조사는 전체적인 규모파악을 위한 전국단위의 연간조사이고, 광공업 동태조사,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 조사는 광공업의 변동파악을 위한 대표적인 월간 표본조사이다. 또한 각종 광공업 관련분야의 협회, 단체 등에서도 관련산업의 세부적인 규모나 변동파악을 위한 부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II 광공업관련 주요통계 및 통계조사

1. 광공업통계조사(산업총조사)

광공업통계조사(산업총조사)는 광업 및 제조업(산업총조사는 전기·수도·가스업 포함)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의 구조, 지역별 분포 및 생산활동실태 등을 파악하여 경제정책수립, 평가 및 각종 광공업부문 조사의 모집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산업에 관련된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이다.

광공업통계조사는 산업총조사와 함께 하나의 시계열을 이루어 조사하고 있다. 산업총조사가 산업의 세부적이고 정밀한 구조파악을 위하여 종사자규모로는 1인 이상 전체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조사대상산업으로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을 포함하는데 비하여 광공업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 이상사업체에 한

하여 광업과 제조업만을 조사대상산업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광공업통계조사는 산업총조사가 실시되는 연도(끝자리가 3, 8자년도 실시)를 제외하고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체의 출하(제품별 출하, 수출, 재고 및 제품별 수탁생산액 등), 재고, 비용에 관련된 사항(직접생산비, 간접생산비), 종업원에 관한 사항과 급여, 그리고 시설 등과 관련된 유형고정자산 관련사항을 조사한다.

물론 산업총조사에서는 산업분석과 관련하여 사용용수량, 공작기계보유 및 사용에 관련된 통계 등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관련부문의 분석에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사항은 통상 산업별로 집계, 분석되어 활용되고 있고, 품목별 자료도 사업체의 규모별, 지역별로 사업체수, 출하액 및 수량, 재고액 등에 관련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 광공업통계조사 자료의 이용

광공업통계조사는 산업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연도에 매년 4월 중 조사를 실시하여 10월경 잠정결과를 발표하고 다음해 2월경에 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는 전국편과 지역편의 2권으로 구성되며 각 보고서의 내용은 산업 세세 분류단계까지의 집계된 조사내용을 수록하는 총괄부와 품목자료를 정리한 부분으로 구성된다. 최근부터 지역편 자료는 각 시도에서 분리, 발간하여 이용되고 있다.

산업총조사의 경우는 끝자리가 3, 8자년도에 실시한 조사내용이 조사후 1년 후에 보고서로 발간되는데 최근 자료는 1993년자료가 1995년 5월에 보고서로 발간되었으며, 보고서는 전국편, 지역편과 공업단지, 공작기계, 영세사업체 및 전기·가스·수도사업의 총조사에서만 조사되는 자료를 따로 모은 기타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록항목은 광공업통계조사에서와 유사하다.

○ 자료이용상의 유의점

광공업통계조사자료는 사업체를 기초로 조사한 통계이다. 그 결과는 산업편과 품목편으로 나뉘어 집계, 공표되고 있으며, 산업편의 자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에 따라 집계되고 있다. 여기서 산업편의 집계는 사업체의 주산업분류에 의해 집계한다. 주산업분류의 결정은 사업체의 생산품이 여러개의 산업에 걸쳐 있을 때 그 중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이 주 산업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주산업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산업편 자료에서는 주산업분류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품목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이용한 광공업통계조사용 품목코드를 적용하고 있는데 자료는 5단위 분류까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5자리내에 해당제품을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품목별 자료분류체계는 대다수 품목이 품질이나 규격이 감안되지 않은 분류체계로 되어 있어, 타자료와의 총량비교는 가능하나 세부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리고 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자료시계열 비교의 문제로 통계청에서는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고 상호 비교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1년에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여 1992년에 실시한 통계조사부터 개정된 산업분류에 의해서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자료와 과거의 자료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91년 이전의 구산업분류자료는 신산업분류로 연결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91년 이전자료를 신산업분류로 연결되어 있는 연도는 '83년, '88년, '90년, '91년이다.

지역별로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소급, 조정된 자료의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시 유의하여야 한다.

2. 광공업동태조사

광공업동태조사는 산업생산·출하·재고지수를 편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월 주요품목의 생산·출하·재고량 등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통상 산업생산지수가 생산자제품출하지수, 생산자제품재고지수와 함께 알려져 있는데 이는 광공업동태조사의 결과물로서 광공업의 생산·출하·재고활동을 월간단위로 파악함에 의해 소비, 투자, 대외거래, 고용 등의 지표와 함께 실물경기의 동향을 분석·평가하는데 이용되는 중요성이 높은 경제지표이다.

산업생산·출하·재고지수는 광업·제조업·전기가스업 3개부문의 산업활동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대표적인 경제지표로서

- ①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의 국내경제활동전체(GDP)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96년의 경우 28.3%) 도소매업, 운수업 등 관련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 ② 광공업의 생산·출하·재고활동은 경기의 움직임을 매우 민감하게 반영하여 경기하강기에는 총수요 감소로 인해 출하가 감소됨에 따라 재고가 증가하

여 생산을 줄이게 되고, 경기상승기에는 출하가 증가함에 따라 재고가 줄게 되어 생산을 확대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므로 경기판단을 위해 산업생산지수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 ③ 그리고 산업생산·출하·재고지수는 속보성을 가지고 있어 익월 말경에는 공표가 됨으로써 실물경제동향을 매우 신속히 알려주는 지표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광공업동태조사는 조사대상품목(665개)에 대하여 그 품목을 생산하는 광업·제조업·전기·가스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약 8,1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청 각 지방사무소의 정규직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계식 또는 타계식으로 조사한다.

매월 5일에서 19일 사이에 전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생산·출하량과 전월 말일의 재고량을 조사하며 조사편의를 위하여 3종의 조사표를 사용하고 있다.

○ 광공업동태조사자료의 이용

산업생산·출하·재고지수는 익월 말에 「산업활동동향」으로 종합되어 공표되고 익월 10일경 「산업생산통계」로 발간된다. 매월 공표시에 전월에 발표된 수치(잠정치)가 확정되고, 매 년도의 3월경에 연간보정(확정)을 통하여 전년도 통계자료를 한번더 정도높게 수정하여 발표하고, 이는 5~6월경 산업생산연보에 수록하여 발간된다.

또한 「한국통계월보」(통계청), 「조사통계월보」(한국은행) 등에도 수록된다.

○ 자료 이용상의 유의점

지수의 특성상 전월 혹은 전분기와 같이 단기간에 대하여 비교, 분석할 때에는 원지수를 이용하지 않고 계절조정지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매월 발표되는 지수는 잠정치로서 다음달에 확정치로 수정되며, 매년초(3월경) 지수에 대한 연간보정작업을 하여 지수가 수정 되는데 통상 전년 1년간에 대하여 수정되며 이와 함께 과거 전기간에 대한 계절변동조정지수가 수정된다.

이 지수는 대표성이 매우 높고 정도가 높은 경제지표이지만 기준년도와 멀어질수록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현실과의 괴리가 다소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5년 주기로 기준년도를 개편하고 있다.

3.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는 제조업의 공급능력수준과 생산설비이용도(가동률)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이며 실물동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조사이다.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는 조사대상품목(229개)에 대하여 그 품목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약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청 각 지방사무소의 정규직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계식 또는 타계식으로 조사한다. 매월 5일에서 19일 사이에 전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생산량과 전월 말일의 생산능력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의 결과로 편제된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는 「산업활동동향」에 포함되어 발표되고, 월간으로 「산업생산통계」와 연간으로는 「산업생산연보」에 수록되고 있다.

조사결과 산출되는 지수를 이용할 경우 대체로 산업생산지수 이용시 유의점과 동일하나 추가적으로 조사대상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산정의 어려움으로 품목채택이 제한되어 대표성이 비교적 낮다는 점과('95년 기준 59.0%), 제조업 전체에 대해 작성, 공표되는 평균가동률 이용시 가동률원지수와 계절조정가동률지수를 함께 분석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가동률지수의 증감방향이 산업생산지수와 다르게 나타날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가동률지수가 생산량 이외에도 생산능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그 외에도 대표품목 및 대상업종, 가중치구조 등 통계작성의 기본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4. 기계수주통계조사

기계는 각종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생산품(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이의 투자동향은 앞으로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경기분석의 기초가 된다.

기계수주통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28~35분류 중 설비용기계류(가전기 등 소비재성기계류 제외)를 생산하는 대규모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월중 수주액을 매월 조사하여 작성한다.

조사결과는 매월말 「산업활동동향」에 전월 잠정치가 요약, 공표되고, 그 세부자료가 다음달 15일경 「기계수주통계」에 수록된다. 매년 5월경에는 과거 수년간의 조사결과를 수록한 「기계수주연보」가 발간된다.

Ⅲ 광공업통계의 특성

○ 산업생산·출하·재고지수는 어떻게 작성되나?

산업생산지수는 산업통계의 일종으로 광공업 및 전기가스업의 생산에 관한 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체계와 이론에 의해 나타낸 지수이다. 즉 통계측정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금액이나 수량적인 변화를 보일 때 그 변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표시하여 비교하기 쉽게 계산한 일종의 통계비례수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되고 있다.

<생산지수 작성방법>

- ① 1995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광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업을 대상으로 작성
- ② 1995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결과 총생산액의 1/5,000 이상이 되는 품목을 위주로 665개의 대표계열을 선정하여 작성
- ③ 1995년도의 구조에 의한 품목이나 업종의 가중치 체계를 가지고 지수작성
- ④ 기준시점고정 가중산술평균방식인 『라스파이레스(Laspeyres)』 산식 적용

$$\text{※ 생산지수} = \frac{\sum \left(\frac{\text{비교시품목생산량}}{\text{기준시품목생산량}} \times \text{기준시 품목가중치} \right)}{\sum (\text{기준시 품목가중치})} \times 100$$

- ⑤ 가중치의 기초는 부가가치, 출하액, 재고액 등 금액에 의한 구조이나 대부분의 품목을 수량조사함에 따라 단가상승에 따른 명목적인 변동이 제거된 실질화된 지수를 작성
- ⑥ X-11 ARIMA모형을 이용하여 계절조정지수를 작성하여 단기간의 변동 파악에 이용
- ⑦ 지수의 특성상 지수작성시점이 기준년도에서 멀어지면 지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생산지수는 매 5년을 주기로 하여 개편한다. 이렇게 개편된 지수는 개편전 기준년도지수와 단순비례방법으로 지수시계열을 접속하여 시계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5년 기준의 생산지수 등은 1980년부터 지수가 연결되어 있다.

- **생산자출하지수** : 가중치를 출하액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외에는 산업생산지수 작성방법과 동일하다.
- **생산자제품재고지수** : 산업생산지수품목 중 재고의 의미가 있고 재고파악이 가능한 538개의 품목을 대표품목으로 선정하여 광공업 통계조사결과(1995년) 완제품의 월평균재고액을 10,000분비로 하여 해당품목의 가중치를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산업생산·출하·재고지수는 분석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몇가지 특수분류지수를 작성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공업구조별지수** : 제조업내 분류를 경공업제품, 중화학공업제품으로 분류하여 생산, 출하, 재고별로 종합
- ② **재별분류지수** : 제조업품목의 용도와 수요대상을 고려하여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등으로 구분하여 생산, 출하, 재고별로 종합
 - ㉠ **자본재** : 생산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류 중 1년이상 내구성을 가진 제품으로 제조설비용, 전력용, 통신방송용, 수송장비, 농업용, 건설용, 사무용, 기타로 구분된다.
 - ㉡ **중간재** : 광공업 및 타산업의 원재료, 연료, 부품 등으로 투입되는 제품으로 제조업용, 건설용, 연료, 기타로 구분된다.
 - ㉢ **소비재** : 개인용,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제품이나 사무용이라도 그 제품이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한 소비재로 구분된다.
 - 내구소비재 : 집기, 비품 중 1년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비내구소비재 : 주로 수회사용으로 소진되거나 재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 1년이상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사용시마다 부피나 분량 감소, 파손, 변질, 변형 등이 일반적으로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과 의복류 및 신발 등과 같이 개인용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비내구재로 구분된다.
- ③ **설비용기계류지수** : 기업의 설비투자동향과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기계 등 관련 중분류인 28~35분류 279개 품목 중 117개 품목을 종합한다.

④ **재고율지수** : 월말재고의 월중 출하에 대한 비율인 재고율을 기준년도를 100으로 하여 지수형태로 재 구성한 것이 재고율지수이다.

재고율지수는 재고의 적정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되기는 하나 업종이나 사업체규모 등에 따라 적정재고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재고율수준 추이만을 나타낼 수 있다.

○ 생산·출하·재고지수간 흐름의 불일치 현상

통상 경기의 흐름을 산업생산지수 등을 통해서 살펴볼 때 경기 상승기에는 수요가 활발해져 출하가 증가하게 되고 기존의 재고는 감소하게 된다. 이때 기업은 생산을 늘리게 되고 재고(의도적 재고)가 늘어날 것이다.

한편 경기가 정점에서 하강기로 들어서면 초기에는 출하가 감소하나 생산을 즉각 조절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계속되어 재고(비의도적 재고)는 늘어날 것이며 수요가 계속 줄어 경기부진이 깊어지면 기업은 재고의 압박을 받아 생산을 감축하게 되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실제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생산이 증가하고 출하가 감소하였다면 재고는 당연히 증가하여야 할 것이나, 반대로 감소하는 등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불일치 현상을 보일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은 ① 생산·출하 품목수보다 재고품목수는 적다 ② 생산·출하·재고가중치가 서로 다르다 ③ 생산·출하·재고가 동일비율로 변하여도 그 양적수준은 다르다 ④ 생산·출하는 1개월간의 실적치이나 재고는 월말 현재의 재고수준이다 ⑤ 전월말부터 이월되는 재고분이 금월 재고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점 때문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원인외에도 사업체가 장부상의 재고를 실 재고로 수정하는 경우 등에 의해서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출하지수와 내수·수출지수간의 괴리

출하와 내수·수출지수에서도 내수와 수출지수의 증가율수준이 총출하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각 지수의 대표품목의 차이와 가중치 차이 등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생산·출하·재고지수의 경기판단시 유의점

산업생산·출하·재고지수 등은 경기판단을 위해서 더없이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나 특히 다음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경기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어느 특정지표만의 움직임을 가지고 속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가급적 이용가능하고 신뢰성있는 여러 지표들을 충분히 관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여러 경기지표들 중에는 호황기에는 대부분 확장을 나타내지만 일부지표는 반대로 수축을 나타내는 등 상반된 동향을 나타낼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아무리 신뢰성이 높은 지표라도 극히 단기간의 움직임만으로 경기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단기간의 움직임 속에는 발견되지 못한 우발적이고 불규칙적인 변화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계절조정을 한다고 해도 불규칙요인은 제거되지 않는다).

셋째, 각종 경기지표들은 편제방법이나 적용모델을 달리함에 따라 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표상의 수치 자체를 과신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표본조사의 경우는 그에 따른 표본오차도 내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아울러 경제지표들이 대부분 속보성이 강조됨에 따라 우선 잠정치로 발표되었다가 후에 다시 확정치로 바뀌게 되므로 수치 차이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여러 경제지표들은 제각기 포괄범위, 작성기준,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이 다르므로 지표의 특성 및 제약성들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한 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산업생산지수 등과 타통계지표와의 차이점

생산·출하·재고 등에 관한 실적통계나 지수 등은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부처나 각종 기관단체에서 다양하게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종류에 속하는 통계라 할 지라도 때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국세청의 과세대상품목의 출하실적, 관세청의 수출통관실적, 한국전 자산업진흥회 등 각종 협회에서 발표하는 각종 생산품의 생산·출하량 통계와 광공업동태조사결과 산출된 생산량·수출량과의 차이,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국민계정의 광공업성장률과의 차이, 무역협회에서 작성하는 무역통계와 출하지수 중 수출지수의 증가율의 차이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조사대상범위의 차이, 조사방법상의 차이, 조사시점의 차이, 조사단위의 차이 등을 들 수 있겠다.

IV 지 표

○ 생산액

광공업통계조사의 생산개념은 사업체의 회계결산서로부터 자료를 도출하기 때문에 출하개념을 사용하여 직접 산출한다.

생산액은 제품출하액, 부산물·폐품,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 연말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민계정상의 생산(생산량×기준단가로 작성하는 생산량 접근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 부가가치

생산업체에서 창조된 상품과 용역가치의 증가분으로 생산액에서 직접생산비 즉 원재료비, 연료비, 구입전력비, 구입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의 합계액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GNP)와의 차이점

- 광공업통계조사 부가가치 = 산출액 - 중간재비용(직접생산비)
- GNP = 산출액×부가가치율(부가가치/산출액 : 기업경영분석자료 이용)
= 산출액 - 중간재비용(직접생산비 + 간접생산비)
= 피용자보수 + 고정자본소모 + (간접세 - 보조금) + 영업이익
= 광공업통계조사 부가가치 - 간접생산비

이와 같이 광공업통계조사 부가가치에는 간접생산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에는 제외되는 차이점이 있다.

○ 출하액

제품출하액, 부산물·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를 말하며 출하액,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대한 미수금도 포함한다.

- 제품출하액 :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제조한 완제품의 판매액

- 부산물·폐품 판매액 :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나온 폐품, 불합격품(불량품)의 판매에 의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것은 제외
- 임가공수입액 :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을 타제조업 사업체로부터 지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임가공수입액을 말하며 비제조업체로부터의 수탁은 자가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품출하액에 포함
- 수리수입액 :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서 받았거나 받아야 할 수입액

○ 사업체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 사업소, 상점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하에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단위(법적주체)'를 말한다.

※ **기업체** :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단위 또는 법적단위로서 하나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된다. 따라서 1개의 기업체가 여러개의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각 장소별로 사업체를 파악한다.

- **경영조직** : 회사법인, 기타법인, 비법인단체(기초통계조사에서 추가분류)로 구성

○ 종사자수

조업기간 중 월평균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와 피고용자수의 합으로 정의

○ 유형고정자산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 차량, 선박, 운반구, 기계장치 및 1년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공구, 기구, 비품 등을 말한다.

기존 고정자산의 경제수명을 연장시키고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장증축이나 기계 등을 개량한 경우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에 포함되나(자본적지출), 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나 수선(수익적 지출)은 제외된다.

○ 연간급여액

조사년도 1년간 피고용자의 노무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현금과 현물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며 급여액은 세금, 기여금, 적금, 노동조합비 등 공제이전의 것이고, 현물지급분 중 자가생산품은 지급일자 현재의 공장도가격으로, 구입분은 실제 구입금액으로 환산, 평가한다.

○ 제조업생산능력지수와 가동률지수

제조업부문의 생산능력지수와 가동률지수는 산업생산·출하·재고지수 등과 함께 수급의 균형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생산능력지수는 제품의 공급능력수준과 동향을 나타내주는 지표이고, 가동률지수는 생산활동을 설비의 가동상황과 연결, 지수화한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부문의 생산능력이 어떻게 변화하여 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생산능력지수이고, 생산 실적과 생산능력과의 비율인 설비이용도로서 가동률의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 가동률지수이다.

○ 평균가동률

월별 가동률계절변동조정지수에 기준가동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완전가동률을 100으로 했을때의 가동률로서 업종별로 생산활동이 달라 단순비교가 어려움에 따라 제조업에 대한 가동률산출에 그치고 있다.

○ 전월비와 전년동월비

일반적으로 통계시계열의 분석을 위해 행해지는 기간간 비교에서 전년동월(분기)비는 원계열을 쓰고 전월(분기)비는 계절조정치를 쓴다.

이는 단기간의 변화에는 계절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당월의 경기가 호조인지 부진인지의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전년동월(분기)비의 비교는 계절적으로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1년전의 달과 비교라는 의미에서 계절적으로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경제시계열 관찰에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생산자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비에서도 원지수를 이용한다. 이는 지수작성과정에서 계절적인 영향이 제거되도록 작성하기 때문이다.

○ 계절변동조정지수

경제시계열은 기후, 생활습관, 태양력의 명절 등 매년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는 비경기적인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시계열의 분석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시계열내의 계절변동을 제거하게 된다. 계절조정이란 주어진 시계열에서 경기적요인과 비경기적요인을 분리하는 것인데 경기적요인인 순환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비경기적요인인 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시계열은 그 변화형태에 따라 추세요인(T), 순환요인(C), 계절요인(S) 및 불규칙요인(I)으로 나눈다. 추세요인은 대체로 10년 이상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장기적요소로 인구증가, 기술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이고 순환요인은 확장과 수축의 기간을 서로 반복하는 주기적 변동으로 주기가 장기적이어서 추세의 부분으로 파악되기도 하며 주기가 비교적 길고 일정하지 않으며 누적적이고 한시점의 변동이 그 이후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계절변동과 다르다. 계절요인은 기후, 생활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기본주기를 가지고 나타나며 이동계절성이 있다. 불규칙요인은 위의 세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요인으로 천재지변, 전쟁, 파업 및 급격한 경제정책변화 등에 의해 단기적이고 우발적인 변동이다. 대부분의 시계열은 위 요인들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승법형, 가법형, Log가법형이 있다.

- 승법형 : 원계열 = 추세 · 순환 × 계절요인 × 불규칙요인 (× 요일변동요인)
- 가법형 : 원계열 = 추세 + 순환 + 계절요인 + 불규칙요인
- Log가법형 : 원계열 = Log(추세 · 순환요인) + Log계절요인 + Log불규칙요인

원계열에서 계절변동을 제거하는 방법 중 연환비율법, 12개월 이동평균법 등 고전적인 방법은 고정계절변동을 전제로 함에 따라 경제구조변화가 계절요소에 주는 영향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가변적인 계절변동을 전제로 하는 계절변동조정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미국 상무성의 센서스국이 『센서스국법』을 개발하게 되었고 『센서스국법 X-11』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① 원계열의 분해에 관한 명백한 모델이 없고, ② 이동평균을 반복하므로써 계열 양끝의 결함에 대하여 편의적 보정을 함으로써 가장 최근 년도의 관측치에 대한 계절요인 측정치는 중앙연도 관측치의 계절요인 추정치보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 캐나다 통계국에서 『다굼 Dr. E. Dagum』을

중심으로 개발한 『X-11-ARIMA』 방법을 1974년 개발하여 1979년 부터 적용하였는바 통계청에서는 산업생산지수 등에 적용하여 계절조정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이 계절조정방법은 새로운 계열이 추가될 때마다 계절지수가 변화하게 되어 매월 수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산업생산지수 등에서는 1년 단위로 지수의 연간보정과 함께 계절지수도 새로이 산출하여 일괄 소급,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작성, 발표된 수치는 소급 변경됨에 따라 자료이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7 통계청

「산업생산통계」 1997. 12 통계청

「산업생산연보」 1997 통계청

「광공업지수의 구조와 이용」 1995. 11 통계청

「기계수주통계연보」 1997 통계청

1. 광업 사업체 및 종사자(종사자 5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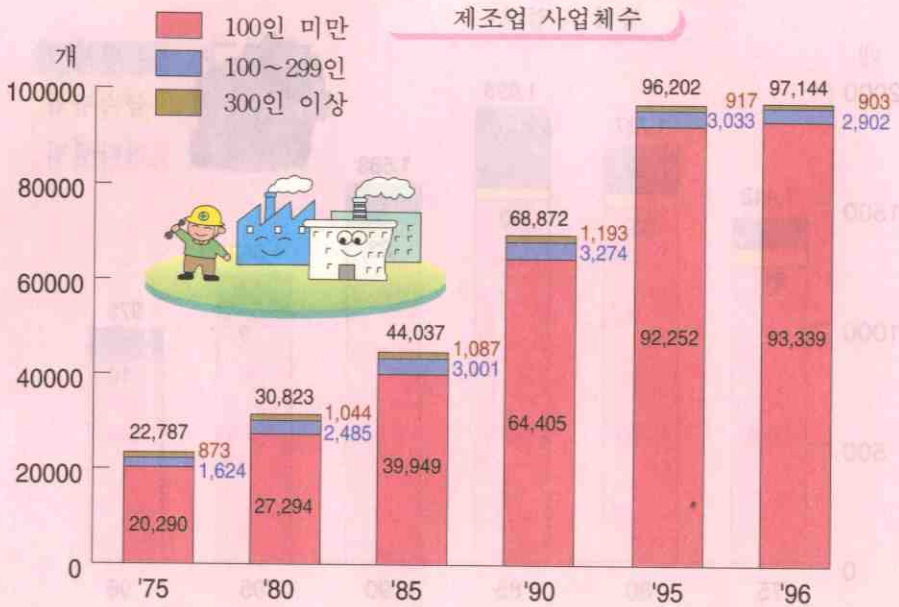
단위 : 개, 명

	광업		석탄광업		금속광업		기타광업	
	사업체수	월평균 종사자	사업체수	월평균 종사자	사업체수	월평균 종사자	사업체수	월평균 종사자
1975	1,442	83,076	126	49,706	81	10,206	1,235	23,164
1980	1,737	84,133	194	53,851	63	7,870	1,480	22,412
1985	1,896	90,525	328	63,421	50	5,208	1,518	21,896
1990	1,583	60,386	171	38,028	23	2,532	1,389	19,826
1995 ¹⁾	1,082	29,928	130	12,707	9	582	943	16,639
1996 ¹⁾	975	27,318	116	11,376	10	584	849	15,358

주 : 1) 개정된 산업분류에 의함.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 제조업 사업체 및 종사자(종사자 5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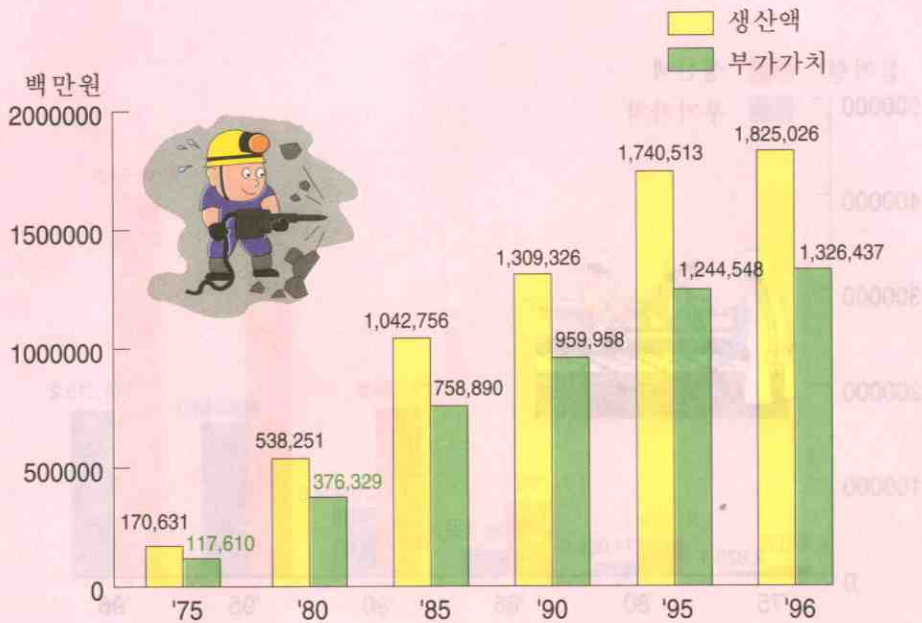
단위 : 개, 천명

	총 계		100인 미만		100-299인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1975	22,787	1,420	20,290	371	1,624	278	873	771
1980	30,823	2,015	27,294	578	2,485	423	1,044	1,015
1985	44,037	2,438	39,949	870	3,001	497	1,087	1,070
1990	68,872	3,020	64,405	1,330	3,274	534	1,193	1,156
1995 ¹⁾	96,202	2,952	92,252	1,539	3,033	495	917	918
1996 ¹⁾	97,144	2,898	93,339	1,533	2,902	473	903	892

주 : 1) 개정된 산업분류에 의함.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3. 광업 생산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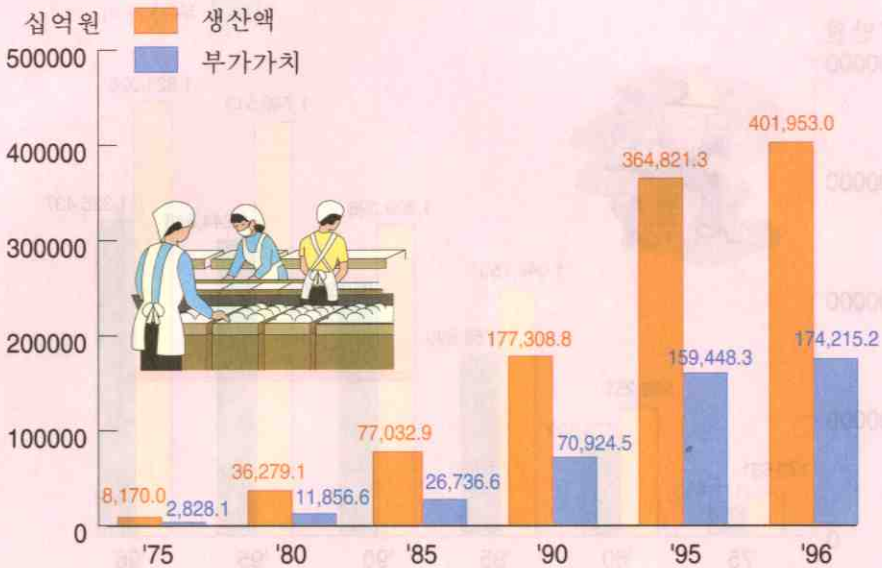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연도	생산액	출하액	부가가치	연간 급여액	유형고정자산 ¹⁾
1975	170,631	167,150	117,610	49,476	-
1980	538,251	527,163	376,329	192,569	-
1985	1,042,756	1,042,414	758,890	325,653	559,714
1990	1,309,326	1,318,270	959,958	393,927	1,202,572
1995	1,740,513	1,691,392	1,244,548	412,822	1,664,478
1996	1,825,026	1,772,774	1,326,437	425,298	1,516,428

주 : 1) 연말 총액임.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4. 제조업 생산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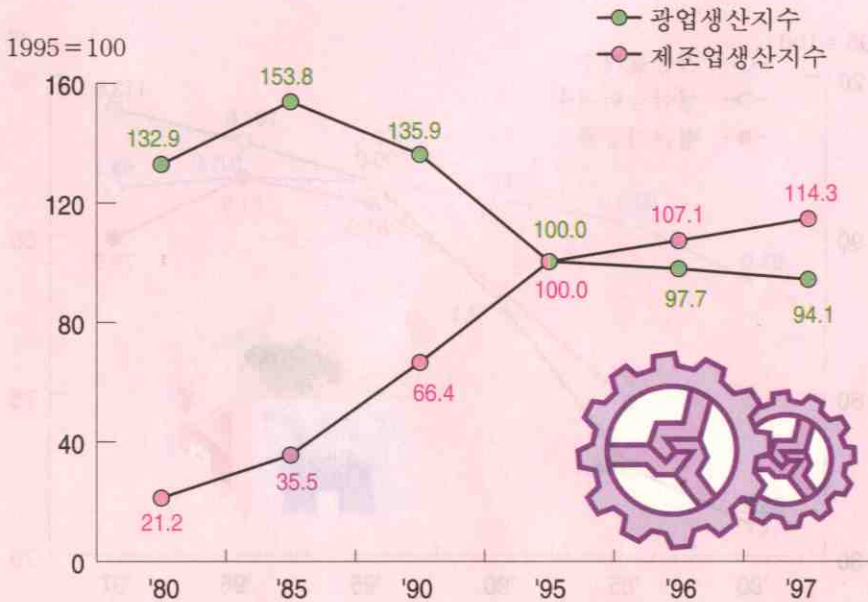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생산액	출하액	부가가치	연간 급여액	유형고정자산 ¹⁾
1975	8,170.0	7,994.1	2,828.1	651.6	-
1980	36,279.1	35,277.0	11,856.6	3,471.6	-
1985	77,032.9	76,486.4	26,736.6	7,244.5	27,007.2
1990	177,308.8	175,234.3	70,924.5	19,579.5	73,215.9
1995	364,821.3	358,887.7	159,448.3	37,844.4	164,862.9
1996	401,953.0	397,847.4	174,215.2	42,329.2	187,455.2

주 : 1) 연말 총액임.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5. 산업생산지수



1995=100

	총지수	광업		제조업			전기 및 가스업 ¹⁾	
		석탄		섬유 제품	제1차 금속산업	전기업		
1980	22.0	132.9	389.7	21.2	72.5	20.6	19.0	20.2
1985	36.2	153.8	440.4	35.5	89.7	38.9	29.6	31.4
1990	66.4	135.9	337.4	66.4	119.5	65.1	54.9	58.3
19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6	107.3	97.7	80.0	107.1	92.0	106.1	112.3	111.2
1997	114.7	94.1	66.9	114.3	85.7	111.7	123.3	121.5

주 : 1) 90년부터 가스업 포함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연보」

6.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1995=100

연도	생산능력지수			가동률지수			평균 가동률 (%)
	섬유 제품	제1차 금속산업	제1차 금속산업	섬유 제품	제1차 금속산업	제1차 금속산업	
1980	35.2	160.2	27.0	81.0	138.7	78.6	-
1985	46.4	159.6	37.8	92.4	129.1	98.3	74.8
1990	77.1	151.4	64.4	96.6	127.6	102.9	78.3
19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1.0
1996	107.6	95.0	104.7	101.0	99.9	103.9	81.8
1997	113.6	89.4	109.9	98.7	99.2	105.8	79.9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연보」

8. 에너지 통계



통계조사 및 통계

에너지총조사, 석유류수급통계, 한국전력통계,
에너지종합수급표

주요 통계지표

1차 에너지소비, 최종 에너지소비, 에너지유,
비에너지유, 에너지 수입의존도, 에너지탄력성,
에너지원 단위, LNG, LPG, 발전량, 변전설비,
전력수급

통계표 및 도표

1차에너지 공급량 및 수입의존도, 1차에너지 소비량,
원유도입, 석유소비량변화, 발전량, 전력수급

에너지통계

I 에너지원 주로 해외에 의존

에너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에 의하면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연료라 함은 원유·석유제품,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석탄·석탄제품(코크스 포함), 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 제외)을 말하는데,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에너지원은 에너지로 가능한 자원을 뜻하며 열에너지, 빛에너지, 운동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화석연료나 핵분열 및 대체에너지로서 수력발전,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조력에너지, 지열에너지 등을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석탄산업으로부터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였으나 현재는 주로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는 원유, 가스 및 원자력 등으로부터 대부분의 에너지를 충당하고, 이러한 에너지의 해외의존은 항상 에너지가격동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유화산업, 전력생산 등의 부문은 국제유가 변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다. 즉 국민경제 규모확대에 따라 절대적인 물량이 계속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원자력발전의 확대, 가스수요 확대에 따른 LNG 소비확대 등 고급, 청정에너지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장래수요를 전망하고 에너지부문과 국민경제와의 연관성분석 및 국제비교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도입과 생산 및 소비에 관련된 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II 에너지관련 통계의 소개

에너지관련 종합통계자료는 월간자료로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월보」가 매월 주요 에너지에 관하여 전전월의 도입, 생산, 소비 등에 관한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연간자료를 「에너지통계연보」에 수록 매년 11월경에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영문판의 통계월보인 「Korea Energy Review Monthly」를 발간하고 있다.

각 부문별 에너지는 석탄에 관련된 통계는 석탄합리화사업단의 「석탄통계연보」, 「석탄동향」과 한국자원연구소의 「월간자원정보」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석유(천연가스, LPG 포함)에 관련된 자료는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석유류수급통계」와 「월간석유수급통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석유의 도입에서 생산, 소비 및 재고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해외석유관련 자료로는 계간으로 발간되는 「계간 국제석유산업동향」이 있는데 유가의 가격(현물, 선물)동향과 각국의 산유량(원유, 천연가스)이 수록되어 있다.

도시가스에 대한 자료로는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발간하는 「도시가스사업통계월보」가 있는데 도시가스의 공급량, 생산량 등이 당월과 누계치가 용도별로 수록되어 분석이 용이하다.

전기에 대한 자료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력통계속보」와 연간으로 발간되는 「한국전력통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발전설비용량, 발전전력량, 판매실적 등이 수록되어 있다.

Ⅲ 에너지관련 주요통계 및 통계조사

1. 에너지 총조사

에너지총조사는 산업부문, 수송부문, 상업 및 공공부문과 가정부문의 1년간 에너지소비실태를 파악하여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단계에서부터 최종수요까지의 에너지소비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에너지소비통계조사이다.

에너지총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7개 산업대분류와 가계부문 및 자가용차량, 대형건물을 조사범위로 하여 표본조사 및 전수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조사원이 직접 해당사업체 및 가구를 방문하여 에너지 관리부서 및 담당자를 면담하고 결산자료 등에 의거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본 조사의 조사단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체로 하고 가정부문은 가구, 자가용부문은 자가용으로 등록된 승용차, 지프, 버스 및 트럭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결과는 전국 및 시도별, 부문별로 집계되어 「에너지총조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3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2. 석유류수급통계

석유류수급통계는 국내석유류의 물량흐름을 정량화하여 안정적 석유수급대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와 에너지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은 물

론, 국가경제분석 및 미래예측에 관한 필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도입하여 정제,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즉 정유사별 원유도입, 정제량,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및 공급현황 등을 월단위로 수집하여 가공, 처리, 분석한 통계이다.

이 통계는 지난 1981년부터 매월 「월간 석유수급통계」에 발표하고 「석유류 수급통계」책자에 매년 수록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 책자의 제1권은 총괄편, 제2권 정유사편, 제3권 대리점편, 제4권 주유소편으로 구분하고 있다.

3. 한국전력통계

전력은 가정에서의 사용뿐 아니라 산업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전력의 이용은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산업활동을 고도화하며, 생산력의 향상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된다.

전기에너지는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라 빛, 열, 동력 및 전자부문 등 다방면에 걸쳐 에너지의 전환이 용이하고, 이용과 다루기가 편리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점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이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발전량의 증대는 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용의 증가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가정용 수요의 증가를 반영한다. 전력수요의 변화는 GNP의 변화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산업생산지수 등의 변동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전력통계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나라의 전력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전력설비, 발전부문, 전력판매부문, 경영관리부문, 국제비교자료)등을 종합하여 「한국전력통계」에 수록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4. 에너지종합수급표(에너지수급 발란스)

에너지 전반의 종합수급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에너지종합수급표의 국제표준 양식은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형태가 없는 실정이나 UN통계국은 하향식수급표, 미래예측형수급표, 다목적형수급표의 3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산업자원부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현재의 양식으로 개발, 「에너지통계연보」에 수록하기 시작하였는데 1975년까지 시계열자료가 소급되어 있으며 매년 계속해서 작성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는 에너지를 석탄류, 석유류, 전력류, 가스류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급과 소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 에너지 전체의 공급·소비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에너지종합수급표의 기본양식

○ 하향식수급표

에너지에 관한 과거의 공급, 소비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표로 세로방향으로는 에너지의 공급 및 소비의 흐름을, 가로방향으로는 각 에너지원을 표시한다(열과 행 항목을 반대로 설정하는 국가도 있다).

UN에서는 이 형식수급표로 몇 가지 세분된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세로방향의 경우 에너지 공급부문을 먼저 설정하고, 그 아래 수요(소비)부문을 설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부문의 기본항목은 생산(+), 수입(+), 수출(-)로, 수요부문의 기본항목은 에너지 전환에 투입된 양과 최종소비분으로 각각 구성된다. 아울러 재고 변동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급부문에 표시할 수도 있고 수요부문에 표시할 수도 있다.

○ 미래예측형 수급표

1차에너지 수요를 먼저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급상황을 나타내 줌으로써 장래의 공급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급표이다.

가로방향으로는 1차에너지원별로 분류하고 세로방향으로는 총수요항목으로서 최종수요 및 수출수요, 에너지 전환수요, 총공급항목으로서 생산, 재고증감, 수입을 설정한다.

○ 다목적형 수급표

이용자에 대하여 에너지의 흐름에 관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상의 수급표를 보다 세분하여 작성하는 수급표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UN에서는 세로방향에 1차에너지원의 총공급과 총수요를 표기하되 총공급은 1차생산(+), 수입(+), 수출(-)항목으로, 총수요는 에너지전환 소비(정유, 발전, 기타로 구분), 최종에너지소비(농업, 산업, 수송, 가정, 기타로 구분) 항목을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상황은 필요시 수출항목 다음에 재고변동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IV 에너지통계의 특성

1. 에너지통계의 중요성

에너지통계의 중요성 내지 필요성은 1차적으로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영정보의 제공에 있다. 즉 에너지의 생산 및 이와 관련한 시설투자를 위해서는 에너지 전체의 수요전망과 에너지산업의 시장점유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정보를 에너지통계가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에너지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1973년의 세계적인 석유파동, 석유공급 감축과 원유가격 급등으로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고조되면서 부터이다.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석유가의 상승이 각 산업의 생산물가격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석유부존량의 한계, 대체에너지의 개발, 에너지의 공급과 사용에 관한 장기전망, 개별적인 에너지원 정보로부터 에너지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 등에 집중되었으며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에너지 통계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한편 전력수요와 국민총생산(GNP)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면 두 자료의 관계가 GNP의 주요 구성요소인 광공업GNP와 총GNP의 관계보다 훨씬 밀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관한 통계자료는 국민경제성장을 판단하는 중요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2. 에너지통계의 측정단위

석탄, 석유, 전력, 코크스 같은 에너지원별로는 각각 독특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있어 에너지의 총체적인 집계시 이것을 그대로 합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에너지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단위로 환산하여 집계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각국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열을 낸다는 점에 착안, 각 에너지가 갖고 있는 단위당 열량에 의거 총열량을 우선 계산한 후 이를 기준단위로 다시 환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기준단위로서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TOE(ton of oil equivalent), TCE(ton of coal equivalent), J(joule), BTU(British thermal unit) 등이다.

TOE(석유환산톤수)는 OECD통계국, EC통계사무소, 한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석유 1톤당 열량값인 10^7kcal 를 나타낸다. 따라서 일단 칼로리(cal)로 계산된

각 에너지의 열량을 TOE(1TOE=10⁷kcal)로 환산하면 모든 에너지의 총열량이 TOE라는 계산단위로 합산될 수 있다.

TCE는 석탄 1톤당 열량값인 $7 \times 10^6 \text{kcal} (=7\text{Gcal})$ 로 정의되는 것이 보통이나 영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모든 등급의 석탄이 갖는 톤당 총열량의 평균값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J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1\text{J} = 0.239\text{cal}$ 를 나타내며 이 밖에 $1\text{BTU} = 0.252\text{kcal}$ 로 정의된다.

한편 각 에너지원별 열량을 계산할 때 참고할 것은 화석연료(化石燃料)의 열량이 총발열량과 순발열량으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즉 연료가 연소할 때에는 연료에 내재되어 있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열을 내게 된다.

이 열을 포함한 개념이 총발열량, 이를 제외한 개념이 순발열량으로서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은 전자를, OECD 및 유럽에서는 후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제비교시 유의해야 한다.

V 지 표

○ 1차에너지 소비(Primary Energy Consumption)

1차에너지는 오랜 세월동안 자연의 역학적인 절차의 반복으로 형성된 천연상태의 에너지로서, 에너지원 중 직접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 일정한 생산전환과정을 거쳐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환과정이 완료된 산출물을 뜻한다.

이러한 1차에너지의 소비는 에너지의 국내생산 및 순수입, 재고의 증감을 포함한 최종에너지소비와 전환손실을 합한 양과 같다.

○ 최종에너지 소비(Final Energy Consumption)

최종에너지는 최종 소비부문의 에너지 이용설비에 알맞은 형태로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1차에너지 중 직접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은 그 자체, 일정한 전환과정을 거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그 산출물을 뜻한다.

이러한 최종에너지의 소비는 소비자에게 공급된 에너지량으로 전환손실 및 에너지산업체의 자체소비는 제외한다.

○ 에너지유

에너지유라 함은 발전, 내연기관, 램프, 취사기구, 난방기구 등에 동력, 빛, 열 등으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으로서 휘발유, 등유, 경유, 경질중유, 중유, 방카C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등을 말한다.

○ 비에너지유

에너지유를 제외한 석유제품으로서 주로 타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납사, 용제, 아스팔트 등을 말한다.

○ 에너지 수입의존도(Dependence of Energy on Overseas)

일반적으로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1차에너지 공급량에서 순수입한 에너지의 비중을 의미하나, 국내 수입의존도는 1차에너지 소비중 수입에너지의 비중을 의미한다.

○ 에너지 탄력성(Energy Elasticity)

경제활동수준 변화에 대한 에너지 소비변화 비율의 탄력도이며, 경제활동수준으로 주로 GNP를 이용한다.

○ 에너지원 단위(Energy Intensity)

단위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으로 원(달러)당 칼로리(Kcal/원, dollar)로 표시한다.

○ LNG(Liquefied Natural Gas)

수송 및 저장이 용이하도록 압축 또는 냉각으로 액화한 천연가스를 말한다.

○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로 정제공정 및 원유 안정화 공정에서 추출된 파라핀계의 탄화수소물로 성분은 주로 프로판, 부탄 또는 이들 두가지의 혼합물이다.

○ 발전량

- 총발전량 : 발전소내 소비전력량, 양수전력량 및 송전단전력량의 합계
- 판매전력량 : 송전단전력량- 송배전손실량

○ 변전설비

- 변전소 :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수송손실을 줄이거나 전기철도용 직류를 얻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서 설치된 구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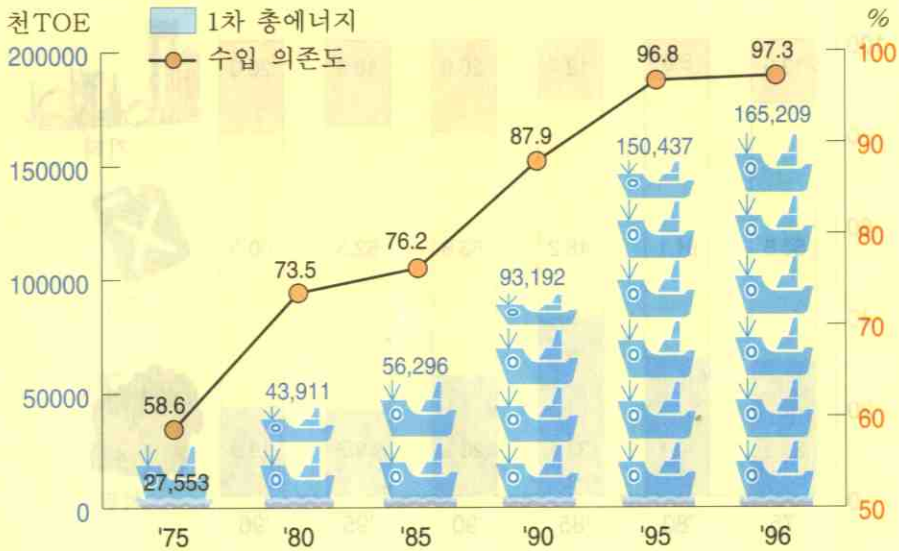
○ 전력수급

- 공급능력 : 총발전 설비능력에서 장비의 고장, 노후화, 보수 등으로 인한 능력 감소분을 제외시킨 능력
- 최대전력 : 연중부하가 최대일때의 시간당 전력
- 평균전력 : 총사용전력 / 연시간
- 부하율 : $(\text{평균전력} / \text{최대전력}) \times 100$
- 이용률 : $(\text{평균전력} / \text{발전설비}) \times 100$
- 예비전력 : 공급능력 - 최대전력
- 공급예비율 : $(\text{공급능력} - \text{최대전력}) / \text{최대전력} \times 100$

<참고자료>

-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에너지통계연보」 1997 산업자원부
- 「석유류수급통계」 1997 한국석유개발공사
- 「한국전력통계」 1997 한국전력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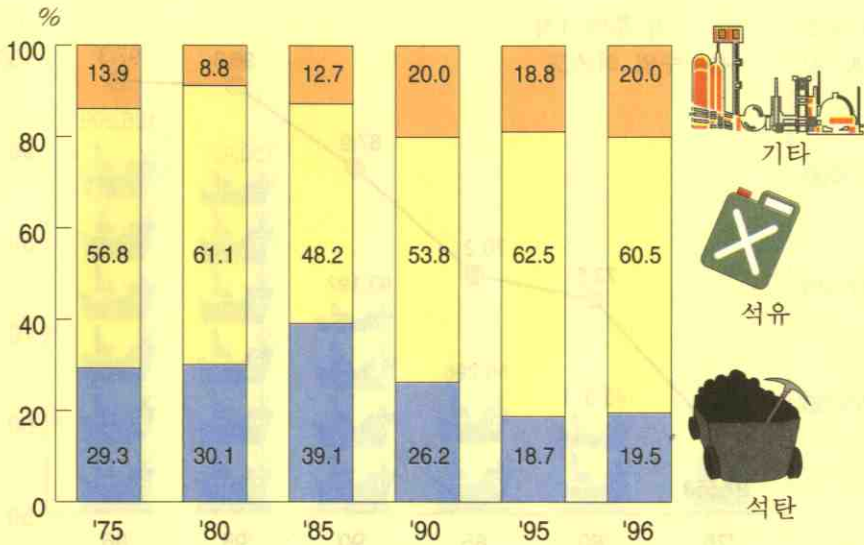
1. 1차 에너지 공급량 및 수입의존도



연도	1차 총에너지 (천TOE)	국내생산(천TOE)			수입(천TOE)			수입 의존도 (%)
		무연탄 (천M/T)	수력 (Gwh)	석탄 (천M/T)	석유 (천Bbl)			
1975	27,553	11,397	15,945	1,683	16,156	786	105,119	58.6
1980	43,911	11,622	18,715	1,984	32,289	7,147	182,105	73.5
1985	56,296	13,393	22,710	3,659	42,903	17,823	189,191	76.2
1990	93,192	11,298	19,802	6,361	81,894	23,603	356,349	87.9
1995	150,437	4,836	5,367	5,478	145,601	38,985	677,210	96.8
1996	165,209	4,444	4,406	5,201	160,766	45,871	721,063	97.3

자료 : 산업자원부 「에너지통계연보」

2. 1차 에너지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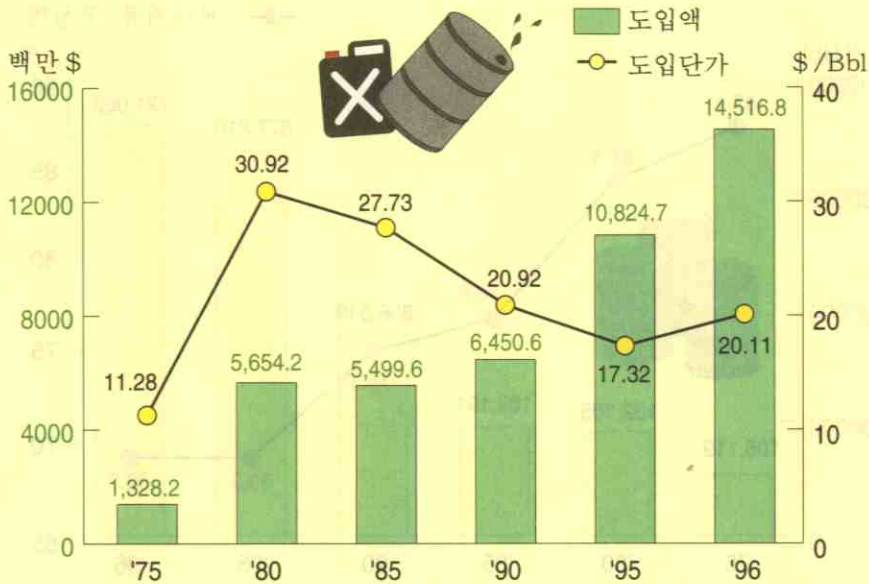
단위 : 천TOE, %

연도	총소비	석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신탄 ¹⁾ 및 기타	1인당 소비량 (TOE)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75	27,553	8,075	29.3	15,637	56.8	-	421	-	3,420	0.78
1980	43,911	13,199	30.1	26,830	61.1	-	496	869	2,517	1.15
1985	56,296	22,022	39.1	27,142	48.2	-	915	4,186	2,031	1.38
1990	93,192	24,385	26.2	50,175	53.8	3,023	1,590	13,222	797	2.17
1995	150,437	28,092	18.7	93,955	62.5	9,213	1,369	16,757	1,051	3.35
1996	165,209	32,200	19.5	99,898	60.5	12,169	1,300	18,481	1,161	3.63

주 : 1) 대체에너지 소비열량임.

자료 : 산업자원부 「에너지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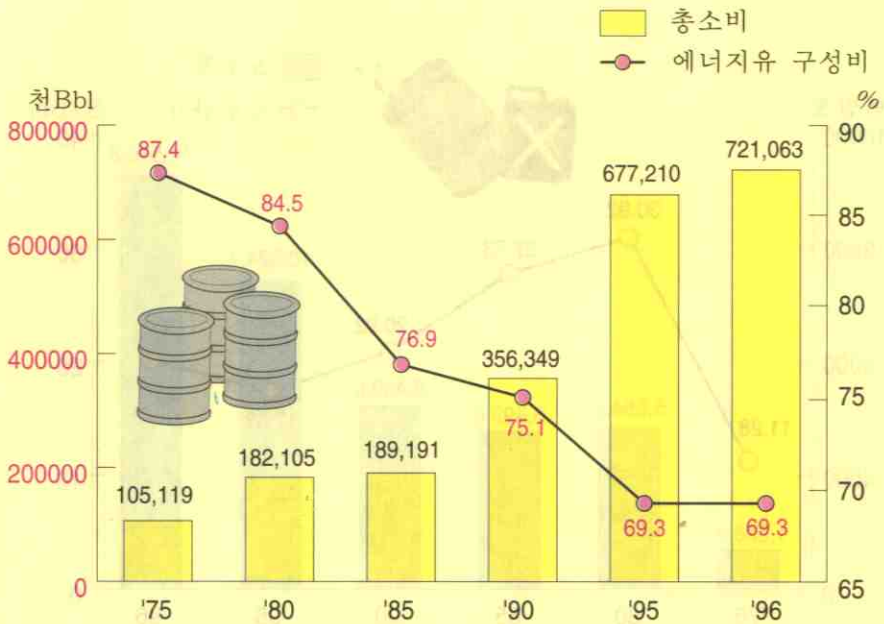
3. 원유도입



연도	도입액(백만\$)				도입단가(\$/Bbl)			국민1인당 부담액(\$)
	F.O.B	수송비	비중(%)		F.O.B	수송비		
1975	1,328.2	1,241.2	86.9	6.6	11.28	10.54	0.74	37.64
1980	5,654.2	5,431.4	222.8	3.9	30.92	29.70	1.22	148.31
1985	5,499.6	5,289.4	210.2	4.0	27.73	26.67	1.06	134.77
1990	6,450.6	6,163.7	286.9	4.4	20.92	19.99	0.93	150.47
1995	10,824.7	10,309.8	515.0	4.7	17.32	16.50	0.82	240.05
1996	14,516.8	13,834.1	682.8	4.7	20.11	19.16	0.95	318.74

자료 : 산업자원부 「에너지통계연보」

4. 석유류 소비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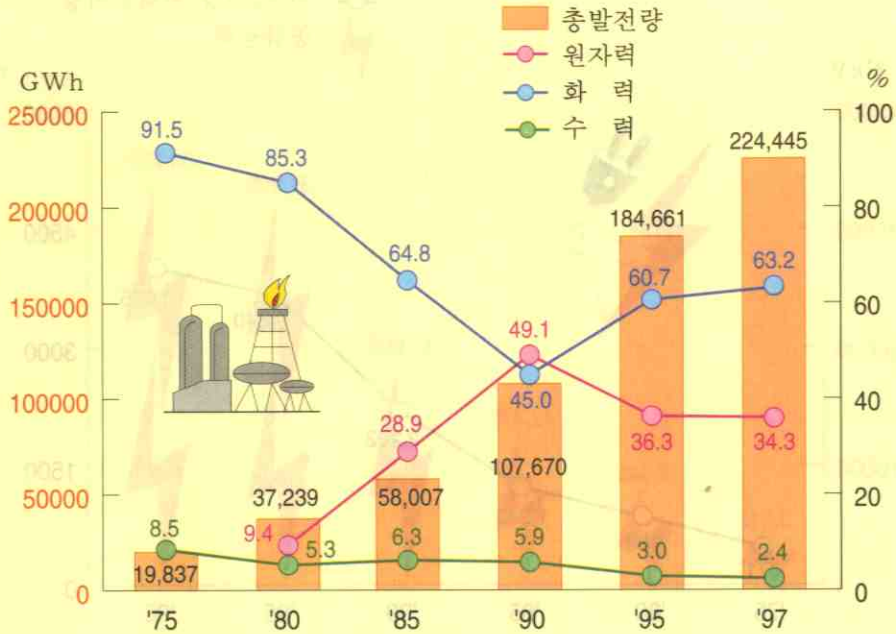


단위 : 천Bbl, %

	총소비	에너지유		LPG		비에너지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75	105,119	91,901	87.4	1,689	1.6	11,529	11.0
1980	182,105	153,948	84.5	4,500	2.5	23,657	13.0
1985	189,191	145,488	76.9	14,247	7.5	29,456	15.6
1990	356,349	267,514	75.1	35,712	10.0	53,123	14.9
1995	677,210	469,009	69.3	66,468	9.8	141,731	20.9
1996	721,063	499,959	69.3	68,442	9.5	152,662	21.2

자료 : 산업자원부 「에너지통계연보」

5. 발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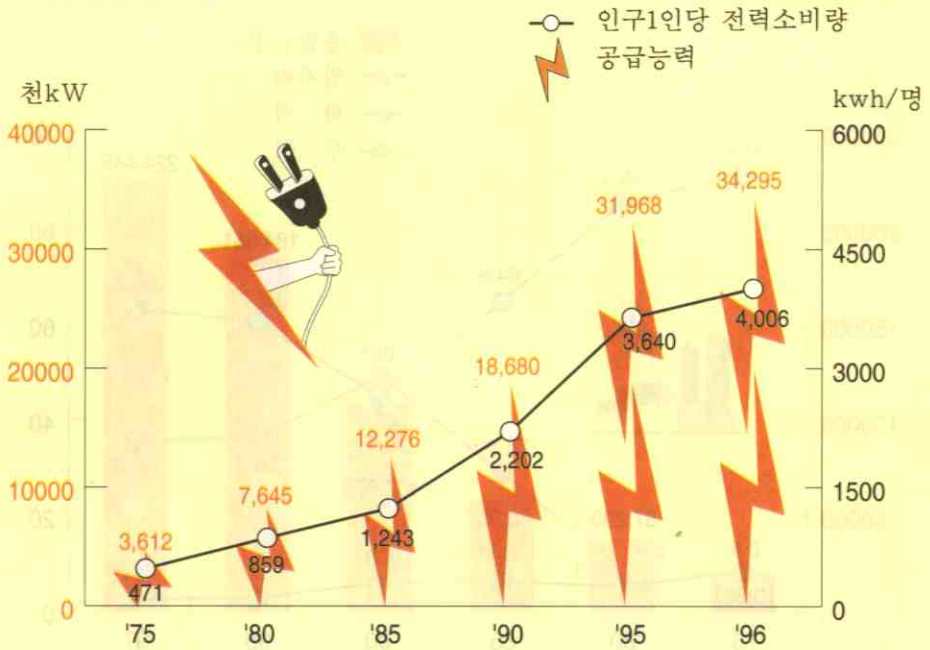


단위 : GWh, %, kWh

연도	총발전량	수력		화력		원자력		판매전력량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75	19,837	1,683	8.5	18,154	91.5	-	-	16,630
1980	37,239	1,984	5.3	31,778	85.3	3,477	9.4	32,734
1985	58,007	3,659	6.3	37,603	64.8	16,745	28.9	50,732
1990	107,670	6,361	5.9	48,422	45.0	52,887	49.1	94,383
1995	184,661	5,478	3.0	112,154	60.7	67,029	36.3	163,270
1996	205,494	5,201	2.5	126,368	61.5	73,924	36.0	182,470
1997	224,445	5,404	2.4	141,955	63.2	77,086	34.3	200,784

자료 : 한국전력 「전력통계」

6. 전력수급



단위 : 천kW,%

연도	공급능력	평균 전력		인구1인당 전력생산량 (kwh/명)	인구1인당 전력소비량 (kwh/명)	판매단가 (원/kwh)
		부하율	이용률			
1975	3,612	2,265	67.6	562	471	17.10
1980	7,645	4,239	77.7	977	859	50.88
1985	12,276	6,622	70.8	1,422	1,243	67.92
1990	18,680	12,291	71.2	2,516	2,202	52.94
1995	31,968	21,080	70.6	4,117	3,640	61.28
1996	34,295	23,394	72.5	4,512	4,006	62.99

자료 : 한국전력 「전력통계」

9. 건설업 및 주택통계



통계조사 및 통계

건설업통계조사, 건설수주통계조사, 건설기성통계,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건설업경영분석, 주택총조사,
아파트 주거환경통계

주요 통계지표

기성액, 건축면적, 주택보급률, 주택투자율, 건폐율,
공정률, 공중률

통계표 및 도표

건설업개황, 건축허가면적, 건설주택수 및 주택투자율,
주택유형별 주택수

건설업 및 주택통계

I 건설업의 의의

건설업이란 건축, 토목공사 및 이와 관련된 구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설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종합 및 전문직별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즉 건설업은 주택 및 산업시설의 구축에서 토목개발에 이르는 광범위한 고정자본 내지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을 그 활동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높고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요도 날로 증대되고 있다.

건설업체는 취득면허별로 건설교통부장관 면허업체(토목, 건축 및 특수면허업체), 산업자원부장관 면허업체(전기 1종 공사업체), 정보통신부장관 면허업체(전기통신공사 면허업체), 지방자치단체의 면허 및 등록업체(전문건설업체, 전기 2종 공사업체 및 각종 설비등록업체)로 구분된다.

☞ 건설업통계의 종류

건설업관련 통계자료는 일반적인 경제분석과 국민계정 작성 뿐만 아니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사업운영계획을 세우는 데도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건설업관련 통계로는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건설업통계, 건설수주통계, 건설기성통계, 주택총조사와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하는 건축허가통계, 건축착공통계, 아파트주거환경통계와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경영분석통계가 있다.

II 건설업관련 주요통계 및 통계조사

1. 건설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는 우리나라 건설업분야의 고용, 급여, 공사액, 공사비용,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주요건설장비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건설업부문을 포함한 종합경제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조사는 1985년 기준부터는 건설업부문의 유사통계 통합실시계획의 일환으로 통계청,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다가 1989년기준 조사부터는 대한설비공사협회가 추가로 조사에 참가하게 되고 1993년

기준 조사부터는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도 통합 실시하였으며, 자료는 통계청에서 일괄처리한 후 전년기준 자료를 익년말에 「건설업통계조사 보고서」를 통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각종 건설관련 면허를 소지하고 당해년도에 건설활동을 수행한 사업체로 하며 조사항목으로서는 고용 및 급여, 기성액 및 공사비용, 유형고정자산, 주요 건설장비 보유대수 등이 있다.

그리고 위 항목들은 산업세분류별, 조직형태별, 자본금규모별, 종사자규모별, 직종별, 총공사액규모별, 본사소재지별, 공사지역별, 발주자별(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기타 국가의 출연보조를 받는 공공기관, 국내민간, 국내외국기관, 해외), 공종별(건축, 토목, 전문, 전기 및 전기통신, 기타 설비공사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분), 면허종류별 등으로 분류되어 수록된다.

건설업통계조사의 조사범위는 『한국산업분류』 대분류 F. 건설업이고, 건설관련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직영 공사 및 무면허공사사업자에 의한 공사(주로 주택 및 직영 공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료이용시 유의해야 한다.

2. 건설수주통계조사

건설수주통계는 건설공사의 계약내역을 매월 조사하여 향후의 실제 건설투자동향을 미리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사, 공표되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나 건축착공통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토목공사까지를 포함하므로 토목부문에 관한 월별지표 자료로는 유일한 통계라 할 수 있다.

본 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건설교통부장관 일반건설업 면허업체 중 기성실적순위 상위 250개 업체('98년 조사의 경우 '96년 기성실적 기준)이며, 매월 19일까지 전월분에 대한 실적을 자계식과 타계식을 병행하여 조사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건설공사계약건별 발주자와 공종, 공사액, 예정착공일자, 완공일자, 공사지역 등이다.

이렇게 조사된 결과는 전산처리과정을 거친 후 매월 말경에 「산업활동동향」과 「건설수주통계」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한편 건설수주통계의 특징은 토목부분까지를 포함한다는 점 이외에도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가 수량(면적:m²)통계인데 비하여 경상금액 기초통계라는 점이다.

수량통계와 금액통계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수량통계인 건축허가나 건축착공통계가 건설공사의 부가가치 변동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금액통계인 건설수주통계는 경상금액기준으로 건설공사의 부가가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건설수주통계의 취약점은 조사대상업체가 대규모 건설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건설업 전체의 수주액을 추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경상금액기준으로 작성되어 불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건설기성통계

통계청에서는 '98년부터 건설투자의 매월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기성통계를 신규로 작성, 공표하고 있다. 월별 건설투자동향을 파악하는데 이용되는 통계로는 건설수주통계와 건축허가통계가 있으나, 모두 건설투자의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실제의 건설투자동향 파악에는 제약점이 있다. 즉, 실제 건설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사발주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업체와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실제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날 수 있어 건설수주통계와 건축허가통계로는 정확한 건설투자동향 파악이 어렵게 된다.

건설기성통계는 건설수주통계와 건축허가통계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통계로서 건설업체의 매월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건설기성실적을 매월 조사하여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기성실적의 변동은 실제 건설투자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경기와 건설투자의 변화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기성통계조사의 대상은 연간 기성실적 상위 대규모 건설업체이며, 조사내용은 공종별, 발주자별 기성실적과 공사현장수이다. 조사결과는 매월 「산업활동동향」과 「건설수주통계」에 수록, 공표된다.

4.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 건축허가통계

건축허가통계는 건설수주통계와 함께 광공업부문의 경기예측자료로도 중요하게 이용된다. 특히, 건축물의 비제조업부문 설비투자동향을 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건설수주보다 앞서 나타나는 건설부문의 선행지표자료가 되며, 이에 따라 경기종합지수의 중요한 선행지표계열이며 GNP추계에도 직접 이용되고 있다.

건축허가통계는 건축주가 당해지역 시·군·구에 건축허가 신청서 서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기록사항 중 용도별·자재별 연건축면적의 집계표를 시·군·구에서 작성하고 시·도를 경유한 후 건설교통부에서 이를 종합·집계하여 작성한다. 즉 직접 조사한 1차적 조사통계자료는 아니다.

본 조사에는 시·군·구 제출분 이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의 공공(주공)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분과 각 시·도지사 승인분인 민간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실적도 포함되며, 신축분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개축분도 포함된다.

자료의 집계결과는 동수와 연건축면적(m²)으로 나타내며, 분류체계는 용도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및 기타), 자재별(철근·철골, 목조, 연와 및 석조, 기타), 건축주별(공공기관, 법인, 개인, 기타) 및 공사종류별(신축, 증축, 기타)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자료는 월단위로 집계되어 매년 「건설교통통계연보(건설편)」을 통해 발표된다. 또한 월자료의 경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과 「한국통계월보」에도 수록된다.

그런데 이 건축허가통계자료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건축물의 질적, 구조적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한 면적의 증감만으로 건축경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신축분과 저가의 개축분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면적으로 보고 이들 증감률만으로 건축경기동향을 판단할 때 실제보다 과대 또는 과소평가될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건축허가통계는 불규칙성과 계절성이 비교적 크게 작용하므로 경기동향 자료로서 이용할 때는 계절변동조정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건축착공통계

건축허가통계가 건축허가자료를 기초로 작성되는데 비하여 건축착공통계는 건축주의 착공신고자료를 기초로 작성한다는 점만이 다를 뿐, 건축허가통계의 작성체계나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집계상 분류체계에 있어서 착공통계는 신설주택 착공을 형태별(단독, 연립, 아파트, 기타) 및 사업자별(공공기관, 주택건설업자, 기타)로 특수분류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본 통계는 건축허가 이후의 설계변동 등에 따른 변동내용이 착공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착공통계가 건축허가통계보다 실제 고정자본형성분에 접근되는 자료이다.

5. 건설업경영분석

건설업경영분석의 목적은 건설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계수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경영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경영합리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정부의 경제 및 산업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건설업경영분석통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면허(일반 및 특수)업체를 대상(재무제표 미제출사 제외)으로 건설업체의 재무제표 중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건설공사원가명세서, 기술개발비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평가는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재무제표란 업체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종류별로 기록한 대차대조표, 일정기간동안 영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과 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순차적으로 기재한 손익계산서 등의 각종 회계자료로 기업의 사정과 활동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경영분석시 필수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기업의 평가는 재무제표상에 나타나 있는 자산, 부채, 수입, 비용 등의 각 항목간의 구성과 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피는 것으로 각 항목간의 구성과 배합이 바람직할 때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한다.

한편 건설업경영분석의 분류는 기업규모별, 토건도급순위에 따른 계층별, 건설업토건면허의 법정최저자본금을 기준으로 한 자본금규모별로 이루어진다.

계정과목관련 용어해설

- ♣ **대차대조표** :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로서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기록되는 자산항목은 기업이 소유한 자산의 운용상태를 나타내며 대변에 기록되는 부채 및 자본항목은 자본의 조달구조를 나타낸다.
- ♣ **손익계산서** :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나타내는 동태적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회계정보 이용자로 하여금 기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 **건설공사원가명세서** :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서 건설공사를 위하여 소비된 원가의 계산명세를 나타내며 당기 총공사비용과 기초 미성공사지출금액과의 합계액에서 기말 미완성공사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된다.
 - **기초 미성공사지출금액(기초 미완성주택)**: 전기로부터 이월된 미성공사(미완성 주택)에 대한 총지출액을 계상한다.
 - **기말 미성공사지출금액(기말 미완성공사)**: 당년도에 공사원가에는 투입이 되었으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결산일 현재 공사중에 있는 공사 및 주택으로 재고자산의 미완성주택 및 미완성공사비에 해당된다.

6. 주택총조사

통계청에서는 인구 및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속성까지도 파악될 수 있도록 5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주택총조사는 이 조사의 일부분으로서 일시점의 가구수 및 가구의 특성에 이어 주택수 및 주택이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다.

특히 1995년 조사에서는 거주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의 거주기간 항목이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비거주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빈집조사표를 이용하여 빈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대한민국 영토 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 영역의 모든 거처이다. 거처 중 주택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이 포함되며 조사항목은 연건평, 대지면적, 총방수, 건축년도, 편익시설수이다.

단, 군부대, 전투(의무)경찰대, 해양경찰대의 병영막사,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경찰서보호실 등 시설내의 막사, 외국군대의 병영막사, 제외대상 외국인의 거처, 사무실 및 그들이 관리하는 건물은 제외된다.

기타 조사방법은 인구총조사와 동일하며, 자료집계 후 결과공표도 잠정보고서, 속보(총조사 이용자의 신속한 자료이용을 돕기 위하여 표본조사구 중에서 전국의 2%에 해당하는 가구를 우선 추출, 집계한 것), 최종 보고서(전수조사보고서, 표본조사보고서)순으로 하고 있다.

♣ **주택** : 한 가구가 살도록 지어진 집으로써 첫째 영구건물, 둘째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셋째 독립된 출입구, 넷째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1단위의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의 주택을 말한다.

- **단독주택** :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한다.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1.16㎡(200평)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세대(가구)별로 분리하여 각각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다.
- **비거주용건물내의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써 주택에서 제외하였다.

7. 아파트주거환경통계

아파트주거환경통계는 아파트의 규모, 층수, 구조현황, 편의시설 배치 및 규모, 주거밀도의 적정성 등을 조사, 분석하여 현행규정의 제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아파트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조사는 전국의 아파트(5층이상 2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하여 건설교통부에서 3년주기로 실시하는데, '92년 이전은 전수조사였으나 현재는 행정정보통계를 이용하고 있다. 즉 전국의 각 시·군·구청 직원 및 공공부문 주택건설관련 직원이 조사표를 기재하여 각 도 및 광역시 주택과로 보내고, 이를 다시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에서 취합하여 집계하게 된다.

본 조사는 각 시·군·구 주택관련 공무원이 조사대상 기간내에 준공된 관할지역의 아파트를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준공아파트와 각 지자체 산하의 건설업체에서 지은 아파트는 해당 사업주체에서 파악한다.

조사내용은 각 지역별, 층수별, 사업주체별, 구조방식별, 연도별 등으로 분리하여 구조방식, 동수현황, 층수현황, 규모, 단지면적, 난방방식,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시설 등을 분석한다.

Ⅲ 건설업이 경기변화에 미치는 영향

건설업은 각 산업으로부터 중간투입재, 혹은 원자재를 구입하게 되므로 목제품, 요업제품, 철강, 금속제품, 전기제품, 시멘트제품, 판유리, 내장타일 및 합판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에 영향을 준다.

특히 공사의 종류와 공정에 따라 다양한 건설장비가 필요하고, 인건비 절약과 공기단축을 위하여 최신장비의 구입이 증가하고 있어 기계공업발전에도 기여하는 종합산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건설업을 부추기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와 같은 건설업 자체의 경기동향과 구조변동 및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Ⅳ 지 표

○ 기성액

기성액이라 함은 건설업체에서 당년도에 시공한 공사액을 말한다. 즉 공사수주 금액 중 공사의 일부를 다른업체에 하도급(원도급자의 외주공사액)을 준 경우에는 원도급자의 기성액에서 제외시킨다.

○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상 1m 이하의 부분을 제외)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 차양, 쉼터레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주택보급률

주택공급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 주택수는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연도에는 총조사 결과자료를, 총조사의 연도는 총조사결과에 의한 추정치(주택수 및 가구 증가율, 주택멸실률 등 감안)를 사용하여 산출하며 주택공급 대상가구 역시 주택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나 일반가구 중에서 단독, 비혈연가구는 제외한다.

○ 주택투자율

GNP 또는 GDP 중 주택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우리나라에서는 GNP대비 주택투자율을, 선진국에서는 GDP대비 주택투자율을 주로 발표하고 있다.

○ 건폐율

건축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 공정률

공사의 진행순서와 작업일정을 종합한 공사의 진도과정에 따라 투입된 공사비의 총공사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 공종률

공사의 진도과정을 각 단위공사별로 구분하여 공사종류별 진척에 따른 단위공사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참고자료>

「건설업통계조사」	1997	통계청
「아파트주거환경통계」	1997	건설교통부
「건설수주통계연보」	1997	통계청
「건설업경영분석」	1997	대한건설협회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통계청
「주택경제통계편람」	1997	한국주택은행

1. 건설업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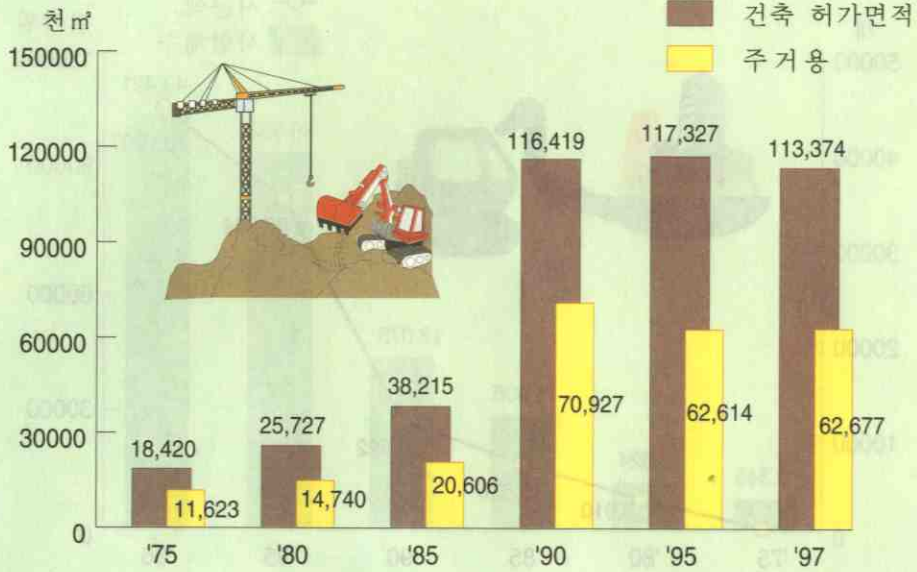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수주액	기성액			부가가치	연말유형 고정자산
				원도급 공사	하도급 공사			
1975	3,348	328,935	618	763	760	3	350	147
1980	4,924	608,130	16,869	8,010	7,555	455	3,262	1,489
1985	11,936	859,531	31,773	16,876	15,111	1,765	6,762	2,828
1990	18,073	934,312	38,486	27,592	22,932	4,661	13,342	5,508
1995	39,533	1,550,017	101,273	83,644	63,379	20,266	39,899	18,482
1996	43,421	1,610,910	119,444	106,207	79,585	26,621	47,339	23,404

자료 :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2. 건축허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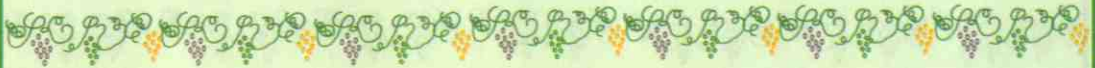
단위 : 연면적(천㎡), 호수

연도	건축 허가면적						허가동수
	주거용 ¹⁾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	기타		
1975	11,623	2,650	2,641	945	561	120,950	
1980	14,740	5,053	2,222	1,823	1,289	104,481	
1985	20,606	9,498	4,139	2,918	1,054	95,418	
1990	70,927	26,409	10,570	5,106	3,408	188,959	
1995	62,614	28,549	13,727	6,281	6,157	140,062	
1996	61,062	26,862	11,921	6,289	7,682	144,630	
1997	62,677	27,918	8,796	6,603	7,379	123,683	

주 : 1) 주거, 산업 병용을 포함.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3. 건설주택수 및 주택투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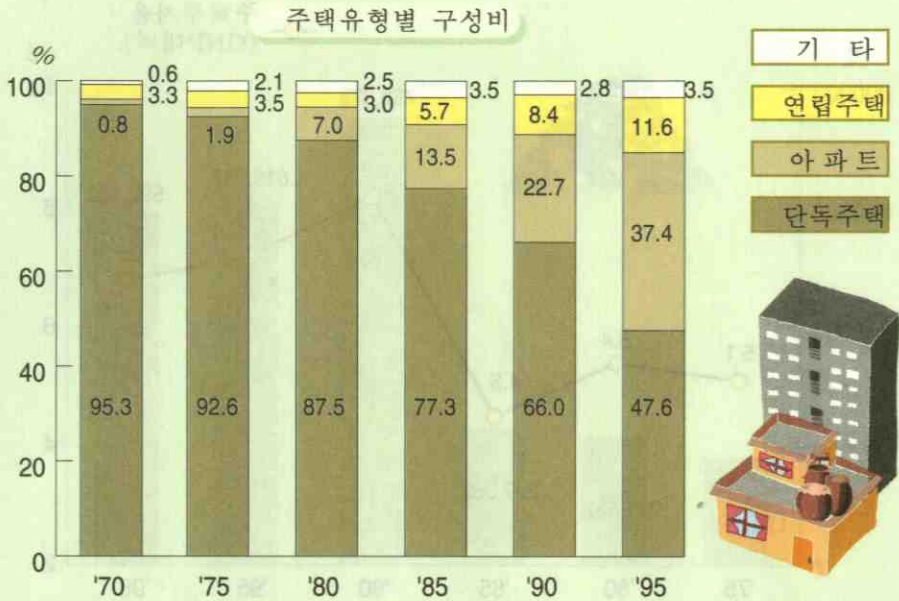
단위 : 호, %

연도	건설 주택수			유형별		주택투자율 (GNP대비)
	공공	민간	단독주택	아파트		
1975	179,951	62,700	117,251	131,850	37,828	5.1
1980	211,537	106,187	105,350	122,683	76,889	5.4
1985	227,362	132,070	95,292	50,210	132,114	4.5
1990	750,378	269,421	480,957	105,445	501,036	8.2
1995	619,057	228,232	390,825	55,710	497,273	7.2
1996	592,132	232,285	359,847	61,263	462,548	6.8

주 : 9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한국은행 「국민계정」

4. 주택유형별 주택수



단위 : 천호, %

연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¹⁾		기타	
		주택수	구성비	주택수	구성비	주택수	구성비	주택수	구성비
1970	4,360	4,155	95.3	33	0.8	146	3.3	26	0.6
1975	4,734	4,382	92.6	89	1.9	165	3.5	98	2.1
1980	5,319	4,652	87.5	374	7.0	162	3.0	131	2.5
1985	6,104	4,719	77.3	822	13.5	350	5.7	213	3.5
1990	7,160	4,727	66.0	1,628	22.7	603	8.4	202	2.8
1995	9,205	4,337	47.6	3,455	37.4	1,070	11.6	343	3.5

주 : · 빈집제외

1) 다세대 주택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도소매 및 서비스업 통계

통계조사 및 통계

도소매업통계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소매업경영동태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주요 통계지표

도매업,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판매액지수, 사업체, 사업장면적, 금융비용,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상품회전율,
생산성지표, 서비스업 사업체

통계표 및 도표

도소매업 개황, 도소매업 판매액 지수(경상지수),
식품위생접객업소 현황, 서비스업 현황

도소매 및 서비스업통계

I 유통환경 급진적으로 변화

국민소득의 증대, 젊은 소비계층의 확대, 교통통신의 발달 등 유통환경의 급진적인 변화에 따라 유통분야에도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편의점 등의 새로운 업태가 계속적으로 출현하여 다양해진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간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서 종사하는 중소상인에 대한 경쟁력향상 지원이라는 사회정책적 측면에서도 도소매업의 실태 파악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도소매업의 개념을 살펴보면 **도매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타이프라이터, 문구용품, 목재 혹은 석유, 페인트, 유리, 벽지, 종자, 농약 등은 산업 및 상업용 상품일지라도 개인이나 가정소비를 위하여 주로 일반대중을 상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업으로 보며, 이를 주로 산업사용자에게 판매할 경우는 도매업으로 본다.

소매업은 상점, 백화점, 연쇄점, 우편주문판매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소비자협동조합, 행상인 등에서 개인, 가정 또는 일반대중에게 소비자용품을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매업의 주요 특성은 일반적으로 구입한 상품을 일반대중과 직접 접촉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이에 관련된 부수적인 상품처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판매되는 상품은 주로 개인이나 가정에서 소비되는 상품인데, 그 특성에 따라 자기가 생산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업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전 산업에서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유통정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생산성향상을 꾀하며 판매비용을 절감하고 유통산업의 근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판매시점의 정보관리제도 등 새로운 발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즉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가 필요한 것이다.

II 서비스산업 갈수록 국가발전에 중요한 역할

서비스는 재화와는 달리 볼 수 없는 용역으로서, 이러한 용역을 제공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산업을 서비스업이라 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산업구조는 1차산업에서 2차산업, 그리고 다시 3차산업으로 이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득증대와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건강서비스업, 의식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사업관련서비스 등의 필요성도 급증하고 있다. 다수의 서비스부문은 이들이 국민총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이상으로 발전과정에서 훨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서비스가 서비스산업의 각 부문간 및 서비스와 타 산업간의 관련성에 의해 한 나라의 전반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Ⅲ 도소매 및 서비스업관련 주요통계 및 통계조사

1. 도소매업통계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는 도소매업의 지난 1년간 운영실태 및 경영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조사는 통계청에서 서비스부문과 병행하여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G.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H. 숙박·음식점업 사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이다.

표본의 설계방법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데 사업체수가 적은 백화점, 슈퍼마켓, 호텔업 등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표본조사층으로 분류하여 계통추출한다.

조사방법은 읍·면·동직원과 일용조사원에 의한 타계식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사업체에 대해서는 자계식조사를 병행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장면적, 사업경비, 연간매출액, 영업시간, 연간급여액, 시설현황 등으로 매년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자료를 발표한다.

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업체기초통계는 1994년 이후 16개 시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계획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체부문 대상의 각종 통계조사 모집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이지만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기타 외국기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판매상,

조사기준일 현재 개설준비 중이거나 3개월이상 휴업상태인 사업체는 제외된다. 여기서 **사업체**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각종 교습소,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하에 재화와 판매, 서비스 제공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를 말한다.

또한 사업체는 기업체와 구분되는데, **기업체**란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단위 또는 법적단위로서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1개의 기업체가 여러개의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각 장소별로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된다.

한편 조사단위는 일정한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판매, 서비스제공 등 유형의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공장, 상점, 작업장, 광업소, 농장, 출장소, 영업소, 지점, 연락사무소 및 본점, 지사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조사된다. 조사체계는 동·읍·면 직원에 의한 면접 단계식조사를 하되, 사업체 밀집지역은 보조조사원을 채용하여 조사하기도 한다.

전 도소매업체에 대한 구조파악 및 관련 모집단을 제공하기 위한 이 조사는 산업분류별, 종사자규모별, 조직형태별 등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조사한 후, 전국편과 지역편으로 나뉘어 전국편은 통계청에서, 지역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를 통해 각각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3. 소매업경영동태조사

소매업경영동태조사는 백화점·쇼핑센터, 슈퍼마켓, 편의점 및 방문판매업체 등 소매업의 경영동태를 조사·분석하여 시장경기동향을 파악하고 같은 종류의 업태 상호간 및 다른 종류의 업태간 경영비교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정부의 유통산업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수 및 표본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사업체의 기준을 보면, 첫째 **백화점**은 각종 상품을 부문별로 구성하여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일괄구매할 수 있도록 직영위주의 형태로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로서 매장면적이 4,000㎡ 이상이고 매장의 50% 이상을 직영하는 점포이어야 한다.

둘째 **쇼핑센터**는 백화점, 슈퍼마켓 등 핵점포가 있고 각종 전문점과 레저시설·공공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통일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직영 또는 임대형태의 소매업 집단으로 매장면적은 4,000㎡ 이상이고 임차건물의 경우는 매장면적의 30% 이상을 직영하는 점포이다.

그리고 슈퍼마켓은 식료품 및 일용잡화를 위주로 소비자의 셀프서비스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영업장으로 매장면적이 165㎡ 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이 외에도 편의점은 식료품 위주로 셀프서비스 방식에 의해 연쇄화사업자가 직영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체로 1일 20시간 이상의 영업과 셀프서비스 방식의 운영, 광의의 식품 매출비중이 전체의 50% 이상을 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방문판매업체는 상품의 판매업자, 또는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용역 제공업자가 방문 등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판매 및 재고동향, 상품별 매출구성, 수입상품, 매출동향, 수익성 및 생산성지표에 관한 사항,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매장면적, 종업원수, 재무구조, 경비구성, 당면문제점, 향후 경영전략 등이며 그 결과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소매업경영동태조사보고」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4. 서비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는 서비스업의 지난 1년간 운영실태 및 경영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조사는 통계청에서 도소매업부문과 병행하여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관련서비스업과 O.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회원단체 제외)에 해당하는 사업체이다.

표본의 설계방법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결과를 모집단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데 전국의 사업체수가 100개 미만인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표본조사층으로 분류하여 계통추출한다.

조사방법은 읍·면·동직원과 일용조사원에 의한 타계식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자계식조사를 병행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장면적, 사업경비, 연간매출액, 영업시간, 연간급여액, 시설현황 등으로 매년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자료를 발표한다

V 지 표

○ 도매업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매업의 형태는 크게 일반도매업, 상품중개업, 무역업으로 분류된다.

일반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특정상품을 도매하는 도매업자, 산업·상업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 대한 상품공급자 및 이동공급자, 폐품수집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상품중개업은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품을 도매하는 대리점이나 상품의 중개인 등을 말한다.

무역업은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전문 또는 종합상품의 대외거래만을 전업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 소매업

상점, 백화점, 연쇄점, 우편주문판매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소비자협동조합, 행상인 등이 개인, 가정 또는 일반대중에게 소비자용품을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대부분의 소매상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서 판매를 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소유자를 대리하여 판매하는 수도 있다.

소매업의 형태는 크게 일반소매업, 종합소매업, 특수소매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소매업은 백화점,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등 단일경영체계를 가진 종합소매업을 제외하고 동일한 주된 품목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업체를 포함한다.

종합소매업에는 백화점,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등과 같이 경영체계를 갖고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를 포함한다.

특수소매업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이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일반대중이나 특정인에게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호텔, 여관, 회원제숙박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음식점업은接客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제된 음식료품을 제공하거나 고객의 주문에 따라 즉석에서 음식료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로서 식당업, 주점업, 다과점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도소매업판매액지수

도소매업판매액지수는 경상지수, 불변지수, 계절변동조정지수 등 3종류로 편제되고 있다.

경상지수는 업종별 조사대상사업체의 해당월 판매총액을 기준연도의 업종별 월평균판매총액(기준액)으로 나누어 백분비로 나타낸다.

불변지수는 판매액(가격×수량)중 가격의 변동분을 제외한 물량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로서 경상지수를 물가디플레이터로 나누어 백분비로 산출한다.

계절조정지수는 판매액 변동에 있어서 계절적요인이나 경제외적인 불규칙요인을 제외한 순수한 경제변동의 실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로서 불변지수를 계절지수로 나누어 백분비로 산출한다.

○ 사업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경영체제아래 재화의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개개의 점포를 말한다.

○ 사업장 면적

사업체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매장, 창고, 사무실 및 기타의 면적을 말한다.

- 매장 : 상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직접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 창고 :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가 구입한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사무실 및 기타 : 사무실 및 사택(사업장과 같이 있는), 기숙사 등 복리후생시설을 말한다.

○ 금융비용

사업을 목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지불한 이자총액이다.

○ 매출총이익률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경비와 이익의 근본이 되는 수익성지표이다.

$$\cdot \text{매출총이익률} = \text{매출총이익} / \text{매출액}$$

○ 영업이익률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영업비(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공제한 것으로 영업활동 그 자체의 업적평가를 행하는 수익성지표이다.

$$\cdot \text{영업이익률} = \text{영업이익} / \text{매출액}$$

○ 상품회전율

일정기간(보통 1년)의 매출액을 일정기간의 평균재고액으로 나눈 것으로 상품 투자자본의 활동상황 및 상품관리를 위한 기초 활동성지표이다.

$$\cdot \text{상품회전율} = \text{매출액} / \text{평균재고액(매출가격기준)}$$

○ 생산성 지표

- 1일 평균매출액 = 총매출액 / 영업일수
- 1일 1평당 매출액 = 1일 평균매출액 / 매장면적
- 1일 종업원 1인당 매출액 = 1일 평균매출액 / 종업원수
- 고객 1인 1회 구매액 = 1일 평균매출액 / 1일 이용고객수

○ 서비스업 사업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통제하에서 서비스제공 등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개개의 경제단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무소, 학교, 병원, 재활원, 학술연구기관, 음식점, 독서실, 학원, 이발소 등 사업활동을 행하고 있는 장소이다.

<참고자료>

- 「1995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 보고서」 1997 통계청
- 「1996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7 통계청
- 「소매업경영동태조사보고」 1996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의 경제지표」 1995 김경중(매일경제신문사)

1. 도소매업 개황



단위 : 개소, 천명,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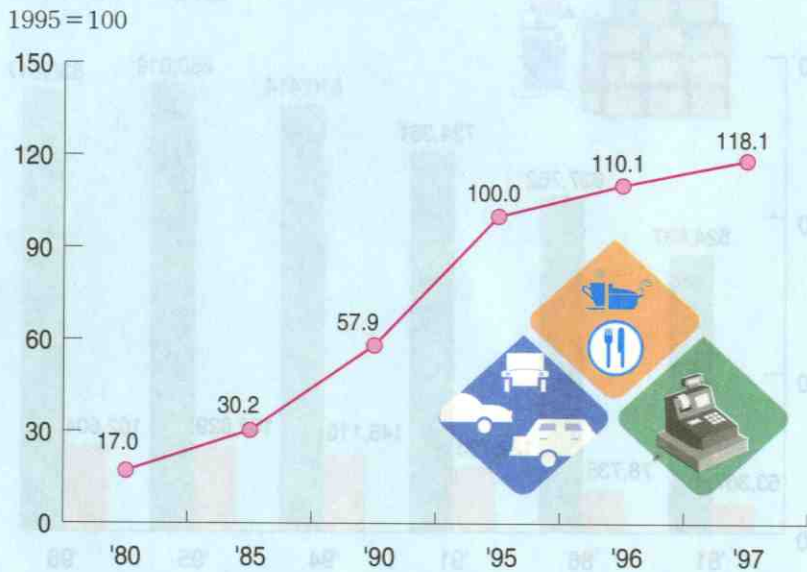
연도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981	53,367	262	524,667	907	196,565	518	25,523	74
1986	78,736	421	637,762	1,221	259,451	709	29,382	101
1991	122,793	609	724,361	1,405	337,796	894	28,839	127
1994 ¹⁾	145,110	684	810,414	1,734	429,234	1,034	31,072	116
1995	162,629	835	850,019	1,883	488,505	1,165	32,991	120
1996	162,604	766	836,817	1,857	520,588	1,254	33,533	123

주 : 1) '94년 이후 자료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결과임.

2) '91년 이후 자료는 자동차 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부문 포함.

자료 : 통계청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 도소매업 판매액지수(경상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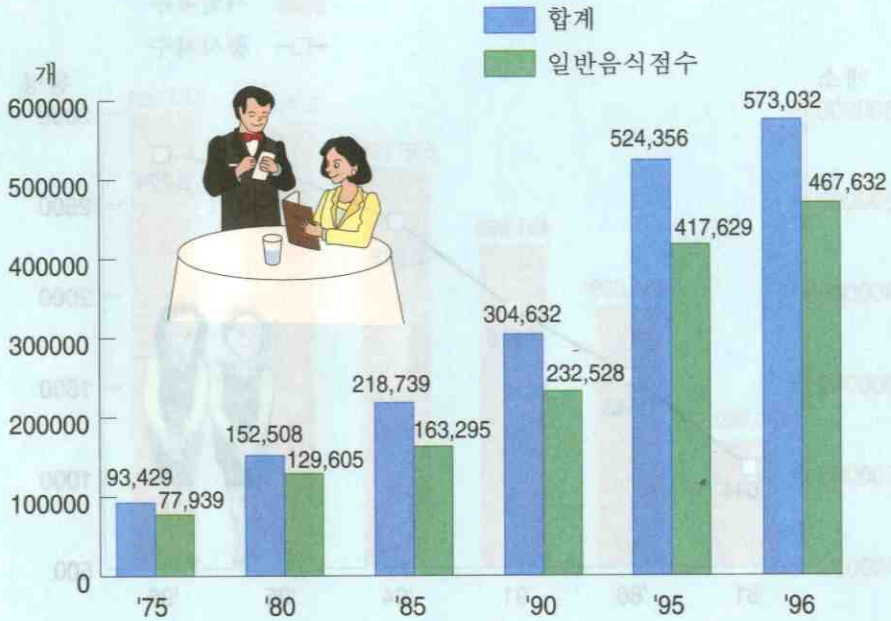
1995=100

연도	총 지수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도매업			소매업			
			농수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	가정 용품	종합 소매	음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 신품 및 소매		
1980	17.0	27.2	16.4	17.6	17.4	16.0	11.2 ¹⁾	17.6	18.3
1985	30.2	41.8	29.6	36.8	29.2	28.9	16.5	28.7	34.4
1990	57.9	64.3	56.1	64.6	57.9	58.1	40.0	57.2	66.0
19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6	110.1	113.7	107.0	107.6	106.6	113.2	124.1	113.5	108.0
1997	118.1	124.7	114.4	111.2	109.6	121.1	137.7	121.2	113.2

주 : 1) 1982년 자료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 판매액지수」

3. 식품위생접객업소 현황



(단위 : 개, %)

	합계	일반음식점 ¹⁾		제과점	다방	기타 ²⁾
		구성비				
1975	93,429	77,939	83.4	2,148	10,115	3,227
1980	152,508	129,605	85.0	3,787	15,508	3,608
1985	218,739	163,295	74.7	8,008	34,388	13,048
1990	304,632	232,528	76.3	11,388	40,874	19,842
1995	524,356	417,629	79.6	17,481	41,139	48,107
1996	573,032	467,632	81.6	18,639	41,008	45,753

주 : 1) 94년 이전은 대중음식점임.

2) 단란주점, 유흥주점, 기타 휴게음식점 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4. 서비스업 현황



단위 : 개소, 천명

	계		부동산, 임대 및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사회및 개인서비스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 자수	사업체 수	종사 자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981	236,962	1,044	39,294	181	18,630	358	13,034	95	166,004	410
1986	384,626	1,542	63,316	262	52,986	492	19,251	163	249,073	625
1991	451,695	1,916	121,691	487	82,382	650	27,826	228	219,796	551
1994 ¹⁾	536,780	2,398	134,644	640	94,316	719	35,934	296	271,886	743
1995	586,329	2,675	144,965	772	102,604	791	40,624	324	298,136	788
1996	597,951	2,774	144,625	810	102,266	819	45,117	354	305,943	791

주 : 1) '94년 이후 자료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결과임.

자료 : 통계청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1. 운수·정보통신통계



통계조사 및 통계

운수업 통계조사, 도로교통량통계,
교통부문 운송실적보고, 자동차등록현황조사,
고속도로교통량통계, 등록선박통계, 우편총조사,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주요 통계지표

수송분담률, 도로연장, 도로포장률, 철도, 공로, 해운,
항공, 화물입·출하, 전화보급률, 자동차등록수,
이동전화·무선호출가입자, 운수수입,
운수업부가가치

통계표 및 도표

육상운수업 개황, 국내여객수송, 국내화물수송,
국제여객 및 화물수송, 자동차등록대수 및 승용차점유율,
통신시설 가입자

운수·정보통신통계

I 현대는 정보화 사회

한 나라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에 널려 있는 자원이 필요한 시기, 필요한 장소에 있어야만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국에 펼쳐져 있는 크고 작은 도로, 항만 등이 잘 정비되어 있고, 적절한 수송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한다.

또한 현대는 세계가 1일 생활권으로 묶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의 인터넷을 통해 세계각국의 각종 자료를 즉시 접속하여 볼 수 있고, 통신망을 통해 각종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상을 통한 회의도 이루어지는 등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앞으로의 세계는 이러한 정보화에 뒤져서는 3류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도로망이나 정보통신망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하여 자원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운수 및 정보통신산업은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지만 '70년대 이후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항만의 물동량 적체나 도로의 부족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대도시의 교통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의 경우에도 최근 정보통신부의 발족과 아울러 크게 발전하고는 있으나, 그 수준은 구미선진국 뿐 아니라 싱가포르, 대만 등에도 크게 뒤져 있다.

II 운수, 정보통신통계

1. 운수통계

운수통계는 보통 도로나 철도, 항만 등 시설에 관련된 통계와 그 시설위에서 움직이는 차량과 선박 등에 관련된 통계와 이러한 차량, 선박 등이 수송한 물동량과 관련된 통계로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운수업통계조사가 있고 그 외의 통계는 대부분 건설교통부, 철도청, 해양수산부 등에서 업무통계로 개발된 각종 운송수단별 시설 및 운송장비에 관한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2. 정보통신산업통계

현대사회에서 가장 변화가 큰 분야가 정보통신 분야이다. 정보통신은 과거에 '전기통신' 또는 '데이터통신' 정도의 의미로 정의되던 것이 최근에는 '국가사회의 정보화와 정보통신 산업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수단과 대상'으로 정의되어 전기통신을 비롯한 데이터통신 및 관련산업, 영상·컴퓨터·방송·멀티미디어 등 관련산업 뿐만 아니라 디지털 출판 및 영상물, 디지털 광고물, 정보통신기기제조 및 유통 등 정보통신 관련산업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대상분야를 성격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제조업,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 정보통신기기유통업, 통신공사업의 5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의 관련조사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등이 각 기관의 이용목적에 맞게 통계로 작성되고 있다.

Ⅲ 운수, 통신관련 주요통계 및 통계조사

1. 운수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는 운수업부문의 기본통계로서 고용·급여·장비 및 운수활동에 관한 수준과 활동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운수·정보통신산업의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는데, 종래에는 운수업분야에만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96년 조사부터는 통신업부문이 추가로 조사되고 있다.

이 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I.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중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운수관련서비스업, 통신업부문에 대하여 사업체, 조직형태, 운송장비보유,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수입 및 비용, 유형고정자산 등 1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며 조사단위는 운수·통신업을 경영하는 기업체 또는 사업체이다.

조사방법은 버스 및 회사택시부문의 경우 각 시·도 버스 및 택시조합을 통해 사업체에서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계식으로, 버스 및 회사택시를 제외한 업종은 통계청 지방사무소의 조사담당직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타계식으로 조사하며, 육상(철도, 버스 및 회사택시, 도로화물), 수상, 항공, 운수관련서비스업 및 통신업은 전수조사이고 개인택시·개별화물·개별용달 및 농산물창고업은 표본조사이다.

조사결과는 매년 말에 발간되는 「운수·통신업통계조사보고서」에 수록된다.

2. 도로교통량통계

도로교통량통계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교통량을 조사하여 전국도로의 교통량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도로의 계획과 건설, 유지관리 및 도로행정에 필요한 기본자료와 각종연구에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통계로서 매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약 2,450지점(1996년 기준)을 대상으로 관측원을 배치하여 차종별, 방향별, 시간별로 사전에 준비된 조사표에 의해 1일(24시간)동안 각 조사지점을 통과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 모든 교통량을 종류별로 구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간별로 기록하는 형태로 작성되고 있다. 본 통계는 매년 건설교통부의 「도로교통량통계연보」에 수록되어 제공되고 있다.

3. 교통부문 운송실적보고

철도, 지하철, 공로, 해운, 항공부문에 대한 운송실적을 파악하여 교통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국내 및 국제여객, 화물운송사업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조사를 실시하여 익월 초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방법은 시·도를 통한 행정보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도 단위까지 집계되어 매년 「건설교통통계연보(교통편)」에 수록하고 있다.

4. 자동차등록현황조사

자동차등록통계는 지역별로 등록된 각종 차량을 전수조사하는 행정보고통계이다. 이 통계의 작성체계는 일선등록기관(시, 군, 구 자동차등록과) → 시·도 → 건설교통부로 이루어지며 매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표되고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차종별, 용도별, 시도별 자동차등록현황이며 그 결과는 매년 「건설교통통계연보(교통편)」에 수록되고 있다.

5. 고속도로교통량통계

고속도로유지보수 및 사업계획, 교통사고분석, 인적·물적자원의 이동실태분석, 도로망의 신설·확장·개량 및 영업시설 개선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매 1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주요 조사사항은 이용차량 및 통행료수입 등 도로영업현황과 영업소별 이용차량, 공휴일 이용차량, 30번째일 이용차량, 주행거리별 이용차량 등 이용차량부문, IC간

월별, 차종별 교통량 등 교통량부문이며 조사대상은 121개 영업소(1996년 기준)를 통과하는 각종 차량이다. 집계단위는 고속도로의 구간별이며 그 결과는 매년 「고속도로교통량통계」에 수록된다.

6. 등록선박통계

각 지방해운항만청에 등록된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파악하여 선박수급계획과 해운행정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는 익월 15일경에 발표되며 「해양수산통계연보」에도 수록된다.

조사항목은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기타선으로 나누어 톤급별·선령별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7. 우편총조사

전국의 우편물량 및 이용구조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우편사업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부에서는 매 3년을 주기로 우편총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11월의 조사기준일에 전국에 배달된 통상우편물 10,000통과 표본추출된 10개의 소포구에 배달된 소포물량 전체를 조사한다.

주요 조사사항은 종별, 중량별 통상우편이용실태와 국내·국제소포, 보통·특수취급별, 중량별 소포중량통계와 조사당일 접수우편물의 발송지역별 이동실태 등이다. 집계단위는 전국 및 각 시·도이며 그 결과는 「우편이용실태조사실시결과보고서」에 수록 발표된다.

8.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통신통계자료를 확보하여 정보통신관련 정책입안 및 경영전략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96년부터 매년 전국의 정보통신관련 약 12,000여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주요 조사사항은 각 부문별(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기기유통업, 통신공사업) 매출액, 시설수, 생산액, 매출현황 등이며 정보통신사업체의 종사인력에 관한 현황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에 수록, 발표된다.

IV 운수·통신통계의 특성

1. 운수관련 통계의 특성

운수업통계자료는 정부의 운수행정업무의 부산물로서 나오는 자료와 운수업체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각 통계자료는 그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이용목적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정부기관 정규업무의 부산물로 집계되는 통계자료는 정부 각 기관에서 업무수행과정에서 비교적 집계하기가 쉬우나 행정통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 즉 행정기록자료는 통상적으로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와 예산 및 인력에 따라 제한되므로 세분된 자료가 작성되기 어렵다. 또한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가 거의 통계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자료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기도 한다. 또 다른 난점은 여러 정부기관이 교통관계법규에 따라 행정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일관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점과 다른 교통법규에 의한 유사한 형태의 자료와의 비교성이 결여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운수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자료는 행정관리기록보다 많은 항목을 포괄할 수 있고 개념 정의도 보다 정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통계란 재무제표와 회사의 기초적자료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데도 대상업체의 통계자료에 대한 관심결여, 그리고 대부분이 영세업종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첫째, 화물운송업은 직영차량과 비직영차량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비직영차량의 경우 정기적으로 소속 회사에 지입료만 지불하고 차주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다.

둘째, 회계장부를 본사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는 경우 영업소 및 지사 등의 자료가 본사에 합산 조사되므로 지역별 자료이용에 한계가 있다.

셋째, 운수 및 창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5개 업종이지만 본 통계조사에서는 전업종을 포괄하여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대상사업체의 통계자료에 대한 관심결여로 자료정리가 부실하여 자료활용에 어려움이 많다. 예컨대 수송총거리(인-km, 톤-km), 운행횟수 등에 관한 자료는 업체에서의 관심결여로 장부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이 비교적 낮다. 특히 개인택시 및 용달사업체는 거의 자료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확한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다.

다섯째, 운수업종간에 겸업을 할 경우 대표업종에 흡수·포함 조사하기 때문에 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수준의 업종별 실적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2. 정보통신부분 통계의 특성

정보통신산업은 정보통신관련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이 여러 산업형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표준산업분류로 구분을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체조사가 아니라 서비스 및 제조업에 관한 상품 및 서비스분류에 의한 사업체조사이다. 또한 정보통신관련 서비스나 제조업의 경우는 한 개의 사업체가 여러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 및 서비스별 사업체수 통계에서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산업세세분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업체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중분류까지만 구분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통일분류체계

1. 정보통신서비스	1234 컴퓨터예약
11 기간통신서비스	1235 전자문서교환(EDI)
111 유선통신서비스	1236 원격통신
1111 전화	124 온라인정보처리
1112 전용회선	125 음성전화정보서비스
1113 종합정보통신망	126 주문형정보서비스
1114 접속서비스	129 기타 부가통신서비스
1115 전신·전보	13 방송서비스
112 무선통신서비스	
1121 이동통신	2. 정보통신기기
1122 위성통신	21 통신기기
113 위성방송	211 유선통신기기
12 부가통신서비스	212 무선통신기기
121 고도팩스	22 정보기기
122 데이터네트워크서비스	221 컴퓨터본체
123 부가통신서비스	2211 소형컴퓨터(PC)
1231 온라인정보제공	2212 워크스테이션
1232 전자우편	2213 중대형컴퓨터
1233 신용카드검색	2219 기타 컴퓨터

222 컴퓨터주변기기	A 타산업 중 정보통신관련부문
23 방송기기	A1 통신공사업
24 부품	A2 유통(일부)
	A3 반도체 제조장비
3.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A4 2차전지
31 패키지소프트웨어	A5 자동차용 무선시동장치
311 시스템 소프트웨어	A6 게임기기컴퓨터관련서비스
312 개발용 소프트웨어	A7 디지털출판물 및 영상물
313 응용 소프트웨어	A8 인터넷겸용TV
32 컴퓨터관련서비스	
33 데이터베이스 제작서비스	
34 정보검색 대행서비스	

V 지 표

○ 수송분담률

수송분담률은 여객 및 화물의 총수송거리(수송량)에서 각 분야별 수송거리(량)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 철도여객수송분담률 : $\frac{\text{철도이용여객수} \times \text{수송거리}}{\text{총여객수} \times \text{수송거리}}$
- 철도화물수송분담률 : $\frac{\text{철도이용화물량} \times \text{수송거리}}{\text{총화물량} \times \text{수송거리}}$

○ 도로연장

도로의 총길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의 연장이다.

○ 도로포장률

전체 도로연장(길이)에서 포장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 철도

- 여객영업키로 : 역간 고시 여객키로의 합계
- 여객인키로 : 역간통과인원 × 역간키로
- 열차키로 : 운행열차 회수에 주행거리를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 영업키로 : 운수영업을 표시한 구간거리로서 수송량과 운임계산에 사용된다.
- 화물연톤키로 : 역간통과톤수 × 역간키로
- 화물영업키로 : 역간 고시 화물키로의 집계

○ 공로

- 영업키로 : 영업용자동차가 운행하는 도로의 연장키로
- 인키로 : 수송인원 × 수송거리
- 주행키로 : 자동차가 운행한 실제거리
- 총주행키로 : 연가동대수 × 주행키로 × 월(일)
- 톤키로 : 수송물량 × 수송거리
- 화물영업키로 : 화물업종 자동차가 운행하는 도로의 연장키로

○ 해운

- 인키로 : 여객수송 × 수송거리
- 톤키로 : 화물수송톤수 × 수송거리

○ 항공

- 인키로 : 여객수 × 거리
- 톤키로 : 화물톤수 × 거리

○ 화물입·출하

- 화물입하 :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고 입항하는 것을 말한다.
- 화물출하 :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고 출항하는 것을 말한다.

○ 전화보급률

총인구 중에서 전화가입자수가 차지하는 비율

$$\cdot \text{전화보급률} = \frac{\text{전화가입자수}}{\text{총인구}} \times 100$$

○ 자동차등록수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일선등록기관(시, 군, 구 자동차등록과)에 등록된 차량수

○ 이동전화가입자·무선호출가입자

이동전화는 '84년부터 일반인이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무선호출은 '82년부터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이동전화 가입자는 '87년까지는 차량전화만을 포함하고 '88년부터는 차량전화와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집계하고 있음.

○ 운수수입

사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얻어진 경상적인 영업수입을 말함. 여기서 운수수입은 여객수입, 화물수입, 기타 영업수익으로 구분되며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음.

○ 운수업부가가치

운수활동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이 새로이 창출 또는 부가시킨 가치(금액)로 부가가치의 배분개념에 따라, 즉 피고용자보수, 고정자산소모, 간접세, 영업잉여로 그 구성항목을 이루는데 본 조사에서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조세공과(租稅公課), 대손상각(貸損償却), 국내선박용선료(備船料), 영업이익, 납부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것임.

< 참고자료 >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1997 통계청

「건설교통통계연보(교통편)」 1997 건설교통부

「철도통계연보」 1997 철도청

「항공통계자료」 1997 한국항공진흥협회

「정보통신통계연보」 1997 정보통신부

「전기통신통계연보」 1997 한국통신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1997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서비스통계집」 한국통신개발연구원

「정보통신연감」 1997 전자신문사

「정보산업연감」 1997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사, 한국전자공업진흥회

1. 육상운수업개황



단위 : 개, 명, 십억원

	사업체수 ¹⁾	종업원수	운수수입	운수비용	부가가치	유형고정 자산
1976	1,916	205,333	697.7	629.2	340.1	302.3
1980	3,246	346,706	2,707.0	2,425.2	1,350.5	2,201.0
1985	5,196	443,146	5,327.4	4,718.0	2,800.4	6,875.2
1990	▽132,364	544,915	9,501.4	7,719.0	6,282.6	10,262.8
1995	173,226	604,101	17,157.0	13,830.1	11,578.3	19,979.6
1996	180,197	615,342	18,583.8	15,350.6	12,449.5	22,801.4

주 : 1) '88년까지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은 각각의 시·도 단위조합을 1개 사업체로 간주하였음.

자료 :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2. 국내여객수송



단위 : 백만인-km, %

연도	인-km	철도		지하철		공로		항공	해운
		분담률	분담률	분담률	분담률				
1975	52,686	12,926	24.4	343	0.6	38,865	73.8	300	252
1980	87,626	21,640	24.7	926	1.0	64,131	73.2	528	401
1985	106,849	22,595	21.1	4,477	4.2	78,025	73.0	1,182	570
1990	135,336	29,864	22.1	11,229	8.3	89,712	66.3	4,011	520
1995	123,572	29,292	23.7	14,048	11.4	72,324	58.5	7,406	502
1996	124,145	29,580	23.8	12,859	10.4	72,871	58.7	8,288	547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3. 국내 화물수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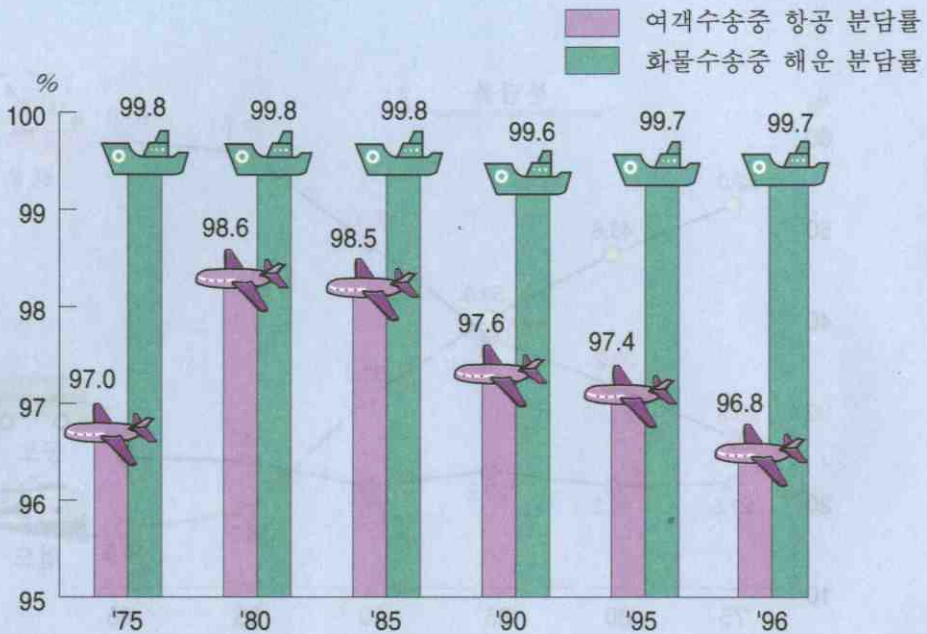


단위 : 백만톤-km, %

연도	수송량	철도		공로		해운		항공
		분담률	분담률	분담률	분담률			
1975	17,872	9,293	52.0	3,845	21.5	4,732	26.5	3
1980	23,186	10,798	46.6	4,920	21.2	7,463	32.2	5
1985	31,029	12,296	39.6	7,068	22.8	11,639	37.5	26
1990	44,187	13,663	30.9	9,325	21.1	21,127	47.8	72
1995	76,110	13,838	18.2	18,213	23.9	43,936	57.7	123
1996	78,647	12,947	16.5	19,114	24.3	46,452	59.0	134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4. 국제여객 및 화물수송



	여객수송			화물수송					
	해운 ¹⁾ (천명)	항공 ²⁾		해운				항공	
		(천명)	분담률	천톤		백만톤킬로		천톤	백만톤킬로
				분담률	분담률	분담률	분담률		
1975	48	1,566	97.0	45,128	99.8	333,155	99.9	98	394
1980	41	2,922	98.6	94,035	99.8	625,587	99.8	191	1,033
1985	65	4,382	98.5	133,010	99.8	1,149,810	99.8	333	2,319
1990	236	9,626	97.6	219,781	99.6	1,833,650	99.8	777	4,555
1995	395	14,603	97.4	404,424	99.7	3,263,717	99.8	1,291	8,096
1996	523	15,992	96.8	441,120	99.7	3,575,745	99.7	1,431	9,043

주 : 1) 국제여객선(페리호) 수송실적. 2) 통과여객 포함.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5. 자동차 등록대수 및 승용차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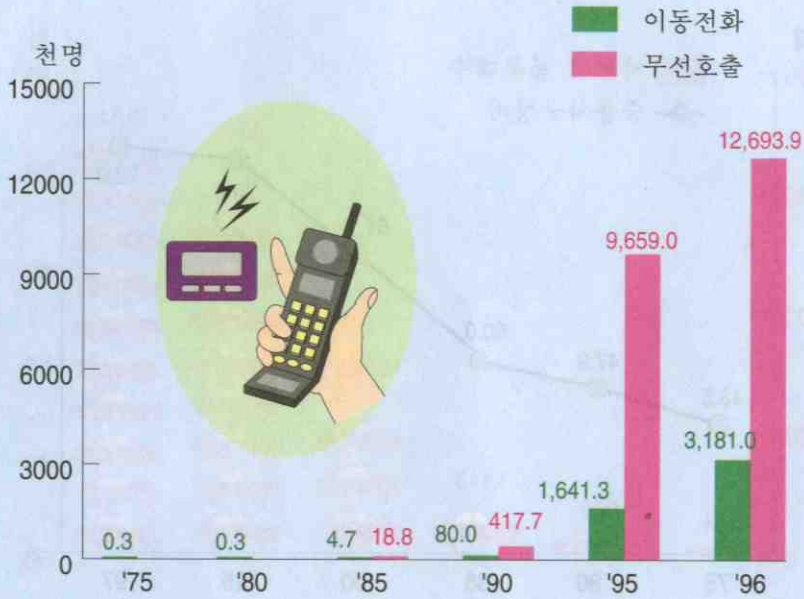


단위 : 천대, %

연도	등록대수	승용차		화물차		버스	특수차	
		구성비	자가용	구성비				
1975	194	84	43.5	50.1	83	42.7	21.8	5.0
1980	528	249	47.2	178.5	227	43.0	42.5	9.2
1985	1,113	557	50.0	449.0	413	37.1	128.3	15.7
1990	3,395	2,075	61.1	1,902.1	925	27.2	383.7	11.5
1995	8,469	6,006	70.9	5,778.0	1,817	21.5	612.6	33.4
1996	9,553	6,894	72.2	6,653.4	1,963	20.5	663.0	33.9
1997	10,413	7,586	72.9	7,335.4	2,072	19.9	719.1	35.6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6. 통신시설 가입자



연도	전화 시설수 (천회선)		전화 가입자수(천명)			공중 전화 (대)	텔렉 스 (천명)	이동 전화 (천명)	무선 호출 (천명)	PC통신 ¹⁾ (천명)
	전자 식	전자 식	업무 용	주택 용	주택 용					
1975	1,171	-	1,058	531	527	18,769	1.5	0.3	-	-
1980	2,835	20	2,705	971	1,733	58,017	4.3	0.3	-	-
1985	7,539	4,199	6,517	1,410	5,108	117,761	8.9	4.7	18.8	-
1990	15,293	13,404	13,276	2,458	10,819	237,074	8.6	80.0	417.7	54.4
1995	21,684	21,684	18,600	3,854	14,746	327,839	3.5	1,641.3	9,659.0	1,906.2
1996	22,790	22,790	19,601	4,250	15,351	339,240	2.8	3,181.0	12,693.9	1,711.1

주 : 1) 95년까지는 무료가입자 포함

자료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통계연보」

12. 금융·보험통계



통계조사 및 통계

통화금융통계, 금융기관예금·대출금통계,
화폐발행액조사, 통화 및 금융개관표, 증권통계,
도시가계저축시장조사, 보험통계

주요 통계지표

본원통화, 통화(M_1), 총통화(M_2), MCT, 총유동성(M_3),
화폐발행액, 예수금, 금융상품별 회전율, 콜금리,
CD유통수익률, RP매도 수익률, 중개어음금리,
채권수익률, 어음교환, 총어음교환액, 총어음부도액,
주가지수, 보험료 및 보험금, GNP대비 보험률

통계표 및 도표

통화지표, 예금은행 예금·대출금 변화,
어음교환 및 부도, 상장주식거래, 상장채권,
보험사업 주요지표

금융·보험통계

I 화폐(통화)와 금융

1. 화폐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경제는 시장에서의 판매와 구매를 통하여 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상품경제이므로 이를 매개하는 화폐(돈)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이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경제에서 화폐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화폐부문에 대한 이해없이 경제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자본주의경제에서 실물부문과 화폐부문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어서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통화량의 변동과 화폐수요의 변화는 국민소득과 고용, 투자와 저축, 그리고 국제수지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반대로 실물부문의 변동 역시 화폐부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자국내에 유통되는 돈의 총량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총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통되는 돈의 총량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 때에 적용되는 기준이 바로 통화지표이다. 그러나 이 경우 돈이란 개념은 다분히 추상적이어서 한 가지 기준만으로는 파악하기 불가능하므로 실제로는 여러 가지 기준의 통화지표를 편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그 나라 실정에 알맞은 지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통화량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M_1 , M_2 , MCT 그리고 M_3 등 여러종류의 통화지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종전까지는 M_2 (총통화)를 중심통화지표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MCT도 M_2 와 함께 중심통화지표로 삼아 매년 그 증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통화공급을 기하고 있다.

2. 금융은 경제주체간에 자금이 이전되는 것

국민경제내에는 수입이 지출보다 커서 자금의 여유가 있는 흑자경제주체가 있고 반대로 수입이 지출보다 작아서 자금이 부족한 적자경제주체가 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로 가계부문은 흑자경제주체이고 기업부문은 적자경제주체이다.

이 때 흑자경제주체로부터 적자경제주체로 자금이 이전되는 것을 금융이라고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금융제도라고 한다.

금융제도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및 금융자산들을 모두 포함한다. 금융시장에는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이 있다.

직접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기업부문)와 공급자(가계부문)가 직접 만나서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직접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금융기관으로는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이 있다. 한편 간접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금융중개기관을 매개로 해서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대표적인 금융중개기관으로는 은행, 보험회사 등이 있다.

금융기관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화편제의 준거로 삼고 있는 IMF의 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란 다른 부문을 위하여 금융자산을 창조하고 또 이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경제단위로 정의된다. 또 금융기관은 그 기능에 따라 통화당국, 예금은행, 기타금융기관으로 나뉘어진다.

◇ 통화당국

화폐발행, 금융기관 지급준비금의 관리, 대외지급준비금관리 및 은행업무통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에 의해 이러한 기능을 하므로 통화당국에 해당된다. 또한 정부관리기금이지만 대외지급준비금 관리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도 통화당국에 포함시키고 있다.

◇ 예금은행

예금은행은 “총부채 중 요구불예금의 비중이 높아 예금통화의 창출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일컫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의 일반은행, 그리고 각각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 중에서 예금업무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이 이러한 예금은행에 해당한다.

◇ 기타금융기관

통화당국과 예금은행이외의 금융기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시 자금조달 및 운용형태에 따라 개발기관과 투자기관, 저축기관 그리고 보험기관으로 구분된다.

- 개발기관 : 한국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 장기설비투자 또는 수출입과 같은 특정부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 투자기관 : 주로 단기금융시장과 주식 및 채권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여기에 속한다.
- 저축기관 : 민간의 장기자금유치 또는 사채자금의 제도금융화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은행신탁,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체신예금 등이 포함된다.
- 보험기관 : 보험기관에는 생명보험회사, 체신보험 등이 포함되는데 보험회사 중 손해보험회사가 제외되는 것은 손해보험이 위험의 보장을 주된 업무로 하는 반면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저축의 성격이 강한 업무를 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된 다양한 금융기관들은 통화지표 편제를 위해 통화창출기관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다시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한다. 즉 통화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을 통화금융기관이라 하고 그 이외의 금융기관을 비통화금융기관이라 한다. 통화금융기관은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현금통화와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기관으로 위의 통화당국과 예금은행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현재 M_1 , M_2A , M_2 등의 통화지표들은 이들 기관들의 금융상품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지표들은 이와 같은 통화 또는 비통화금융기관의 분류를 바탕으로 각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연결함으로써 편제한다. 즉 통화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통화(M_1)와 총통화(M_2) 등을 편제하고 있으며 비통화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이용해서 총유동성(M_3)을 편제하고 있다.

☞ 화폐, 금융관련통계의 종류

통화금융통계는 금융부문과 타 경제부문간에 일어난 금융거래에 관한 통계를 말한다. 통화금융통계는 대체로 통화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통화개관표와 비통화금융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개관표, 부문별 통화공급표, 예금·대출금통계,

지급준비통계, 시장자금사정관련통계와 금리통계, 지역별 금융통계 등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으며, 이들 통계가 수록된 주요간행물은 「통화금융」(월간), 「조사통계월보」(월간), 「지역금융통계」(월간), 「경제통계연보」(연간) 등이다.

II 금융관련 주요통계 및 통계조사

1. 통화금융통계

통화금융통계는 통화금융의 순환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산출하는 일반보고통계로서 매월별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월간), 「통화금융」(월간), 「주요경제지표」(월간)라는 간행물을 통해 발표된다.

2. 금융기관예금·대출금통계

금융기관예금·대출금통계는 한국은행에서 산출하는 일반보고통계로 그 내용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매월 수록되어 발표된다. 조사통계월보에 수록된 금융기관의 예금·대출금 관련통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금통계

○ 종별 예금액

- 요구불예금

예금주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해야 하는 통화성 예금으로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별단예금, 공공예금, 여신관리자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 저축성예금

예금납입, 인출방법에 대해 특정조건이 있는 기한부예금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목돈마련저축, 저축예금, 기업 자유예금, 근로자장기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기타예금(근로자주택마련저축 + 기타 저축성예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 예금주별 예금액

총예금,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각각을 개인, 일반법인, 공공기관 등 예금주별로 구분

○ 기간별 정기예금

6개월미만, 6개월~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4년미만, 4~5년미만, 5년이상으로 구분

○ 지역별 예금액 : 전국 16개 시도별로 구분

2) 대출금통계

○ 예금은행의 종별 대출

- 금융자금대출 : 예금은행이 예금, CD 및 어음매출, 금융채발행, 차입금 등 자체 영업활동을 통하여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취급한 원화대출금으로 할인어음, 당좌대출, 일반자금대출, 적금관계대출, 재형저축자금대출, 급부금, 외상채권대출,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자금대출, 중소기업자금대출, 주택대출, 농업자금대출 등으로 구성된다.
- 재정자금대출 :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의 중개기관으로서 중앙정부 또는 정부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취급한 원화대출이며 대부분 특수은행 취급분으로 중소기업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농업자금대출, 수산업자금대출, 축산업자금대출 등으로 구성된다.

○ 예금은행의 주체별 대출금

예금은행의 원화대출금(동업자에 대한 대출금은 제외)을 차주별로 분류

○ 비통화금융기관의 여신

비통화금융기관의 원화 및 외화대출금과 매입어음(기업어음, 무역어음 및 기타 보증어음)의 합계로서 동업자에 대한 대출도 포함한다.

○ 산업별 대출금 : 예금은행과 비통화금융기관의 산업별 대출 현황

3. 화폐발행액조사

화폐발행액조사는 화폐발행잔액과 화폐발행 및 환수현황, 미발행화폐보유현황, 화폐제조·폐기·소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일반보고통계로서 매월 조사통계월보에 수록되어 발표되는데 그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폐발행액 : 화폐발행액, 평균·최고·최저 발행액

○ 권종별 화폐발행액 : 은행권(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500원권, 100원권 이하), 주화발행액

4. 통화 및 금융개관표

통화금융통계는 금융부문과 타 경제부문간에 일어난 금융거래에 관한 통계를 말한다. 통화금융통계는 대체로 통화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통화개관표, 부문별 통화공급표, 본인통화표, 예금·대출금통계, 지급준비통계, 시장자금사정 관련 통계와 비통화금융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개관표, 금리통계 등으로 구성되는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다. 그 중 통화개관표와 금융개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통화개관표

통화개관표는 통화금융기관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국민경제 각 부문에 공급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편제된 통계표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1958년에 1956년 시계열부터 소급, 작성하여 「조사월보」에 금융개관이라는 명칭으로 발표되기 시작한 것이 최초이다.

그 후 1969년 9월에 현재의 통화개관표 양식으로 개편하였고, 1974년 1월에는 통화금융기관의 범위가 IMF방식으로 확정됨에 따라 통화변동을 요인 및 효과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통화개관표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경제통계연보」, 「조사통계월보」에 수록되고 있으며 「통화금융」에는 부문별 통화공급표가 수록되고 있다.

통화개관표의 기본구조는 통화금융기관을 통화당국(한국은행계정과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통합한 것임), 예금은행 및 이들을 종합한 종합계정으로 나누고 이들의 거래를 자산·부채·자본으로 분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 자산은 통화가 공급된 부문을, 부채 및 자본은 자금조달내역을 나타내 주며 통화금융기관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거래는 자산과 부채·자본항목에서 동시에 상쇄된다. 통화개관표의 주요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자산계정>

자산계정은 국내신용과 해외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 ◇ 국내신용 : 국내신용은 통화금융기관이 국내 각 경제부문에 제공한 신용으로서 정부부문, 정부대행기관, 공적기관(지방정부 및 정부출자기업), 비통화금융기관, 민간부문(대출금, 유가증권, 외화신용, 기타)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해외자산 : 중앙은행이 대외지급준비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금은(地金銀)과 통화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증권 및 해외은행에 예치한 외화액, 예금은행이 보유하는 외화 현찰, 중앙은행이 각종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 금액, IMF 특별인출권(SDR) 보유계정 등으로 구성된다.

◇ 기타자산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고정자산, 가지급금 등의 자산을 포함한다.

<부채 및 자본계정>

부채계정은 총통화, 해외부채, 채권발행,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자본계정과 기타부채로 구성되어 있다.

◇ 총통화 : 예금통화(M₁)와 준통화(저축성예금)로 구성되어 있다.

◇ 해외부채 : 통화금융기관의 대외차입금, 비거주자가 예금한 원화, 외화액, IMF에 대한 채무액 등이 포함된다.

◇ 채권발행 등 : 통화금융기관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채권담보로서 징수하는 각종 보증금, 상업어음매출액,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액을 포함한다.

◇ 자본계정 :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에서 손실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 금융개관표

금융개관표는 통화금융기관은 물론 비통화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망라하여 전 금융기관의 유동성 규모와 그 변동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종합대차대조표로서 한국은행에서 1974년부터 「통화금융통계」(수시보)에 게재하기 시작하였으며 1976년부터는 「조사통계월보」, 「경제통계연보」에도 게재하고 있는데 1971년 이후의 시계열이 유지되고 있다.

금융개관표의 항목구성은 비통화금융기관이 포함되므로 총유동성(M₃)과 총통화(M₂)의 차이와 해외자산·부채, 자본계정 등에서 차이가 나지만 통화개관표와 대체로 비슷하다.

5. 증권통계

증권통계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채권을 대상으로 1일, 1월, 1년을 주기로 종목별 거래실적 및 시세표, 상장종목수, 상장주식수, 시가총액, 거래량(주식, 채권), 거래대금(주식, 채권), 회원별 거래실적, 투자자별 거래실적, 상장회사 재무관련통계, 한국종합주가지수외의 부별·자금규모별지수, 제조업지수 및 34개 산업별지수 및 한국주가지수 200에 관한사항을 한국증권거래소가 산출하는 일반보고통계로서 「증권시장」(매매종료일), 「주식」(월간), 「증권통계연보」(연간)등에 수록되어 발표된다.

6. 도시가계저축시장조사

도시가계저축시장조사는 국민저축의 주요원천인 우리나라 도시가계저축의 실태와 국민들의 저축의식구조 변화를 조사·분석하여 효과적인 저축증대방안을 마련하고 저축추진정책입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매년 조사하는 조사통계이다.

이 조사는 74개 도시 2,500표본가구를 대상으로 1) 저축보유 및 차입금보유실태 2) 저축성향 및 행태 3) 소비지출성향 4) 생활설계와 가계운영 4) 은행서비스 이용 및 저축관련 정책적 요구사항 등에 관한 설문서를 표본가구에 송부한 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조사방법은 원칙적으로 1개 설문에 대하여 1개만을 응답하도록 하는 단답방법을 채택하였으나 저축목적, 저축증감이유, 선호하는 저축기관, 소비지출행태 등 17개 설문에 대하여는 2개 또는 3개를 선택토록 하는 제한응답법을 채택하였고 보유저축 및 차입금의 종류, 이용금융기관 선택이유 등 2개 설문에 대하여는 응답수에 구애받지 않는 다수응답법을 병행하였다. 따라서 제한응답법 및 다수응답법에 의한 응답은 총응답가구수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설문조사수의 구성비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조사결과는 매년 전국단위로 집계되어 「도시가계저축시장조사」에 수록, 발표된다.

7. 보험통계

사망, 사고, 화재 등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보험료를 내게 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정한 보험금을 주어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인 보험에 관한 통계는 보험감독원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유가증권 및 부동산 명세표, 수입보험료명세, 사업비명세,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명세, 보험계약성적 등에 관한 사항을 산출하는 일반보고통계로 그 내용은 보험감독원에서 발행하는 「보험조사월보」에 매월 수록되어 발표된다.

III 금융통계의 특성

1. 통화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모든 경제정책이 그러하듯이 통화신용정책의 기본체계도 최종목표, 중간목표, 그리고 정책수단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통화신용정책의 최종목표는 다른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물가안정, 완전고용, 경제성장, 국제수지균형 등을 의미하며 중간목표는 이러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변수 즉 통화량 또는 금리 등을 뜻한다.

통화신용정책의 중간목표로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실물 및 금융경제여건에 대한 통화당국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리보다는 주로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채택하여 왔다. 중간목표로서의 통화공급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지켜 나가기 위해 몇가지 통화관리방식이 활용되는데 그 적용형태에 따라 크게 직접규제방식과 간접규제방식으로 구분된다.

직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은 은행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자금의 각 공급경로별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시중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직접 규제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은행별로 민간신용에 한도를 설정하는 등 은행이 민간에 제공하는 대출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가 실시된다.

간접규제에 의한 관리방식은 은행을 통하여 풀려 나가는 자금의 공급경로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창구를 통하여 풀려나가는 일차적인 통화공급만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적정수준으로 유도하려는 통화관리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통화관리수단인 재할인정책, 지급준비율정책,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하여 본원통화 또는 금융기관 지급준비액을 조절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운용목표인 총통화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 **제한인정책** :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높이거나 낮춤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에 영향을 주어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 규모를 조정하여 통화량 조절
- **지급준비율제도** : 원래 예금인출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의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예금자 보호수단으로 출발, 중앙은행이 시중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고 판단시 이를 높여 통화량 조절
- **공개시장조작** : 중앙은행이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자나 민간을 대상으로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매각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고, 수익률에 영향을 주어 금리를 변동시킴으로서 통화량 조절

2. 시중의 자금사정은 어떻게 파악하나?

오늘날 경제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지표만 가지고는 시중자금사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몇 가지 지표가 시중자금사정의 판단을 위해 참고지표로 함께 이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채권수익률, 콜금리, CD유통수익률, 어음부도율, 요구불예금회전을 등이 있다.

- **채권수익률** :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매매되면서 형성된 가격과 이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게되는 소득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로서 시중자금사정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즉, 시중자금 사정이 좋으면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 채권의 가격이 올라 수익률이 떨어지고, 자금사정이 나쁠 때는 채권수익률이 올라간다.
- **콜금리** :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수급시장인 콜시장에 형성되는 금리로 1일물에서 30일물까지 있으나 1일물이 대부분이며 단기금융시장의 실세금리수준을 잘 나타낸다.
- **CD 유통수익률(91일물)** : '94년 9월부터 도입된 변동금리부채권의 기준금리로 채택된다.
- **어음부도율** : 어음교환액 중 부도어음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시중자금사정이 원할하지 못하면 시중에 부도어음이 많아져 부도율이 높아진다.
- **요구불예금회전을** : 요구불예금 평균잔액에 대한 총지급 누계액의 비율로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이 일정한 기간에 평균 몇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낸다. 기업의 자금사정이 양호할 때는 낮고 반대의 경우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3. 금리

사람들이 여유자금이 생겨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게 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내게 된다. 금리는 이때의 이자금액 또는 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이자율의 의미로 쓰인다.

이러한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균형 금리수준이 결정되고, 경제상황에 맞춰 적절히 조정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통화당국은 이 금리수준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금의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금리정책을 쓰게 된다.

1) 한 국가의 기준이 되는 금리는 무엇인가?

각국의 중앙은행은 은행으로부터 지급준비금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자금부족상태에 이르면 이들에 대한 최종대부자로서 대출을 해주기도 하는데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할 때 부과하는 금리를 특별히 공정한 인율이라고 한다. 이 공정한 인율은 단순히 중앙은행의 대출금리라는 개념 외에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최종대부자란?

최종대부자란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기관으로 흔히 중앙은행을 가리킨다.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은행파산 등의 금융위기에 금융기관의 파산이 국민 경제적으로 매우 큰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위기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여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게 된다.

3) 금리수준이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앞에서 금리가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는데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크기가 국가별 경제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금의 수요를 주로 결정하는 기업의 자금수요는 투자사의 수익률이 이자부담에 비해 클 경우 생기는데 기업가의 투자수익률을 투자의 한

계효율이라고 한다.

자금의 공급은 가계부문의 소득에서 소비후 남은 저축으로서 금융시장의 공급원이 되는데, 사람들의 시간선호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의 소비 중 현재의 소비를 얼마나 더 선호하는가의 정도- 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외에도 통화당국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본원통화의 공급과 파생통화의 창출에 의해 생겨난 자금의 공급 또는 축소가 금리수준에 영향을 끼치며, 국가간의 금리차이가 자금의 국가간 이동으로 균형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로는 자금의 이동이 상당히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차이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IV 지 표

○ 본원통화(Reserve Base;RB)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폐 및 동전 등 화폐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하여 공급한 통화를 말하며 화폐발행액과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예치금의 합계로 측정된다.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에 대하여 대출을 하거나 외환매입시 혹은 정부가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정부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본원통화가 공급된다.

이렇게 공급된 통화의 일부가 예금은행으로 환류될 경우 예금은행은 일부를 지급준비를 위해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시재금으로 보유하며 나머지는 대출,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운용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신용과 예금을 창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일차적으로 공급한 통화는 파생적으로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기초가 되므로 이를 본원통화(RB)라고 하며 본원통화를 기초로 창출된 통화를 파생통화라고 한다.

$$\cdot \text{본원통화} = \text{화폐발행액} + \text{지불준비예금} + \text{한은 민간당좌예금} + \text{한은 민간원화별단예금}$$

* 지불준비예금 : 예금은행의 한국은행에 대한 지준예치금이다.

* 한은 민간당좌예금 :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등 개발기관의 한은에 대한 원화지준예치금 등

- * 한은 민간원화별단예금 : 주로 한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한국은행 자기앞수표 발행예금이다.

○ 통화(M₁)

통화는 화폐의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하여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의 은행요구불예금의 합계로 정의되고 있다. 요구불예금은 비록 현금은 아니지만 수표발행을 통해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즉각적으로 현금과 교환될 수 있어 기능면에서 현금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통화(M₁)에 포함시키고 있다.

$$\cdot M_1 = \text{민간보유현금} + \text{은행요구불예금}$$

○ 총통화(M₂)

총통화는 통화보다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서 통화에 포함되는 현금과 요구불예금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은행의 저축성예금, 그리고 거주자외화예금을 포함시킨 개념이다. 이와같이 저축성예금을 통화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은 저축성예금이 비록 거래적동기보다는 자산증식을 위한 동거나 미래의 지출에 대비한 예비적동기를 갖고 보유되지만 약간의 이자소득만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요구불예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거주자외화예금도 국내의 지급결제수단으로는 다소 제약이 있지만 요구불, 저축성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원화로 바뀌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총통화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통화가 다른 통화지표보다 경제성장, 물가 등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1979년에 총통화를 통화관리의 중심지표로 사용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cdot M_2 = M_1(\text{민간보유현금} + \text{요구불예금}) + \text{저축성예금} + \text{거주자외화예금}$$

○ MCT

MCT는 M₂에 은행이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신탁계정의 금전신탁을 합한 통화지표로서 주요한 은행수신을 대부분 포함한다.

신탁제도개편(1996. 5. 1)의 영향으로 금전신탁으로부터 저축성예금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함에 따라 동 자금이동의 효과가 상쇄되는 MCT지표의 유용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1997년부터는 M_2 와 함께 중심통화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cdot MCT = M_2 + CD + \text{금전신탁(TRUST)}$$

○ 총유동성(M_3)

총유동성은 총통화에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각종 예수금과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매출, 상업어음매출과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등을 포함시킨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이다.

$$\cdot M_3 = \text{총통화}(M_2) + \text{비통화금융기관의 예수금} + \text{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매출, 상업어음매출, RP매도}$$

○ 화폐발행액

화폐발행액은 한국은행의 창구를 통해서 금융기관 등에 지급된 화폐로서 발행된 화폐는 민간에서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금융기관이 시재금으로 보유하게 된다.

○ 예수금

금융기관이 일반대중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일정한 이자 지급 등의 조건으로 보관·위탁을 받아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예금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예금은 일시적 보관 또는 출납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요구불예금과 저축 또는 이자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저축성예금으로 대별된다.

○ 금융상품별 회전을

금융상품별 회전율은 일정기간 중 각 금융상품의 평균잔액에 대한 총지급누계액의 비율로서 각 금융상품의 유동성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이다.

예금회전율, 특히 요구불예금회전율은 시중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자금사정이 악화되면 동 지표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시중자금지표로서의 예금회전율은 한계가 있다. 즉 예금회전율의 예금지급액은 유량(flow) 변수인 반면 분모인 예금평균잔액은 저장(stock) 변수이므로 예금회전율은 시중 자금사정과는 무관하게 해당월 영업일수의 과다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다.

※ 예금회전율(월중) = 월중 예수금지급액 ÷ 월중 예수금평균잔액

- 월중예수금지급액 : 해당월중 예수금지급액의 누계, 매일의 예수금지급액(인출액)을 모두 합계한 것으로 유량(flow) 개념이다.
- 월중예수금평균잔액 : 해당월중의 예수금의 평균 잔액, 매일 마감시의 예금잔액을 더하여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다.(공휴일의 경우는 전 영업일 잔액을 그대로 사용)

○ 콜금리

콜시장은 초단기 금융시장으로서 매 시각마다 거래금리가 변화하는데 매일의 거래금리는 당일중 체결된 모든 콜거래액의 가중평균금리로 산출되며 월중 평균금리는 매월 각 영업일의 콜거래금리를 단순평균하여 산출한 것이다.

- 전체 금리 : 한국자금중개회사를 통한 중개거래와 국내은행간 직거래를 모두 포함하여 산출된 금리이다.
- 1일물 금리 : 중개거래 및 국내은행간 직거래를 포함한 콜거래 금리
 - 은행간 직거래 : 콜거래 중 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은행인 경우의 콜거래 금리이다.
 - 중개거래 : 전체 콜시장 참가기관간의 1일물 콜거래금리로서 콜금리 중 시중자금사정에 가장 민감하게 변동하는 금리로 평가되고 있다.

○ CD 유통수익률

한국증권업협회가 자본금기준 10개 대형증권회사로부터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일별 공시수익률을 산출하고 있는데 「통화금융」상의 월중 수익률은 일별 공시수익률을 단순평균한 금리이다.

○ RP매도 수익률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각 증권회사의 RP매도 수익률을 거래금액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을 매일 산출하고 있는데 「통화금융」상의 수익율을 매일 단순평균한 금리이다.

○ 중개어음금리

전국종합금융협회에서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매출하는 자유금리기업어음과 단순중개기업어음의 거래금리를 거래액으로 가중평균한 금리를 일별로 조사하여 산출하고 있는데 「통화금융」상의 금리는 일별금리를 매일 단순평균한 금리이다.

○ 채권수익률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자본금기준 10개 대형증권회사가 매출한 각 채권의 금액 가중평균수익률을 일별로 산출하고 있는데 「통화금융」상의 각 채권수익률은 일별 수익률을 단순평균한 금리이다.

○ 어음교환

어음교환은 다수의 은행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자행이 수납한 어음 중 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과 타행이 수납한 어음 중 자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타점권)을 서로 교환하고 차액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이체를 통하여 결제하는 제도이다. 현재 어음교환 대상어음은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 국고수표, 환어음, 기타 제증서 등이다.

○ 총어음교환액

일정기간 중 전국의 모든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상호교환된 어음(타점권)의 총액으로서 금액 또는 장수로 표시되는데 수납어음 중 자점을 지급지로 한 어음은 어음교환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통계가 실제 경제내에서 지급결제에 이용되고 있는 어음의 총규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총어음부도액

어음교환에 의해 상대은행으로부터 제시받은 어음 중 예금부족, 무거래, 형식 불비, 위조, 변조 등 일정사유로 인해 지급에 응하지 못할 어음의 총액으로 금액 또는 장수로 표시된다.

○ 주가지수

주가지수는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반영하는 지표를 작성, 주식시장 동향을 분석, 파악하여 시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다. 우리나라의 주가지수는 1983년 1월 4일부터 주가산출방식을 다우-존스식에서 시가총액식으로 전환해 상장된 보통주 전종목을 대상으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며 당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시계열에 의한 연속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cdot \text{주가지수} = \frac{\text{비교시점의 시가총액}}{\text{기준시점의 시가총액}} \times 100$$

(기준시점 : 한국종합주가지수 1980년 1월 4일 = 100, 한국주가지수 200 1990년 1월 3일 = 100)

○ 보험료 및 보험금

- 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 사망, 상해, 퇴직, 생존 및 그외 보험사고에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 GNP대비 보험률

GNP대비 보험률은 전체보험료를 국민총생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cdot \text{GNP대비 보험률} = \frac{\text{보험료}}{\text{국민총생산(GNP)}} \times 100$$

<참고자료>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7	한국은행
「통화금융, 통화금융통계해설」	1997	한국은행
「도시가계저축시장조사」	1997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1997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97	한국은행
「한국통계조사현황」		통계청
「증권조사월보」	1997	증권감독원
「보험조사월보」	1997	보험감독원
「한국의 경제지표」	1995	김경중(매일경제신문사)
「경제학원론」		조순, 정운찬

1. 통화지표



단위 : 십억원

연도	본원 통화	통 화(M ₁)		준 통 화		총통화 (M ₂)	총유동성 (M ₃)	
		현금	예금 통화	저축성 예금				
1975	1,077	1,182	507	675	1,968	1,944	3,150	3,093
1980	3,244	3,807	1,856	1,951	8,728	8,577	12,535	17,962
1985	4,319	7,558	3,286	4,272	21,007	20,246	28,565	55,450
1990	13,811	15,905	7,011	8,894	52,803	52,434	68,708	198,124
1995	29,305	38,873	15,061	23,812	115,073	114,415	153,945	527,017
1996	25,722	39,542	15,453	24,089	138,770	137,355	178,312	614,962
1997	22,519	35,036	15,448	19,588	168,495	162,356	203,532	700,28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통화금융」

2. 예금은행 예금 · 대출금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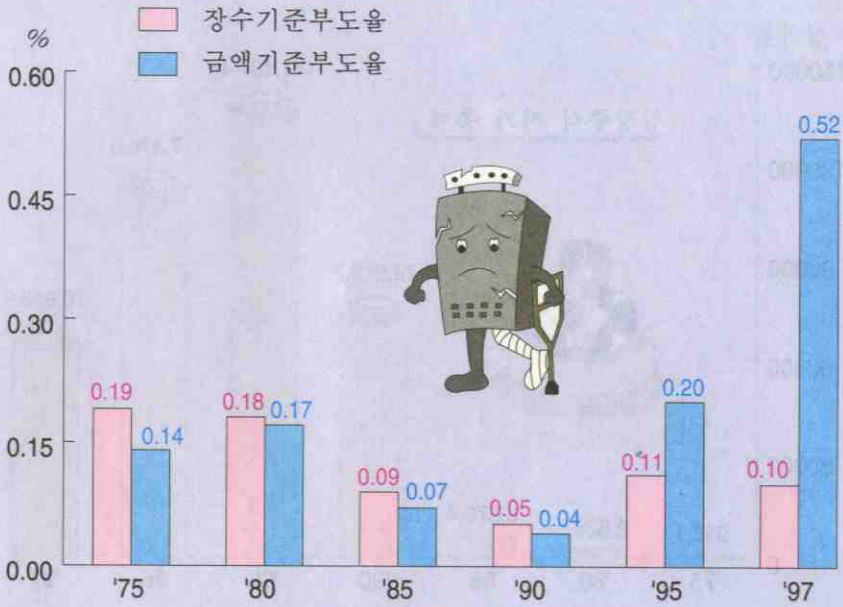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예 금 액			대 출 금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농림 어업	제조업	%	건설업	
1975	2,779	869	1,944	2,905.5	303.3	1,660.4	57.1	245.7
1980	12,422	3,845	8,577	12,204.4	1,034.2	6,672.0	54.7	1,469.7
1985	31,023	10,777	20,246	33,810.7	2,870.4	14,643.5	43.3	5,437.6
1990	84,054	31,620	52,434	74,028.6	7,373.5	31,072.9	42.0	6,464.2
1995	154,136	39,699	114,437	152,477.7	15,587.4	62,389.7	40.9	11,401.0
1996	181,721	44,338	137,383	177,184.1	17,122.3	69,473.9	39.2	13,067.6
1997	198,197	35,344	162,854	200,401.1	19,233.4	74,288.7	37.1	13,769.3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통화금융」

3. 어음교환 및 부도



단위 : 천장, 십억원, %

	교 환		부 도		부도율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장 수	금 액
1975	32,272	32,285.4	61.5	47.3	0.19	0.14
1980	108,374	325,811.7	199.7	551.8	0.18	0.17
1985	271,309	1,304,373.2	248.3	935.1	0.09	0.07
1990	779,369	4,227,123.0	359.9	1,579.2	0.05	0.04
1995	1,010,470	6,416,338.0	1,138.4	12,984.9	0.11	0.20
1996	1,146,624	7,435,701.3	994.4	12,458.2	0.09	0.17
1997	1,222,192	7,391,658.7	1,250.4	38,397.7	0.10	0.52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통화금융」

4. 상장주식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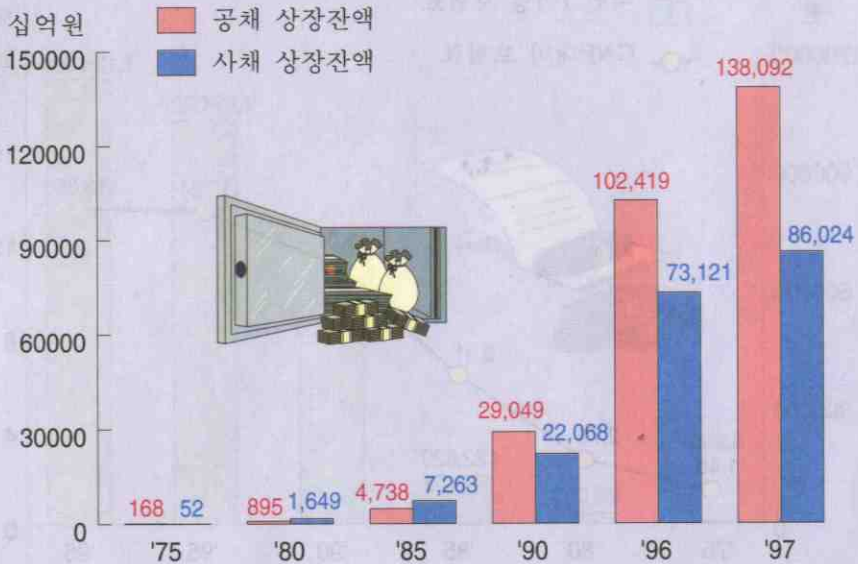


	상장회사수 (개)	상장종목수 (개)	주주수 (천명)	상장주식수 (백만주)	상장주식시가 총액(십억원)	거래량 (백만주)
1975	189	356	290.7	825.0	916.1	310.5
1980	352	437	753.3	3,875.6	2,526.6	1,645.3
1985	342	414	772.5	7,955.3	6,570.4	5,563.8
1990	669	1,115	▽2,418.3	▽4,796.3	79,019.7	3,162.1
1995	721	1,122	1,548.4	7,609.4	141,151.4	7,656.0
1996	760	1,143	1,464.7	8,598.4	117,370.0	7,785.4
1997	776	958	...	9,030.7	70,988.9	12,125.3

주 : · 1978년부터 주주수는 실질주주 기준임.
 · 1990년부터 주주수는 주주명부상 동일주주를 합산.

자료 :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5. 상장채권



	공 채				사 채			
	종류수	종목수	상장잔액 (10억원)	거래량 (10억원)	회사수	종목수	상장잔액 (10억원)	거래량 (10억원)
1975	8	234	168	16	71	110	52	1
1980	7	230	895	267	434	1,004	1,649	643
1985	12	979	4,738	781	1,213	2,749	7,263	2,998
1990	24	2,648	29,049	2,588	1,603	4,243	22,068	823
1996	129	5,808	102,419	257	1,977	8,762	73,121	1,061
1997	160	7,717	138,092	313	1,827	8,170	86,024	3,563

자료 :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6. 보험사업 주요지표



	수입보험료(억원)			GNP 대비 보험료(%)			국민 1인당 보험료(원)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1975	1,408	665	743	1.40	0.66	0.74	3,990	1,884	2,106
1980	9,913	6,036	3,877	2.70	1.65	1.05	26,003	15,833	10,170
1985	50,309	39,873	10,166	6.31	5.03	1.28	122,626	97,712	24,913
1990	196,331	160,435	35,896	11.01	9.00	2.01	457,980	374,246	83,734
1995	462,124	352,880	109,244	13.24	10.11	3.13	1,024,824	782,561	242,263
1996	516,296	381,634	134,662	13.35	9.87	3.48	1,133,595	837,927	295,667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보」

13. 재정 통계



통계조사 및 통계

재정통계, 한국통합재정수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결산개요, 지방세 및 세외징수통계

주요 통계지표

재정수지, 조세 및 조세부담률, 재정투융자, 직·간접세,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채발행, 지방재정, 기금, 재정부담률, 국세·지방세

통계표 및 도표

통합재정수지, 재정규모, 기능별 세출예산(일반회계), 조세부담액 및 부담률

재정통계

I 재정은 정부의 수입·지출 활동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조세나 정부보유주식의 매각, 각종 벌과금, 수수료, 국공채의 발행 등으로 수입을 마련하여 치안·국방·일반행정 등 국가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외에도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의 조성이나 사회복지 확충 등 필요한 부분에 지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의 수입·지출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재정은 행정부에서 다음해의 수입·지출 계획인 예산을 수립하고, 당해년도에 실제 수입·지출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는 그 다음해에 결산한 후 이를 국회로부터 승인받게 된다. 따라서 재정활동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수입과 관련된 조세, 결산, 그리고 국유재산의 관리 등 국고업무까지 포괄되지만 이러한 과정이 예산이라는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이 중 주된부분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 예산의 기능

예산이란 일정기간 내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국가의 주요정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제 행동에 옮겨지게 된다.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예산은 조세법률주의와 국가의 경제불간섭 원칙에서 의회에 의한 정부의 통제기능과 수지균형을 통한 국민경제에 대한 중립적 기능에 한정되었으나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국민경제적·사회정책적 측면을 중시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자로서 경기조절 기능과 내부통제기능이 추가되었다.

- ◇ 예산을 통한 자원배분기능 : 국방, 외교, 교육, 문화, 환경 등의 공공활동 수행은 국가만이 가능한 기능이다.
- ◇ 예산을 통한 소득 재분배기능 : 누진세나 조세감면 등을 통한 조세체계 개선과 사회보장지출 증대를 통하여 수행한다.
- ◇ 예산을 통한 경제안정 및 성장촉진기능 : 경기변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변동하므로써 호경기에는 세수증대 및 이전지출 감소로 경기를 자동 억제하고, 불경기시에는 이전지출 증가 및 세수 감소로 경기를 부양한다.

II 재정통계

정부는 매년 세금, 각종 벌과금 및 수수료 등으로 마련한 돈(세입)으로 일반 행정을 비롯하여 국방, 사회개발, 경제개발 등 나라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세출)을 지출하는데 이러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통틀어 재정이라 한다. 나라살림이란 대부분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꾸려질 뿐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늘리거나 줄일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가 1년 단위의 회계 연도에 필요로 하는 자금규모와 조달방법을 미리 정하여(예산서) 국회의 승인을 받고, 또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결산하여(결산서) 이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엄격한 통제와 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서와 결산서는 정부 부처별 각종 회계 및 기금별로 정리 기록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나라살림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라살림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측정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인 공통기준(IMF manual)에 따라 재정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재정통계는 예산서와 결산서에 나타난 여러가지 항목을 체계적으로 재분류, 합산하여 전체 나라살림을 세입·세출 및 보전재원의 3개 항목으로 간단하게 정리함으로써 나라살림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정부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쉽게 측정할 수 있게 해 준다.

III 재정관련 주요통계 및 통계조사

1. 재정통계

재정통계는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기관 및 그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공공금융기관의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집계되고 있다.

이 중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부문은 재정경제부(구 재무부)에서 '79년부터 IMF기준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개념에 입각한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한국통합재정수지(구 한국의 재정통계)」에 수록된다.

지방정부재정통계는 행정자치부(구 내무부)에서 집계하며 이 내용은 매년 「지방재정연감」에 수록된다. 그러나 이 통계는 그 분류기준이 지방행정 목적에 맞춰져 있는 관계로 한국은행에서는 IMF기준에 따라 재분류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매년 「경제통계연보」에 수록된다.

한편, 한국은행에서는 국고출납기준에 의해 월단위로 집계한 재정통계(총재정수지)를 매월 「조사통계월보」와 매년 「경제통계연보」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에서는 보전재원 거래를 세입과 세출(순융자포함)에서 제외하나 총재정수지 세입과 세출은 이러한 보전재원 거래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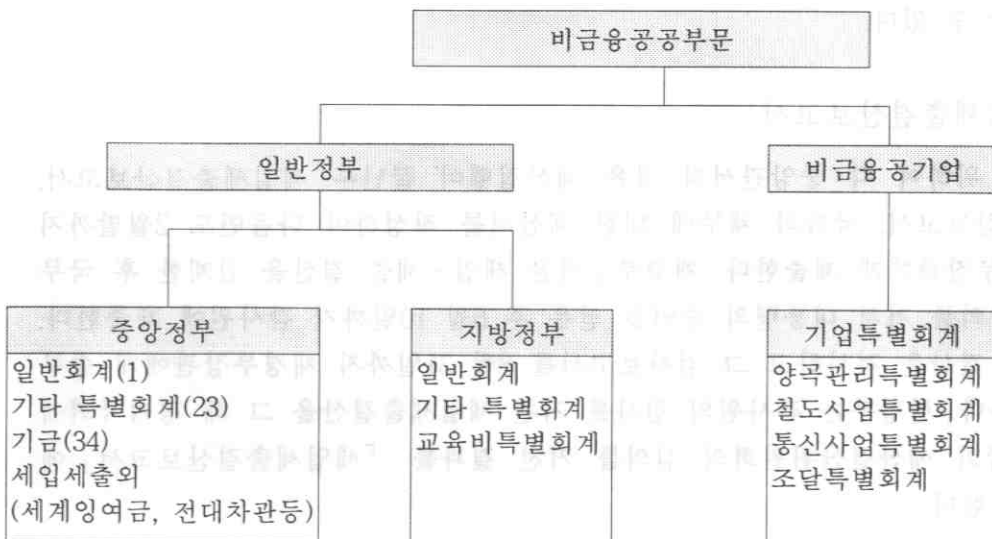
2. 한국통합재정수지

우리나라에서는 IMF의 권고에 따라 79년부터 IMF manual에 입각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여 매년 「한국통합재정수지(구 한국의 재정통계)」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재정수지 작성의 장점은 ① 법정체계로는 파악이 곤란한 재정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② 일종의 기업활동을 하는 정부회계의 경우 일반정부활동과 구분하여 별도로 파악할 수 있고 ③ 명확한 재정규모와 재원조달 내용, 그리고 재정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④ 동일한 IMF기준에 따라 작성되므로 재정의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통합재정수지의 포괄범위는 중앙은행등 공공금융기관을 제외한 비금융공공부문에 한정되며, 비금융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으로 구성된다. 또한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는데, 다만 지방정부는 예산편성 및 결산작성의 시차, 회계과목간의 상이 등으로 현재 통합재정수지 작성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표) 통합재정수지의 포괄범위



통합예산의 분류체계는 ① 세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분류 ② 세입·세출의 경제적 분류 ③ 보전재원의 보전수단별 분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세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분류」를 보면 재정정책의 방향, 재정지출구조, 사회복지수준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분류대상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의 예산에 한정되지 않고 각종의 기금을 포함하는 모든 정부활동이 포함된다. 그러나 세출예산에 포함된 보전거래항목(차입금 상환 또는 전출금 등)은 제외된다.

다음에 「세입·세출의 경제적 분류」에 있어서도 보전거래항목을 명백히 분류, 구분하여 분류대상에서 제외한 후 세입은 경상수입(조세수입과 세외수입)과 자본수입으로 대분하고 이를 경제적 성질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정부저축, 재정자립도, 국민조세부담수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세출은 경상지출, 자본지출(고정자본형성, 재고지출 등)로 분류함으로써 재정의 국민경제적 효과, 생산, 소비, 자본형성, 저축에 대한 재정의 기여도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보전재원이란 재정적자 또는 흑자와 동일한 것으로서 정부가 회계연도 중에 정상적인 수입으로 지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이나 지출에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이라 할 수 있다.

그 규모는 총세입(경상수입 + 자본수입)에서 총세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을 차감한 잔액이 된다.

이는 조달원천에 따라 국내차입과 해외차입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중앙은행차입과 예금은행차입, 국채발행, 이월금사용, 기타차입 등으로 거래대상과 수단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재정의 통화효과와 재정의 차입의존도, 국가채무의 분포 상황을 알 수 있다.

3.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결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이 끝난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재정부장관은 세입·세출 결산을 집계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6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원은 결산을 검사하고 그 검사보고서를 8월 31일까지 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행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그 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를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매년 공표한다.

4. 결산개요(통계편)

세입·세출에 대한 경제적·기능적 분류를 하고 있으며 매년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하고 있다.

5. 지방세 및 세외징수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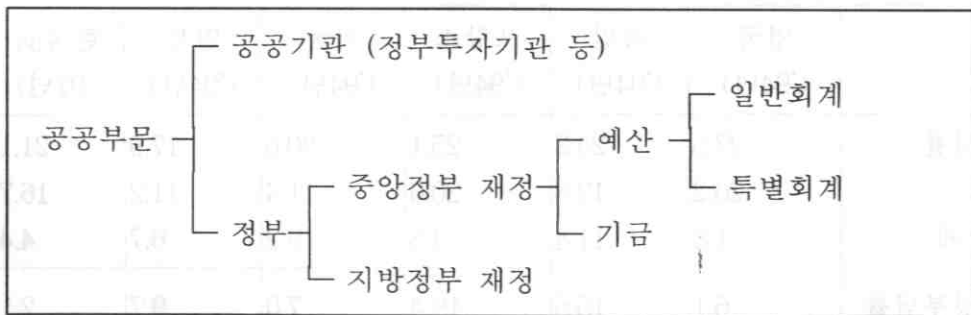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실적을 세목별, 단체별로 분석하여 매년 「지방세정연감」에 수록하고 있다. 통계의 편제는 징수실적과 부과실적분야로 대별하여 과세주체별, 지방자치단체별, 세목별로 자세히 구분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이외의 자체수입을 총칭하여 세외수입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집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연감」에 수록된다.

세외수입통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세외수입으로 나뉘며 일반회계수입에는 사용료, 수수료등 경상적수입과 재산매각대, 이월금, 기부금등 임시적수입이 있다. 또한 특별회계수입에는 상하수도, 주택사업등 사업수입과 이월금, 과년도수입등 사업외수입이 있다.

IV 재정통계의 특성

1. 정부재정의 체계

예산의 범위는 크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공공부문은 다시 공공기관과 정부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부문과 예산과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넓은 의미의 정부재정은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재정을 포함하나 통상 일반회계로 중앙정부 대부분의 조세수입이 집결되고, 기본적인 국가 고유활동과 주요 재정사업이 이 회계를 통하여 계리되므로 통상 예산이라고 할 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만을 의미한다. 예산의 범위와 관련한 예산규모를 말할 때도 세입세출예산총계, 세입세출예산규모상 순계, 세입세출예산순계, 일반회계예산규모, 통합예산규모와 같이 구분 파악한다.

- 세입세출예산총계 : 일반회계규모와 22개 특별회계규모의 총계
- 세입세출예산규모상 순계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내 내부계정간 거래를 뺀 합계
- 세입세출예산순계 : 회계 내부의 계정간 거래와 회계상호간 전출입에 의한 이중계산을 모두 뺀 순예산규모
- 일반회계예산규모 :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
- 통합예산규모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정부관리기금까지를 포함한 규모.

2. 조세부담률 비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추이를 보면 '90년 18.5%에서 '97년에 21.1%로 높아졌다. 조세수입의 구조면에서 '97년 현재 직접세 비중은 총조세의 50.5%, 국세의 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국세의 직접세 비중은 49.9%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일본보다는 높으나 미국이나 유럽국가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사회보장부담금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로 비교할 경우에는 주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단위 : %)

	영국 ('94년)	독일 ('94년)	프랑스 ('94년)	미국 ('94년)	일본 ('94년)	한국(P) ('97년)
조세부담률	27.5	24.2	25.1	20.6	17.9	21.1
· 국세	26.2	12.8	20.6	11.4	11.2	16.7
· 지방세	1.3	11.4	4.5	9.2	6.7	4.4
사회보장부담률	6.1	15.5	19.4	7.0	9.7	2.1
국민부담률	33.6	39.7	44.5	27.6	27.6	23.1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96

V 지 표

○ 재정수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간의 전출금 및 전입금등 회계간의 내부거래와 국채발행, 차입, 채무상환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보전거래, 즉 재정상의 채권·채무행위역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 순계개념의 세입과 세출(순용자 포함)의 차를 의미한다.

○ 조세 및 조세부담률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인 보상없이 사경제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세수입이 GNP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중(조세수입/경상GNP)을 조세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전체의 조세부담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조세부담률의 크기는 조세의 누진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 재정투용자

일반적인 개념에 따른 재정투용자는 재정지출 중 자본적지출과 금융적투용자지출을 의미하는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건물, 설비, 기계, 도로, 교량 등 정부자산을 증대시키는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금융적투용자지출은 정부가 재정자금 및 각종 기금 등의 유상자금을 민간사업이나 정부정책사업에 출자 또는 용자의 형태로 임차관계를 맺는 지출, 즉 기간산업의 자금부족을 보완하거나 민간자금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통상 자본적 지출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기금 등에 포함되어 지출되고 있으며 '96년까지 운영된 재정투용자특별회계에서의 재정투용자는 자본적지출을 제외한 정부출자·출연 및 재정용자 등 금융적투용자 활동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97년부터 종전의 재정투용자특별회계를 재정용자특별회계로 개편하여 재정투용자특별회계 출자계정에서 수행하던 정부출자·출연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토록 하고 재정용자특별회계는 재정용자와 차관관리만을 담당한다.

○ 직·간접세

세원(稅源)인 소득 및 재산을 직접 포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직접세라 하고, 소득 및 재산에서 획득된 소득의 지출 혹은 소득 및 재산의 이전사실을 포착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분류한다.

즉 직접세는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등 주로 개인 또는 개인소유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납세자는 세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간접세는 물품세, 관세등과 같이 물품의 교환, 매매 등의 행위에 과세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 조세체계에서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이 있다.

○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일반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국세수입의 대부분과 정부보유주식매각분,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세입으로 하여 정부의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방위비 등에 지출된다. 한편 국세수입 중에서 주세, 전화세, 토지초과이득세, 교육세 등 일부 세원은 일반회계에 편입되지 않고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지원 재원 등으로 사용되며, 이를 양여금이라고 한다. 통상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를 지칭한다.

○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써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되는 회계이다. 현재 4개의 기업특별회계(양곡관리, 철도사업, 통신사업, 조달)와 재정융자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 18개의 기타특별회계가 각 개별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 국채발행

국채는 국가가 시장경제주체로부터 조달하는 차입 중에서 유가증권화된 국가채무를 의미하는데, 이는 대개 공공사업의 추진 또는 재정수지의 일시적 불균형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만을 지칭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여타채권은 각각 지방채, 특수채 등으로 분류하여 국채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96년말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8종이며 이는 통화와 외국환관리를 위한 재정증권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그리고 정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용 국채인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제1종 및 제2종, 국채관리기금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94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국채관리기금채권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업무를 종합관리하기 위해 종전의 농지채권, 농어촌발전채권, 국

민주택기금채권 등을 통합한 것이다.

○ 지방재정

- 일반회계 :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기본적인 회계
- 특별회계 :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여 일반회계와 구분, 운영하는 회계의 총칭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특별회계(상수도, 하수도, 병원, 지하철 등)
 - 교육비특별회계 : 교육법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시·도 교육위원회와 시·군 교육청 소관 예산)
 - 기타특별회계 :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특별회계 중에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 여타 특별회계의 총칭

○ 기금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관리주체 및 사업의 공공성 정도에 따라 기금을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96년 12월현재 총 76개의 기금 중에서 공공기금은 남북협력기금 등 36개이며, 기타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0개에 달한다.

○ 재정부담률

재정부담률은 국민총생산(GNP) 혹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지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cdot \text{재정부담률} = \frac{\text{재정지출액}}{\text{국민(내)총생산액}}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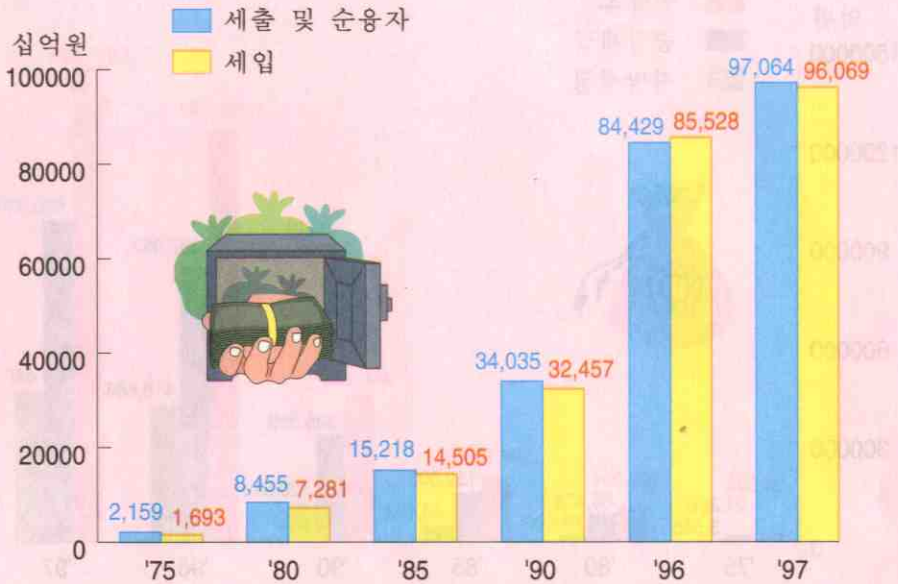
○ 국세·지방세

조세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진다. 즉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조세로 구별된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관세,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등)로 나뉘며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등의 간접세가 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는데,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의 도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의 시·군세가 있다. 목적세로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참고자료>

「예산개요」, 「결산개요」, 「예산개요참고자료」	1997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재정금융통계」	1997	재정경제부
「조사통계월보」, 「경제통계연보」	1997	한국은행
「국세연보」	1997	국세청
「관세연보」	1997	관세청
「지방재정연감」	1997	행정자치부

1. 통합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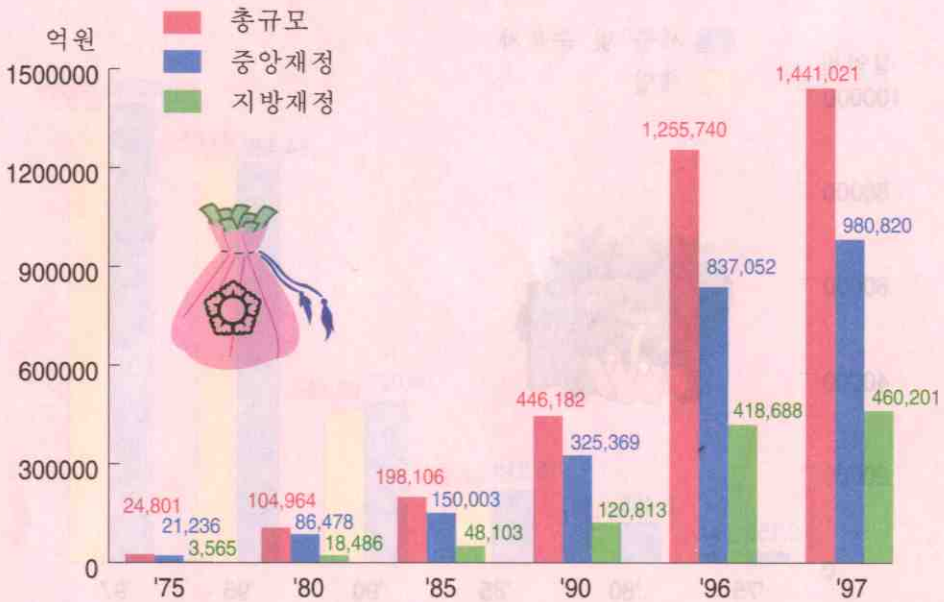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

연도	세출및 순융자	세입	수지차	보전재원			차입 의존도
				국내보전	해외보전		
1975	2,159	1,693	-466	466	323	143	21.6
1980	8,455	7,281	-1,174	1,174	856	318	13.9
1985	15,218	14,505	-713	713	273	441	4.7
1990	34,035	32,457	-1,578	1,578	1,906	-328	4.6
1996	84,429	85,528	1,099	-1,099	-803	-296	-1.3
1997(예산)	97,064	96,069	-995	995	1,331	-336	1.0

주 : 1) IMF Manual 기준

자료 :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2.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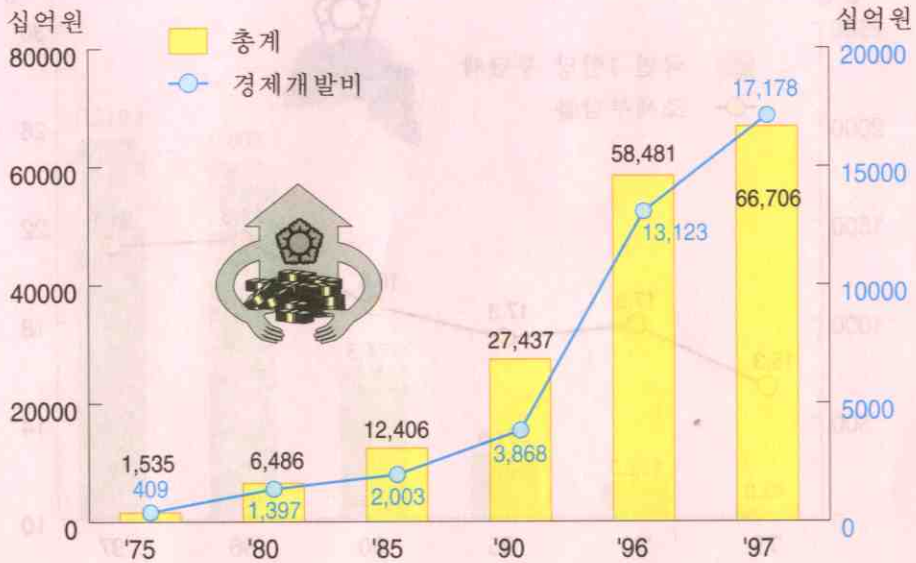
연도	총 규모		중앙재정 ¹⁾		지방재정 ²⁾	
	대 GNP	대 GNP	대 GNP	대 GNP	대 GNP	대 GNP
1975	24,801	24.5	21,236	21.0	3,565	3.5
1980	104,964	28.5	86,478	23.5	18,486	5.0
1985	198,106	25.0	150,003	18.9	48,103	6.1
1990	446,182	25.0	325,369	18.2	120,813	6.8
1996	1,255,740	32.5	837,052	21.7	418,688	10.8
1997 ³⁾	1,441,021	33.9	980,820	23.0	460,201	10.8

주 : 1)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순계 규모 2) 중앙이전재원 제외

3) 추정예산자료이며 GNP는 잠정치를 이용 계산.

자료 : 재정경제부 「예산개요참고자료」

3. 기능별 세출예산(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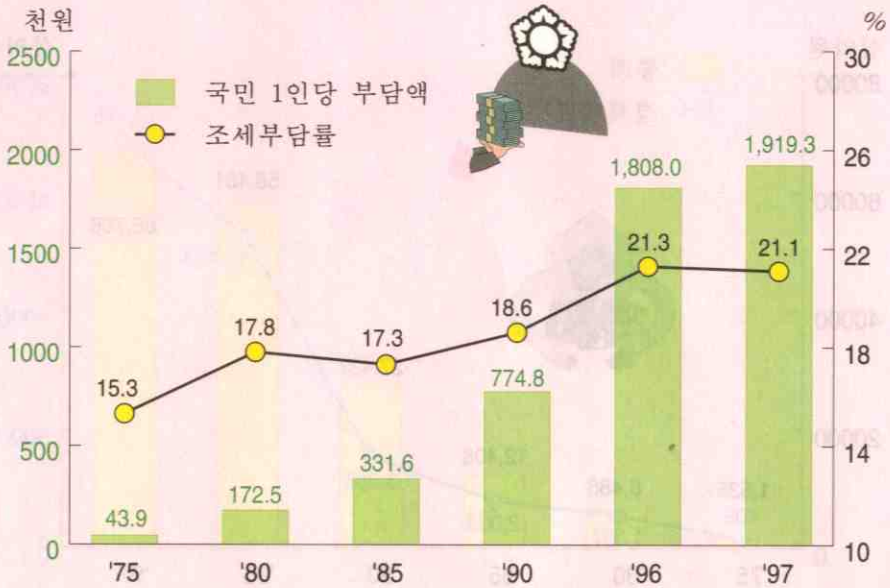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연도	총계						
	일반행정	방위비	사회 개발비	교육비	경제 개발비	지방재정 교부금	
1975	1,535	173	442	102	195	409	118
1980	6,486	629	2,308	414	1,151	1,397	410
1985	12,406	1,254	3,802	843	2,493	2,003	1,009
1990	27,437	2,802	6,856	2,450	5,586	3,868	2,765
1996	58,481	6,282	12,945	5,021	11,030	13,123	6,378
1997 ¹⁾	66,706	7,083	14,350	5,994	12,166	17,178	6,799

주 : 1) 추정예산임.

자료 : 재정경제부 「예산개요참고자료」, 「결산개요」

4. 조세부담액 및 부담률



단위 : 십억원, %

연도	총조세부담			국세(중앙정부 재정)			지방세		
	총액	1인당 (천원)	조세 부담률	총액	1인당 (천원)	국세 부담률	총액	1인당 (천원)	지방세 부담률
1975	1,549.8	43.9	15.3	1,391.0	39.4	13.7	158.8	4.5	1.6
1980	6,575.4	172.5	17.8	5,807.7	152.3	15.8	767.7	20.1	2.1
1985	13,531.1	331.6	17.3	11,876.4	291.0	15.2	1,654.6	40.5	2.1
1990	33,214.8	774.8	18.6	26,847.4	626.3	15.0	6,367.4	148.5	3.6
1996	82,354.9	1,808.0	21.3	64,960.2	1,426.0	16.8	17,394.7	382.0	4.5
1997	88,271.4	1,919.3	21.1	69,927.7	1,520.4	16.7	18,343.7	398.9	4.4

자료 : 재정경제부 「예산개요참고자료」, 「세입세출결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14. 무역·국제수지통계



통계조사 및 통계

무역통계, SKTC에 의한 무역통계,
수출산업실태조사, 주요수입상품의 경쟁력실태조사,
외환수급통계, 국제수지통계

주요 통계지표

무역지수, 교역조건, 외환보유액, 특별인출권

통계표 및 도표

수출·수입액, 상품류별 수출, 상품류별 수입, 국제수지,
서비스 수지, 외환보유액

무역·국제수지 통계

I 무역은 국가간 상품의 이동, 국제수지는 모든 경제적거래를 의미

오늘날 각국은 다른 나라들과 여러 형태의 거래를 가진다. 이와 같이 여러나라의 국민경제가 서로 관련되어 형성하는 경제를 국제경제라 한다. 이것은 국내경제와 같이 실물의 흐름이 있고 화폐의 흐름이 있다. 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국제무역이고 후자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 국제수지이다.

무역은 한 나라의 상품(서비스가 아닌 재화)의 이동을 나타내고 무역수지는 수출입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무역에 관련된 통계는 한 나라의 무역정책, 산업정책의 수립과 경제분석의 중요한 자료이며, 한정된 자원의 국가간 적정배분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기준이 강조된다.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 주민과 다른 나라 주민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말하며, 국제수지를 복식부기원리에 의하여 작성한 통계표를 국제수지표라 한다. 국제수지가 포괄하고 있는 대외거래는 크게 상품·서비스거래, 소득거래, 경상이전거래 및 자본거래로 나누어진다. 국제수지표에서는 상품·서비스거래, 소득거래, 경상이전거래를 경상수지 항목에 포함시키고, 자본거래를 투자거래, 기타자본거래로 분류하여 기록한다.

☞ 무역·국제수지 통계

무역통계는 관세청이 작성하는 통계(1차통계)와 무역협회에서 작성하는 무역통계(2차통계)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국제수지내의 상품수지통계, 한국은행의 외환수급(결제기준) 통계의 한 항목으로서의 수출입관련 통계가 무역통계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무역통계는 관세청이 작성하는 '무역통계'이다.

국제수지통계는 한국은행에서 매월 작성하여 「국제수지」에 수록하여 발표한다.

II 무역·국제수지 관련 주요통계 및 통계조사

1. 무역통계

무역통계는 관세청이 상거래 및 관세정책의 수립시행과 유관기관 및 업계의 경제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관세행정의 일부로서 매일 접수된 수입면장을 집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1978년 이후 공식적 무역통계로 일원화되어 「무역통계월보」 및 「무역통계연감」을 통해 발표된다.

무역통계의 작성기준

1) 통계계상범위

- UN권고안에서는 '그 유출입으로 인하여 한 나라의 물적자원의 저장(stock)에 증감을 가져오는 재화'를 대상으로 무역통계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통하나 용역은 당연히 제외되나 재화는 관세선(관세가 부과되는 영역)을 통과한 실물자산을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거래에 의한 상품뿐 아니라 장기대여 및 리스계약, 수리목적의 항공기 등 소유권 변동없이 관세선을 통과한 상품도 포함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상품의 광고 등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반출·반입되는 견본품도 수출과 수입에 계상되며 수출입품목 중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되어 오거나 반품시키는 것도 각각 수출과 수입에 포함된다. 이렇게 무역통계에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재수출입(수리목적의 수출입 등), 임대차 수출입, 수탁가공무역, 이사화물, 하자보수용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 국가영역의 한계는 관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수출의 경우 수출면허된 품목뿐만 아니라 보세공장 및 수출자유지역으로부터 반송(즉 무역거래법상의 수출)이 면허된 물품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수입에 있어서도 수입면허된 품목뿐만 아니라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에 반출된 물품과 외국으로부터 보세공장·수출자유지역 또는 보세건설장에 반입(즉 무역거래법상의 수입)된 후 수입면허전에 사용승인된 물품 등도 수입의 범주로 보고 있다.

☞ UN권고안에서 통계포함여부에 관하여 특히 강조하고 있는 재화

- 결재용이라기보다는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화폐와 비통화성금, 즉 미가공된 금이나 금조각 등은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거래인 전매품의 수출, 식량수입, 대외원조사업에 의한 수출입품, 심지어 군사장비물 등도 가능한 한 통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 통계에서 배제되어야 할 재화로서는 해외에 주재하는 자국의 공관 또는 군대와 거래되는 재화, 그리고 외국의 해역에서 자국 선박에 의해 채취된 수산물 등이다.

2) 통계계상시기

우리나라는 수출입면허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수입면허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거나 보세구역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면허전 반출 또는 사용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출항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면허일자 기준의 통계는 수출면허후 장시간 미선적되는 경우에는 교역상대국과의 수출입통계의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3) 품목분류

국제무역과 관련한 품목분류는 상품별 국제비교가 용이하도록 국제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크게 두가지 분류가 있다. 하나는 관세행정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전된 분류로서 동일한 분류에서 얻어진 물품은, 동일한 품목군에 분류하고 원료로부터 완제품의 순으로 배열하는 방식이다. 다른 또 하나는 경제분석과 무역통계의 국제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무역상품을 분류한 것으로서 상품의 종류별, 산업구조별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양자의 모체는 모두 1931년 국제연맹의 주관하에 제정된 제네바 품목분류표인데 전자는 UN관세협력이사회(CCC)에 의해 추진되어 있으며, 1959년의 브뤼셀 품목분류표(BTN)→1974년의 관세행정품목분류(CCCN)→1985년의 국제통일상품분류(HS)체계로 발전되어 왔다.

한편 후자는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추진해 온 분류로서 국제표준무역분류(SITC)로 불리우며 1986년까지 3차례의 개정을 보았는데, 양 제도의 개정과정은 모두 서로를 연계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은 CCC에 의한 품목분류를 기준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통계의 품목분류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품목분류방식이 개정되어도 1차무역통계는 시계열을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해년도에 적용된 분류방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적용기준



4) 평가방법

무역통계에서 집계되는 가격평가는 수출과 수입의 경우가 다르다. 즉 일단 통관기준에 의해 계상범위에 들어간 품목에 대하여 수출품은 본선인도가격(FOB)을, 수입품은 정상도착가격(운임, 보험료 포함가격 : CIF)을 기준으로 가격평가를 하고 있다. 이때 수출입에 따른 대금결제조건이나 결제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관세선을 통과한 물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금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지급하는 연불수출입이나 선수금, 착수금만 받고 수출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대금지급상황 또는 계약조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주요 구성항목

<수출>

- 총괄 : 일반수출, 보세가공수출, 기타로 구분
- 형태별 : 일반, 특수무역, 대외원조, 현물차관, 해외투자, 재수출, 기타로 분류하여 실적액을 집계
- 국별 : 수출품이 최종도착되는 국가를 기준으로 수출의 형태별로 집계
- 세번별 : 수출품별로 국제관세행정분류번호의 4단위로 분류한 상품별 수출수량 및 금액을 표기
- 상품별 및 국별 : 8단위 세분류에 의한 상품별, 국별 수출물량 및 금액을 표기
- 세관별 : 세관별 실적액을 집계

<수 입>

- 총괄 : 보유외환(KFX)에 의한 차관수입, 기타로 구분하여 집계
- 국별 : 수입품의 원산국별, 수입재원별 실적액을 집계
- 재원별 : 보유외환, 공공차관, 상업차관, 외국인투자, 재수입, 기타항목으로 분류
- 세번별 : 수입품별로 국제관세행정분류번호의 4단위로 분류한 상품별 수입수량 및 금액을 집계
- 상품별 및 국별, 세관별 : 수출과 동일

2. SKTC에 의한 무역통계

관세청의 무역통계는 관세행정을 위해 만든 품목분류에 의거하여 작성됨으로써 경제분석 등 관세행정 이외의 목적에 부응하는 통계자료를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한계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에서는 각각 관세청 무역통계를 토대로 재분류한 2차가공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1960년판 「경제통계연보」에 1955년 이후의 자료로 시계열을 소급한 SITC 무역통계를 처음으로 수록하였으며, 1969년판 「경제통계연보」부터는 1965년 이후의 자료로 시계열을 소급하여 대분류별 SKTC 무역통계를 작성·수록하고 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에서는 1976년부터 공식으로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 SKTC 무역통계를 작성해서 「무역동향」(월간), 「무역통계」(연간)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1차무역통계를 기초로 작성되는 2차무역통계의 성격상 여타 작성기준은 모두 같고 다만 품목분류의 기준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2차무역통계에 적용되는 품목분류는 모두 앞에서 설명한 SITC기준 한국표준무역분류(SKTC)방식인데, 1964년 SKTC가 제정된 이래 SITC 개정(3차례)과 연계하여 1988년까지 모두 8차례의 개정을 보았다. SKTC의 기호 및 분류내용은 SITC의 기본사항과 일치하나 6단위 이하에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추어 좀더 세분화되어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3. 수출산업실태조사

수출산업실태조사는 수출산업의 실태를 파악, 정책당국과 무역업계의 효율적인 대책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환경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하는 일반조사통계이다.

본 조사는 33개 품목, 1,000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목표 및 전망, 경쟁력 실태, 경쟁력 기반, 수출공급능력 및 설비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원 방문에 의한 실사조사에 의한다.

조사결과는 매년 「수출산업실태조사」란 간행물을 통해 발표되는데, 주요 수록통계는 1) 수출증감요인, 수출경쟁국, 통상환경 등의 수출환경 2) 상품경쟁력, 마케팅 및 공급능력 등의 수출경쟁력 현황 3) 경쟁력 기반요인 4) WTO체제의 대비실태 및 기업세계화 등이다.

4. 주요수입상품의 경쟁력실태조사

주요수입상품의 경쟁력실태조사는 경쟁력의 최종 평가자인 국내 소비자의 평가를 통해 국내시장에서의 주요수입상품의 경쟁력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국산품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양양하고 경쟁력 제고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작성하는 일반조사통계이다.

본 조사는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가정용 전자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정밀기계, 섬유제품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매년 모집단(조사대상품목별 주요수입업체)에서 조사대상 품목별로 난수표에 따라 600개 업체를 계통추출한 표본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주요 조사사항으로는 조사대상업체의 성격, 주요수입상품의 경쟁력실태, 수입상품의 수요와 채산성, 국내 및 해외 생산시설보유업체 현황 등이고 조사결과는 매년 조사대상품목별로 집계하여 「주요수입상품의 경쟁력 실태조사」란 간행물을 통해 발표한다.

5. 외환수급통계

외환수급통계는 무역, 무역외, 자본거래 등이 대외거래 중 실제 외환의 수입 또는 지급이 수반되는 거래실적을 거래 형태별로 파악, 집계하여 보유중인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지침을 제공하고 대외지급준비자금의 적정선 유지, 통화기치 안정 등의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매월을 주기로 작성하는 일반 보고통계이다.

본 통계는 상품별, 국별, 결제통화별, 가격조건별(FOB, CIF 등) 수출 및 수입 실적과 해외여행, 운수·보험, 투자수익, 정부거래, 증여 등 주요 항목별 무역외

지급 및 자본거래 수급실적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조사방법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금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거래로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 수출, 수입, 무역외 등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실적을 우편이나 전산테이프를 받아 집계한다. 단 현물로 투자하거나 현물로 차관을 도입하는 등의 현물거래와 실제로 외환의 수급이 수반되지 않는 무상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결과는 월, 년단위로 집계되어 「조사통계월보」, 「외환통계연보」 등의 간행물을 통해 공표된다.

6. 국제수지통계

국제수지통계는 완전고용, 물가안정 등에 필요한 경제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유관 기관 및 업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일반가공통계이다.

본 통계는 관세청의 무역통계, 외국환은행에서 보고하는 자료를 기초로 한 외환수급통계 및 정부기관과 각종 민간기업의 보고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되며 매월 「국제수지」를 통해 공표한다. ('98년부터 신체계로 분류하여 공표)

Ⅲ 국제수지통계의 특성

1. 국제수지통계의 체계(신체계)

1) 경상수지

- 상품·서비스수지

- 상품수지 : 일반상품, 가공용재화, 운수조달재화, 재화수리, 비화폐용금
- 서비스수지 :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기타서비스

- 소득수지 : 급여 및 임금, 투자소득

- 경상이전수지

2) 자본수지

- 투자수지

- 기타자본수지

3) 준비자산증감

4) 오차 및 누락

1) 국제수지표의 의미

국제수지표란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다른 나라의 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표이다.

2) 국제수지표의 주요 구성항목

국제수지표는 경상계정, 자본계정, 준비자산증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계정에는 국제간의 상품 및 용역거래, 소득거래, 경상이전거래 등을 기록하고 자본계정에는 통화당국의 준비자산증감을 제외한 민간, 금융기관, 정부 등의 대외자본거래와 자본이전거래를 수록하며 준비자산증감에는 통화당국의 준비자산증감을 기록하게 된다.

○ 상품·서비스수지

상품수지는 재화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재화는 일반상품, 가공용재화, 재화수리, 운수조달재화 및 비화폐용금을 포함한다.

가공용재화에는 외국(국내)에서 가공하기 위해 수출(수입)한 후 재수입(재수출)된 재화를 계상하며, 재화수리에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선박, 항공기 등의 수리행위에 대해 수취 또는 지급한 수리비를 계상한다.

운수조달재화는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조달한 연료, 보급품 등을 포함하며 비화폐용 금은 통화당국이 준비자산으로 보유한 금(화폐용금) 이외의 모든 금수출입을 계상한다. 일반상품은 수출입상품으로서 가공용재화, 운수조달재화, 재화수리 및 비화폐용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을 계상한다.

한편, 국제수지표상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수출입숫자와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관세청에서는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통과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데 비해, 국제수지표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소유권 이전(change of ownership) 기준에 의해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관기준에 의한 수출입을 소유권 이전기준 즉, 국제수지 기준에 의한

수출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통관기준 수출입에서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는 재수출, 재수입 등을 수출입에서 각각 차감하고(포괄범위조정 : coverage adjustment), 선박·철구조물 등과 같이 관세선 통과와 소유권 이전시점이 명확히 구분되는 거래의 경우 소유권 변동시점에 맞게 이를 통관수출입금액에 가감해 준다.(계상시점조정 : timing adjustment)

또한 통관통계에서 수출은 FOB 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이 포함된 CIF가격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국제수지에서는 수출·수입 모두 FOB가격으로 평가되므로 통관수입에서 운임·보험을 차감하되 이 중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운임 및 보험거래는 서비스거래에 계상한다.(분류조정 : classification adjustment)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용역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차를 말한다. 국제수지표에서 서비스거래는 운수, 여행,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기타서비스로 구분한다.

운수항목에는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거주자와 다른 나라의 거주자간에 거래되는 운송서비스로서 여객의 수송, 재화의 수송, 예인·도선 등 기타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계상한다. 여행에는 여행자인 개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해외체류기간 중 체류국에서 취득한 재화 및 서비스를 계상한다.

통신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통신관련 서비스를 계상하며, 보험서비스는 거주자인 보험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와 비거주자인 보험업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를 계상한다.

특허권 등 사용료에는 상표권, 특허권 등 무형의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사용료와 기술도입에 따른 대가를 계상하며, 사업서비스에는 상품중개 및 무역관련서비스, 광고, 법률자문, 건설링 등을 계상한다.

정부서비스는 해외의 대사관, 영사관, 군대 등이 주재하고 있는 경제권의 거주자 및 기타 경제권의 거주자와 행한 모든 거래를 포함하며, 기타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융중개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개인·문화 및 오락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 소득수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수취하는 급여 및 임금과 대외금융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된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을 계상한다.

○ 경상이전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 받은 거래의 수지차를 말한다. 경상이전거래는 수혜자의 소득 및 소비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개인송금, 구호를 위한 식량, 의약품 등의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등을 포함한다.

○ 자본수지

경상수지가 재화와 서비스거래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자본수지는 민간기업, 금융기관 및 정부가 해외로부터 차입 등의 방식으로 외화를 도입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해외에 신용공여 등의 방식으로 외화를 유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외화의 유출입차를 나타낸다. 자본수지가 플러스라는 것은 외화의 유입이 유출보다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수지는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로 구분되는데, 투자수지는 다시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로 세분되며 기타자본수지는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투자는 한 국가의 거주자가 다른 나라의 거주자기업에 대한 영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대외투자로서 투자방향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로 구분한다.

포트폴리오투자는 기업에 대한 영속적인 이해관계보다는 투자자본의 가치증가, 이윤획득 등을 목적으로 한 대외투자로서 지분, 주식 등의 지분증권과 채권, 기업어음 등의 부채성증권으로 구분된다. 기타투자는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금융거래를 계상하며 대출 및 차입, 무역관련신용, 현금 및 예금, 기타로 세분된다.

자본이전은 해외이주비, 채무면제,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현금이전 등을 계상하며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상표권, 특허권 등의 취득·처분을 계상한다.

○ 준비자산증감

준비자산증감은 통화당국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직접 보전하거나 또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하여 국제수지 불균형을 간접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외자산의 증감을 계상한다.

2. 국제수지가 가지는 경제적 의미

국제수지의 구성요소 중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수지라 할 때는 경상수지를 의미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 상품·서비스수지의 비중이 제일 크다. 경상수지가 흑자라면 상품수출이 상품수입보다 더 크기가 쉽다. 상품수출이 늘어나면 국내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이것으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빚을 갚을 수 있어 외채가 줄어들거나 외화자산이 늘어난다. 나아가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직접투자를 늘려나갈 수도 있다.

국내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부양책을 쓰고자 할 경우에 수입증가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양책을 쓰기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무역마찰에서 여유를 갖고 대처할 수 있게 되는 등 경제정책수단의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경제를 보다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의 통화증발을 가져와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는 한편, 통상면에서는 교역상대국으로 하여금 수입규제를 유발하는 등 무역마찰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IV 지 표

○ 무역지수

수출입의 변동은 금액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느냐 하는 것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동은 단가의 변동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고 물량의 증감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므로 수출입금액의 변동을 가격요인과 물량요인으로 나누어 파악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작성되는 것이 무역지수이다.

지수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어떤 수량이나 금액의 변동을 측정하거나 비교하기 위해 고안된 통계개념으로 특정 기준시점을 100으로 하여 비교년도의 수준이 계수로 표시된다.

무역지수에는 수출입 전체금액의 변동을 나타내는 수출입금액지수, 수출입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수출입단가지수, 수출입물량의 변동의 크기를 알려주는 수출입물량지수가 있다.

이들 지수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다기 보다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수출입금액지수는 수출입 단가와 수출입물량을 곱한 것이다.

따라서 지수의 산출에 있어서도 수출입금액지수와 수출입단가지수를 먼저 산정하고 수출입물량지수는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입단가지수로 나누어서 구하게 된다. 여기서 수출입금액지수는 비교시 수출입금액을 기준시의 수출입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수출입단가지수는 HSK를 기준으로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격변동이 일정범위 내에서 안정성을 보이는 품목을 매년 선정하여 품목별 가중치를 고려한 파쉐식으로 산출한다.

○ 교역조건

교역조건은 수출과 수입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순상품교역조건과 소득교역조건이 있다. 교역조건지수가 상승하면 교역조건이 개선, 하락하면 악화됨을 의미한다.

순상품교역조건은 수출가격의 수입가격에 대한 비율로써 동 지수의 상승은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더 상승한 것을 의미하므로 기준년도와 동일한 양의 재화를 수출하여 얻은 외환으로 기준년도보다 더 많은 양의 재화를 수입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교역조건은 순상품교역조건지수에 수출물량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소득교역조건지수가 상승하였다면 비교시점의 수출총액으로 기준시점보다 더 많은 양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순상품교역조건 = (수출단가지수 / 수입단가지수) × 100
- 소득교역조건 = (순상품교역조건) × 수출물량지수

○ 외환보유액

한 나라의 수입대금 결제 및 대외부채 상환 등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협의로는 통화당국이 보유하는 금 및 외환액의 합계를 말하며, 광의로는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과 특별인출권(SDR)을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화당국(정부 및 중앙은행)과 외국환은행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총액으로 산출한다.

- 외환보유액 = 금 + 외환액 + IMF 포지션 + 특별인출권(SDR)

○ 특별인출권(SD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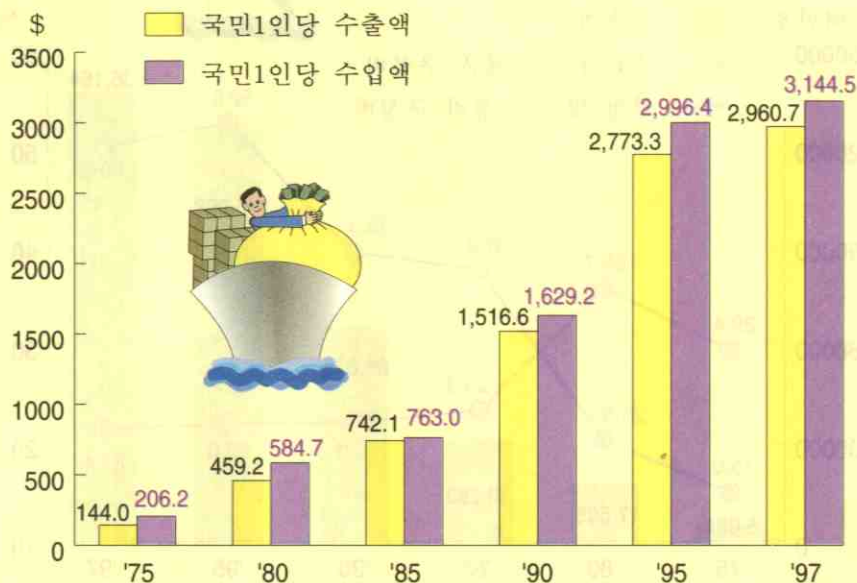
달러 위기를 계기로 야기된 국제통화제도의 불안 및 국제유동성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IMF가맹국의 합의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창출 또는 감액되는 새로운 준비자산으로서 국제유동성 부족을 보충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IMF가 특별인출권계정에 참가한 가맹국에 대하여 이를 배분함으로써 창출된다.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보유국이 희망할 경우 SDR을 대가로 교환성 통화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면 통화당국간에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완전한 자산이라 볼 수 어려운 점도 있다.

<참고자료>

-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국제수지」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외환통계연보」 1997 한국은행
「무역통계」 1997 한국무역협회
「수출산업실태조사」 1997 한국무역협회
「한국통계조사현황」 1997 통계청
「통계용어정의집」 1994 통계청
「현대경제학원론」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공저

1. 수출 · 수입액



단위 : 백만\$, \$

연도	수출액		수입액		수출초과
	총액	국민1인당	총액	국민1인당	
1975	5,081.0	144.0	7,274.4	206.2	-2,193.4
1980	17,504.9	459.2	22,291.7	584.7	-4,786.8
1985	30,283.1	742.1	31,135.7	763.0	-852.6
1990	65,015.7	1,516.6	69,843.7	1,629.2	-4,828.0
1995	125,058.0	2,773.3	135,118.9	2,996.4	-10,060.9
1996	129,715.1	2,848.1	150,339.1	3,300.9	-20,624.0
1997	136,164.2	2,960.7	144,616.4	3,144.5	-8,452.2

주 : 수출액은 FOB, 수입액은 CIF가격. '86년 이후는 수리선박이 제외됨.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연보」

2. 상품류별 수출



단위 : 백만\$, %

Year	수출액 ¹⁾	식품 및 산동물	음료 및 담배	비식용 원료 (연료제외)	화학물 및 관련 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기계 및 운수장비		기타 제조 제품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75	5,081	602	68	141	69	1,495	29.4	762	15.0	1,821
1980	17,505	1,153	124	331	755	6,252	35.7	3,555	20.3	5,229
1985	30,283	1,136	107	298	936	7,064	23.3	11,384	37.6	8,372
1990	65,016	2,037	123	991	2,512	14,357	22.1	25,545	39.3	18,573
1995	125,058	2,656	147	1,790	8,944	27,568	22.0	65,646	52.5	13,382
1996	129,715	2,724	193	1,608	9,148	26,959	20.8	67,584	52.1	12,237
1997	136,164	2,656	185	1,780	10,666	29,097	21.4	68,109	50.0	12,032

주 : 1) 수출액에는 기타가 포함되었으며, '86년 이후는 수리선박이 제외됨.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연보」

3. 상품류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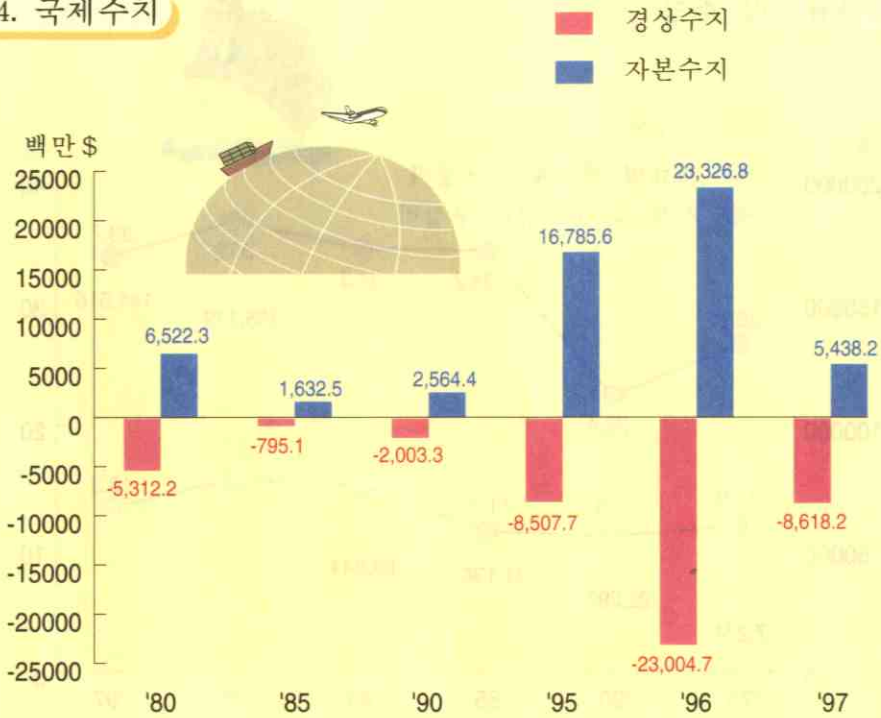
단위 : 백만\$, %

	수입액 ¹⁾	식품 및 산동물	음료 및 담배	비식용 원료 (연료제외)	화학물 및 관련 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기계 및 운수장비		기타 제조 제품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75	7,274	947	13	1,121	782	867	11.9	1,926	26.5	170
1980	22,292	1,797	85	3,632	1,800	2,450	11.0	5,000	22.4	687
1985	31,136	1,398	50	3,857	2,789	3,555	11.4	10,648	34.2	1,233
1990	69,844	3,247	188	8,651	7,430	10,581	15.1	23,944	34.3	4,240
1995	135,119	5,926	535	11,713	13,156	21,270	15.7	49,436	36.6	10,803
1996	150,339	7,265	665	10,965	13,231	20,947	13.9	54,675	36.4	12,062
1997	144,616	6,517	660	10,424	13,110	19,249	13.3	48,722	33.7	11,561

주 : 1) 수입액에는 기타가 포함되었으며, '86년 이후는 수리선박이 제외됨.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연보」

4. 국제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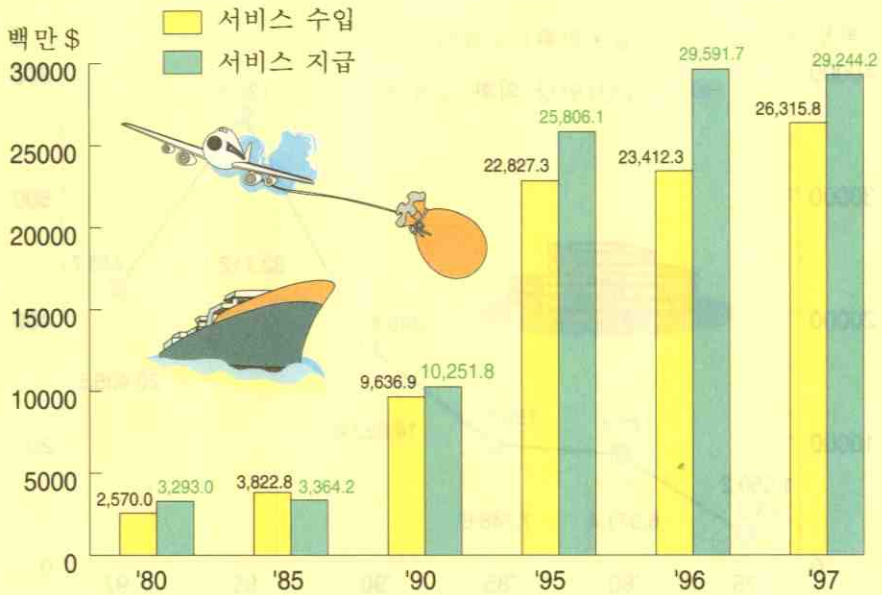


단위 : 백만\$

	경상수지						자본수지		
	상품 및 서비스수지	상품 및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투자수지	기타 자본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1980	-5,312.2	-5,336.2	-4,613.2	-723.0	-511.5	535.5	6,522.3	6,518.3	4.0
1985	-795.1	438.4	-20.2	458.6	-2,085.6	852.1	1,632.5	1,725.2	-92.7
1990	-2,003.3	-3,065.1	-2,450.2	-614.9	-87.7	1,149.5	2,564.4	2,895.6	-331.2
1995	-8,507.7	-7,423.0	-4,444.2	-2,978.8	-1,302.8	218.1	16,785.6	17,273.2	-487.6
1996	-23,004.7	-21,144.1	-14,964.7	-6,179.4	-1,814.5	-46.1	23,326.8	23,924.4	-597.6
1997	-8,618.2	-6,803.0	-3,874.5	-2,928.5	-2,676.5	861.7	5,438.2	6,027.6	-589.4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

5. 서비스 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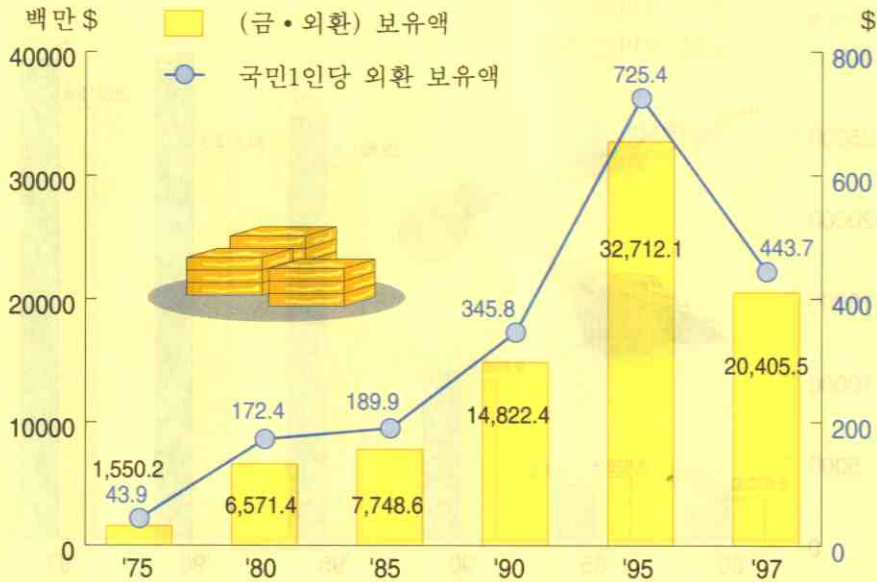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서비스수입				서비스지급			
	운수	여행	기타		운수	여행	기타	
1980	2,570.0	1,545.2	369.3	655.5	3,293.0	2,017.9	349.6	925.5
1985	3,822.8	1,857.6	784.3	1,180.9	3,364.2	1,564.1	605.9	1,194.2
1990	9,636.9	3,179.1	3,161.1	3,296.7	10,251.8	3,998.1	2,768.0	3,485.7
1995	22,827.3	9,272.1	5,150.4	8,404.8	25,806.1	9,645.0	6,340.7	9,820.4
1996	23,412.3	8,765.0	4,879.7	9,767.6	29,591.7	10,223.5	7,482.3	11,879.9
1997	26,315.8	10,597.5	4,819.3	10,899.0	29,244.2	10,045.7	7,077.4	12,121.1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

6. 외환보유액



단위 : 백만\$

연도	합 계		금	외환 ¹⁾		국제통화 기금 포지션	특별 인출권
	국 민 1인당(\$)	국 민 1인당(\$)					
1975	1,550.2	43.9	4.7	1,541.7	43.7	...	3.9
1980	6,571.4	172.4	30.8	6,528.1	171.2	...	12.6
1985	7,748.6	189.9	31.4	7,677.1	188.1	...	40.2
1990	14,822.4	345.8	31.6	14,459.1	337.3	317.3	14.3
1995	32,712.1	725.4	34.4	31,928.2	708.1	651.8	97.7
1996	33,236.7	729.8	35.9	32,401.9	711.4	680.7	118.2
1997	20,405.5	443.7	36.9	19,710.4	428.6	599.3	58.9

주 : 1) '88년부터는 국내 외국환은행의 보유외환을 제외한 공적 보유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5. 교육·과학통계



통계조사 및 통계

교육통계조사, 한국의 교육지표,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

주요 통계지표

국민의 학력구성비, 국민의 평균교육년수,
학령인구수, 취학률, 진학률, 공교육비, 사교육비,
교원1인당 학생수, 학급당학생수, 교원이직률,
기초연구비, 응용연구비, 개발비, 박사학위 취득자수,
연구원, 기능 및 기술직종사자

통계표 및 도표

국민의 학력구성비, 학교급별 학교수 및 학생수,
학교급별 교원수, 졸업자 취업률,
연구개발수행기관 및 연구원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변화

교육·과학통계

I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작업

교육은 근본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작업으로, 다가올 날에 대한 설계는 오늘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맞는 개선과 개혁의 기초를 마련해야만 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국가의 발전과 생존전략적인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문화사적 변화와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교육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지금 세계경제에 활력을 주며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신소재 등으로 새로운 첨단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개발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술경쟁이 국가사회의 세력판도까지 좌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기술발전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자연과학의 발전은 원자·원자핵소립자·물리학 등 기초과학의 연구결과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즉 과학이 없는 바탕에서 기술을 얻기 어려우며, 또한 기술이 없는 바탕에서는 과학의 진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등 과학과 기술은 서로를 자극하면서 발전시켜 오늘날의 과학기술발전을 이루어낸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이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체제가 크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기술발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련 우수 연구인력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해야할 것이다.

II 교육·과학관련 주요통계 및 통계조사

교육지표는 시대변화의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있는 교육적인 상황을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교육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까지도 측정함으로써 교육체제의 전반적인 양태와 변화 및 발전상태를 보여주고, 교육체제의 질 관리 및 교육정책의 입안과 결정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척도이다.

한 나라의 교육정책과 교육실천은 그 나라 국민의 의식에 바탕을 둘 때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이 그 나라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정서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도입할 때, 그 정책과 제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타당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도입하여도 그 정책과 제도가 국민의 의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즉 교육분야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육인구 및 교육조직의 거대화에 따라 관련 정보자료도 다양화·대량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의 신속한 획득 및 활용은 교육문제의 정확한 진단, 교육연구 및 개발 그리고 합리적인 교육정책결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분야와 함께 여러 연구개발활동 및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인의 활동을 위한 과학통계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 및 과학분야의 통계로는 교육통계연감, 교육통계편람, 한국의 교육지표,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기초연구지원통계연보 등이 있다.

1. 교육통계조사

교육통계조사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매년 4월 1일을 조사기준시점으로 하여 전국의 각급학교, 사설학원,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보고통계로서 우리나라의 교육실정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약 80,000여개 교육관련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보다 충실하고 유용한 자료를 만들고자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여 이루어진다.

본 조사의 결과는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되며, 교육통계연보는 우리의 교육현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교육정책의 수립과 교육 개선사업추진 및 학술연구활동 등 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등 학교와 관련된 각종 내용과 사설학원의 수강자수 및 시설현황 등의 내용이다.

또한 「교육통계연보」를 요약하여 우리나라 교육기본통계와 연도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 우리나라 교육현황을 총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교육기본통계 및 각종 교육지표와 국제비교, 재외동포교육, 그리고 교육재정에 관한 통계자료 등을 종합, 수록한 「교육통계편람」이 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사회통계조사를 통하여 가구주의 자녀기대 교육수준, 교육기회의 미충족 및 이유, 교육비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지출액 등 교육부문의 주관적 관심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한다.

2. 한국의 교육지표

교육지표는 한 사회의 교육부문에 대한 조건과 상황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척도로서 교육지표의 활용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교육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교육체제의 자연적인 진보 및 특정 정책의 수행결과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를 감시하고 평가함으로써 교육계획의 집행을 지속하거나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치유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연구에 유용하게 이용되는가 하면, 교육체제에 대한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는 분류체제로 구성됨으로써 특정지표를 통해 교육체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체제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발전정도 등에 대한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해 준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매년 「한국의 교육지표」를 통해 관련자료를 공표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는 핵심적인 교육지표만을 선정하고 지표별로 상세한 정의 및 산식, 경향 및 현황, 그리고 획득 가능한 수준의 국제비교자료를 통합하여 보고하는 체제로 발간되고 있다.

즉, 교육의 배경으로서 인구구조,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등을, 또한 취학을, 진학을, 교원, 교육비, 교육시설 및 환경 등에 관한 지표들을 그 내용으로 한다.

3.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

본 조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연구관련 종사자 및 연구개발 투자 등)을 조사하여 국가 과학기술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각계의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로 하여금 과학기술연구개발계획 등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를 통하여 공표하고 있다.

조사분야는 OECD의 '연구개발활동조사 시행지침'에 의한 자연과학(이학), 공학 및 기술, 의학 및 농학 분야이며,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자연과학 분야의 시험연구기관(국·공립 및 기타 비영리법인 포함)과 자연과학분야의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병상수 80개 이상의 의료기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재투자기관을 포함한 기업체 등이다.

조사항목은 조직의 성격, 연구개발활동수행 부서 및 방법, 연구원 등의 연구개발관계 종사자, 성격별·비목별·재원별·용도별 사용 연구개발투자와 외부기관에 지급한 투자 등이다.

4. 기 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통계들이 작성되고 있는데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 등 각 기관에서 「과학기술연감」, 「기초연구지원통계연보」, 「정밀계량계측표준실태조사에 대한 보고」 등 여러 자료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연감」은 과학 전분야에 대한 통계표와 함께 해설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 개념과 배경, 장기예측 등이 용이하다.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동향,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분야 및 국제비교도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의 세계적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과학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자료들을 정리·분석함으로써 국내 기초연구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재단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그 간의 실적 및 국내 기초연구의 지원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초연구지원통계연보」가 발간되고 있다.

내용은 연구활동, 인력양성, 학술활동, 국제교류, 산학협력에 관한 사업내용과 지원실적 및 연구수행성과 등이며 통계자료에는 국내 연구개발통계, 재단지원실적, 연구수행성과 등이 정리되어 있다.

III 교육·과학통계의 특성

○ 개별교육지표가 나타내는 의미

교육지표를 관심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의 배경, 교육의 투입, 교육의 과정, 교육의 결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교육의 배경은 교육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실제적인 교육의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교육의 수준을 규제하고 발전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은 인구구조,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으로 구분된다. 둘째, 국민 모두에게 차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기회 확대는 국가의 교육정책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교육재정의 규모와 단위 교육비는 한 국가의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교육비의 확보 및 배분 등 교육재정, 교원, 교육시설 및 환경을 교육의 투입측면으로 분리한다.

셋째, 교육의 과정은 교육내용의 다양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교육과정의 편제, 교육과정 운영, 교육행정으로 구분한다.

넷째, 교육의 결과는 학생들이 얼마나 의미있는 내용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있으며 학습의 결과가 개인적·사회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는가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조직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사물, 기능, 현상 등에 관하여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탐구활동, 동 활동과정에 필요한 시험·측정·분석, 관련장비와 시설의 구입·설치, 문헌·실태 등의 조사활동 및 연구개발활동부서 운영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서무·회계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IV 지 표

○ 국민의 학력구성비

국민의 학력구성은 25세 이상의 성인인구 중 중퇴자를 포함한 각 교육단계별 졸업자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발전 및 국가발전지표의 기본요소가 된다. 국제비교시 주요국의 국민의 학력구성비는 25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인구 중 최종학력 졸업자의 비율을 사용한다.

$$\cdot \text{국민의 학력구성비}(\%) = \frac{\text{교육단계별 졸업자수(중퇴자 포함)}}{\text{25세 이상의 성인 인구}} \times 100$$

○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

교육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소로서 국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이는 국민 전체의 교육수준 및 의식수준 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정책의 수립 및 수행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cdot \text{국민의 평균교육년수} = \frac{\text{국민의 총 교육년수}}{\text{만 6세 이상 인구} - \text{학생인구}}$$

○ 학령인구수

학령인구는 교육인구수를 가늠할 수 있는 일차적 요인으로서 한 국가의 교육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교육법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만 6세 이상부터 만 21세 인구를 말한다. 즉 6~11세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인구이고 12~17세는 중등학교, 18~21세는 고등교육인구에 해당된다.

○ 취학률

취학률은 국민의 교육기회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지표로 취학 적령(5~21세) 인구 가운데 유치원(5세), 초등학교(6~11세), 중학교(12~14세), 고등학교(15~17세) 그리고 고등교육기관(18~21세)에 재학중인 학생비율을 나타낸다. 취학률을 산출할 때 '각급학교 학생수'는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재학중인 학생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취학률이 100% 이상일 경우도 발생한다.

$$\cdot \text{취학률} = \text{각급학교 학생수} / \text{각급학교 취학적령인구} \times 100$$

○ 진학률

진학률은 졸업생 대비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비율을 나타내는데, 이 결과는 상급학교 진학경쟁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교육열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이다.

아래의 세가지 진학률 산정방법 중 특히 상급학교 입학자를 분자로 하여 산출한 경우를 **입학률**이라고도 말한다.

- 진학률(1) = 당해연도 졸업자중 진학자수 / 졸업자수 \times 100
- 진학률(2) = 상급학교 입학자수(재수생 포함) / 졸업자수 \times 100
- 진학률(3) = 상급학교 1학년 학생수 / 졸업자수 \times 100

○ 공교육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회계 절차를 거쳐 지출이 이루어지는 교육경비로서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육비와 육(기)성회비를 합한 것을 말한다. 지출기능별로 크게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로 분류한다. 최종적인 경비의 소비단

위인 학교에서 지출되는 공교육비의 비중을 학교급별, 설립별로 살펴봄으로써 총 공교육비의 상대적인 분배비중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 사교육비

사교육비는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경비이다. 사교육비의 주요항목에는 교재구입비, 부교재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지정 의류비, 과외비, 학원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cdot \text{학생 1인당 사교육비} = \text{사교육비 총액} / \text{학생수}$$

○ 연평균 가계지출 중 교육비

가계지출 중 교육비는 1가구당 가계소비·지출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러한 교육비에는 도시가구 교육비 내용으로는 납입금, 교과서, 보충교육비, 문방구비, 유학자녀에게 보내준 하숙비, 자취비용 등이 포함되며, 농가교육비로는 현금 및 현물이 추가 포함된다. 이러한 차이는 도시가계조사는 품목별 소비지출을 조사하고, 농가경제조사는 품목별이 아닌 용도별로 조사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 학생당 연간 납입금액

학생당 연간 납입금액은 재학생을 기준으로, 중등학교의 경우 특급지 최고수준의 납입금액을, 전문대학의 경우는 최고수준을, 그리고 대학의 경우는 인문계열 최고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여기서 납입금액은 1년분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합한 액수를 의미하며, 입학금은 제외되었다.

$$\cdot \text{학생당 납입금액} = \text{수업료} + \text{육성회비(입학금 제외)}$$

○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원의 수업부담과 아울러 교육여건의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교육의 질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로 업무량 및 교육의 효과 등에서 관

심의 대상이 된다. 주로 국제비교지표로 사용되는데 우리나라 교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cdot \text{교원 1인당 학생수} = \text{총학생수} / \text{총교원수}$$

○ 학급(과)당 학생수

학교교육의 규모와 교육의 기회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학생수의 변화는 취학적령인구의 증감, 학생 수용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수는 주로 취학 적령인구의 증감에 따라 변화하지만 고등학교 이후 단계에서의 학생수는 학생 수용능력, 즉 정책적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 컴퓨터 1대당 학생수

컴퓨터 관련 교과목의 실습을 위한 기본장비 확보율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각 교과서에서의 컴퓨터 활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총학생수를 교육용 컴퓨터 총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교원 이직률

이 지표는 총교원수 대비 이직교원수 비율을 나타낸다. 이직교원수에는 정년 또는 명예퇴직 교원수와 중도에 교직을 떠나는 전직 교원수가 포함되며, 신규교원 소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cdot \text{교원 이직률(\%)} = \frac{\text{익년도 이직 교원수}}{\text{당해연도 총교원수}} \times 100$$

○ 기초 연구비

특정한 응용 또는 사용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주로 행하여지는 실험실적 또는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투입된 금액이다.

○ 응용 연구비

주로 특수한 실용적인 목적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투입된 금액이다.

○ 개발비

연구와 실험적 경험에 의해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재료, 제품의 생산, 새로운 공정·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설치, 기타 이미 생산되었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투입된 금액이다.

○ 인구 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수

인구수 중 학위취득자수의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박사학위의 수여여부는 교육기회의 확대측면 뿐만 아니라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하는 고급인력의 형성과 함께 국가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의 기초가 된다. 여기에서 명예박사는 제외하며 박사학위 취득자수는 1945년부터 누계로 나타낸다.

○ 연구원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학사 이상 학위소유자 또는 동등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연구개발활동부서에서 행정, 관리, 경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과거에 연구원으로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포함)을 의미하며 대학의 경우에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직원, 박사과정 대학원생과 부속연구소 등 연구개발활동부서에서 종사하고 있는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 연구보조원

연구원의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 검사,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경우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석사과정 대학원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기능 및 기술직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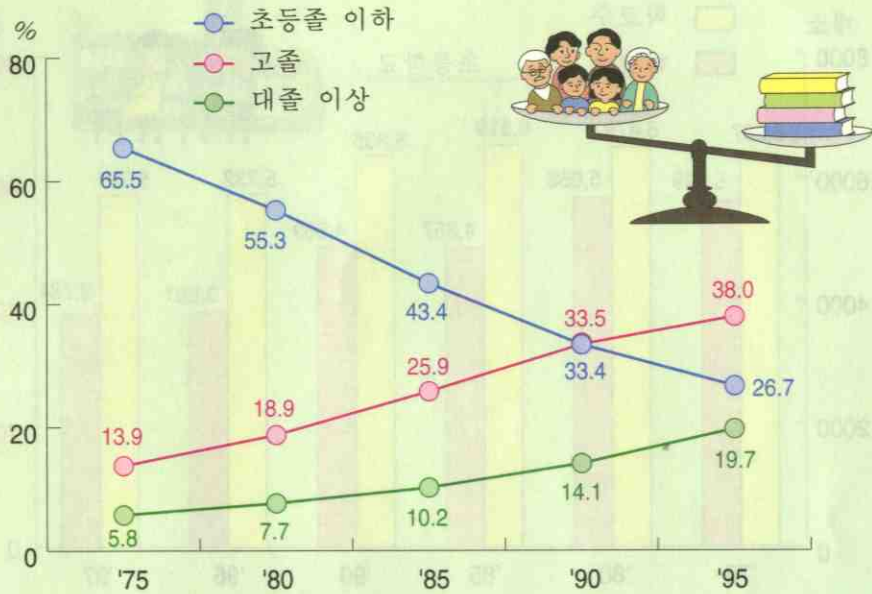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중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지시·감독하에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기술지원 및 노무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참고자료>

- 「교육통계연보」 1997 교육부, 국립교육평가원
- 「한국의 교육지표」 1997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인의 교육의식 조사연구」 1997 한국교육개발원
- 「과학기술연감」 1997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1997 과학기술부
- 「기초연구지원통계연보」 1997 한국과학재단

1. 국민의 학력 구성비(2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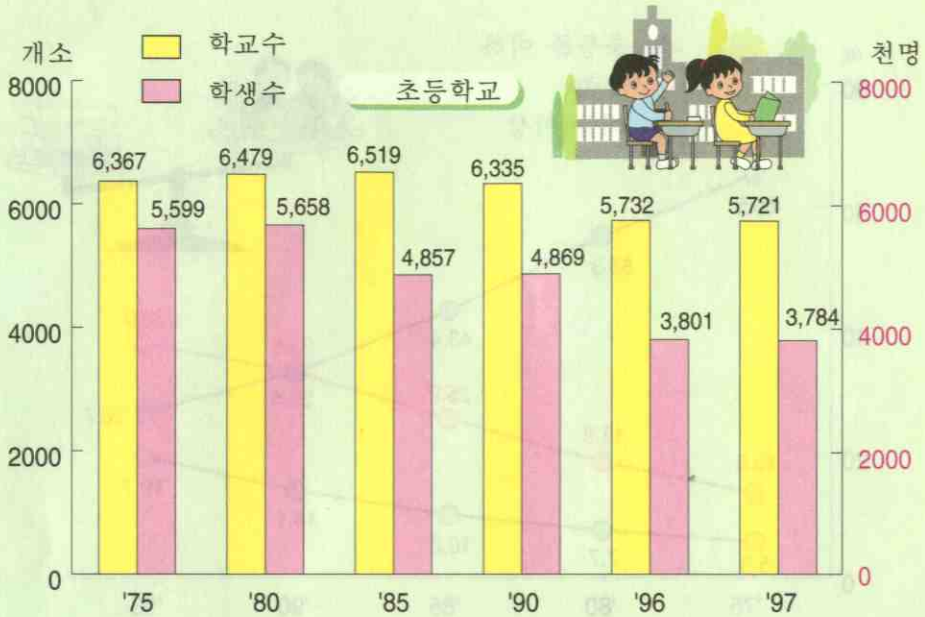


단위 : %

	초등졸 이하		중 졸			고 졸		대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75	65.5	53.1	77.1	14.8	17.7	12.1	13.9	19.7	8.4	5.8	9.5	2.4
1980	55.3	42.8	67.0	18.1	19.8	16.5	18.9	25.4	12.9	7.7	12.0	3.6
1985	43.4	31.9	54.1	20.5	20.5	20.5	25.9	32.1	20.2	10.2	15.5	5.2
1990	33.4	23.3	43.0	19.0	17.6	20.3	33.5	38.9	28.4	14.1	20.1	8.3
1995	26.7	17.8	35.0	15.6	14.2	17.1	38.0	41.4	34.8	19.7	26.6	13.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학교급별 학교수 및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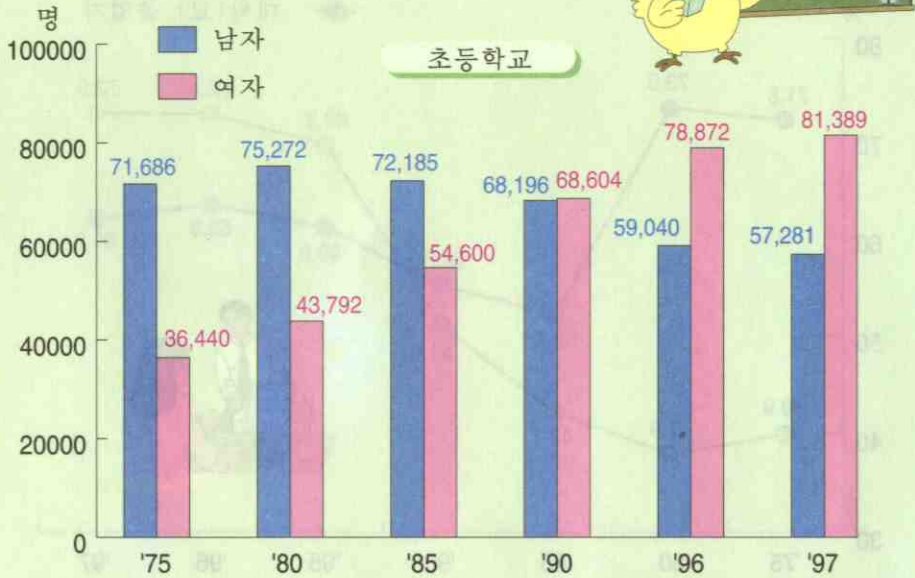
단위 : 개소, 천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¹⁾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1975	611	32	6,367	5,599	1,967	2,027	1,152	1,123	88	217
1980	901	66	6,479	5,658	2,103	2,472	1,353	1,697	96	416
1985	6,242	315	6,519	4,857	2,371	2,782	1,602	2,153	111	950
1990	8,354	415	6,335	4,869	2,474	2,276	1,683	2,284	118	1,056
1996	8,939	552	5,732	3,801	2,705	2,380	1,856	2,243	145	1,287
1997	9,005	568	5,721	3,784	2,720	2,180	1,892	2,337	161	1,389

주 : 1) 교육대학 포함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편람」

3. 학교급별 교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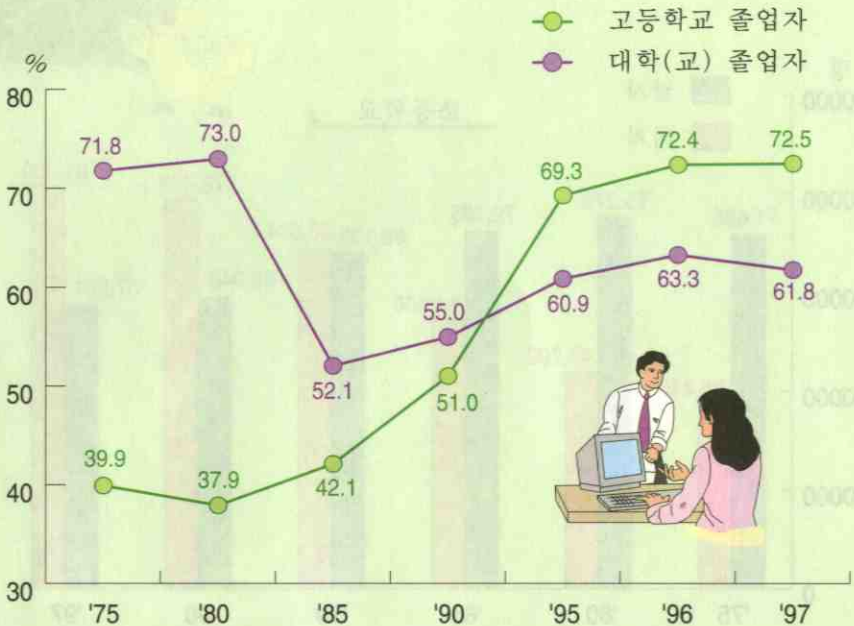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¹⁾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75	464	1,689	71,686	36,440	35,162	11,755	31,198	4,557	9,333	1,538
1980	493	2,846	75,272	43,792	36,848	18,010	42,219	8,729	12,716	2,306
1985	939	8,342	72,185	54,600	42,745	26,808	55,365	14,181	22,315	4,355
1990	1,202	17,309	68,196	68,604	48,001	41,718	71,454	21,229	28,067	5,967
1996	1,154	25,467	59,040	78,872	49,113	50,815	76,597	24,994	38,563	10,805
1997	1,113	26,473	57,281	81,389	47,243	50,688	77,812	26,592	41,826	12,288

주 : 1) 교육대학 포함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편람」

4. 졸업자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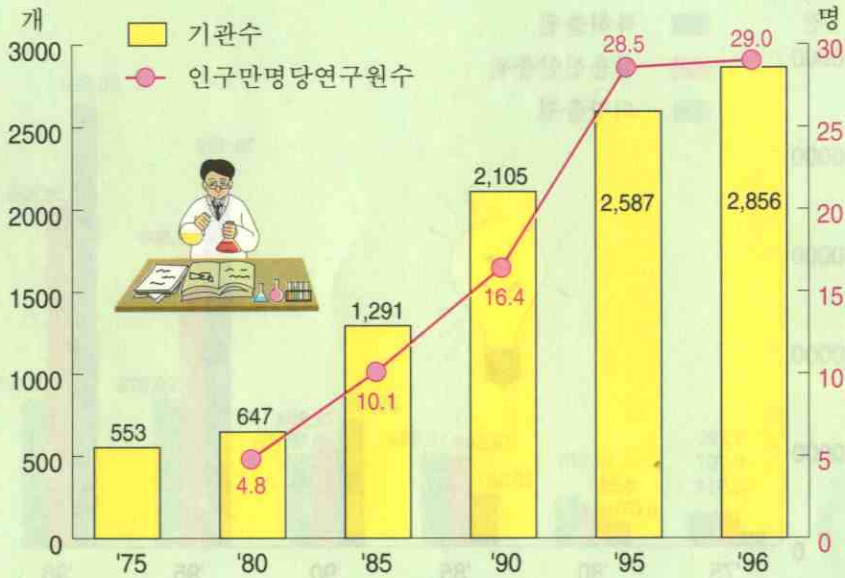


단위 : 명, %

연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취업자수	취업률	취업자수	취업률	취업자수	취업률	취업자수	취업률
1975	76,805	39.9	6,375	58.3	19,635	71.8	2,951	91.3
1980	128,103	37.9	17,836	50.3	28,349	73.0	4,042	84.8
1985	170,404	42.1	29,556	57.2	48,552	52.1	13,479	86.5
1990	257,905	51.0	47,094	71.8	79,975	55.0	15,477	80.0
1995	218,040	69.3	88,843	74.2	97,290	60.9	24,033	85.3
1996	218,033	72.4	102,648	78.2	101,911	63.3	26,019	87.3
1997	193,736	72.5	115,096	75.5	101,245	61.8	26,594	87.4

주 : 취업률=[취업자수/(졸업자-(진학자수+입대자수))]×10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편람」

5. 연구개발 수행기관 및 연구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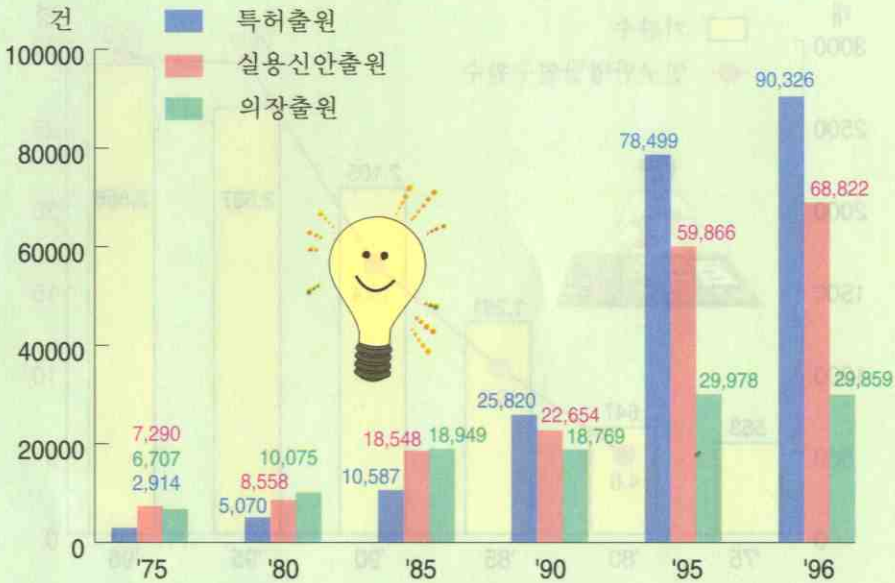


단위 : 개, 명

연도	연구개발활동수행기관수			연구원수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인구만명당		
1975	553	104	146	303	10,275	5,308	2,312	2,665	...
1980	647	124	202	321	18,434	4,598	8,695	5,141	4.8
1985	1,291	119	217	928	41,473	7,154	14,935	18,996	10.1
1990	2,105	167	220	1,718	70,503	10,434	21,332	38,737	16.4
1995	2,587	178	257	2,152	128,315	15,007	44,683	68,625	28.5
1996	2,856	163	258	2,435	132,023	15,503	45,327	71,193	29.0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6.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변화



단위 : 건

	특 허		실용신안		의 장		상 표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1975	2,914	442	7,290	1,046	6,707	1,589	9,476	2,950
1980	5,070	1,632	8,558	1,753	10,075	4,071	13,558	7,845
1985	10,587	2,286	18,548	2,327	18,949	8,246	26,069	14,453
1990	25,820	7,762	22,654	8,846	18,769	13,927	46,826	23,790
1995	78,499	12,512	59,866	8,149	29,978	16,986	71,852	29,811
1996	90,326	16,516	68,822	9,191	29,859	20,192	85,062	26,464

자료 : 특허청 「특허청연보」

16. 사회·보건·복지통계

통계조사 및 통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국민영양조사,
의료기관실태보고, 환자조사, 사회통계조사,
산업재해조사, 생활보호대상자조사

주요 통계지표

산업재해, 연령별 기대여명, 개인의 건강평가, 사인분류,
사망원인별 구성비, 유병률, 외병일수, 식용공급량,
평균열량, 단백질공급량, 병상이용률,
진료자수 및 치료일수, 의료인력현황,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수혜자, 의료보험 부담액 및 의료보험 급여액,
장애인등록률, 의무고용준수율

통계표 및 도표

의료기관현황, 의사수 및 의사 1인당 인구,
의료보험 적용인구, 아동복지시설수 및 재소인원,
장애인 복지시설수 및 수용인원,
노인복지시설 및 재소인원

사회·보건·복지통계

I 21세기 우리의 모습은 삶의 질이 풍요로운 사회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한국사회의 모습은 삶의 질이 풍요로운 생산적이고 성숙한 사회이다. 사회·보건·복지통계는 이러한 삶의 질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국가정책수립의 기초정보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의 수준을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주거환경 및 영양상태 개선과 의학기술의 발달은 급성감염성질환의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억제시킴으로써 평균수명의 연장을 가져왔다. 이와 함께 건강하며 풍요롭게 살려는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통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사회·보건·복지통계

사회·보건·복지에 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통계연보」가 있다.

사회지표란 역사적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나타내 생활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까지도 측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 가능하게 하여 주는 척도이다.

여기서 사회라는 의미는 경제를 포함한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사회지표체계 안에는 경제는 물론 인구, 가족, 보건, 주거·교통, 환경, 안전 등 여러 부문의 지표를 포괄한다.

이러한 각 부문의 통계를 지표화하여 발간한 것이 「한국의 사회지표」이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1979년 제1차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97년 기준 보고서에는 신 사회지표체계에 의해 총 13개 부문의 441개 국내지표와 48개의 국제지표가 수록되어 있다.

「보건복지통계연보」는 1954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는 보건복지분야의 기본 통계집으로서 이 연보에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통계와 이와 관련되는 국내외 통계가 수록되어 있으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표를 사업별·월별·지역별로 작성하여 과거년도의 통계와 함께 실려 있어 이용에 편리하다.

II 사회·보건·복지관련 주요통계 및 통계조사

1.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는 국민의 건강 및 의료수요, 지출의료비 및 보건의식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국가보건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통계이다.

본 조사는 전국의 일반가구에서 표본추출한 110개 조사구, 7,262가구의 만15세~69세 가구원 중 1인을 표본으로 추출한 6,48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에 관한 부문과 건강의식행태에 관한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국민건강에 관한 부문은 다시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기본사항, 의료이용에 관한 사항, 이환(罹患)에 관한 사항, 입원환자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지며, 건강의식행태에 관한 부문은 흡연·음주·체중·운동·식생활 습관 및 영양제 복용상태, 건강관리상태, 건강을 위한 노력, 기타 건강관리행위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누어 조사된다.

조사결과는 전국단위로 집계되어 국민건강에 관한 부문은 「한국인의 건강과 의료이용실태」에, 건강의식행태에 관한 부문은 「한국인의 보건의식 행태」란 간행물을 통해 각각 공표된다.

2. 국민영양조사

국민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16조 및 동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국민의 영양섭취상태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국민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는 지정조사통계이다.

본 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 3년마다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된 가구 및 그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식품섭취조사와 식생활조사는 영양사가, 건강조사는 의사와 간호사가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조사사항은 건강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개인별로 신장, 체중, 상완위 및 혈압을 측정하고 혈액의 헤모글로빈 함량을 조사하며 영양관련 증후로 구강염, 치아우식증, 잇몸질환이 검사되고 혈압강하제 사용여부, 음주, 운동습관, 흡연에 관한 것 등이 포함되며, 식품섭취 및 식생활조사에서는 (1)가구원별 연속 2일간의 식사상황 (2)가구 및 가구원의 일반사항 및 활동정도 (3)식품취급자의 일반사항 (4)부역시설에 관한 일반사항이 포함된다.

조사결과는 3년마다 전국 및 도시와 농촌 단위로 집계하여 「국민영양조사결과보고서」에 수록, 공표한다.

3. 의료기관실태보고

의료기관실태보고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류와 의료인력의 분포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의료기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하는 일반보고통계이다.

본 통계는 지역 및 의료기관 종류별 병상수, 환자수, 의료인력현황과 조산원, 시술소 및 치과기공소의 의료인력, 의료유사업자의 현황을 매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각 구·시·군 일선기관에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작성된다.

조사결과는 16개 시·도 단위로 집계되어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통해 공표된다.

4. 환자조사

환자조사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시점에서의 의료기관 현황과 일정기간 동안에 이들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를 조사하여 성별·연령별·의료기관종별 및 상병(傷病)별 환자수, 수진율, 진료비 지불방법 등 국민들의 질병·상해양상과 의료이용실태를 파악, 국가보건의료정책수립과 평가·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조사하는 일반 조사통계이다.

본 통계는 개설중인 의료기관 및 이를 이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해 기관조사표, 외래환자조사표, 퇴원환자조사표 3개 종류로 나누어 의료기관장 또는 의료기관종사자(의무기록실장 등)가 시·도별로 배부된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는 자계식조사로 작성된다.

- 기관조사표 : 기관명, 소재지, 개설일자, 환자수(외래, 입원, 퇴원), 설립형태, 가동병상수, 분야별 의료종사자
- 외래환자 조사표 : 진료기록번호, 성별, 연령, 주소, 병상분류, 진료비 지불방법
- 퇴원환자 조사표 : 진료기록번호, 성별, 연령, 주소, 질병분류, 입원일자, 퇴원일자, 치료결과, 퇴원형태, 입원 경로, 외래경위, 진료비 지불방법

조사결과는 전국단위로 집계되어 3년마다 「환자조사보고서」란 간행물을 통해 공표된다.

5. 사회통계조사

사회통계조사는 사회지표작성을 위하여 기존의 각종 조사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 각 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의식 및 사회적 관심사와 삶의 질에 관련된 항목들을 조사하여 사회상태의 변동을 파악하고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지정조사통계이다.

조사사항

- ◇ 기본사항 :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배우관계, 지난 1주간의 활동상태,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 ◇ 부문별 주요조사사항
 - 가족 : 청소년 고민에 대한 견해, 청소년고민 상담대상, 가정생활 만족도,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의견 등
 - 소득과 소비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및 기타소득(이자, 배당금, 연금, 수증보조, 임대료) 등
 - 교육 :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이유,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전공선택 결정,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평생학습, 교육비지출액 등
 - 보건 : 건강관리방법, 건강평가, 음주, 흡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이유 등
 - 주거와 교통 : 주택마련시기, 결혼후 내집마련시까지의 이사횟수, 주택마련방법, 원하는 주택형태·규모·입주형태, 교통문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등
 - 정보와 통신 : 정보통신기기 보유, 컴퓨터 보유여부 및 종류, 컴퓨터 사용여부 및 용도, 정보화의 영향, 정보화의 필요성 및 대책 등
 - 환경 : 쓰레기 배출량,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먹는 물, 체감환경, 환경오염방지노력 등
 - 복지 : 5년전대비 삶의 질 평가, 보험료부담에 대한 인식 등(예정)
 - 문화와 여가 : 신문구독, 신문의 관심부문, TV 시청시간, 기호 프로그램, 여가활용방법, 여가만족도 및 불만이유, 독서, 비디오시청 등
 - 안전 : 범죄피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준법수준(자기평가, 타인평가),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원인, 전화폭력경험여부 등
 - 정부와 사회참여 : 주관적 계층의식, 계층이동(세대내, 세대간),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

본 조사는 전국 약 30,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사항과 각 부문별 주요관심사항을 조사원에 의한 타계식 면접조사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자계식 조사방법도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사회지표 13개 부문 중 매년 9월에 2~3개 부문을 교대로 조사하고 있으며, 부문별로는 3~5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조사결과는 전국 및 시·도별로 집계되어 '79년부터 발간된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해오고 있으며 또한 심층자료와 시도별 지역자료의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96년 조사분부터 별도로 「사회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6. 산업재해조사

산업재해조사는 산업재해의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발생시기별, 원인별 분포상태와 재해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입사근속기간별, 학력별, 직종별 등 취업상태 및 특성을 파악하여 산업재해 예방정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방침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작성하는 일반보고통계이다.

본 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사망 또는 4일 이상 가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罹患)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요양신고서가 제출될 시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동시 신고하며, 지방사무소장은 사업장으로부터 접수된 산업재해조사표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분기말 익일 10일까지 본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조사사항은 산업재해의 일반사항과 재해발생개요를 기입하는 산업재해조사표와 재해근로자에 관한 사항과 목격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는 요양신청서로 나누어 진다. 조사결과는 매년 전국단위로 집계되어 「산업재해분석」 책자를 통해 공표된다.

7. 생활보호대상자조사

생활보호대상자조사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요보호대상자를 엄선함으로써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는 일반조사통계이다. 본 조사는 생활보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와 제3호 해당 전가구 및 가구원(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과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전가구 및 가구원(의료보호대상자)을 대상으로 매년 면접 및 우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사사항은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 가족상황, 생활상태, 기타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지는데, 그 조사결과는 전국 및 시·도 단위로 집계되어 「생활보호대상자현황 분석」 책자를 통해 공표된다.

III 사회·보건·복지통계의 특성

○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장제도란 국가 및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며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의 하나가 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성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제도에는 국민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의료보험,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보험, 산재보험제도가 있다.

2. 공적부조

공적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적부조에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

하는 생활보호, 또한 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호,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적인 구호를 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해구호사업 그리고 국가보훈사업 등이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제도에는 노인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 등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제도,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제도,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제도, 그리고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모자복지제도 등이 있다.

4. 관련복지제도

관련복지제도는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IV 지 표

○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항에서 정의한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에 관련된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산업재해는 업무에 관계되는 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자가 발생한 경우와 업무와 관계되는 일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연령별 기대여명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 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연수를 말하며 평균여명이라고도 한다. 이는 사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잔여평균수명을 예측하고 있다는 기본적 요구와 직결되는 지표이다.

○ 연령별 학생의 신장, 체중, 신체중량지수(BMI), 가슴둘레

국민의 영양상태를 반영하는 성장지표이며 6~17세의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 질병, 사망 등이 건강의 음성적인 방향의 측도인데 비해 체위, 체격은 건강의 양성적인 측도인 동시에 영양상태의 간접적인 측정방법이기도 하다.
- 또한 체위에 관한 자료는 각급학교 학생들의 신체검사 결과를 기초로 산출한 것이고
- 신체중량지수(Body Mass Index)는 신장과 체중을 알고 있을 경우 (신장)²에 대한 체중의 비율로 산출된다. 지수범위는 남성과 여성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인남녀의 경우 25 정도면 정상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비만함을 의미하나 서양인의 기준이므로 우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 개인의 건강평가

SIP(Sickness Impact Profile) 개념의 사회의료수혜자 입장에서의 주관적 건강상태평가는 건강이 단순히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안녕된 상태(Social Well-being State)라는 지표의 정의에 비추어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 사인분류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국제 질병·사인분류체계(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Cause of Death)에 따라 분류하였다.

○ 사망원인별 구성비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한 국가의 건강상태가 증진됨에 따라 총 사망자가 상대적

크기 변화와 아울러 사망원인의 구성에 변화가 온다는 사실에 기초를 둔 지표로 전체 사망자수에 대한 사인별 사망자수를 백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즉, 건강상태가 저조한 국가에서는 사망률이 높고 전염병 및 기생충 질환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는 사망률이 낮고 만성병 및 사고(특히 교통사고)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 유병률

질환의 발생시기를 불문하고 조사대상기간 중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수를 같은 기간 중에 전체 조사대상인구로 나누어 계산한다.

일정한 기간(2주간) 동안 조사대상자(0세 이상) 중에서 2주간내의 신환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아팠던 사람의 비율이다. 유병률에 대한 면접조사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인구가 일반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자각되지 않는 질병은 조사하기 힘들고 계절적 질병(예: 감기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 등의 단점이 있음을 유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 활동제한일수

활동제한은 병으로 인해 평상시의 활동에 부분적, 전반적인 지장이 초래된 상태로서, 사회적 건강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는 조사대상기간(2주일) 중에서 유병자의 아팠던 평균 일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각종 유병으로 인한 활동부자유 지속기간을 측정해주는 척도이다. 동지표는 개인의 건강문제를 기능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의 입장에서 본 것으로 비교적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 와병일수

유병자가 조사대상기간(2주일) 중 질병으로 만나질 이상 누워 있었던 날을 말하며, 결근, 결석, 입원일을 포함한다.

○ 식용공급량(1인 1일당)

우리나라 국민이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하는 모든 식품(FAO방식 분류)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식용공급량을 산출한다.

- 총 공급량 = 생산량 + 수입량 + 이입량
- 식용공급량 = 총공급량 - (이월량 + 수출량 + 사료용 + 종자용 + 감모량 + 식용가공량 + 비식용가공량)

○ 평균열량

1인 1일당 평균열량(kcal)은 각 식품별로 그 공급량(식용 공급량)을 당해연도 총인구(연앙추계인구)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연간공급량을 365일로 나누고, 여기에 농촌진흥청의 식품분석표를 이용한 각 영양가 성분을(열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 단백질공급량

위와 같이 계산된 1일 1인당 순식용 공급량에 식품별 단백질 성분을 곱하여 산출한 량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곡류, 두류, 기타 식물성 단백질의 량이며 동물성 단백질은 육류, 난류, 우유류, 어패류 등의 단백질의 량으로 실제 섭취량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거의 같다고 보아도 별 문제는 없다.

다만, 섭취량이 아닌 공급량의 조사결과라는 점에서 영양개선의 기초자료보다는 식량의 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유용성이 크며 FAO가 권고한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국제비교자료로도 이용 가능하다.

○ 병상이용률

병상이용률은 병원운영의 합리화를 측정하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병원당 재원환자이용률을 의미하며(병원 1일 평균 재원환자수 / 병상수 × 100)으로 산출하였다. 여기서 병원이라 함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결핵, 정신, 나병원을 말하고 또 병원을 소유주체별인 국립, 공립, 사립(법인 및 개인)과 병동별인 일반, 전염, 결핵, 정신병원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작성한다.

○ 진료자수 및 치료일수

조사대상기간(2주간) 동안 0세 이상 유병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을 조사하여 작성한 지표이다.

진료자수는 유병기간중 병·의원 치료를 1회 이상 받은 사람수이며, 병·의원이란 종합병원, 일반병·의원, 치과병·의원, 보건소 등을 말한다. 1인당 치료일

수는 병·의원치료를 1회 이상 받은 사람의 총 치료일수를 병·의원 진료자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의료인력현황

보건의료인력지표는 보건인력 계획수립 및 평가에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보통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로 구분하고 있다.

의료인력은 면허등록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로 실제 활동중인 의료인력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실제 활동중인 의료인력자료 역시 자료과약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면허 등록자수를 기준으로 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으로 최저생계보장 및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보호, 1인당 월소득 및 세대당 재산액을 조사하여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호대상자로 선정한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다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된다.

○ 의료보호수혜자

총인구에서 의료보호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의료보호수혜자는 의료보호법 제4조에 의한 대상자수이다.

○ 의료보험 부담액 및 의료보험 급여액

의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능력이 있는 자의 질병위험을 분산시키고 그들의 상호부조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보험 부담액은 의료보험적용인구 1인당 한해 동안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를 말하며 의료보험 급여액은 의료보험 적용인구 1인당 평균적으로 급여된 액수이다.

○ 사회복지시설별 시설수, 평균수용인원 및 평균종사자수

시설 및 수용자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심신장애자복지법 제16조, 윤락행위방지법 제8조에 의한 시설수 및 동 시설에 수용된 인원수이다.

- 노인복지시설 :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양로시설을 비롯하여 노인요양시설 및 유료·실비시설 등이 있다.
- 장애인 복지시설 : 등록장애인의 입소보호 및 재활을 위한 입소·이용시설
- 모자보호시설 : 3년간 영세 미망인의 보호, 재활을 위한 모자원(母子院)
- 부녀직업보호시설 : 가출여성, 윤락여성, 미혼모의 보호·재활시설
- 영·유아 수용시설 :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양육능력이 없는 18세 미만자의 보호시설
- 부랑자 수용시설 :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적 보호시설

○ 장애인 등록률

전체 장애인 중 등록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장애인 등록법에 모든 장애인은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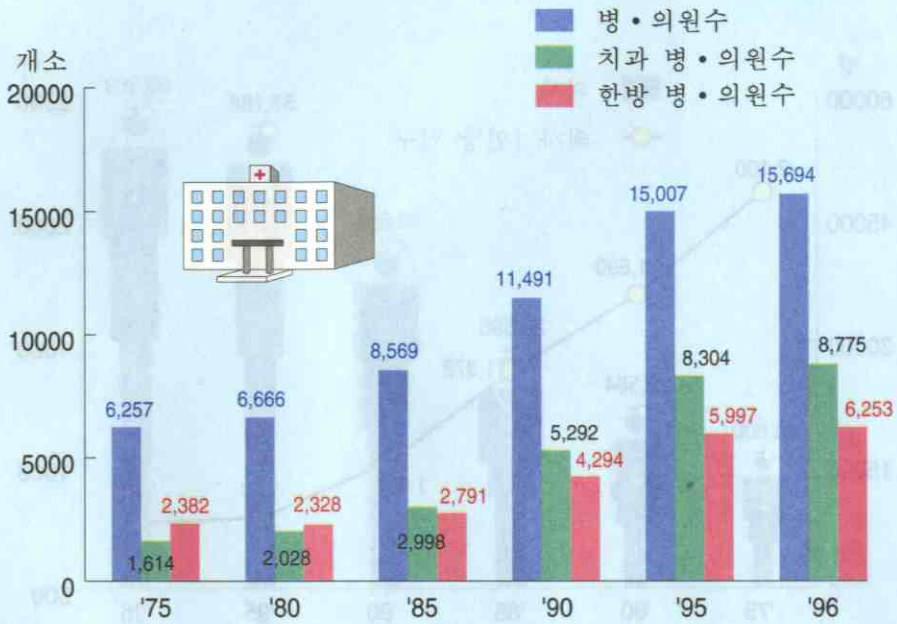
○ 의무고용준수율

종업원 300인 이상 총 사업체 중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의거하여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의 사회지표」 1997 통계청
 「보건복지통계연보」 1997 보건복지부
 「국민영양조사결과보고서」 1997 보건복지부
 「환자조사보고서」 1994 보건복지부
 「생활보호대상자현황 분석」 1996 보건복지부
 「한국인의 건강과 의료이용실태」 19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의 보건의식행태」 19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의료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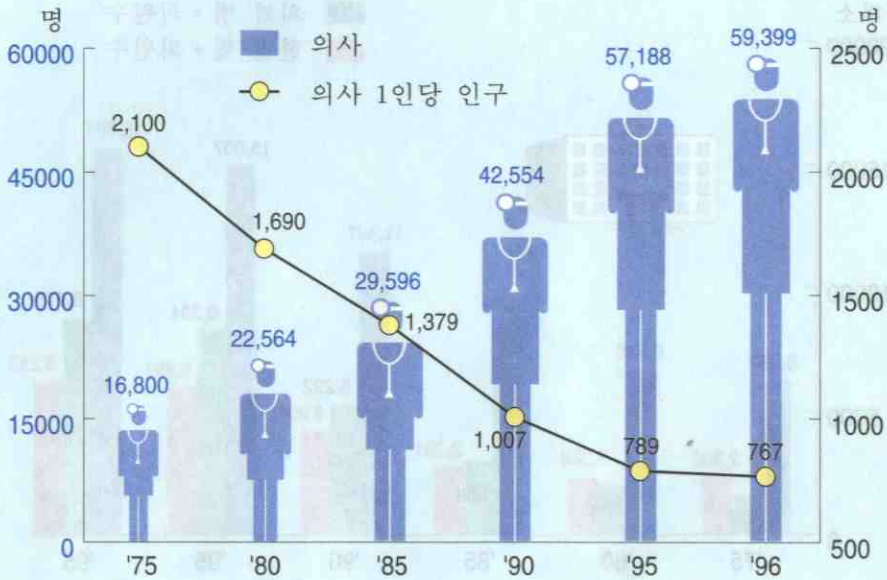
단위 : 개소

연도	병·의원수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특수 ¹⁾ 병원	부속 ²⁾ 의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1975	6,257	37	133	6,087	1,614	2,382	5	203
1980	6,666	82	240	6,344	2,028	2,328	5	266
1985	8,569	183	317	8,069	2,998	2,791	13	279
1990	11,491	228	328	10,935	5,292	4,294	32	256
1995	15,007	266	398	14,343	8,304	5,997	42	246
1996	15,694	271	421	15,002	8,775	6,253	50	240

주 : 1) 결핵, 나병, 정신병원임. 2) 회사 또는 산업체의 종업원을 위한 부속의원임.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 의사수 및 의사 1인당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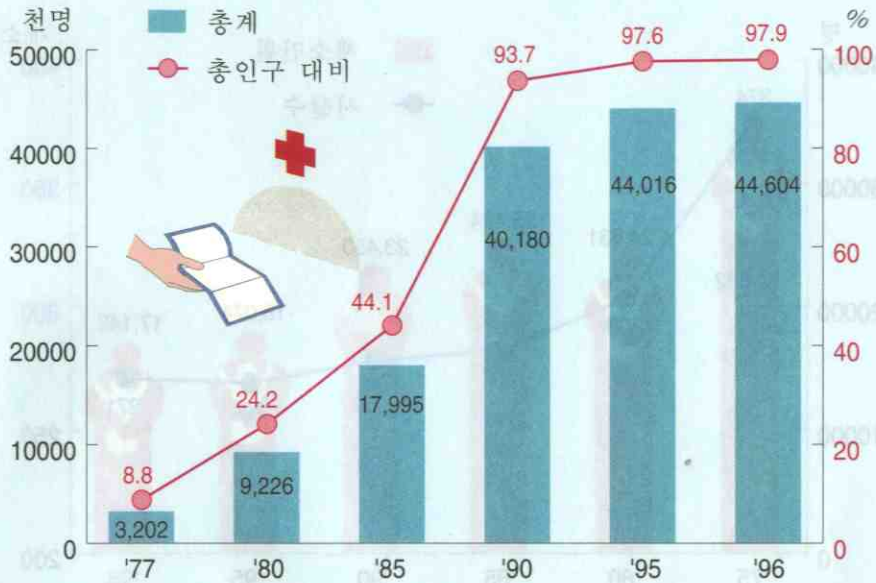
단위 : 명

단위 : 명

연도	의사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사 1인당 인구수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		
1975	16,800	2,100	2,595	13,596	2,788	67,065	
1980	22,564	1,690	3,620	10,531	3,015	101,445	
1985	29,596	1,379	5,436	7,507	3,789	165,444	
1990	42,554	1,007	9,619	4,457	5,792	224,746	
1995	57,188	789	13,681	3,296	8,714	309,129	
1996	59,399	767	14,371	3,169	9,299	324,933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3. 의료보험 적용인구



단위 : 천명, %

연도	총계		직장의료보험		공·교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¹⁾
	총인구 대비		피보험자		피보험자		
1977	8.8	3,202	3,140	1,185	-	-	63 ²⁾
1980	24.2	9,226	5,381	1,971	3,780	941	65 ²⁾
1985	44.1	17,995	12,215	3,908	4,210	1,039	1,570 ²⁾
1990 ³⁾	93.7	40,180	16,155	5,298	4,603	1,214	19,421
1995	97.6	44,016	16,744	5,777	4,815	1,390	22,457
1996	97.9	44,604	17,035	5,890	4,881	1,413	22,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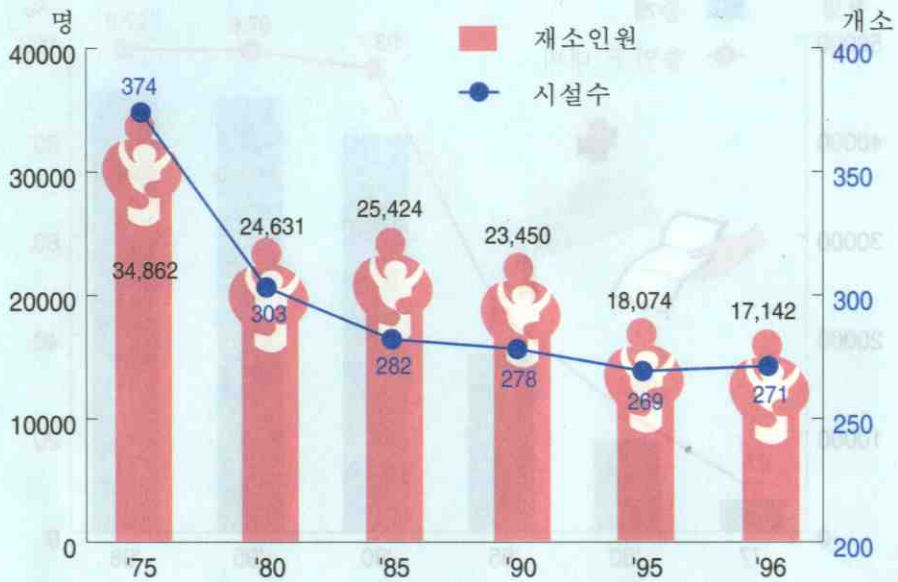
주 : 1) 지역의료보험에는 피부양자 개념이 없으므로 모든 적용인구는 피보험자임.

2) '89.6.30일자로 해산된 직종의료보험 및 임의지역 의료보험 자료임.

3) 이중자격자 등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4. 아동복지 시설수 및 재소인원



단위 : 개소, 명

연도	아동복지시설 ¹⁾		영아시설		육아시설		직업보도시설	
	시설수	연말현재 재소자	시설수	연말현재 재소자	시설수	연말현재 재소자	시설수	연말현재 재소자
1975	374	34,862	37	3,673	313	29,323	24	1,866
1980	303	24,631	34	2,477	253	20,908	16	1,246
1985	282	25,424	35	2,736	233	21,697	11	994
1990	278	23,450	38	2,388	223	20,147	7	444
1995	269	18,074	36	2,118	215	15,105	5	231
1996	271	17,142	27	1,481	215	14,378	6	242

주 : 1) 자립지원, 교호시설 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5. 장애인 복지 수용시설수 및 수용인원



단위 : 개소, 명

	복지시설							
			지체부자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수용 시설수	수용 인원	시설수 ¹⁾	수용 인원	시설수 ¹⁾	수용 인원	시설수 ¹⁾	수용 인원
1975	66	8,491
1980	90	11,281
1985	90	9,326	28	3,128	11	911	14	1,143
1990	118	12,759	34	3,424	11	948	13	1,370
1995	174	14,840	34	3,012	11	657	14	1,044
1996	177	15,240	37	3,805	11	645	14	949

주 : 1) 비수용시설 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6. 노인복지시설 및 재소인원



단위 : 개소, 명

연도	노인복지시설							
			무료 양로시설		무료 노인요양시설		실비및유료시설	
	시설수	연말현재 재소자	시설수	연말현재 재소자	시설수	연말현재 재소자	시설수	연말현재 재소자
1975	45	2,441	45	2,441	-	-	-	-
1980	48	3,158	48	3,158	-	-	-	-
1985	67	5,059	67	5,059	-	-	-	-
1990	89	6,409	71	4,962	18	1,447	-	-
1995	146	8,396	84	4,806	41	2,784	21	806
1996	165	8,996	87	4,628	50	3,401	28	967

주 : · 노인요양시설은 '86년 부터, 실비 및 유료시설은 '91년 부터 신설됨.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7. 환경통계



통계조사 및 통계

상수도통계, 하수도통계, 수질오염실태보고,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화학물질유통실태조사

주요 통계지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오염도, 폐수배출량,
수질오염도, 폐기물배출량, 토양오염도, 소음공해,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자연환경

통계표 및 도표

대기오염실태(SO₂), 주요수계별 수질오염(BOD),
주요연안 해수오염(COD),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상수도보급, 도시공원면적

환경통계

I 환경은 국민의 건강과 문화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환경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조건으로서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고 있다.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하며, 생활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환경을 말한다.

자연환경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어느 한 요소가 변하면 이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주어 생태계의 평형이 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 환경오염 관련지표

환경오염이라 함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과거에는 물, 공기, 토양 등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인간은 무절제하게 이러한 자원을 남용하여 왔다.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서는 막대한 양의 생활하수, 쓰레기, 분뇨 등이 방출되는데, 이러한 물질은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어느 정도까지 자연에 의해 분해, 정화된다. 그러나 생태계 자체의 흡수능력과 자기 정화력을 초과하는 양이 방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누적되는데 이를 통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환경오염은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으나 보통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수오염, 토양오염, 소음 및 진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자연자원을 많이 채취하면 할수록 환경에 남아있는 자연자원의 양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환경이 우리 인간사회를 물질적으로 지탱해주는 능력 즉 수용능력은 감소할 것이다. 또 우리 인간이 환경에 폐기물을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이 폐기물을 자연적으로 처리해주는 환경의 능력, 즉 자정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환경의 수용능력은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으로부터 자연자원의 채취와 환경에의 폐기물방출이라는 두가지 요인이 환경의 수용능력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이들을 환경압력요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환경압력요인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를 환경압력지표라 하며, 여기에는 대기오염물질·폐기물·폐수배출량, 농약 및 비료소비량과 같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급수량 등 자연자원의 이용량 등이 포함된다.

환경압력요인의 크기 그 자체만으로는 그 압력이 과중한지 아닌지를 알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많은 경우 환경상태에 있어서 이상의 징후가 감지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경상태의 변화로 인해서 인적·물적 피해가 감지될 때 환경압력요인이 환경의 수용능력에 과중한 부담을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환경적으로 경제 및 사회가 지속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환경압력요인 뿐만 아니라 환경의 상태도 수시점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환경의 상태 및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를 나타내는 지표를 환경영향지표라 한다. 이러한 지표에는 대기의 질, 수질, 토양의 질 등 환경의 질(오염현황)과 고갈이 우려되는 자연자원의 보존량, 생물다양성 등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환경파괴의 피해는 대단히 추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환경파괴의 피해를 직접 추정하기 보다는 이를 막기 위한 노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간접 추정한다. 이 비용을 흔히 “방어적지출”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정부의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대한 지출이라든가 대기오염이 심해짐으로 인한 각 가정의 세탁비 증가분이 방어적지출에 해당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방어적지출은 어디까지나 환경파괴의 피해에 대한 대리변수이지 피해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환경개선 노력이 단순히 환경오염피해를 줄이는 방어적 성격을 넘어 적극적으로 환경의 질을 제고하는 차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지표와는 별도로 환경관련 지출과 환경개선 노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환경관리지표라 볼 수 있다.

II 환경통계

경제나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를 떠받들고 있는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가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자연환경이 우리 인간의 모든 활동을 지탱해주는 능력, 즉 환경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우리의 모든 활동은 이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단순히 환경의 수용능력을 심각하게 의식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이 수용능력

의 상태가 항상 점검되어야 한다. 바로 환경관련 통계가 이 수용능력의 상태를 사회에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환경통계란 환경상태와 이와 연계된 인간활동이나 자연재난, 환경 변화를 방어하는 인간활동 등 환경상태 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인구, 사회, 경제활동을 포함한 통계를 말한다. 환경통계의 자료원은 다양한 자료수집기관에 걸쳐서 수집·집계되고 있으며 수집과 집계에도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환경통계는 승인통계 11종, 기타 행정보고통계 1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외 각부처에서 작성하고 있는 각종 통계연보 속에 환경관련 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환경통계는 주로 환경부에서 조사가 실시되어 공표되는 자료로 그 결과를 『환경통계연감』 『환경백서』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상수도통계』 『하수도통계』 등에 수록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 발간하는 환경통계연감에서는 통계의 작성범위를 국민경제활동, 환경상태, 환경관리로 크게 분류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분야별 환경상태 그리고 환경악화에 대한 대응논란에 관련 통계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Ⅲ 환경관련 주요통계 및 통계조사

1. 상수도통계

상·하수도는 국민생활과 생산활동을 지탱해 주는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로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사회간접자본이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상수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취수원의 부족과 기존취수원의 수질오염 심화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은 더 한층 어려운 상황에 있다.

상수도통계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된 전국의 수도관련 자료를 환경부에서 집계·작성하는 일반보고통계로 상수도 보급현황, 수도관·저수조 등 상수도시설현황, 상수도수원, 정수형식, 상수도재정, 상수도생산량, 수도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발행하는 「상수도통계」 책자를 통해 발표한다.

☞ 상수도의 종류

- 광역상수도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

- 지방상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외의 수도
- 간이상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먹는물 수질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간이정수시설을 갖춘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5천인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1천 m^3 만인 수도
- 전용상수도 : 100인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사택, 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일반수도에 제공되는 수도의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인이상 5천인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2. 하수도통계

환경오염이 문제되기 전까지는 하수처리는 주로 빗물을 원할하게 배제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들어 분뇨의 처리방법이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변화하는 등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하수처리가 수질보전의 커다란 수단이 되고 있다.

환경오염과 함께 점점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하수도통계는 하수관리, 하수처리장, 우수지 및 배수펌프장, 하수도 보급률, 하수도요금 현황 등 전국의 하수도 관련자료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경부에서 집계·작성하는 일반보고통계로 그 내용은 환경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하수도통계」란 간행물을 통해 발표된다.

「하수도통계」의 주요 수록내용

- 하수도 시설현황 : 하수관거, 우수지 및 배수펌프장, 중계펌프장,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포기 및 최종침전지, 슬러지 처리시설
- 하수도 재정 및 사용료 현황 : 도시별 재정현황, 하수도사용료 징수실적, 하수도사용료 사용실적
- 하수도 보급률
- 하수도 관련자료 : 하수관거 유지관리 현황, 하수관거 준설요원·장비현황 및 준설실적, 수질시험성적, 침수피해현황, 도시별 분뇨처리장현황, 도시별 직제 및 직원현황

3. 수질오염실태보고

수질오염실태보고는 전국의 하천 및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수질변화추세를 파악하고 이미 진행된 주요정책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장래 수질보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매월 주기로 작성해 매년 발표하는 일반보고통계이다.

수질오염실태보고통계는 전국 하천 및 호소 등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배수지점, 채수일시, 시험기간, 수위, 유량, 수온, PH, DO, BOD, COD, SS, 대장균 군수(群數) 등에 대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시·도 등 26개 수질조사기관에서 측정하여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4.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는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과 지정폐기물 배출량 및 처리량의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매년 작성하는 일반보고통계이다.

대기 및 폐수관련통계는 매년 3월3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시·도 및 환경관리청 직원이 대기 및 수질오염배출업소를 방문하여 조사표 전 항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데 그 조사사항은 연료사용량, 폐수량현황, 폐수오염도현황, 폐수처리현황 등으로 조사결과는 매년 시·군·구 단위로 집계되어 「환경통계연감」을 통해 발표되며 지정폐기물관련 통계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작성·보고하는 전년도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을 집계·처리하여 「전국 지정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책자로 발간된다.

5.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전국의 폐기물발생량 및 처리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폐기물 관리정책의 정확한 목표설정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5년주기로 작성하는 일반조사통계이다.

본 조사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는데 생활폐기물의 조사항목은 가구원수, 직업, 소득, 쓰레기발생량 등 약 15개 항목이며, 사업장폐기물은 업종별·폐기물종류별 발생량, 처리주체별·방법별 처리량, 종사자수, 생산액 등 약 20개 항목에 걸쳐 행해진다. 조사결과는 「전국폐기물통계」에 발표된다.

6. 화학물질유통실태조사

화학물질유통실태조사는 국내 유통중인 화학물질의 유통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화학물질 관리체계정비 및 OECD 등 국제협약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조사하는 통계이다.

본 조사는 산업분류 중 화학물질의 제조·사용 등이 예측되는 관련산업의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자계식 우편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에 의한다.

화학물질유통실태조사의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업소의 일반사항, 화학물질사용,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량 등인데 조사결과는 「환경통계연감」에 수록하여 발표한다.

IV 환경통계의 특성

1. 지구의 온난화 현상, 부영양화 및 적조현상

최근 발표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환경오염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사회복지나 경제적 풍요보다는 깨끗한 환경이 중요해 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상호 관련되어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과 부영양화 현상, 적조현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란 대기중에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오존(O₃), 이산화질소(N₂O), 수증기(H₂O) 등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온실효과(Green House Effect)에 의해 지구의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탄산가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2) 부영양화 현상

부영양화 현상이란 수중생물의 영양분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즉, 깨끗한 물

에 오염된 유기물질(질소나 인)이 흘러 들어오면 이것을 영양분으로 해서 해조류와 플랑크톤이 번식하게 되고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거의 다 쓰는데다 잡초나 침전물들이 흘러 들어 하천이나 호수에서 부영양화가 발생하게 되면 물이 악취를 풍기면서 썩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살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수중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부영양화의 주 원인은 각종 공장폐수, 생활하수 등이다.

3) 적조현상

바닷물의 색깔이 변색될 정도로 식물성 플랑크톤이 과다하게 번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흔히 바닷물이 빨간색으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꼭 빨간색으로만 변하는 것은 아니고 식물성 플랑크톤의 종류에 따라 갈색, 녹색, 황갈색 등으로 다양한 색깔을 보여준다.

적조생물이나 그 유해가 어류의 아가미 등에 부착될 경우 산소 섭취가 불가능해지며, 적조생물의 분해 등에 의하여 물 속의 산소 자체가 부족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기도 하고 이것을 먹은 물고기가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2. BOD, COD란?

1)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미생물이 물 속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물 속에 들어있는 유기오염물질을 미생물이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을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 Biochemical Oxygen Demand)”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물이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일정시간 내에 미생물이 물 속의 유기물을 분해하여 정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의 양을 ppm으로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생활하수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유기오염물질로는 음식찌꺼기와 사람의 배설물을 들 수 있다.

※ BOD가 10ppm이라면 물 100만g(1톤)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량이 10g이라는 뜻이다. 통상 상수원으로 적합한 BOD는 2ppm 이하이고 5ppm이 넘으면 하천은 자기정화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한다.

2)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수중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양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 Chemical Oxygen Demand)” 이라고 한다.

특히 해양이나 호수에 흘러 들어온 유해물질을 함유한 공장폐수의 오염도를 알고자 할 때 COD를 이용한다.

물이 오염된 정도를 지표로 나타낼 때는 BOD나 COD라는 단위를 써서 나타내며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유기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오염이 심한 물이라고 할 수 있다.

V 지 표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아황산가스(SO₂), 먼지(TSP), 이산화질소(NO₂), 일산화탄소(CO) 등과 같은 대기환경기준 설정 항목과 탄화수소(HC)를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오존(O₃)은 인간활동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된 질소산화물(NO_x)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태양에너지 등에 의해 2차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므로 그 발생량을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산출방법으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실측하는 방법과 배출계수 등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연료별 배출계수를 이용한 산출방법은 비교적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시설의 종류와 조건, 방지시설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산출된 배출량이 실제 배출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연간 유류소비실적과 석탄소비실적을 토대로 미국 환경보호처(EPA)에서 발표한 배출계수(AP-42) 및 국내에서 개발한 자동차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하고 있다.

○ 대기오염도

환경기준은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환경기준은 국가 또는 일정지역내에서의 환경보전 목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각 지역의 오염정도나 환경이외의 조건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게 되므로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에서 측정된 자료는 환경기준 전항목에 대하여 1시간치

기준으로 일별 평균, 최고 및 최저치로 구분·분석하여 전산처리한 후 별도의 마그네틱테이프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90년 4월부터 매월 전국 측정소의 오염도를 평균, 최고, 최저치 및 초과 횟수 등으로 분석한 자료를 언론 등에 공표하고 있다. 대기오염정도는 오염물질의 배출량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상 및 지형조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또한 배출구의 높이,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원의 조건변화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중에 배출된 후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우리의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광역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그 저감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대 기 환 경 기 준

항 목		기 준
아황산가스(SO 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평균치 0.03ppm이하 · 24시간평균치 0.14ppm이하 · 1시간평균치 0.25ppm이하
일산화탄소(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시간평균치 9ppm이하 · 1시간평균치 25ppm이하
이산화질소(NO 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평균치 0.05ppm이하 · 24시간평균치 0.08ppm이하 · 1시간평균치 0.15ppm이하
먼지	총먼지(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평균치 150μg/m³이하 · 24시간평균치 300μg/m³이하
	미세먼지(PM-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평균치 80μg/m³이하 · 24시간평균치 150μg/m³이하
오존(O 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시간평균치 0.06ppm이하 · 1시간평균치 0.1ppm이하
납(P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평균치 1.5μg/m³이하

- 주 : 1. 1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연간 3회 이상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 μ 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폐수배출량

오염원은 하수와 각종 산업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산업폐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구분할 수 있다. 하수는 생활이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어 하수관을 통해 하천이나 해역 등의 공공수역으로 방류되는 모든 물을 말한다.

산업폐수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말한다.

폐수발생량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량을 말하며, 폐수방류량은 폐수발생량 중 공정중에 재 이용하는 폐수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을 말한다. 폐수배출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 적조현상 등은 수질오염의 대표적인 예이다.

폐수배출허용기준

(단위 : mg/l)

폐수배출량	2,000m ³ /일 이상			2,000m ³ /일 미만		
	BOD	COD	SS	BOD	COD	SS
청정 지역	30	40	30	40	50	40
가 지역	60	70	60	80	90	80
나 지역	80	90	80	120	130	120
특례 지역	30	40	30	30	40	30

○ 수질오염도

우리나라는 수역별, 항목별 수질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수역별로는 하천, 호소, 해역으로 구분하고 항목별로는 생활환경기준인 수소이온농도(pH), 생물학 적산소요구량(BOD), 용존산소량(DO),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등 8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인 카드뮴(cd), 시안(CN), 비소(As), 수은(Hg) 등 9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등급별로는 하천·호소에 5개등급, 해역에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준을 차등,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천의 수질환경기준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수소이온 농도 (pH)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부유물질량 (SS) (mg/l)	용존산소량 (DO) (mg/l)	대장균군수 (MPN/ 100ml)
I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II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6.5~8.5	3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III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6.5~8.5	6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IV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6.0~8.5	8이하	100이하	2이상	—
V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등이 떠있지 않을 것	2이상	—

호소의 수질 환경 기준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수소이온 농도 (pH)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부유 물질량 (SS) (mg/l)	용존 산소량 (DO) (mg/l)	대장균 군수 (MPN/ 100ml)	총인 T-P (mg/l)	총질소 T-N (mg/l)
I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1이하	7.5이상	50이하	0.010 이하	0.200 이하
II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6.5~8.5	3이하	5이하	5이상	1,000 이하	0.030 이하	0.400 이하
III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6.5~8.5	6이하	15이하	5이상	5,000 이하	0.050 이하	0.600 이하
IV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6.0~8.5	8이하	15이하	2이상	—	0.100 이하	1.0이하
V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6.0~8.0	10이하	쓰레기등 이 떠있지 않을 것	2이상	—	0.150 이하	1.5이하

해역의 수질환경기준

	수소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부유 물질량 (SS) (mg/l)	용존 산소량 (DO) (mg/l)	유분 (mg/l)	대장균 군수 (MPN/ 100ml)	총질소 T-N (mg/l)	총인 T-P (mg/l)
I	7.8~8.3	1이하	10이하	포화율95 이상	검출되 어서는 안됨	200이하	0.05이하	0.0007 이하
II	6.5~8.5	2이하	25이하	포화율85 이상	검출되 어서는 안됨	1,000이 하	0.1이하	0.015 이하
III	6.5~8.5	4이하	—	포화율80 이상	-	—	0.2이하	0.03이하

주 : I. 수산생물의 서식 및 산란에 적합한 해역

II. 해수욕, 관광 및 여가선용에 적합한 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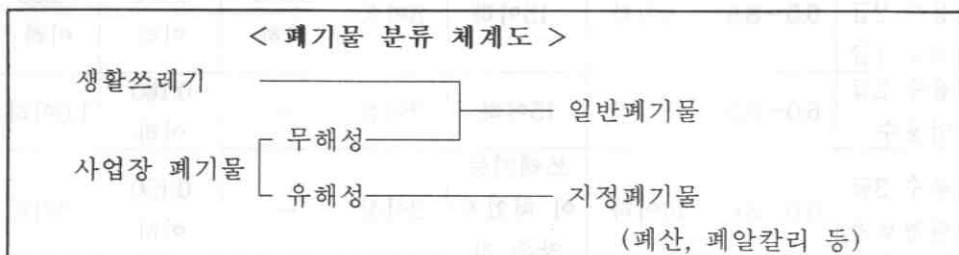
III. 공업용 냉각수 및 선박정박에 이용할 수 있는 해역

○ 폐기물배출량

폐기물은 우리의 생활 또는 산업활동에 의해 발생되어 필요없게 된 물질로서 가정에서는 음식찌꺼기, 포장용기 및 종이 등이 발생하고, 산업체에서는 폐목재, 고철, 폐유, 폐합성수지 등이 고체 또는 액체상태로 발생된다.

폐기물의 분류체계는 크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유해성을 기준으로 무해한 것은 일반폐기물로, 유해성이 있는 것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각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발생량을 산출하고, 추계인구를 적용하여 1인 1일 발생량을 산출한다.



생활폐기물은 종류별로는 연탄재, 음식물, 종이류, 금속초자류, 목재류 등으로 구분하고 성상별로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한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성상별로 광재, 연소재·분진류, 금속초자류, 건축물폐재류, 모래류, 종이류, 나무류, 고무피혁류, 오니류, 동식물잔재물, 폐석회·폐석고, 건설폐기물 등으로 구분하고,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분진, 오니 등으로 구분한다.

○ 토양오염도

토양은 물, 대기와 접하면서 상호 물질교환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교환 중 각종 오염물질이 토양에 유입되면 토양의 물리·화학·생물학적 작용에 의한 자연정화능력이 떨어진다. 오염물질이 토양 속에 축적되면 생물이 자라는데 큰 지장을 주게 되고 나아가 인체에까지 해를 입히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토양오염이라 한다. 토양오염은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농약 및 화학비료 등 영농자재 등의 1차 오염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토양에 축적되는 축적성오염으로 한번 오염된 토양은 자연정화가 불가능하고 반영구적으로 오염물질이 토양중에 존재하면서 농·축산물을 통해 인체에 쌓여 각종 만성적인 질병을 유발하므로 오염토양의 사후처리대책보다는 예방차원에서의 사전오염방지대책 추진이 더욱 절실하다.

○ 소음공해

소음공해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는 달리 감각적 공해라는 것이 특징이다. 소음은 크게 공장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 항공기소음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장에 설치되는 시설은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 이동소음원이 아니고, 한번 설치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공장소음은 인근지역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교통소음은 그 배출원이 자동차, 기차 등으로서 발생소음도가 매우 클 뿐 아니라 그 피해지역도 광범위하다. 특히 자동차는 차량보유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도로여건은 부족하고 운전자의 소양도 부족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대도시 소음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생활소음 배출원은 확성기소음, 건설공사장의 작업소음, 소규모 공장의 작업소음, 유흥업소 심야소음 등 매우 다양하다. 최근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라 생활소음 배출원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항공기소음 피해는 항공기의 운항항로 신설 및 운항회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음이란 ?

소음이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만이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까지 포함해서 우리 감각에 불쾌감 또는 피해를 주는 비주기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음의 크기를 dB(데시벨)로 표시하며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모든 소리를 소음이라고 할 수 있다.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dB의 특징은 소음이 10배 증가할 때마다 10dB씩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30dB보다 소음이 10배 증가하면 40dB이 된다. 일반적으로 나누는 대화는 약 60dB, 지하철 안이나 시끄러운 공장내에서는 80~90dB 정도 이다.

보통 85dB을 넘어가면 불쾌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130dB 이상이 되면 귀에 통증이 오며 심하면 고막이 파열되기도 한다.

소음환경기준

(단위 : Leq dB (A))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 준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 상수도보급률

상수도보급률은 총인구에 대한 급수인구의 백분율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급수인구는 간이상수도, 우물물, 기타를 제외한 상수도 사용인구를 말한다. (내무부의 『한국도시연감』에서는 행정구역 인구에 대한 실제 급수인구의 백분율을 말한다.)

급수인구, 시설용량, 급수량, 1일 1인당 급수량, 급수도시수 등을 통하여 수자원 이용 실태를 알 수 있다.

○ 하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은 총인구에 대한 하수처리구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의 백분율로 구한다. 여기에서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이며, 처리인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이나 또는 관할 행정구역내의 처리장은 없지만 타 지역에 설치된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의 인구를 말한다.

○ 자연환경

자연환경은 대기, 물, 토양 등 무기환경과 동물, 식물 등의 생물로 구성되고 이들은 기능면에서 상호 끊임없이 물질순환을 이루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 가는데 이를 자연생태계라 한다. 자연생태계는 일단 파괴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며,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그 대책을 수립하여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 및 환경의 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연공원**은 자연자원과 유적·휴양자원 등 공원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지를 원상태로 보존함과 동시에 합리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고, 이를 후손에 영구히 계승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일정구역으로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 **도시공원**이라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그 기능에 따라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세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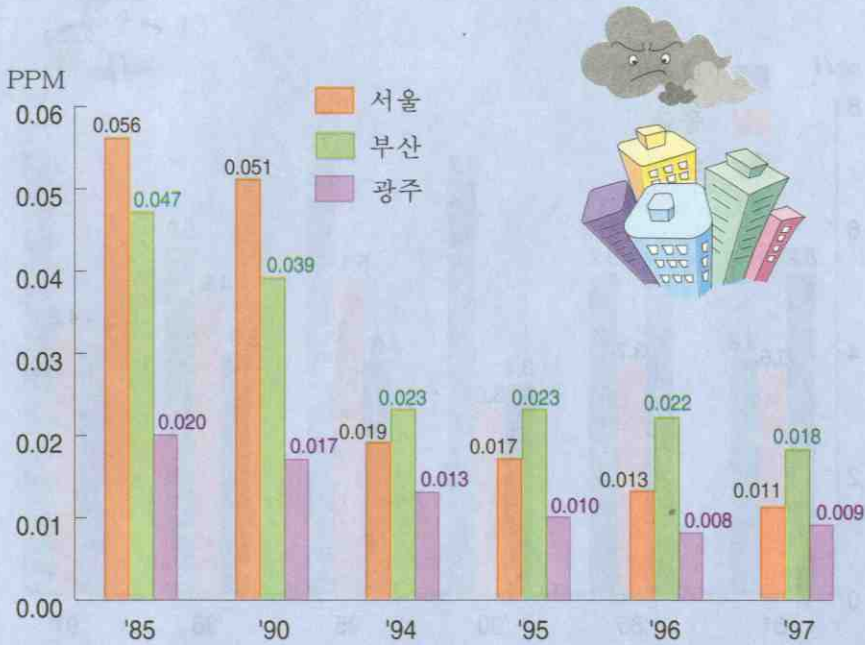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을 행정구역상 시부인구(도시계획구역 내 인구)로 나누어 산출한다.

- 녹지지역은 보건·위생·공해방지·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구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구분한다.

<참고자료>

「환경통계연감」	1997	환경부
「환경백서」	1997	환경부
「환경보전시책추진상황보고서」	1997	환경부
「상수도통계」	1997	환경부
「하수도통계」	1997	환경부
「한국통계조사현황」	1997	통계청
「한국의 환경통계평가보고서」	1997	통계청

1. 대기오염실태(SO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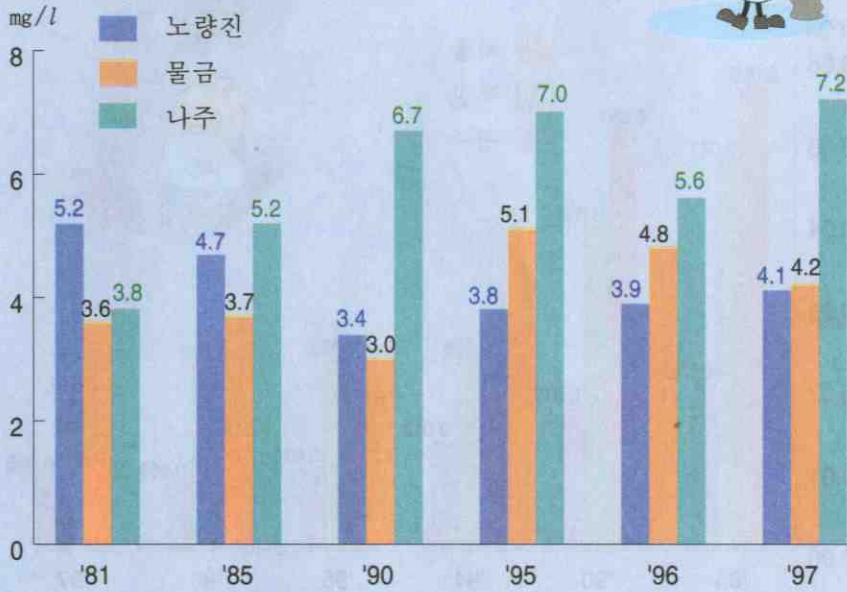


단위 : ppm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춘천	청주	전주	울산
1985	0.056	0.047	0.039	0.052	0.020	0.033	0.034	0.029	0.021	0.030
1990	0.051	0.039	0.041	0.044	0.017	0.029	0.084	0.016	0.022	0.031
1993	0.023	0.028	0.035	0.021	0.014	0.020	0.024	0.020	0.016	0.032
1994	0.019	0.023	0.038	0.022	0.013	0.021	0.021	0.030	0.016	0.030
1995	0.017	0.023	0.031	0.023	0.010	0.017	0.015	0.018	0.012	0.028
1996	0.013	0.022	0.023	0.012	0.008	0.015	0.010	0.012	0.010	0.022
1997	0.011	0.018	0.016	0.013	0.009	0.011	0.008	0.009	0.010	0.019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 주요 수계별 수질오염(B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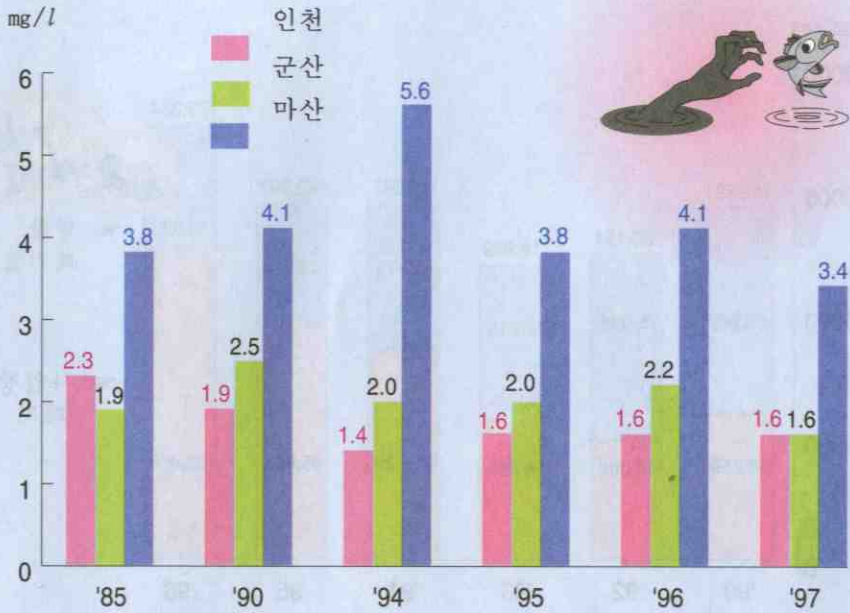


단위 : mg/l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충주댐	의암댐	팔당	노량진	안동	물금	대청댐	부여	우치	나주
1981	2.2	0.7	...	5.2	1.3	3.6	1.9	2.0	...	3.8
1985	1.3	1.1	1.4	4.7	1.3	3.7	1.1	2.5	1.3	5.2
1990	1.1	1.3	1.0	3.4	1.0	3.0	1.7	3.1	1.2	6.7
1994	0.9	1.5	1.2	3.3	0.9	4.6	1.5	3.7	2.0	7.3
1995	1.0	1.5	1.3	3.8	1.2	5.1	1.2	4.3	2.3	7.0
1996	0.9	1.5	1.4	3.9	0.9	4.8	1.5	3.7	2.1	5.6
1997	0.8	1.6	1.5	4.1	1.1	4.2	1.2	3.4	2.5	7.2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3. 주요 연안 해수오염(C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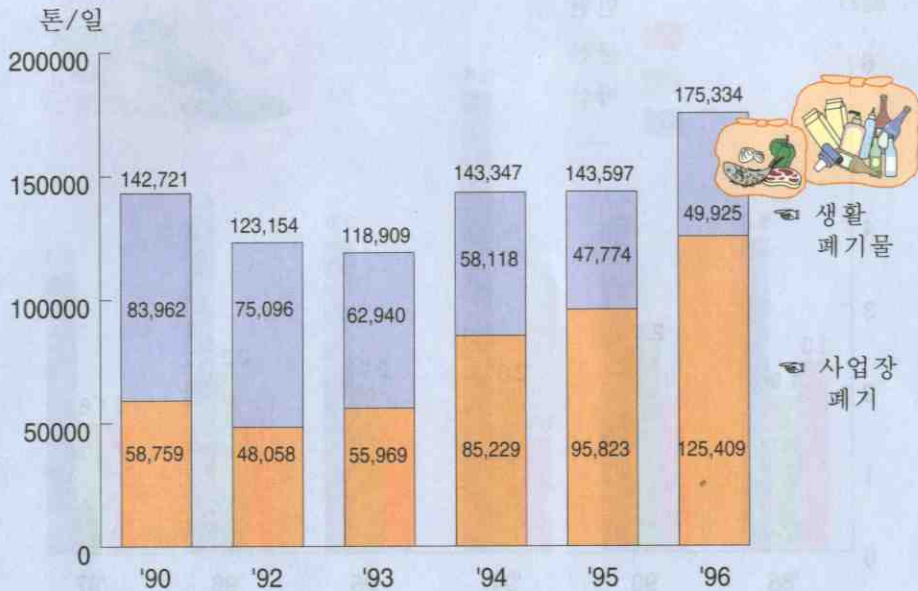
단위 : mg/l

	인천	군산	목포	여수	마산	부산	울산	영일만 ¹⁾	삼척
1985	2.3	1.9	2.5	2.1	3.8	2.3	2.4	1.8	1.2
1990	1.9	2.5	2.4	2.1	4.1	1.6	2.1	2.0	1.8
1993	1.5	2.7	1.9	1.5	4.0	1.7	1.8	1.8	1.7
1994	1.4	2.0	2.0	1.5	5.6	2.2	1.8	1.8	1.4
1995	1.6	2.0	1.9	1.4	3.8	2.2	2.0	2.1	1.6
1996	1.6	2.2	1.7	1.4	4.1	1.9	1.5	1.7	1.4
1997	1.6	1.6	1.4	1.4	3.4	1.9	2.3	1.0	0.7

주 : 1) '90년 이전은 포함자료임.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4.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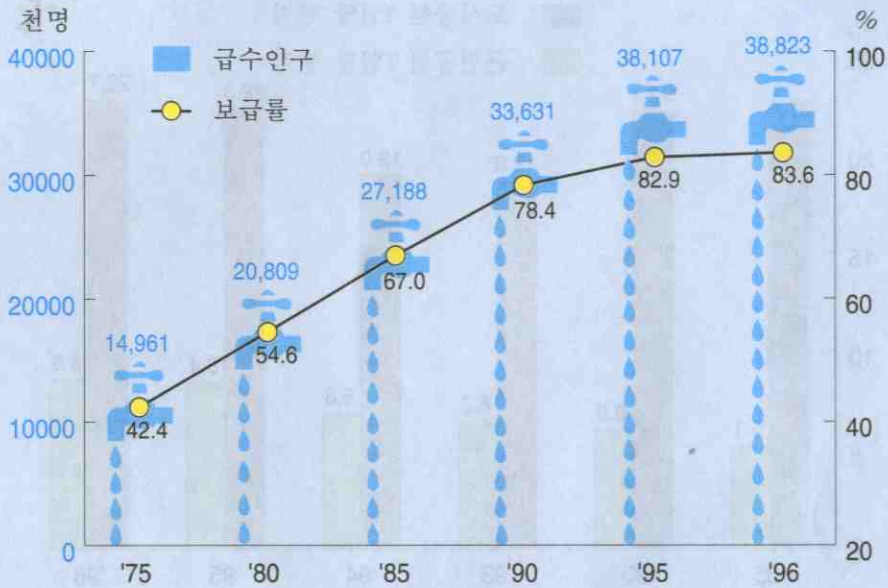
단위 : 톤/일

연도	일반 폐기물 합계	생활폐기물	1인1일당 발생량(Kg)	연탄재	음식물·채소류	사업장 폐기물 ¹⁾
1991	139,955	92,246	2.3	26,254	26,311	47,709
1992	123,154	75,096	1.8	17,750	21,807	48,058
1993	118,909	62,940	1.5	9,780	19,764	55,969
1994	143,347	58,118	1.3	5,534	18,055	85,229
1995	143,597	47,774	1.1	3,235	15,075	95,823
1996	175,334	49,925	1.1	3,639	14,532	125,409

주 : 1) '94 .4.1폐기물분류체계 변경으로 오톤류, 폐석고등 80%이상이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전환됨.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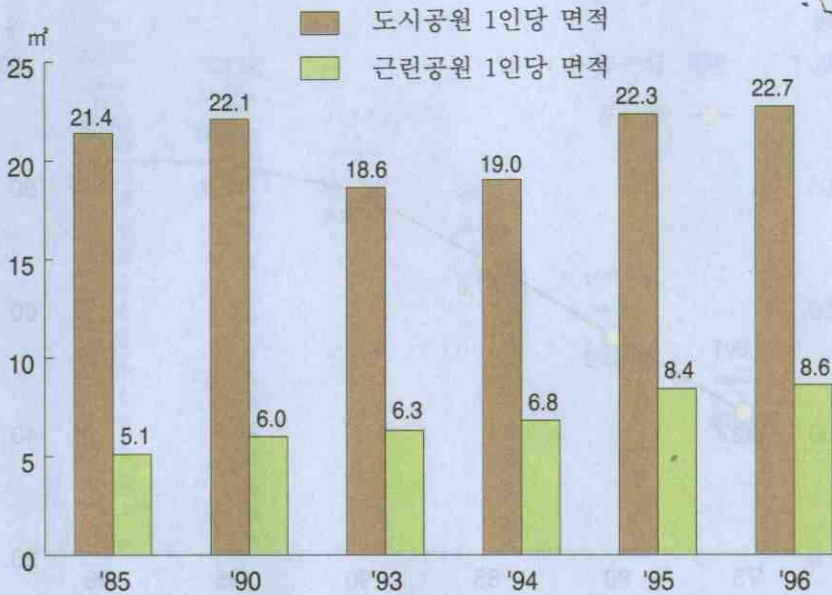
5. 상수도 보급



	급수인구(천명)		시설용량 (천톤/일)	1일1인당 급수량(ℓ)	급수지역수(개)
		보급률(%)			
1975	14,961	42.4	3,842	216	172
1980	20,809	54.6	6,756	256	243
1985	27,188	67.0	1,021.4	282	446
1990	33,631	78.4	16,274	369	551
1994	37,351	82.1	20,967	408	654
1995	38,107	82.9	21,844	398	626
1996	38,823	83.6	22,908	409	649

자료 : 환경부 「상수도통계」

6. 도시공원 면적(1인당)



단위 : 개소, m²

연도	계 ¹⁾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1인당 면적	1인당 면적	1인당 면적	1인당 면적	1인당 면적	1인당 면적			
1985	2,558	21.4	173	15.6	547	5.1	1,816	0.1	22	0.6
1990	4,305	22.1	181	15.2	990	6.0	3,105	0.2	29	0.7
1993	5,891	18.6	180	11.3	1,237	6.3	4,446	0.3	28	0.7
1994	6,719	19.0	204	11.2	1,446	6.8	5,035	0.3	28	0.7
1995	8,943	22.3	397	12.8	2,176	8.4	6,318	0.3	37	0.6
1996	9,248	22.7	398	13.0	2,241	8.6	6,552	0.3	39	0.6

주 : 1) 1994년부터는 체육공원이 포함됨.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부 록



색인

【7】		경제활동인구	94
가	가격	경제활동인구조사	88
가	가격의 시장조절기능	경제활동참가율	95
가	가계비	계절변동조정지수	141
가	가계수지	고속도로교통량통계	199
가	가구소비실태조사	고정자본형성	42
가	가동률지수	곡물자급률	117
가	가중치	공개시장조작	223, 224
가	가처분농가소득	공공부문	245
가	가처분소득	공교육비	284
가	가축사육두수	공로	204
가	가축통계조사	공적부조	302
간	간접세	공정률	175
개	개발기관	공중률	175
개	개발비	과학기술연구활동 조사	281
개	개인소득	광공업동태조사	131
개	개인의 건강평가	광공업통계조사(산업총조사)	129
건	건설공사원가명세서	교역조건	268
건	건설기성통계	교원 1인당 학생수	285
건	건설수주통계조사	교원 이직률	286
건	건설업경영분석	교육통계조사	280
건	건설업통계조사	교통부문 운송실적 보고	199
건	건축면적	구입빈도별 지수	62
건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국내총생산(GDP)	33, 42
건	건폐율	국내총지출	32
결	결산개요(통계편)	국내총투자	42
겸	겸업소득	국민가처분소득	33
겸	겸업수지	국민건강 및 보건 의식행태조사	298
경	경상가격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	98
경	경상계정	국민계정	35
경	경상수지	국민소득의 창출과 처분	34
경	경제구조	국민소득통계	31
경	경제성장률	국민순생산	33

국민영양조사 298

국민의 평균교육년수 283

국민의 학력구성비 283

국민총생산(GNP) 33

국민후생지표 40

국부 38

국부통계조사 38

국세 250

국제수지통계 263

국제수지표 264

국채 248

근로시간 95

근로일수 88, 90

금리 225

금융개관표 221

금융거래 37, 220, 266

금융기관 216

금융기관예금·대출금통계 218

금융비용 189

금융상품별 회전을 228

기계수주통계조사 133

기금 249

기능 및 기술직 종사자 287

기대여명 15

기본생활필품 지수 61

기성액 174

기업체 139, 185

기업체노동비용조사 90

기준년도 55, 57, 132

기초 연구비 286

기타 금융기관 216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 18

【나】

노년부양비 15

노동가능인구 88

노동비용 91

노동생산성지수 99

노동소득분배율 98

노령화지수 15

노임단가지수 97

농가경제 77

농가경제잉여 119

농가경제조사 73

농가구입가격지수 64

농가수지 118

농가인구 115

농가재산 119

농가판매가격지수 64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57

농가패리티지수(Parity Index) 58

농경지 116

농업경영비 118

농업기본통계조사 110

농업사업체 74

농업소득 118

농업조수입 118

농업총조사 110

【다】

다세대주택 173

단백질 공급량 306

대기오염도 32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24

대기환경기준 325

대차대조표 172

- 대출금 219
- 도로교통량통계 199
- 도로연장 203
- 도로포장률 203
- 도매업 187
- 도소매업통계조사 184
- 도소매업판매액지수 188
- 도시가계 77
- 도시가계저축시장조사 222
- 도시가계조사 72
-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59
- 등록선박통계 200
- 디스플레이터 60
- 【리】**
- 라스파이레스(Laspeyres)산식 55
- 로렌츠곡선 79
- 【ロ】**
- 매월노동통계조사 89
- 매출총이익률 189
- 명목소득 43
- 모아비 17
- 무선호출가입자 205
- 무역수지 257
- 무역지수 268
- 무역통계 257
- 무임목지 112
- 물가수준 63
- 물가지수 53
- 【비】**
- 박사학위 취득자수 287
- 발전량 158
- 방문판매업체 185, 186
- 배출계수 324
- 백화점 185
- 변전설비 158
- 병상이용률 306
- 보험금 231
- 보험기관 217
- 보험료 231
- 보험통계 223
- 본원통화(RB) 226
- 부가가치 31, 138, 205
- 부양비 15
- 부영양화 322
- 부채 및 자본계정 221
- 부하율 158
- 분가지출 119
- 불변가격 41, 43, 63
- 비거주용건물내의 주택 173
- 비경제활동인구 88, 95
- 비에너지유 157
- 비통화금융기관 217
- 【사】**
- 사교육비 285
- 사망력 18
- 사망률 12, 18, 304
- 사망원인별 구성비 304
- 사업이외수지 118
- 사업장 면적 188
- 사업장폐기물 321
- 사업체 139, 185, 188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84

- 사업체 노동실태조사 89
 사인분류 10, 304
 사회보험제도 302
 사회복지서비스 303
 사회복지시설 307
 사회통계조사 300
 산림기본통계조사 111
 산업생산지수 134
 산업연관표 35
 산업재해 303
 산업재해조사 301
 산업총조사 129
 삼면등가의 원칙 35
 상수도 319
 상수도보급률 331
 상수도통계 319
 상품성질별지수 62
 상품수지 264
 상품회전을 189
 생계비 78
 생명표 12
 생산구조 42
 생산능력 지수 140
 생산성 지표 186
 생산액 138
 생산연령인구 88
 생산자물가지수 54
 생산자물가지수 54, 63
 생산자제품재고지수 135
 생산자출하지수 135
 생활보호대상자조사 301
 생활폐기물 321, 329
 서비스수지 265
 서비스업 183, 190
 서비스업통계조사 186
 석유류수급통계 152
 성비 15
 세외수입 245, 248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44
 소득분배 79
 소득수지 266
 소매업 183, 187
 소매업경영동태조사 185
 소비성향 79
 소비자물가지수 56
 소비자물가지수 56, 61, 64
 소음 330
 소음환경기준* 330
 손익계산서 172, 223
 수송분담률 203
 수입 261
 수질오염도 326
 수질오염 실태보고 321
 수출 261
 수출산업실태조사 261
 수출입물가지수 58
 수출입물가지수 58, 64
 수출입의 대 GNP의 비율 43
 숙박 및 음식점업 187
 순이동 21
 식용공급량(1인 1일당) 305
 신 SNA 35
 신선식품지수 62
 실물거래 37
 실업률 94
 실업자 94

- 실질소득 43
 실질임금 96
【○】
 아파트 173
 아파트주거환경통계 173
 어가경제조사 75
 어업기본통계조사 113
 어업생산고조사 114
 어업총조사 109, 113
 어음교환 230
 어음교환액 230
 어음부도액 231
 어음부도율 224
 에너지 수입의존도 157
 에너지유 157
 에너지종합수급표 153
 에너지총조사 152
 에너지탄력성 157
 앵겔계수 78
 연간급여액 140
 연구개발활동 280, 281, 283
 연구보조원 287
 연구원 287
 연립주택 173
 연앙추계인구 13
 영아사망률 19
 영업이익률 189
 예금 218
 예금은행 216
 예금회전율 229
 예비전력 158
 예산 241
 예수금 228
 와병일수 305
 외환보유액 269
 외환수급통계 262
 요구불예금회전율 224, 229
 우편총조사 200
 운수수입 205
 운수업부가가치 205
 운수업통계조사 198
 운수통계 197
 유년부양비 15
 유배우이혼율 19, 21
 유병률 305
 유형고정자산 139
 응용 연구비 287
 의료기관실태보고 299
 의료보험급여액 307
 의료보험부담액 307
 의료보호수혜자 307
 의료인력현황 299, 307
 의무고용준수율 308
 이동률 21
 이동전화가입자 205
 이용률 158
 이전수지 266
 이직률 95, 286
 이혼율 19, 20
 인구구조 7, 14
 인구규모 14
 인구동태통계 7, 8, 10
 인구밀도 14
 인구성장률 14
 인구이동통계 8, 11

- 인구정태통계 7
 인구주택총조사 8, 9
 인구증가 14
 인플레이션 63
 일반회계 244, 248
 임금 87, 88, 9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88, 90
 입목지 112
 임산물생산통계 112
 입직률 95
- 【즈】**
- 자금순환표 35, 37
 자동차등록수 205
 자동차등록현황조사 199
 자본계정 222, 264
 자본수지 266
 자산계정 220
 자연환경 317, 318, 331
 작물 111, 116
 작물통계조사 111
 장애인 등록률 308
 재생산율 16, 17
 재정부담률 249
 재정수지 242, 243, 247
 재정통계 242, 245
 재정투융자 247
 재할인정책 223, 224
 재해강도율 97
 재해도수율 98
 재해발생률 97
 저축 37, 42
 저축기관 217
 저축률 39
 적조현상 323
 전국폐기물통계조사 321
 전년동월비 140
 전력수급 158
 전월비 140
 전입 21
 전출 21
 전화보급률 205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200, 202
 정보통신산업통계 198
 정부발표물가 61
 정부재정 245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 133
 조사망률 18
 조세부담률 39, 246, 247
 조이혼율 19, 20
 조출생률 16
 조혼인율 19
 종사자 139, 287
 주가지수 231
 주민등록인구 11, 13
 주요수입상품의 경쟁력실태조사 262
 주택 9, 172, 173
 주택보급률 175
 주택총조사 172
 주택투자율 175
 준비자산증감 267
 자산계정 220
 중개어음금리 230
 중위연령 15
 증권통계 222
 지구의 온난화 현상 322

지급준비율제도 224
 지니계수 79
 지방세 245, 250
 지방세 및 세외징수통계 245
 지방재정 249
 지역내총생산(경상가격) 38, 43
 지역소득통계 38
 지정폐기물 328, 329
 직업병 92
 직접세 246, 247, 248
 직접투자 266
 진료자수 306
 진학률 284

【六】

채권수익률 224, 230
 철도 204
 총유동성(M₃) 228
 총자본형성 42
 총조사인구 13
 총통화(M₂) 227
 최종에너지소비 156
 추계인구 11, 13
 출산력 16
 출산율 16
 출하액 138
 출하지수 135, 136
 취업률 288
 취업자 94
 취학률 284
 치료일수 306

【七】

컴퓨터 1대당 학생수 286
 콜금리 224, 229

【八】

토양오염도 329
 통화(M₁) 227
 통화개관표 220
 통화금융기관 217
 통화금융통계 218
 통화당국 216
 통화지표 215, 217
 투자 42
 투자기관 217
 투자율 39
 특별인출권(SDR) 269
 특별회계 248

【九】

편의(bias) 90
 편의점 186
 평균가동률 140
 평균소비성향 79
 평균수명 15
 평균연령 15
 평균열량 306
 폐기물배출량 328
 폐수배출량 326
 폐수배출허용기준 326
 포트폴리오투자 266

【十】

하수도 보급률 331

하수도통계	320	CIF가격	59
하천의 수질환경기준	327	COD	321, 323
학급(과)당 학생수	286	GDP디플레이터	41
학령 인구수	284	GNP대비 보험률	231
학생의 가슴둘레	304	GNP디플레이터	63
학생의 신장	304	LNG(Liquefied Natural Gas)	157
학생의 신체중량지수(BMI)	304	LPG(Liquefied Petroleum Gas)	157
학생의 체중	304	MCT	215, 227
한국의 교육지표	281	RP매도수익률	230
한국전력통계	153	SKTC에 의한 무역통계	261
한국통합재정수지	243	TCE(ton of coal equivalent)	156
합계출산물	17	TOE(ton of oil equivalent)	155
항공	204		
해역의 수질환경기준	328		
해운	204		
호소의 수질환경기준	327		
혼인력	19		
혼인율	19, 20		
화물입하	204		
화물출하	204		
화폐발행액	219, 228		
화폐발행액조사	219		
화학물질유통실태조사	322		
환경계정	34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321		
환자조사	299		
활동제한일수	305		
【기타】			
1인당 GNP	39, 41		
1차에너지 소비	156		
BOD	323		
CD 유통수익률	224, 229		

주요통계지표해설

『주요통계지표해설』 발간에
참여한 사람들

통계정보국장 : 강석인

자료관리과장 : 김태중

사무관 : 정창호

담당직원 : 김시윤 김태겸

김선녀 김현아 최윤정

통계청승인간행물 : 098 - 02

주요통계지표해설

발행일 : 1998년 3월

발행인 : 윤 영 대

발행처 : 통 계 청

우)135-723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5

인 쇄 강문인쇄사

※ 무단복제판매를 금합니다.

이 책은 대한통계협회(725-4344), 교보문고(397-3628), 한국경제서적(737-7498), 한국통계서적(712-9301), 서울문고(553-3038), 종로서적(732-2331), 을지서적(757-8991), 프레스센터(734-6818) 등 전국 주요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에서 발간원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